

2011
수산관련 법령집(상)



목 차

■ 수산업법	1
○ 수산업법 시행령	4
○ 어업등록령	105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1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5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31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3
○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33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53
○ 선박안전 조업규칙	338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44
■ 수산자원관리법	49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47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57

수 산 업 법

수 산 업 법

全文改正	1990· 8· 1	法律第4252號
改正	1991· 3· 8	法律第4365號(海洋汚染防止法)
	1995· 12· 30	法律第5131號
	1996· 8· 8	法律第5153號(政府組織法)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の施行에 따른 公認會計士法 등의 整備에 관한法律)
	1997· 12·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 등의 변경에 따른 建築法 등의 整備에 관한法律)
	1999· 2· 8	法律第5911號(公有水面埋立法)
	1999· 4· 15	法律第5977號
	2000· 1· 28	法律第6257號(漁場管理法)
	2001· 1· 29	法律第6398號
	2001· 1· 29	법률제6399호(수산물품질관리법)
	2002· 1· 14	법률제6611호(기르는어업육성법)
	2002· 2· 4	법률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4· 12· 31	법률제7314호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제7477호
	2007· 1· 19	법률제8260호
전부개정	2007· 4· 11	법률제8377호
일부개정	2007· 7· 27	법률제8564호
	2007· 8· 3	법률제8626호
	2008· 2· 29	법률제8852호
전부개정	2009· 4· 22	법률제9626호
일부개정	2010· 1· 25	법률제9948호
	2010· 5· 17	법률제1029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5. “기르는데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 2 장 면허어업

제8조 (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호 중 어장의 수심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가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만 해당한다)

4.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 (면허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4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자치구와 연접(連接)하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⑤ 제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⑥ 제9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전·분할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제13조의2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내만의 어류등양식어업권(가두리어류양식어업에 한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중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우선순위 배제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적용한다.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17조 (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 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지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설치하고 종묘(種苗)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종묘 살포를 끝낸 날

2.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하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3.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묘 살포를 끝낸 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

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①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8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水面)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조정(調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 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어업의 개시 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32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6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7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

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入漁者)에게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의2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외해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5조, 제68조 및 제85조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제 3 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1조 (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한시어업허가) ①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이용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한다)
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3. 해역의 범위
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② 시·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선에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처분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

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47조 (신고어업) ①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①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준용규정)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

항·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②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③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0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 3.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4.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3.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4.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① 행정관청은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외국으로부터의 기르는어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4. 그 밖에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삭 제> (2010.5.17)

제56조 (기르는어업의 육성) 정부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5 장 어획물운반업

제57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 제66조
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57조를 위반하거나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5조제1호,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3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제41조제5항, 제42조, 제43조,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어업조정 등

제61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3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1조제4항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① 어선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선령·기관, 부속선의 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8조 (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감독)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정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2조 (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사법경찰관)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 7 장 수산업의 육성

제74조 (수산진흥종합대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산진흥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2.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산인력·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장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6. 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수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에 관한 사항
9. 수산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0. 수산업의 대외협력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우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수산 관련 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업별 표준어선의 개발 및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협업화 등 어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의 정비·보강에 관한 사항
6. 마을어장 등 어장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자원의 상태 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되는 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업을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어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 8 장 수산물발전기금

제76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7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제7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2. 기르는어업의 육성
3.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제7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

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80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채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채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 9 장 보 상·보 조 및 재 결

제81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

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3조 (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

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4조 (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제85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6조 (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장 수산조정위원회

제88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별 분쟁의 조정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2.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시행계획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91조 (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2조 (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제9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4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5조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4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금지
4.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제6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96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연안어업·근해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별 칙

제9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수산물관련법령집

2.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9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7조제4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32조제1항(제49조제1항이나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7.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8.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 (몰수) ① 제97조, 제98조, 제99조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4.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

- 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9.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11. 제47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2. 제48조에 따른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3.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4. 제6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15.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8. 제89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9. 제9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9626호, 2009.4.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행정처분의 승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허가받은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에 붙여진 제한 또는 조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기르는어업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센터로 본다.

제8조(수산진흥종합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으로 본다.

제9조(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본다.

제10조(수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으로 본다.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중요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

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948호, 10.1.25>

- ① 이 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40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구획어업 허가 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
개정	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8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5호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 시행령등의개정령)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39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0호
	1999. 6. 8	대통령령 제16392호(수산물검사법시행령)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8호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20호(어장관리법시행령)
	2001. 2. 3	대통령령 제17123호
	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4호
	2002. 3. 2	대통령령 제17528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 7. 15	대통령령 제18052호(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21호
일부개정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81호
	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전부개정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일부개정	2008. 7. 28	대통령령 제20941호
전부개정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
일부개정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8호
	2010. 10. 13	대통령령 제22441호
	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해수면)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

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 31일 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당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과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지역의 양식적합지역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서류 송달의 공시) 법 제6조에 따른 공고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제5조(공동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대표자를 부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대표자 선정신고서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지분 변경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법 제45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한다)
 -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한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②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명이면 중앙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 ③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21>
- ④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제출기간에 해당 어장구역마다 어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 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뜬·밭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뜬·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뜬·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⑤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해양식어업의 종류는 가두리양식어업(수중 또는 표층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7.21>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마을어업: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
2. 협동양식어업: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결한 수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

제12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법 제11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등 어업면허 금지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어업면허 금지기간 중에 그 취소된 어업권 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그 다른 어업권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산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수면의 경우
- 2.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수산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고 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한 보호수면의 경우

제15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에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어업권의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명칭

제16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17조(관리선의 대상 및 그 지정)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에서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형망선은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는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5조제

6호(법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2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지구별수협외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지구별수협이 그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3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어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3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외해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제5항,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70조 및 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시·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0.7.21]

제 3 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4. 서남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 3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만 해당된다)
6.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 가. 낚시어업: 주낙·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한다)
 - 다. 손꽂지어업: 손으로 꽂치를 포획하는 어업
 -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피빨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제9조제4항에 따른 서해안만 해당된다)

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제27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②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어업
2.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3. 밧줄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밧줄을 설치하여 채묘연(採苗漣)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4. 말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5. 뗏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 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제28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2조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2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①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이 영 제12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이 영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31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기르는어업의 어장이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

수산물관련법령집

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 ④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용 사료의 제조·개발 기술
 2. 바이러스 백신 등 수산용 약제의 제조·개발 기술
 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양식 또는 종묘생산 기술
 4. 양식품종 개량 및 육종 기술
 5. 그 밖에 기르는어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기술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 목표
 3. 과제수행 능력
 4. 과제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 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제33조 삭제 <2010.11.10>

제34조 삭제 <2010.11.10>

제35조 삭제 <2010.11.10>

제36조 삭제 <2010.11.10>

제 5 장 어획물운반업

제37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6 장 어업조정 등

제38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물학원장이 제한·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금지를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종류, 제한·금지의 기간 및 수역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3>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된 경우로서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과 어업조정(어선감적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5.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6.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揚陸)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7.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8.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9.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제42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또는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제한

제43조(위판장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제44조(위판장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군·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같은 조에 따른 시·도수산물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제46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7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어장 등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
5. 고용조건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의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 입어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지도

제49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停船)

시켜야 하고, 마이크론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즉시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벨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표지·깃발의 종류·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 7 장 수산업의 육성

제51조(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법 제7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한 사항
2. 수산물의 유통단지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어업기술의 훈련·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업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관한 사항
5. 어선용 기자재의 생산과 어선용품의 설계·연구 및 실험에 관한 사항

6. 어선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복량(船腹量)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52조(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관련 어업인 단체, 그 밖의 수산 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단체·기관은 필요한 경우 어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관련 어업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수산물의 규격화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수산발전기금

제54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어선·어구의 매각대금) 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5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제57조(기금계정의 구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 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7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법 제7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제58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제59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 수산물 비축사업 및 해당 사업의 관리
3. 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0조(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산정한 보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 대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

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1조(기금의 징수)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2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64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지출의 절차)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상·보 조 및 재 결

제66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 번호 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67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4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68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

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69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0조(재결신청) ① 법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재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86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사료제조기·그물·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8.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0.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1. 어항시설사업
12.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13.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14.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5.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16.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7.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18. 수산정보화사업

제 10 장 수산조정위원회

제73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

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명
2. 어업인후계자 대표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지구별수협외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시·도지사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중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어업인후계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물부, 시·도 또

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4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제75조(위원장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77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 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기관의 관할 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1호·제3호나목의 2) 및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
-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8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행정관청이 제7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제8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8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우체국으로 한다.

제82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제8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褒賞)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9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시·도지사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9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9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22127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대통령령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한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측정할 때까지는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80톤”으로, “8톤”을 “10톤”으로 보고,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40톤”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60톤으로 본다.

제4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근해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어선을 대체한 어선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그 밖의 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양조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새우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수조식양식어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수조식종묘생산어업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축제식종묘생산어업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수하식종묘생산어업	밭출식종묘생산어업
간이수하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호망어업·승망어업·각망어업	승망류어업
건간망어업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건망어업
부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선인망어업
안강망어업	안강망어업
주목망어업·장망어업·낭장망어업	장망류어업

해선망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지인망어업
----------------	----------------

제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으로 한다.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4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⑮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6>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제43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 향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제5항”을 “법 제4조제4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

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288호, 2010. 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入漁)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④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로 한다.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수산관련법령집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入漁)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로 한다.

부 칙 <제22441호, 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476호, 2010.11.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7조제1항 관련)

어업별	지역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및 어구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비 고

1. 양식장형망선 :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 :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37조 관련)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대상 어선	어선의 규모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업종별수협: 총톤수 22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300톤) 미만의 어선 ○지구별수협: 총톤수 10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140톤) 미만의 어선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	○총톤수 20톤 이상 22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300톤) 미만의 어선
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총톤수 10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140톤) 미만의 어선
4.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으로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려는 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총톤수 22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300톤) 미만의 어선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총톤수 10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140톤) 미만의 어선

<p>6. 대형선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p>	<p>○총톤수 22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300톤) 미만의 어선</p>
<p>7.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차한 자</p>	<p>○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p>	<p>○총톤수 22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300톤) 미만의 어선</p>
<p>8.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p>	<p>○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p>	<p>○총톤수 10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140톤) 미만의 어선</p>

비고: “구톤수”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존선(現存船)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어업의 종류	허가정수	조업구역
외끝이대형저인망어업	34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쌍끝이대형저인망어업	38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20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29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7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대형트롤어업	37건	전국 근해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3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대형선망어업	29건	전국 근해
소형선망어업	35건	전국 근해
근해채낚기어업	618건	전국 근해
근해자망어업	569건	전국 근해
근해안강망어업	199건	전국 근해
근해붕수망어업	55건	전국 근해
근해자리돔들망어업	6건	제주특별자치도 연해
근해장어통발어업	40건	전국 근해
근해문어단지어업	40건	전국 근해
근해통발어업	159건	전국 근해
근해연승어업	479건	전국 근해
근해형망어업	55건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17건	전라북도 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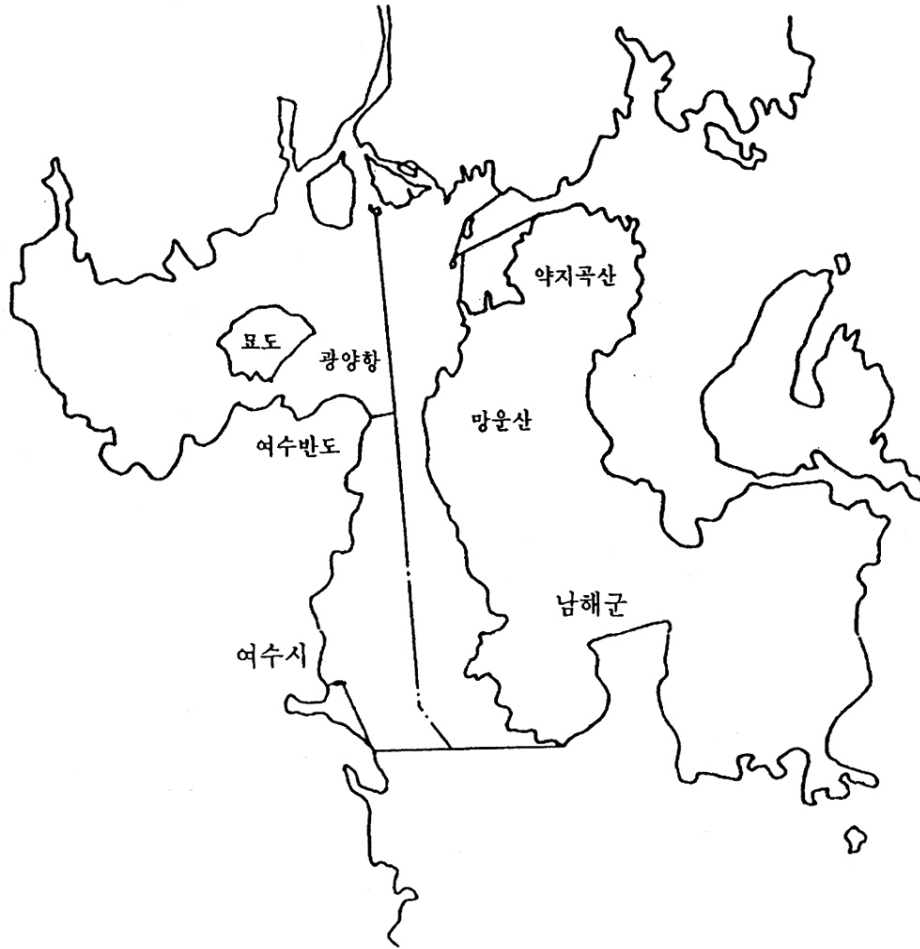
기선권현망어업	54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14건	전라남도의 해역
잠수기어업	6건	강원도 연해
	9건	경상북도 연해
	93건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39건	전라남도 연해
	28건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

비고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어선 중 1척이 침몰된 경우에는 어선을 복구하거나 건조할 때까지 외끌이로 조업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연해 및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가인포감부터 금남면 대도 서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을 거쳐 남해대교 남단에 이르는 선,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가천 최남단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을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척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경상남도 남해대교 남단으로부터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덕산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구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 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가천 최남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점으로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로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낙포각 등대 동단으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에 이르는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조업구역을 제외한 공동조업구역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별표 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제69조 관련)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 1)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text{평년수익액} \div \text{연리}(12\text{퍼센트}) + \text{어선}\cdot\text{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text{평년수익액} \times \text{어업의 정지기간} + \text{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cdot\text{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text{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text{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법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다만,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3\text{년분 평년수익액} + \text{어선}\cdot\text{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이 정지된 경우(어선의 계류를 포함한다): $\text{평년수익액} \times \text{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 \text{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text{어업의 제한기간 또는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2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전 또는 제거 명령에 따른 경우로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고 이전 또는 제거를 한 경우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고 제거 공사를 한 경우: $\text{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 공사에 드는 비용과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

가) 3년 이상의 어획실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揚陸量)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 생산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 기산(起算)한 3년 동안(소급 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 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한다)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나) 어획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어획량

(1) 면허어업: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2)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 해당 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다만,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이 없으면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계산한다.

※ (1) 및 (2)의 계산식에서 실적기간은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으로 하되, 같은 규모 또는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과 같은 기간의 실제 어획실적을 말한다.

※ 어획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을 원칙으로 하고, 어획물의 특성에 따라 생물(生物) 중량 또는 건중량(乾重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김은 마른 김 1속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을 내용물 중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생산고 조사요령의 수산물 중량환산 및 수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평균 연간판매단가의 산출기준

가)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 기산한 1년 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해당 수산물이 계통출하(系統出荷)된 주된 위판장의 수산물별·품질등급별 판매량을 수산물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평균 판매단가를 말한다]로 한다.

나)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계산해 낸다.

(가)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가격

(나)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

(2) 소급 기산한 1년의 기간 동안 어획물의 일시적인 흥작·풍작 등으로 어가(魚價)의 연평균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어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소급 기산한 최초의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소급하여 기산한 1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에 소급하여 기산한 최초의 1년 동안의 수산물 계통출하 판매가격의 전국 평균 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소급하여 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항목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비항목

구분	경비항목
1. 생산관리비	① 어미고기 및 종묘구입비 ② 미끼구입비 ③ 사료비 ④ 유지보수비 ⑤ 연료 및 유류비 ⑥ 전기료 ⑦ 약품비 ⑧ 소모품비 ⑨ 어장관리비[어장 청소,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驅除) 및 표지시설 설치 등] ⑩ 자원조성비 ⑪ 용선료(傭船料)
2. 인건비	①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② 본인 외의 사람에게 대한 인건비
3. 감가상각비	① 시설물 ② 어선 또는 관리선[선체, 기관 및 의장품(艤裝品) 등 포함] ③ 어구 ④ 그 밖의 장비 및 도구
4. 판매관리비	① 가공비 ② 보관비 ③ 용기대 ④ 판매수수료 ⑤ 판매잡비(운반·포장 등)
5. 그 밖의 잡비	① 각종 세금과 공과금 ② 어장행사료 ③ 주식·부식비 ④ 복리후생비 ⑤ 보험료 및 공제료 ⑥ 그 밖의 경비

나) 산출방법

- (1) 평년어업경비는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별로 계산하되, 규정된 경비항목 외의 경비가 있으면 그 밖의 경비항목에 포함시켜 전체 평년어업경비가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
- (2) 경비항목별 경비 산출은 어선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신고사항, 포획·채취물의 판매실적, 유류 사용량, 임금정산서, 보험료 및 공제료, 세금납부 실적,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 등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현지 실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인건비 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는 현실단가를 적용하되, 어업자가 직접 경영하여 본인 외의 자의 인건비가 없으면 「통계법」 제 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포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 맨손어업 및 투망어업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 (나) 감가상각비는 신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도록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단축·축소할 수 있다.

선질별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선	25	20
F.R.P.선	20	10
목선	15	10

- (다)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는 해당 어선의 주된 양륙지 또는 어업장이 속한 지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위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3) 생산관리비 중 소모품비와 감가상각비의 적용대상 구분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은 감가상각비로,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비로 한다.
- (4) 수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묘 살포,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자의 의무사항은 어장면적 및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5) 산출된 경비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변동폭이 1.5배 이상인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같은 종류의 어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어업) 2개 이상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다.

(6) 어업생산주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종묘구입비, 사료비, 어장관리비 및 판매관리비 등 생산주기와 연계되는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생산주기로 나누어 연간 평균 어업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주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관할 연구소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잔존가액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액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산출방법에서 “통상의 고정적 경비”란 어업의 정지기간 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 또는 어선·어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른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실적이 없어 제1호 및 제2호의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라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어업별 손실액은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에 든 인지세·등록세 등 모든 경비와 해당 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액으로 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을 처분하여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법 제8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태풍 피해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등

가.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1)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

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2) 전문기관: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 1) 행정관청은 제66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용역조사나 손실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는 신뢰성 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거자료나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생산실적 등을 조사하거나 평가하여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
- 3)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평가자에게 조사 또는 평가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자는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4)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조사 또는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사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손실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5) 1) 및 4)에 따른 용역조사 및 평가에 드는 경비는 법 제81조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에 따라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사를 한 경우
 - 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 또는 6)에 따라 용역조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8) 1) 및 4)에 따라 손실액 산출에 관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조사평가자나 조사평가를 의뢰한 수익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관청, 어선의 입항·출항 신고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9) 8)에 따라 조사평가자 또는 수익자가 행정관청에 서류의 열람·발급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의뢰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 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목적
 - 다)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내용
 - 라) 열람·발급이 필요한 서류 또는 공문서의 종류 및 수량
- 10)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제1항 본문 관련)

구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부과기준
근해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어업정지 1일: 19만원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상끌이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어업정지 1일: 13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	○어업정지 1일: 6만원
연안어업	○모든 연안어업	○어업정지 1일: 4만원
구획어업	○모든 구획어업	○어업정지 1일: 4만원
신고어업	○모든 신고어업	○어업정지 1일: 1만원
어획물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13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9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6만원
	○총톤수 10톤 미만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3만원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6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호	70만원
2.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2호	
가. 면허어업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나. 허가어업(어획물운반업을 포함한다)		
1) 연안어업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만원
2) 근해어업(종묘생산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을 포함한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3) 구획어업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만원
3. 법 제31조제1항(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3호	150만원
4. 어업권자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4호	50만원
5. 어업권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6호	100만원

수산물관련법령집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어업권자가 그 위반행위를 도운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7호	100만원
8.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않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8호	100만원
9.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않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9호	500만원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0호	100만원
11. 신고어업자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1호	70만원
12. 법 제48조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나.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2호	70만원 30만원
13.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3호	200만원
14. 법 제6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4호	70만원
15.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어장·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5호	70만원
16.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6호	100만원
17.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7호	100만원
18.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8호	50만원
1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9호	10만원

[별지 서식]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

(앞 면)

어업감독 공무원증
(KOREA FISHERY OFFICE)

사 진

홍길동(한 자)
HONG, G. D.

농림수산식품부
○○○○(시,도,군,구)

(뒷 면)

어업감독공무원증(00혈액형)

번호 :
소속 :
직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직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업등록령

어업등록령

전문개정	1970·7·28	대통령령제 5229호
일부개정	1971·7·32	대통령령제 5713호
	1972·12·30	대통령령제 6435호
	1974·12·31	대통령령제 7483호
	1976·7·20	대통령령제 8193호
	1981·9·3	대통령령제10455호
	1991·2·18	대통령령제13309호
	1996·8·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4·1	대통령령제15750호(한국은행법시행령)
	2001·1·29	대통령령제17120호(어장관리법시행령)
	2003·4·4	대통령령제17952호(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2004·3·17	대통령령제18312호
	2006·6·12	대통령령제19507호
	2007·9·6	대통령령제20246호
2008·2·29	대통령령제20677호	
타법개정	2010·5·4	대통령령제22151호
	2010·11·2	대통령령제2246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제2조(등록관청)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이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5조(부기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附記)를 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저당권·임차권의 변경
2. 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은 제외한다)
3. 일부말소등록의 회복
4. 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 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같은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된 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등록관청이 변경되면 종전 등록관청은 그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부책(簿冊)과 관계 서류를 새로운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과 관계 서류가 일책(一冊)의 일부일 때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 2 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 편철장(어장도 편철장)
3.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②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어업권등록부

-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①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색출부(索出簿)
- 2. 대표자 명부
-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 4. 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 5.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 사건부
- 6.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서 편철장
- 7. 통지부
- 8.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어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면허번호
- 2. 어업권의 표시
- 3. 제한 또는 조건
- 4. 어업권의 존속기간
- 5. 어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지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갱구부터 병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탁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과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 가. 면허번호
 -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 다. 어업권등록부
 -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 마. 어장도 편철장
 -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입어등록부 색출장
 - 가. 면허번호
 - 나. 입어자의 성명
 -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겹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①어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②어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어업권원부의 등본·초본의 작성방법) ①어업권원부의 등본 및 초본은 어업권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써 작성한다.

②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및 신탁등록부의 등본과 초본의 경우 그 용지에 빈자리가 있으면 붉은 줄을 그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등록관청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1. 어업권원부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인증한다는 인증문, 등록관청명 및 연월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것
2. 등록관청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

제 3 장 등록절차

제 1 절 통 칙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두 명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제21조(어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①어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된 경우

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어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가등록의 기재) ①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으면 가등록 왼쪽의 빈자리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공유의 어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 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어장도 편철장에 어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지분의 이전·변경 등의 등록) ①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록과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하여야 한다.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설정·이전·변경·소멸등록과 처분제한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지분 이전에 따라 어업권이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에 관한 등록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신탁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말소)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 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와 관계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으면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1조(착오·누락의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서 그 착오나 누락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과 관계될 때
 2.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 외에 등록관청의 과오로 생긴 것일 때(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제8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한 명에게 알려야 한다.
- ⑤제3항 및 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에 따라 등

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 ①어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업권원부별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그 밖에 소멸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입어등록부 : 입어등록의 번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신탁등록부 :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행정구역 안의 구·시·군·동·읍·면·리·부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어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5조(표시란·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36조(신·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①등록용지 중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빈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종전 용지에 기재된 면허번호를 옮겨 쓰고 종전 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면수와 종전 용지에 이어지는 용지임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종전 용지에는 새로운 용지를 편철한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면수와 그 새로운 용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순위번호의 수를 기재하고 종전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제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 사유와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한 후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고 등록용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8조(어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①어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어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해당란 밖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그 곳에 도장을 찍고, 그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字體)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 2 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제39조(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어업권의 설정
2.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5.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의 변경·해제 또는 취소
7. 어업권의 취소
8. 어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 어업권의 소멸
10.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
1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12. 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해제·취소
13. 어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 대표자의 변경
15.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시·군·동·읍·면·리·부락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의 어업권 표시의 변경
16. 「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제40조(직권등록 사항) ①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어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어업권설정 등록은 면허번호의 순서, 그 밖의 등록은 등록사항의 발생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2조(어업권설정의 등록) ①어업권설정 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면허번호
2. 표시란 : 면허의 연월일, 어장 위치, 어업 종류, 어구(漁具)나 장치의 명칭, 어업의 방법, 채취·포획물이나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권의 존속기간·제한 또는 조건, 등록을 한다는 사실
3. 갑구 사항란 : 어업권자의 성명·주소, 어업권의 설정등록을 한다는 사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해제할 사항과 해제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제43조(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3.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의 변경·해제 또는 취소

제44조(어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도면을 해당 어업권의 어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연장허가의 사실과 그 일자, 연장한 면허기간과 연장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

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어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어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 어업권의 표시,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와 표시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7조(어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제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어업권과 그 밖의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갑 어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로 어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갑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을 어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제1항의 경우에 갑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

고,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어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①공유의 어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말소하고, 갑 어업권과 을 어업권의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

가.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나. 지분란·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

2.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

2. 갑 어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 그 지분(갑 어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

가. 갑 어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

나. 을 어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

월일,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
 란 중 어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의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
 고,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①제46조제1항 또는 제
 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마을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을
 어업권의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 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새로운 입어등록부의 책
 수와 면수를 기재한 후 원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
 만, 등록명의인이 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허가
 전에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인낙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0>

1. 입어등록번호란 : 종전 등록번호
2.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3. 표시란 : 원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원 입어등록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
 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4.20]

제51조(어업권 분할과 어장도) 어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는 어장
 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어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의 변경등록)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의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변경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변경한 사항과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변경 전의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장도를 어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를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그 곳에 변경으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어업권의 소멸등록)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 외에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의 소멸등록 등) ①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법 제26조에 따라 경매로 말미암아 어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을 받고 제123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종전 등록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새로운 등록용지에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기재하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저당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매신청의 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등록말소의 위탁이 있는 경우

제56조(준용규정)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20>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해제 또는 취소
-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

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제57조(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①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어업권 분할 또는 어장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어장도 한 부를 첨부하여 직인을 걸쳐 찍은 후 어업권자나 입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4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각각 그 결정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 말소의 사유 및 말소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에게 각각 그 말소사실과 말소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록을 제1항에 따라 말소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마친 등록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①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이송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등본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의 등본에 따라 이기등록(移記登錄)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에 묶어야 한다.

④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다른 등록관청에 이송한 경우 종전 등록용지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 3 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제 1 관 신청인

제60조(등록신청인) ①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등록신청을 한다.

②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권리의무자로 한다.

③등록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0>

제62조(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등의 신탁등록의 신청인) ①「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신탁법」 제38조에 규정된 신탁재산의 회복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사망·파산·금치산·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등록은 새로운 수탁자나 다른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말미암아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①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나 입어 의사의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는 등록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록명의인의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입어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인낙 조서의 등본, 법 제85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0>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된 관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①등록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금액 및 마지막 2년 분의 정기금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저당권에 관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 관 신청서류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같은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①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4조(어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여야 하는 신탁의 등록말소에 대한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원인에 대한 제삼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3. 대리인(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②제1항제1호의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5항에 따라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

로 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제1호의 서면 중 등록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의 결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 이미 등록을 받은 것이면 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20조에 따른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제3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제4호의 서면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77조(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①수탁자가 경질된 경우로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신탁법」 제50조제1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면허의 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연월일
5.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6.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7. 등록관청의 표시

제83조(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4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소·성명
2. 신탁의 목적
3. 수익자의 주소·성명 또는 자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사유 등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며, 신탁행위로 말미암아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①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차권의 존속기간
2. 차임의 지불시기

제88조(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2조(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이나 그 밖에 어선·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자격에 대하여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4. 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 입어하려는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 4 관 등록세

제94조(등록면허세) ①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군(해당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0.9.20>

②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제목개정 2010.9.20]

제95조(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제 5 관 등록절차

제96조(신청서의 처리절차) ①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우편물이 업무시간 외에 도달하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도달한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동일한 어업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97조(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 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1.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 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
5. 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등록의 순서)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00조(어업권등록부·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②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신탁의 목적인 어업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 번호
3. 권리의 종류
4. 등록을 한다는 사실

제101조(어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

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원인과 그 일자
4. 등록의 목적
5.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수탁자 경질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①수탁자가 경질되거나 임무가 끝나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신탁등록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신탁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여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조(표시란·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①입어의 보존등록을 하는 경우 제101조의 기재 사항 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있으면 입어등록부의 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각각 기재한다.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

재하여야 한다.

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①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고,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 또는 제75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순위번호, 등록권리자의 주소·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고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청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
3. 단위번호
4. 등록연월일
5.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
6. 입어 등록번호(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등록명의인이 다수로서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다수로서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대표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83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제1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류와 함께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 준용한다.

제110조(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 절 축탁에 따른 등록절차

제111조(축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축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축탁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축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축탁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제113조(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축탁) ①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축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보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축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가등록 관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축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14조(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축탁)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축탁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공서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을 대신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축탁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용규정)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6조(예고등록의 축탁)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축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축탁하여야 한다.

제117조(예고등록 말소의 축탁)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축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축탁하여야 한다.

1.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소가 취하된 경우
4. 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제118조(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나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 ①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21조(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채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

제123조(어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예고등록의 기재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제125조(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4 장 멸실 어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제126조(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27조(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것 외에 그 소재지 또는 소속 도의 구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지 중 어느 하나에, 일간신문이 발간되지 아니하는 도에서는 인접 도의 구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지 중 어느 하나에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0조(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①등록회복의 신청서에는 원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후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어업권원부의 등본·초본 또는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 또는 제129조의 경우
2. 「신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권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멸실,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제131조(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 ①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임시 어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3조(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절차) ①제131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멸실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등록부,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임시 신탁등록부의 표지판과 사항판 또는 임시 어장도 편철장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에, 임시 입어등록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교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회복등록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3.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
4. 회복등록의 연월일

③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말미암아 어업권등록부,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나 면수 또는 입어 등록번호가 멸실 전의 등록과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운 책수나 면수 또는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기재되어 있던 책수 또는 번호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원인 및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는 입어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4조(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①멸실된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또는 입어에 대하여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 중에 새로 등록신청이 있으면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 어업권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순위번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순위번호는 새로운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이에 신등록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명서에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5조(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4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제30조에 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각각 알려야 한다.

제136조(임시 어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①제131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것은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에 옮겨 써야 한다.

②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쓰는 경우에는 회복한 등록을 임시 어업권원부에 완전히 옮겨 쓴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복한 등록이나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순서나 순위번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회복한 등록 상호간의 순서 : 멸실 전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2. 새로운 등록 상호간의 순서 : 임시 어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3. 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주된 등록에서는 회복한 등록만의 멸실 전 등록의 순위번호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 나. 부기 등록에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이 경우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또는 입어 등록번호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정한 방법에 준하여 붙인다.
 4.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나 입어 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 등록의 순위나 번호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 등록의 순위번호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 ③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실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임시 어업권원부에서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과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어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임시 어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등록증명서에 제133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8조(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에 제3장을 준용한다.

제139조(임시 어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①임시 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신청기간과 같게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설 어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 임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3회 이후의 임시 어업권원부의 새로운 등록에 준용한다.

제140조(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의 설정등록) ①제126조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의 등록회복 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어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에 대하여 설정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1조(어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20246호, 2007.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관련법령집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2126호, 2010. 4.20>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으로 한다.

<11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 <제22395호, 2010. 9.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22467호, 2010.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허번호란		제 호						
표 제 부	표시 번호란									
	표시란	어장의 위치와 변화란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면허 연월일	채취· 포획물 의 종류				
		존속 기간	어업의 시기							
					제한 또는 조건					
		표시 번호란								
	표시란									

갑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을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병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정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비고란		

[별지 제2호서식]

		면허번호란	제 호		
표제부	표시 번호란				
	표시란				
갑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을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병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표제부	표시 번호란				
	표시란				
갑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을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병구	순위 번호란				
	사항란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3호서식]

		면허 번호란	제 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란		
지 분 란						
갑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을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병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비 고 란						

지 분 란						
갑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을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병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비 고 란						

[별지 제4호서식]

입어등록번호란		제 호		면허번호란			제 호				
표 시 란	입 어 활 수면구역	종업자 의 자격과 인원수	어업의 방 법								
			어 선								
			어 구								
			채취 · 포획물 의 종류								
			어업 의 시기								

		그 밖의 권리·의무	비 고 란
표 시 란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5호서식]

	면허번호란	
표시번호란		
표시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순위번호란	
사항란	

[별지 제6호서식]

접수 연월일	접 수 번 호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비 고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접수 연월일	접 수 번 호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비 고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월 년일	제 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1991· 4· 24	농림수산부령제1073호
일부개정	1994· 5· 14	농림수산부령제1136호
	1995· 7· 15	농림수산부령제1201호
	1997· 3· 17	해양수산부령제 13호
	1998· 9· 26	해양수산부령제 73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 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 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1999· 3· 17	해양수산부령제 106호
	1999· 10· 16	해양수산부령제 148호
	2001· 2· 7	해양수산부령제 183호(어장관리법시행규칙)
	2002· 3· 9	해양수산부령제 220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2002· 9· 2	해양수산부령제 232호
	2003· 5· 29	해양수산부령제 247호
	2003· 7· 15	해양수산부령제 251호(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2004· 2· 28	해양수산부령제 269호
	2004· 8· 7	해양수산부령제 277호
	2004· 12· 18	해양수산부령제 282호
	2005· 7· 1	해양수산부령제 299호
	2006· 6· 26	해양수산부령제 340호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제 390호
	2007· 12· 3	해양수산부령제 392호
	2008· 2· 4	해양수산부령제 408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전부개정	2008· 3·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일부개정	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호
	2008· 12·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9호
	2009· 6·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4호
	2010· 4·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11·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의 허가·신고와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허가·신고와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신청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28>

제3조(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 (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8>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된 경우로서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8, 2010.11.3>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구획어업이 폐업된 경우로서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8, 2010.11.3>

④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4.28>

⑤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별 종묘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4.28>

⑥ 삭제 <2010.4.28>

[제목개정 2010.4.28]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뽕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 : 어선
 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 시설
 3.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건강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해선망어업: 어구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뽕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제5조(어업허가 신청기관)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향(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같은 것으로 본다.
3.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0.4.28>

1. 연근해어업

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첨부서류

1) 근해어업·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가.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나. 첨부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제2항에 따른다)

3. 종묘생산어업

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나. 첨부서류

1)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또는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

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제2항에 따른다)

2)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제2항에 따른다)

4. 삭제 <2010.4.28>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2010.11.3>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한다)

③ 허가권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신청서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기 위하여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는 그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후 어업허가신청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허가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1. 삭제 <2010.4.28>

2. 삭제 <2010.4.28>

④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5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제7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7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8>

1.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
2.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종류
3. 허가를 받으려는 어선의 소유 등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4.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5.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 경영실적과 어업기술의 보유현황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8>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여부
2.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계

제7조의2(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이유
2.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역의 범위는 각 지점을 위도 및 경도좌표로 적어야 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결과
4.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할 내용
5.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어업자와 조정할 내용
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한시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서
7.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가 등) ① 한시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사항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한시어업허가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자가 속한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한시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한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
2.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의 과거 3년 동안의 어업자별·어업의 종류별·어종별 어획실적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어업의 특성 및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의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어업자에게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해당 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어업지도사무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4.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산연구소장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받은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한시어업으로 인한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2. 한시어업 허가증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조업기간 및 포획대상 어종별 어획할당량 등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8조(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② 법 제41조제4항, 법 제61조제1항제3호,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③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영 제40조제1항제3호, 이 규칙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 이내인 때에는 그 납북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남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

⑥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⑦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0.11.3>

제8조의2(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등의 기준

- 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 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1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적합할 것
- 다.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 자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업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한다)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어선검사증서(「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한다)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명칭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9조(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①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검사증서 사본에 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8>

제10조(어업허가의 유예) ①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과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8>
 1.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2.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④ 허가권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2010.11.3>
 - ⑥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

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제11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4.28>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 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삭제 <2010.4.28>
6.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어구·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8. 어선을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9.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 ③ 저장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4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7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8>
- ④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허가권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 1. 시·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3.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패류형망어업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제외한다.
 - 가. 해당 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 나.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량
 - 다. 허가대상 해역의 위치와 구역도
 - 라. 조업기간
 - 마.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결과
 - 바. 어업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할 내용
 - 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 아.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28]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61조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선·어구의 규모, 어선척수 및 조업수역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4.28>]

제14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연근해어업 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2.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3.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4. 한시어업 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허가권자는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선명·톤수와 기관의 마력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해당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허가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어업의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신청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한 후 다른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어선에 추가로 허가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⑤ 어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0.4.28>

⑥ 허가권자는 제5항의 어업허가증 발급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4.28>]

제15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법 제46조 단서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8>

1.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신규허가만 해당한다)
2.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30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4.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 동시 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4.28>]

제1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2010.11.3>

1. 어업의 시기
 2. 포획·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9.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10.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강원도와 경상남도 수역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 ④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0.11.3>
 - ⑤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7조 삭제 <2010.4.28>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8, 2010.11.3>

1.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늘리려는 톤수에 해당하는 다른 어선(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폐선하고 총톤수를 늘리려는 경우
2. 두 척 이상의 동종어업 어선(소유자가 다른 어선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하는 톤수 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
3.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톤수를 늘리려는 경우
4.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

한 자가 그 어선의 총톤수를 3톤까지 늘리려는 경우(이미 허가받은 동종어업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구획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를 8톤까지 늘리려는 경우. 다만, 해당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하여야 한다.

6. 부속선 및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의 관리선의 톤수를 늘리려는 경우

② 제1항(같은 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당 어선의 총톤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조나 개조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에 해당하는 증톤의 오차를 허용하되, 증톤되는 어선의 총톤수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4.28, 2010.11.3>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어선으로 대체(건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10.4.28, 2010.11.3>

④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과 저당권자의 동의서(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2010.11.3>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어선·어구의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는 새로운 어선·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어선·어구를 다시 다른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면 그 허가받은 어선·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0.11.3>

⑥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4.28, 2010.11.3> [제목개정 2010.4.28]

제19조(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어업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08.12.31, 2010.4.28>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1.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4.28>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휴업, 휴업기간의 연장 및 휴업기간 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2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28>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

는 것

2. 어업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

제23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삭제 <2009.6.30>
2.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3.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4.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5.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7.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2010.11.3>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어선검사증서(「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새로운 어구·어로방법과 어장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의 의견서
-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24조(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실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어법 및 어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어구·어법 및 어장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실정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1.3>

③ 제1항에 따라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6항제1호의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7조제6항제2호의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 [본조신설 2010.4.28]

제26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 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27조(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어업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28조(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8조의2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28>

③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개정 2010.4.28>

[제목개정 2010.4.28]

제29조(어업허가대장 기재사항)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0.11.3>

1.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1의2. 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한 경우
3. 제16조, 제20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어업허가사항 또는 어업신고사항을 변경하여 허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28조에 따라 어업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30조(공익상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영 제30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19조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허가의 조건 및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0.4.28>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일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의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0.4.28>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의 회수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어업허가 등의 번호)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4.28]

제33조(시설물의 철거기간)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4.28>

제34조(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35조 삭제 <2010.4.28>

제36조 삭제 <2010.4.28>

제37조 삭제 <2010.4.28>

제38조 삭제 <2010.4.28>

제39조 삭제 <2010.4.28>

제40조 삭제 <2010.4.28>

제40조의2(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의 범위)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보호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
2. 현저한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어업
3. 수입자유화 및 어업의 환경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어업
4.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국제어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어업구조개선이 필요한 어업
5. 그 밖에 어업환경의 변화 또는 어업조정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업

[본조신설 2010.4.28]

제40조의3(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의 지정) ① 시·도지사, 제40조의2에 따른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의 목표 및 필요성과 대상어업에 관한 사항
2. 구조개선사업의 내용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3.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액 및 그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액 및 그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개선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구조개선의 효과 등을 검토한 후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구조개선촉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상어업을 선정하여 이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을 받은 어업자가 해당 어업을 폐업하거나 다른 어업으로 전업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건, 대상어업의 선정기준, 시행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8]

제40조의4(수수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의 신청 수수료는 1건당 2천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8]

제41조(보고) 시·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처분 및 신고수리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근해어업 : 별지 제36호서식
2. 연근해어업 외의 어업 : 별지 제37호서식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48조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1조·제32조에 관한 사항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2. 해당 어선의 출항·입항 및 어선의 조업위치 보고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선의 유류 사용실적
4. 어획물의 양륙 및 매매실적
5. 그 밖에 조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8]

부 칙 <제4호, 2008. 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6.30>

제3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및 척수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당시 해당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같은 규칙개정령의 시행 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어선 규모가 동일한 어업으로의 전업 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이미 허가받은 연안안강망, 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어업 중 연안안강망어업과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199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체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어업을 하되,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폐지하고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신청이 새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8 제1호사목2)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과 같은 허가제한 및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6조(이미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의 어구사용 통수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에 대하여는 관할 도지사가 그 어업의 경영안정과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어업의 어구 사용통수를 다섯 통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연안선망어업 및 초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0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3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어업 중 연안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연안들망어업 중 초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어업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6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2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수조식육상종묘생산어업 및 옥내배양식육상종묘생산어업은 이 규칙에 따라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기선선인망 어업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2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1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선선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기선선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 선복량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같은 규칙개정령의 시행 후 건조되거나 개조되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

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당시 농림수산부령 제 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부속선의 톤수 및 척수는 해당 어선에 한하여 별표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 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허가어선"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5에 따른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라 어업허가 어선을 감척한 경우와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으로 어업허가를 폐지한 경우(해당 어업허가는 제외한다)에는 어업허가 정수가 조정된 것으로 본다.

1. 허가어선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허가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대체한 어선으로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3. 허가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하여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어선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각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22호, 2008.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호, 2009. 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0호, 2010.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에 붙은 제한 및 조건은 제1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3월 31일 당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 등으로 어업허가가 유예되어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근해어업 어선의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2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전에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개조허가를 받아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조·개조된 근해어업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식어업면허·육상해수양식어업·육상종묘생산어업·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뱃줄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뗏목식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⑦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하고,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하며, 제64조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로 한다.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56호, 2010.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북피해자의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이 규칙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기관의 마력·부속선의 수 및 규모
(제3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기관마력	부속선				비고
	구톤수	톤수		종류	척수	구톤수	톤수	
외끌이대형 저인망 어업	80톤 이상 170톤 미만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	-	-
쌍끌이대형 저인망어업	80톤 이상 170톤 미만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	-	-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 어업	20톤 이상 80톤 미만	20톤 이상 60톤 미만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서남해구 외끌이중형 저인망어업	20톤 이상 80톤 미만	20톤 이상 60톤 미만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서남해구 쌍끌이중형 저인망어업	20톤 이상 80톤 미만	20톤 이상 60톤 미만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대형트롤어업	80톤 이상 170톤 미만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	-	-
동해구중형 트롤어업	20톤 이상 80톤 미만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	-	-
대형선망어업	70톤 이상 170톤 미만	50톤 이상 140톤 미만		등선	2척 이내	-	-	-
				운반선	-	-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소형선망어업	10톤 이상 40톤 미만	8톤 이상 30톤 미만	-	등선	1척 이내	-	10톤 미만	
				운반 선	1척 이내	-	10톤 미만	
근해채낚기 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자망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안강망 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봉수망 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자리돔 들망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어로 보조 선	2척 이내	-	1톤 미만	-
근해장어 통발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문어 단지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통발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연승어업	10톤 이상 130톤 미만	8톤 이상 90톤 미만	-	-	-	-	-	-
근해형망어업	25톤 미만	20톤 미만	-	-	-	-	-	-
기선권현망 어업	50톤 미만	40톤 미만	예인선: 회원수 1,200 미만은 22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	가공 및 운반 겸용 선	2척 이내	-	150 톤 미만	-
				어로 보조 선	2척 이내	-	-	-
잠수기어업	10톤 미만	8톤 미만	-	-	-	-	-	-

수산관련법령집

비고

1. 구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중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예인선)의 기관마력이 1997년 2월 10일 이후 크랭크축(crankshaft) 끝 커플링(coupling)부터 제동출력으로 측정된 기관마력인 경우에는 기관마력의 5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그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3.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각 목의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가.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81킬로와트
 - 나.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2킬로와트
 - 다.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20킬로와트
 - 라.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32킬로와트
 - 마.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141킬로와트
4.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아 낚개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 그 해당 해역의 어업여건과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사항을 감안하여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5. 근해자리돔들망어업의 허가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해봉수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제10조에 따라 이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어선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같은 어선에 대한 허가 건수는 3건을 초과할 수 없다.
6.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compressor)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할 수 있다.

[별표 2]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제3조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허가의 정수
	구톤수	톤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631> 인천광역시: 99건 경기도: 59건 충청남도: 254건 전라북도: 155건 전라남도: 58건 경상남도: 6건
연안선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331건> 부산광역시: 7건 강원도: 31건 충청남도: 36건 전라북도: 16건 전라남도: 85건 경상북도: 30건 경상남도: 104건 제주특별자치도: 22건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4,680건> 부산광역시: 368건 인천광역시: 52건 울산광역시: 205건 경기도: 32건 강원도: 122건 충청남도: 203건 전라북도: 38건 전라남도: 822건 경상북도: 694건 경상남도: 2,131건 제주특별자치도: 13건
연안조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1,143건> 충청남도: 827건 전라북도: 316건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의 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14건> 강원도: 14건

수산관련법령집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계 17,351건> 부산광역시: 558건 인천광역시: 386건 울산광역시: 372건 경기도: 628건 강원도 : 1,592건 충청남도: 2,602건 전라북도: 922건 전라남도: 3,227건 경상북도: 2,138건 경상남도: 4,393건 제주특별자치도: 533건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계 781건> 부산광역시: 42건, 강원도: 3건, 전라남도: 32건, 경상남도: 34건, 제주특별자치도: 670건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계 27,682건> 부산광역시: 918건 인천광역시: 580건 울산광역시: 388건 경기도: 486건 강원도: 1,801건 충청남도: 2,589건 전라북도: 972건 전라남도: 9,079건 경상북도: 1,193건 경상남도: 7,475건 제주특별자치도: 2,201건

비고

1. 구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허가의 정수를 합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종전의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통보된 정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천광역시 또는 강원도지사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로한계선을 넘어 설정된 조업수역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 시·도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해당 조업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로한계선 인근지역·도서별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1994년 5월 13일 이전에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해당 어업을 폐업하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가.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 나.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부속선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3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3]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제3조제3항 관련)

1. 정지성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2. 이동성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허가의 정수
새우조망어업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계 850건> 전라남도: 589건 경상남도: 261건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계 941건> 인천광역시: 131건 경기도: 48건 충청남도: 228건 전라북도: 177건 전라남도: 357건
패류형망어업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	<계 556건> 강원도: 262건 전라남도: 272건 경상북도: 18건 경상남도: 4건

[별표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3조제4항 관련)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수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관련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 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퍼센트 이상)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전라남도 신안군 이서,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어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 수산동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시설면적 0.2헥타르 이상	3.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5]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별 종묘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3조제5항 관련)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생산종묘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어장 사이의 거리
육상수조식 종묘생산어업	어류, 전복, 굴, 해조류, 새우, 해삼, 우렁쟁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 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90퍼센트 이상)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전라남도 신안군 이서,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종묘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육상축제식 종묘생산어업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식물	시설면적 0.1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밭출식 종묘생산어업	해조류, 굴, 가리비, 피조개, 새고막, 우렁쟁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0.5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1헥타르당 100미터의 간승 20줄 이하. 다만, 김·파래는 1헥타르당 너비 2.2미터, 길이 40미터의 시설 5책 이상 18책 이하(겹장시설 가능), 새고막은 1헥타르당 너비 1미터 이하, 길이 100미터 이하의 시설 100줄 이하	100미터
말목식 종묘생산어업	굴,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0.5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1헥타르당 50제곱미터(가로 25미터 이하 × 높이 2미터 이하)시설 40대 이하	50미터
뗏목식 종묘생산어업	굴, 진주조개,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0.5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1헥타르당 165제곱미터(가로 18미터 이하 × 세로 9미터 이하)당 뗏목 6대 이하	100미터
<p>※ 비고 시·도지사는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종묘생산어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종묘의 종류를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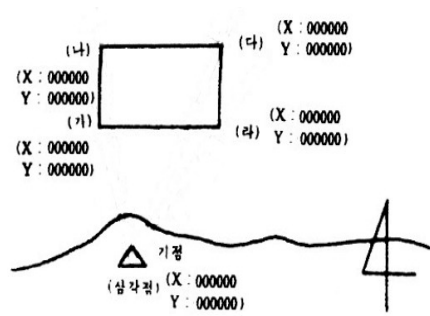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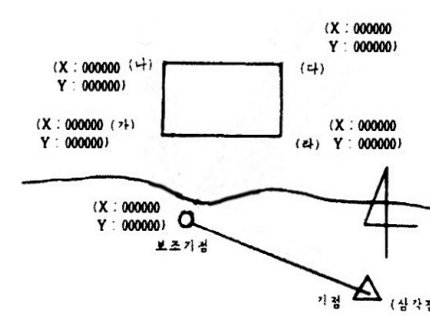
[별표 6]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2)가), 같은 항 제3호나목1)가), 제7조제2항제2호 관련]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조업방법	
3.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지선
※아래 가.나.다.라 각점의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5. 면적: m ²	

구분	X(N)	Y(E)
가	000,000	000,000
나	000,000	000,000
다	000,000	000,000
라	000,000	000,000

<p>○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p>	<p>○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p>
---	--

[별표 7]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해당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제11조제1항 관련)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2.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1년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1년
4.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	1년
5.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6개월
6.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7.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 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개월
8.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 한 경우	5개월

비고: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
소된 어선이 그 허가제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때의 남
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의 허가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을 1년으로 한다.

[별표 8]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

1. 근해어업

가.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근해자망어업

- 1)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 2) 근해채낚기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이 근해자망어업을 겸업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북위 38도37분·동경 135도30분의 교점, 북위 39도 51.75분·동경 134도11.5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동경 132도59.8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동경 132도37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동경 132도50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동경 135도30분의 교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경계선이 따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을 넘어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해안강망어업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라. 근해통발어업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마. 근해형망어업

- 1)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잠수기어업

- 1) 잠수기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안어업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나. 연안통발어업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다. 연안자망어업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3. 구획어업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1) 어망의 설치위치를 표시한 부표에 시설 어망의 설치표지를 별표 9 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의 크기에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의 명칭은 “실뱀장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목포 실뱀장어안강망 제2010- 호

- 2) 포획된 것 중 실뱀장어를 제외하고는 방류하여야 한다.

나. 패류형망어업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9]

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31조 관련)

1. 허가어업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번호를 부여하되, 행정기관의 약칭, 어업의 종류, 허가연도,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부산 대형트롤 제2010- 호
강화 연안자망 제2010- 호
당진 육상수조식종묘생산 제2010- 호

2. 신고어업

어업의 종류별로 신고번호를 부여하되, 행정기관의 약칭, 어업의 종류, 신고연도,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여수 나잠 제2010- 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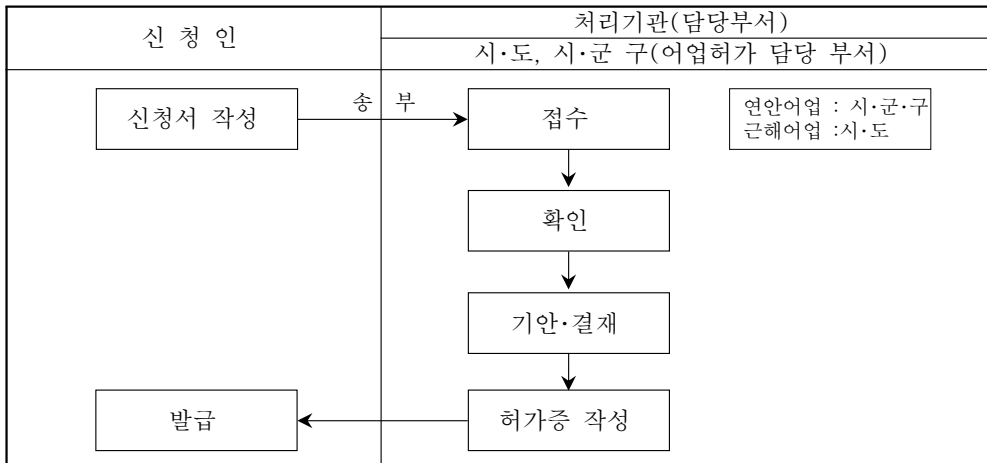
어업허가신청서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처리기간 시·도 : 5일 시·군·구 :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승선원(명)				
	기관종류				
	마력				
	선질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됨)					
<p>「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p>※ 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어업과 그 외의 어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허가담당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송부하여 같은 허가증에 작성하여 최초접수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기간,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에 의한 경유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table border="1"> <tr> <td> <p>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p> </td> <td> <p>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p> </td> </tr> </table>		<p>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p>	<p>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p>
<p>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p>	<p>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table border="1"> <tr> <td> <p>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p> </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td> </tr> </table>	<p>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p>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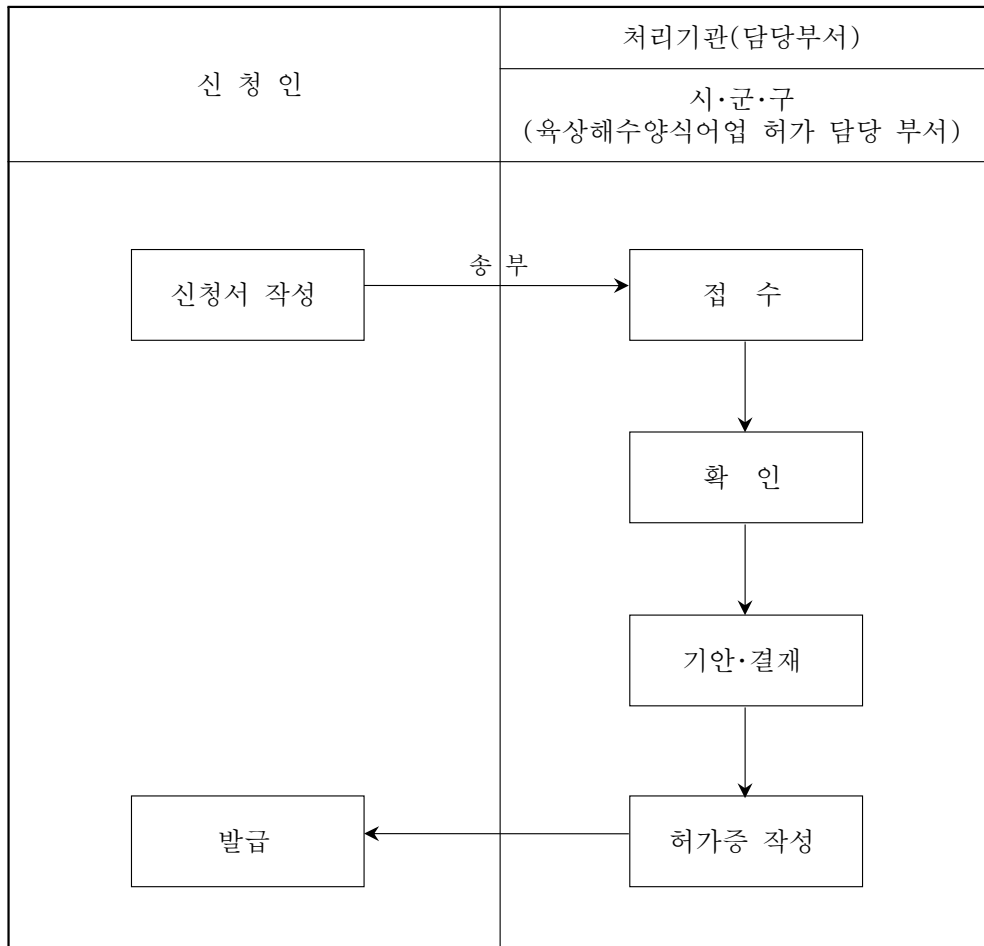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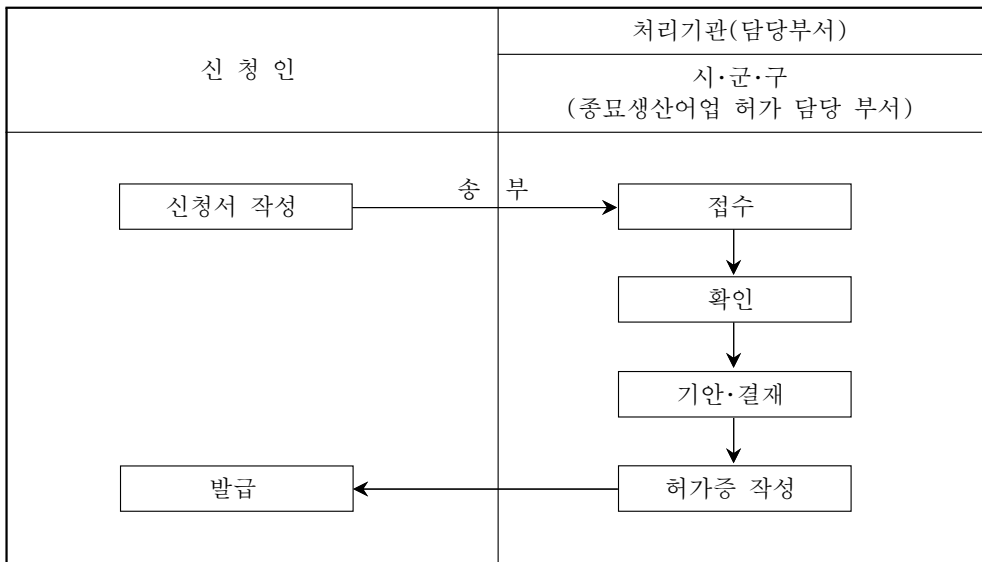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1부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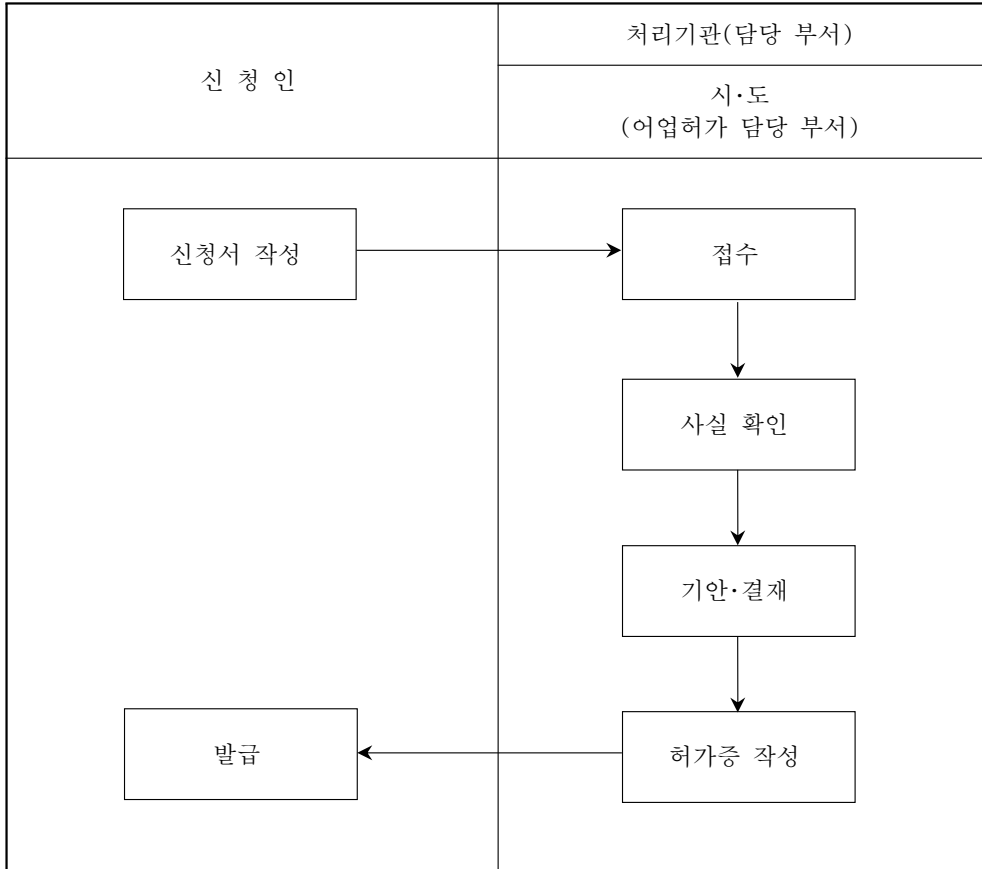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또는 팻목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호의3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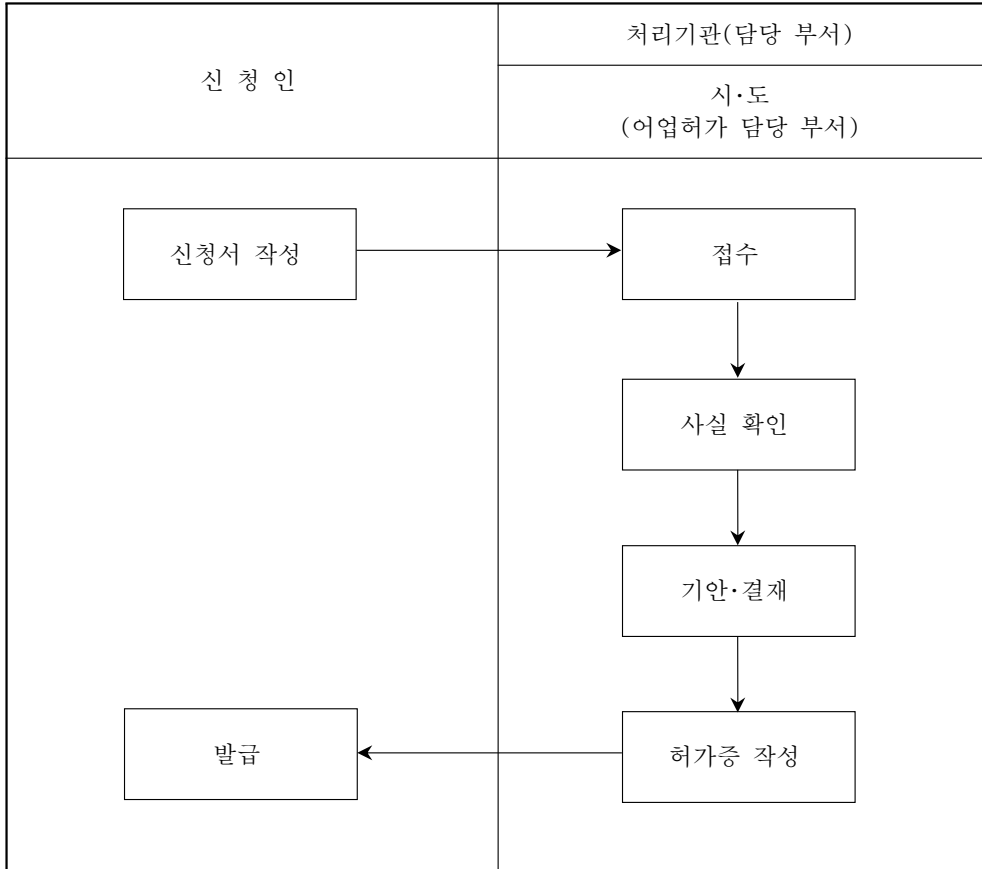
(앞쪽)

한시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한시어업의 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의 종류		어획할당량		
	해역의 종류				
	허가 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내용	연장사유				
	연장기간				
사용어선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의 내용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p>「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의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귀하</p>					
첨부서류	1. 한시어업허가에 따른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1부				수수료
	2. 한시어업 허가증 1부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호의4서식]

접 수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 (한시어업허가번호)			
허가기간 (한시어업허가기간)			
제출기관			
제출의 사유			
<p>「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제5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접수하고 이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right: 5px;"></div> 직인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주의: 이 접수증은 허가증의 정본을 수령하면 반납하여야 한다.</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5서식]

(제1쪽)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용어선 또는 시설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장비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시설(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어업허가 받은 어선의 등의 상속	<input type="checkbox"/>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매입	<input type="checkbox"/>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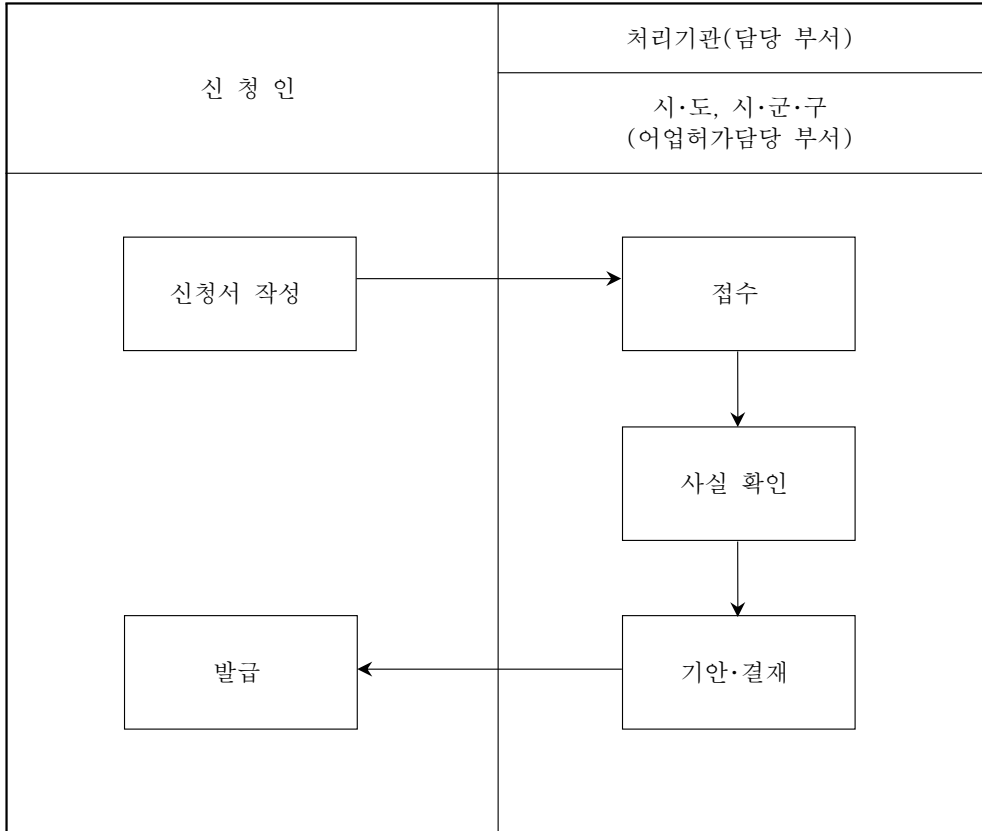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 어업 또는 종묘생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div>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2) 어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div>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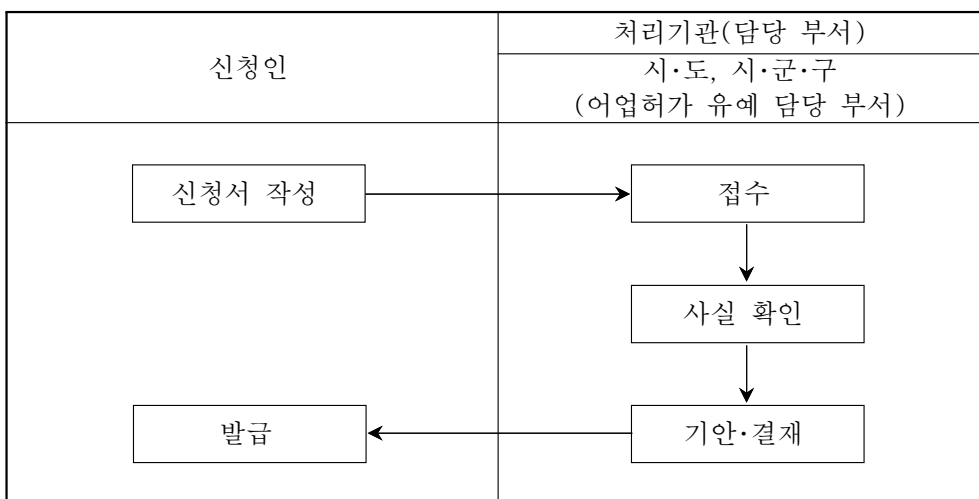
(앞쪽)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어업의 종류				
어업허가 번호				
어업허가 기간				
유예신청 기간				
유예신청 사유				
<p>「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p>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p>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어업불허가통지서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어업의 종류			
불허 이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어업허가증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기관종류									
	마력									
	선질									
	주요치수		길이(m)							
깊이(m)										
너비(m)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허가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제한 및 조건	뒤쪽 참조									
<p>「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어업을 허가합니다.</p>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30px;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직인 </div>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제한 및 조건)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어업의 종류:
2. 시설의 위치:
3. 어업의 시기:
4. 허가기간:
5. 양식물의 종류:
6.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
7. 제한 또는 조건: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2. 시설 또는 수면의 위치:
3. 어업의 시기:
4. 허가기간:
5. 생산종묘의 종류:
6.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
7. 제한 또는 조건: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묘생산어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0호서식]

한시어업 허가증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내용	허가번호			
	허가해역			
	허가기간			
	포획대상물의 종류		어획할당량	
	포획방법			
	제한 및 조건	뒤쪽 참조		
허가연장 내용	허가기간			
	포획대상물의 종류		어획할당량	
	제한 및 조건	뒤쪽 참조		
사용어선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기존의 허가 받은 어업의 내용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p>「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직인</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물관련법령집

(뒤쪽)

(제한 및 조건)

[별지 제1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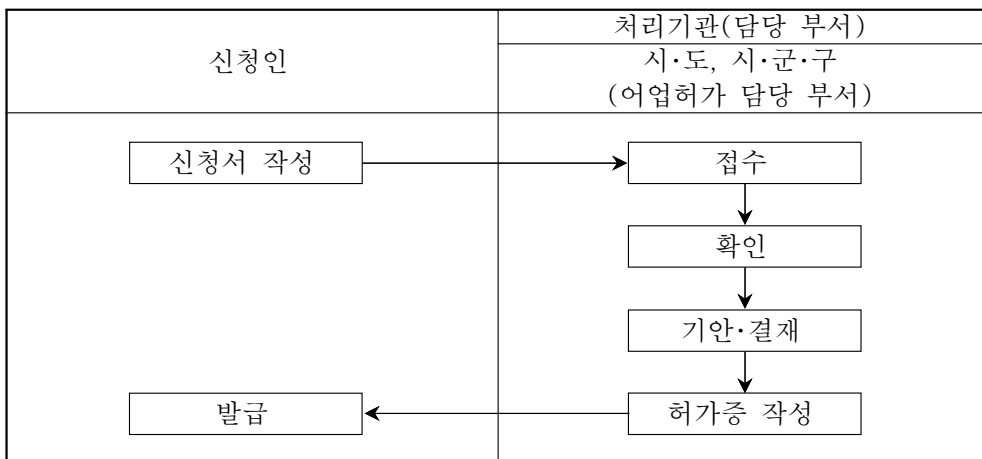
(앞쪽)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시·도: 2일	
		시·군·구: 2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허가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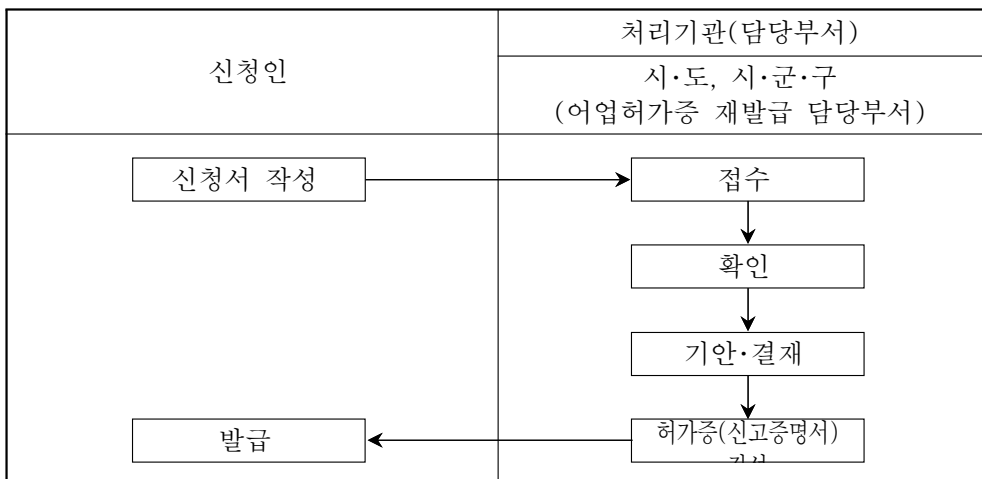
(앞쪽)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신고)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어업허가증 (신고증명서)을 재발급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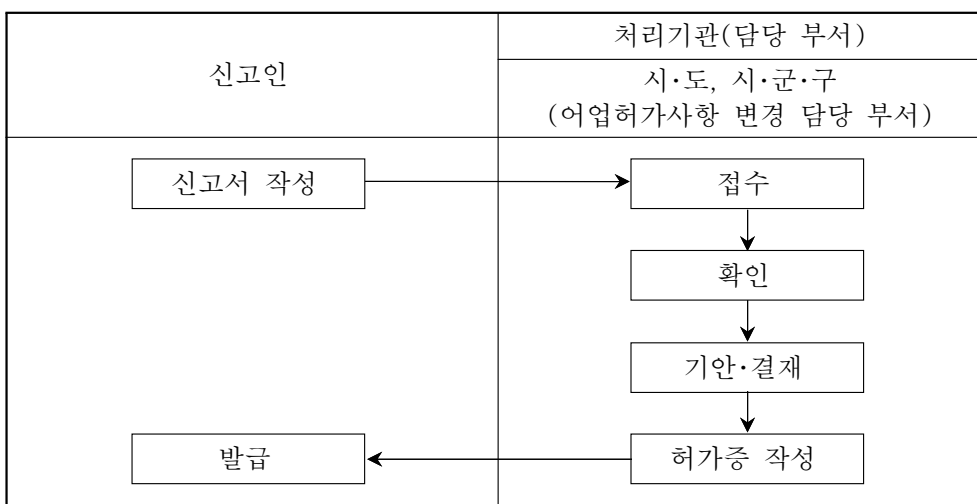
(앞쪽)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어업허가증 1부(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비고: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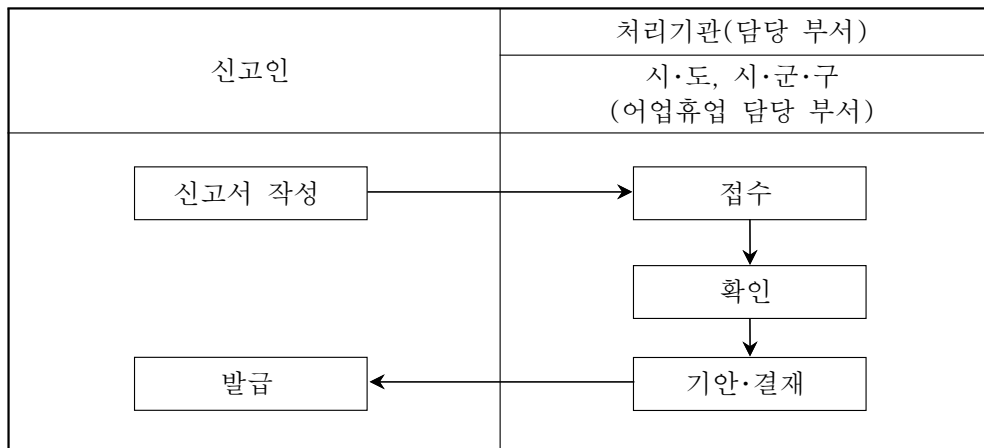
(앞쪽)

어업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의 기간				
휴업의 사유				
<p>「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휴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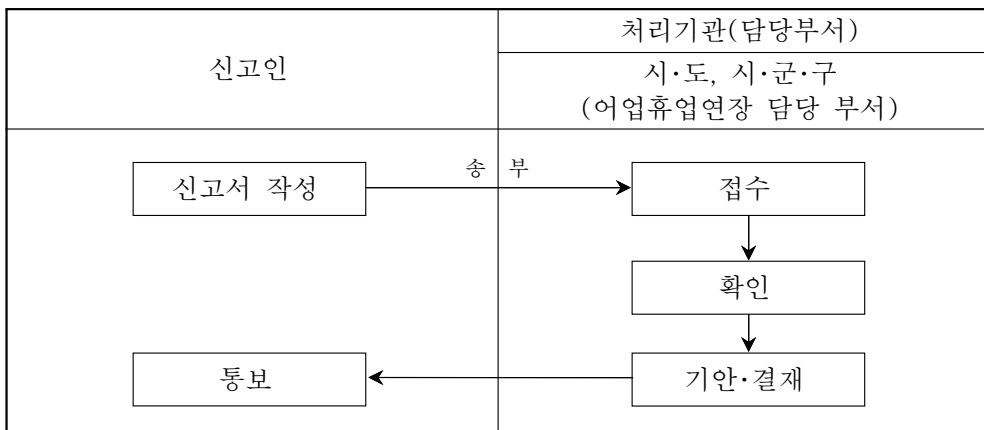
(앞쪽)

어업휴업연장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휴업의 기간				
허가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사유				
<p>「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의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어업허가증 1부</p>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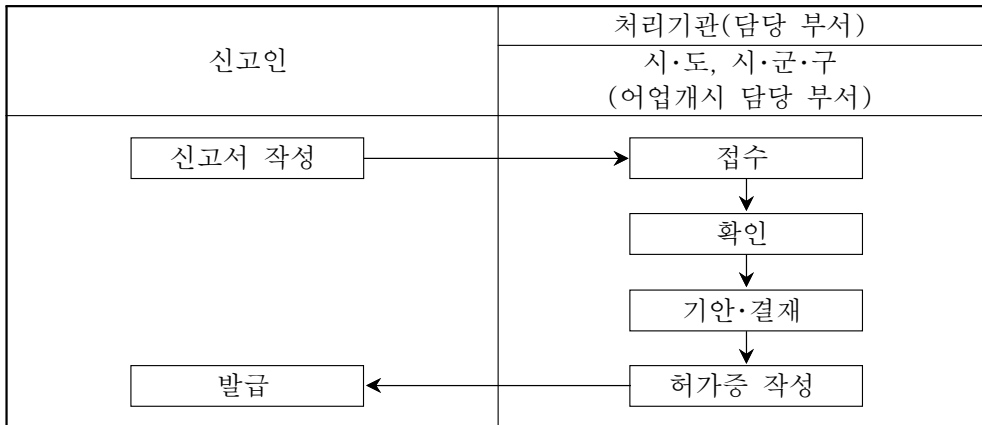
(앞쪽)

어업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신고 수리기간					
어업개시 예정일자					
개시사유					
<p>「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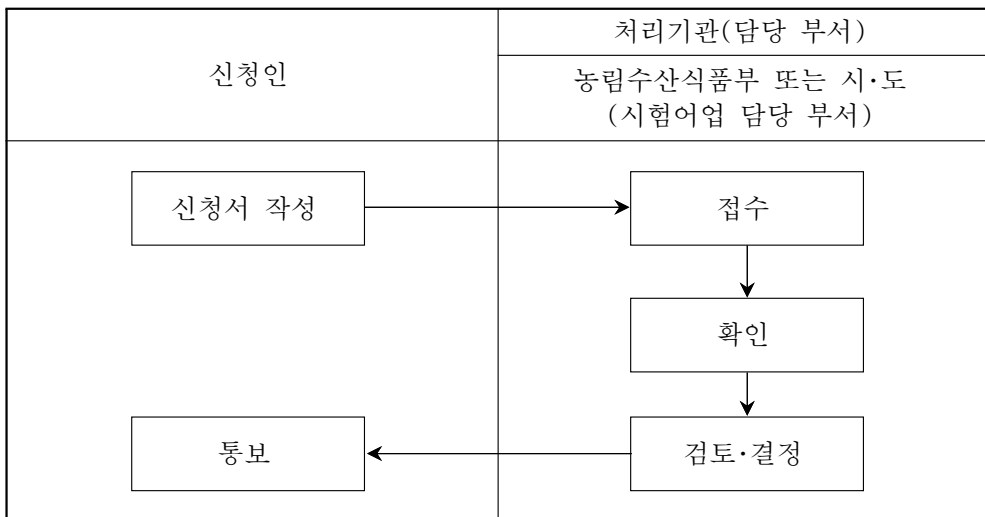
시험어업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시험 조사의 목적과 사유							
시험조사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시험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어선의 명칭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시험어업의 시기							
시험어업을 하려는 기간							
<p>「수산업법」 제45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 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귀하</p>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4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시험어업 실적(년 분기)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1. 일반사항

번호	시험의 방법과 어구명칭	시험어업			시험기간	사 용 어 선					시험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어선의 명칭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2. 조업실적

월·일	조업위치		기상			어장환경					조업시간(시·분)						예망 속도 (k't)	예망 방향 (°)	예망 수심 (m)	warp 길이 (m)	망고 (m)	어종별 생산량(kg)				비고
	위도	경도	천후	기압(mb)	기온(°C)	표층수온(°C)	저층수온(°C)	저질	수심(m)	파고(m)	합계	투망(승)			양망(승)											
												소계	개시	완료	소계	개시						완료				

380mm × 268mm(신문용지 54g/m²)

수산물관련법령집

3. 경영수지 상황
가. 조업활동

종사자수(명)	출어횟수(회)	출어일수(일)	실조업일수(일)	어획량(kg)	판매액(천원)	판매처

나. 손익상황

(단위 : 천원)

어업 수입 (A)	어업비용															어업 외 비용 (C)	총비용 (B+C)	순이익 (A-B-C)
	계 (B)	출어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소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수리비	소모 품비	주부 식비	기타	소계	임금	사무비	공제비		판매비			

4. 그 밖의 참고자료: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시험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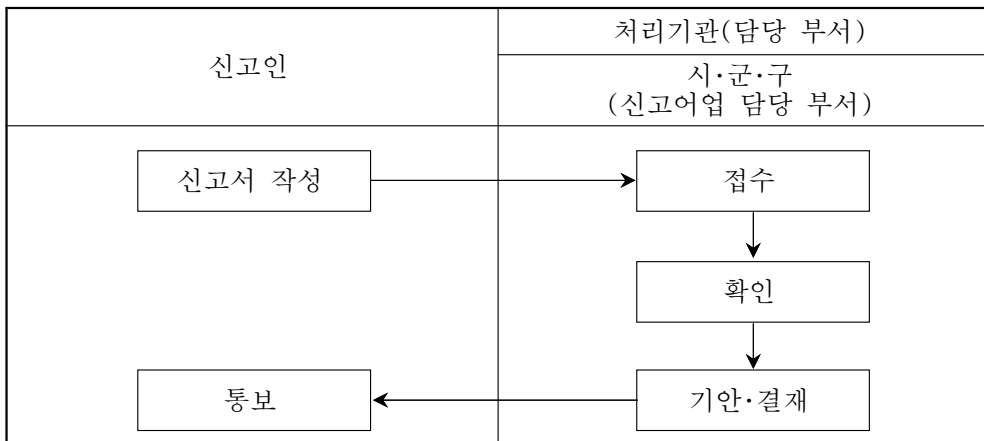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포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어업신고 증명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어업의 종류:
2. 어업의 방법:
3. 조업구역:
4. 포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유효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2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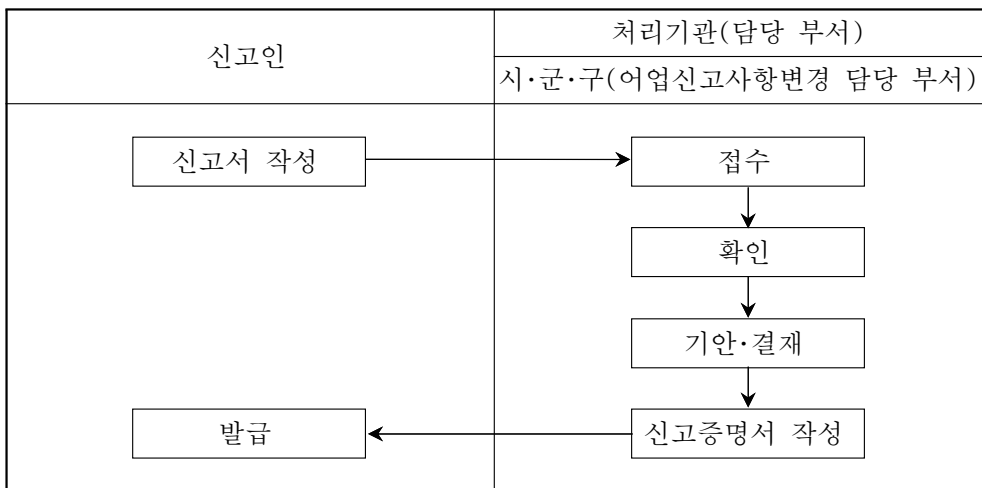
(앞쪽)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증명서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신고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변경의 사유	가. 나.			
「수산업법」 제48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div>				
첨부서류	1. 어업신고 증명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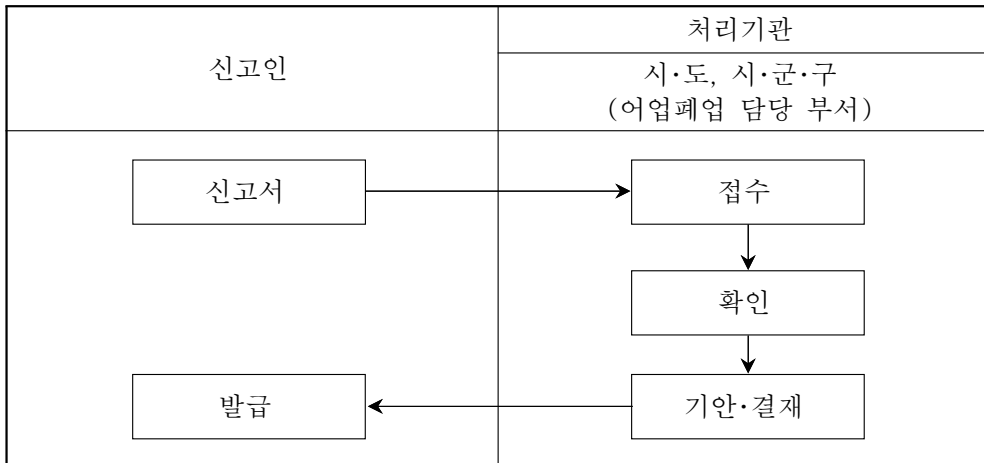
(앞쪽)

어업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p>「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였기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어업허가대장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승선원(명)								
	기관종류								
	마력								
	선질								
	주요 치수	길이(m)							
		깊이(m)							
		너비(m)							
진수연월일									
조선소명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주요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거지항									
제한 또는 조건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수산관련법령집

(뒤쪽)

※ 어업폐지 신고수리, 허가증 반납, 허가유예, 새로운 허가 등 변경내용			
연월일	처리내용	사 유	작성자 (서명)

[별지 제25호서식]

어업허가대장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허가 를 받 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유효기간			
어업의 종류			
시설 또는 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양식물 또는 종묘의 종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			
제한 및 조건			
기 타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2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업수역 조정신청**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조업수역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유	
수면의 위치와 명칭 및 면적	도 군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ha
해당 수면의 어업 이용실태	
다른 도와의 관계	
조정을 받으려는 수면의 한계	(도면과 면적을 표시)
조정사항	

- 붙임: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1부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1 부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1부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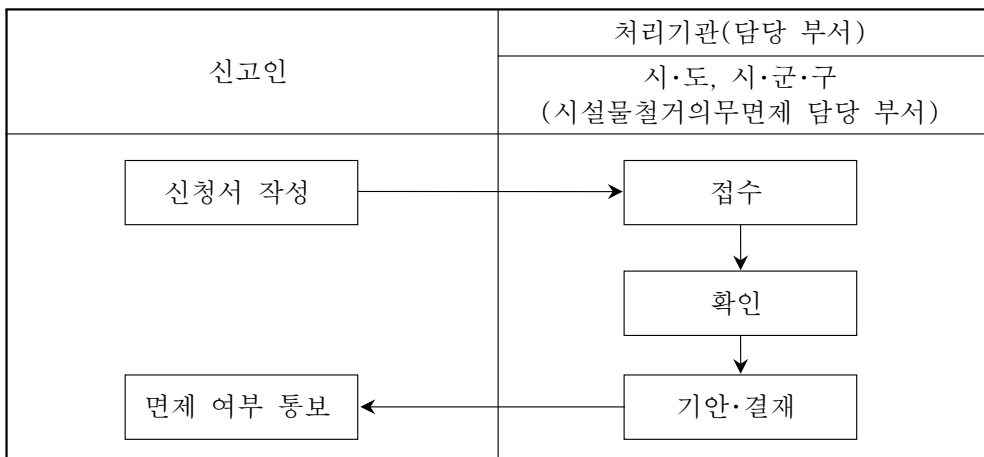
(앞쪽)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제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			
해당어업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사유			
<p>「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어업의 시설물 철거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제1쪽)

<input type="checkbox"/> 구획어업 <input type="checkbox"/> 연안어업 허가처분 상황보고(반기말) <input type="checkbox"/> 근해어업												
1. 어업허가 처분상황												
(단위 : 건, 척, 명)												
어업의 명칭	전반기말 유효허가			기간 중 처분상황		기간 중 소멸상황		해당 반기말 유효허가			반기말 유예현황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승선원	건수	척수
합 계												
작성요령 1. 보고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기간 중 처분상황”란에는 반기 동안에 허가를 처분한 전체 건수 및 척수를 기재합니다. 3. “기간 중 소멸상황”란에는 반기 동안에 허가가 소멸된 전체 건수 및 척수를 기재합니다. 4. “반기말 유예현황”란에는 현재 허가가 유예되어 후에 허가처분이 가능한 건수 및 척수를 기재합니다. 5. “척수”란에는 부속선을 포함하되, 전체 척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어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어선 수를 기재합니다. 6. “승선원”란에는 부속선을 포함한 어선수(척수)를 기준으로 승선원수를 기재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어업허가 변동상황																	
(단위 : 건)																	
어업의 명칭	① 전반기말 유효허가	② 하반기말 유효허가	변동상황														
			③ 계	기간 중 처분상황					기간 중 소멸상황								
				④ 소계	기간만료처분	전입	유예해제	신규처분	기타	⑤ 소계	기간만료소멸	전출	신규유예	허가취소	감척사업	자연소멸	기타
합계																	

작성요령

1. “기간만료처분”란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를 처분한 건수를 기재합니다.
2. “전입”란에는 종전에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았던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종전의 허가를 폐지 또는 소멸시키고 새로운 허가를 처분한 건수를 기재합니다.
3. “기간만료소멸”란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수를 기재합니다.
4. “전출”란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았던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허가를 처분하게 됨으로써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기재합니다.
5. “허가취소”란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건수를 기재합니다.
6. “감척사업”란에는 감척사업으로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기재합니다.
7. “자연소멸”란에는 어업폐업신고 등으로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기재합니다.
8. “기타”란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에 어업의 종류별·변동사유별 내용 또는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어업허가 변동상황은 “②-①=③=④-⑤”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어업허가 유예상황																	
(단위 : 건, 척)																	
어업의 명칭	계		침몰		행방불명		멸실		허가취소		경락		원양허가		기타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합계																	
작성요령																	
1. 반기말 현재 허가가 유예되어 금후 허가처분이 가능한 건수 및 척수입니다. 2. “척수”란에는 부속선을 포함하되, 전체 척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어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어선 수를 기재합니다. 3. “기타”란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에 어업의 종류별·유예사유별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어업허가 및 신고 처분상황 보고(반기말)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호에 따라 어업허가 및 신고 처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양식 및 종묘생산 어업허가 처분상황									
(단위 : 건, m ²)									
어업의 종류	양식물(종묘)의 종류	전반기말 유효건수		기간 중 처분건수		기간 중 소멸건수		해당 반기말 유효건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 처분상황									
(단위: 건)									
어업의 종류	전반기말 유효건수	기간 중 처분건수	기간 중 소멸건수	해당 반기말 유효건수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 /공무원의 공식 이메일 주소 /공개구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1991·5·4	농림수산부령제1075호		
일부개정	1994·7·28	농림수산부령제1148호		
	1995·12·30	농림수산부령제1219호		
	1997·3·24	해양수산부령제 15호		
	1999·3·18	해양수산부령제 107호		
	1999·8·26	해양수산부령제 134호		
	2001·2·7	해양수산부령제 183호(어장관리법시행규칙)		
	2001·3·10	해양수산부령제 184호		
	2002·4·9	해양수산부령제 221호		
	2003·7·15	해양수산부령제 251호(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2004·1·31	해양수산부령제 266호		
	2004·8·7	해양수산부령제 277호		
	2005·3·31	해양수산부령제 291호		
	2007·11·23	해양수산부령제 390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전부개정	2008·5·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일부개정	2008·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1호
			2009·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0호
2010·8·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면허, 어장의 시설기준과 그 관리방법, 관리선의 사용 및 월동장·월하장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3.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3. 어장의 재개발, 그 밖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 지침과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 보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승인(협의)요청부분의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하는 서류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없이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알려 지구별 조합과 어촌계에게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①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2.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3. 해당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 사본
4. 해당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종합의견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을 할 것인지의 여부

2. 어업면허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공동이익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계

제4조(공동신청 시의 변경신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신청 후에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신청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또는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8.5]

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

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전문개정 2010.8.5]

제7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5]

제8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가두리시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가두리시설의 총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시기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시설물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제9조(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 등) ① 제8조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해당 시설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이를 적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8.5>

②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장에 종묘를 살포 또는 입식(이하 “살포”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그 살포일 3일 전까지 종묘살포계획을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종묘살포량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종묘살포에 관하여 특히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하는 해당 수산사무소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산사무소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묘살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마을어업권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에 따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포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8.5>

1. 낚·호미·칼·팽이 또는 삽
2.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12조(패류양식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①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 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잠수기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0.8.5>

1. 컴프레서 : 관리선 1척마다 1대
2. 잠수인원 : 1명
3. 분사기 : 사용금지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13조 삭제 <2010.8.5>

제14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결된 수면에 대하여 마을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방·군사상 또는 외교상 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와 연결된 수면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미만인 무인도에 연결된 수면. 이 경우 육지 쪽 해안선과 무인도까지의 거리는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로서 해당 무인도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무인도에 연결된 수면이 어업조정상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결된 수면

제15조 삭제 <2010.8.5>

제1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측지측량업·지적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작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 및 별표 4의 작성례에 따라 작

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들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육상기점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어촌계의 경우에는 총회 의사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 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2010.8.5>

제19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5조에 따라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8.5>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삭제 <2010.8.5>

제21조(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

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면허된 어류등양식어업의 축제식양식어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같은 어장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어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하여 다시 면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5>

제21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외해양식 시험어업경영을 마친 자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2.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중간평가 결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자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외해로 이설하려는 내만 양식어장면적의 크기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2. 어촌계
3. 어업법인
4. 어업인
5.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2010.8.5]

제2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요하는 서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연장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제23조(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어업권의 분할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분할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어업권의 변경인가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2. 양식어장의 시설량
3.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4. 양식어업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6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어업권자가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해당 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신청)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제28조(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1. 삭제 <2010.8.5>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0.8.5>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1.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2.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은 해당 어선이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

- 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 ⑥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 전까지 해당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1>
- ⑧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2010.8.5>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
- ⑨ 제5항에 따른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29조(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1.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법 제27조 및 이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 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

제30조(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①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제3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하여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8.5>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제3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 월동 또는 월하를 시킬 수 있는 양식물의 종류
 3.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기간
 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0.8.5>

제33조(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법 제29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8.5>

제34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어업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35조(어업권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수면에 우선적으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업권자에게 다른 수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때에 그 어업권의 폐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8.5>

제3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5>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37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8.5>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정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8.5>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하여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처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1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과 양식방법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4. 처분내용
5. 처분연월일
6.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39조(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제40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8.5>

1.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가장 적은 자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

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8.5>

제42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해당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입어기간·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과 사용어구의 종류
8.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43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 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8.5>

1.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

전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법 제34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44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외해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5조 및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8.5]

제45조(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8.5>

② 어업권자는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1. 철거대상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작업이 곤란한 경우

제46조(표지의 설치)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

치하고, 그 형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에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47조(어장관리실태의 기록·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제48조(보상청구서) 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 ② 삭제 <2010.8.5>

제49조(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69조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액 조사계획서, 기관설립증서 사본 및 기관의 조직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이력서 및 최근 3년 동안 손실액의 조사실적 등을 포함한다)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어구 등 장비의 종류 및 조달방법
 5.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최근 3년 동안의 손실액 조사실적(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의 근거법령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손실액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과 그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명칭별 또는 양식방법별 손실액의 산출방법과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어구 등 장비의 종류
 8. 어업별 손실액조사에 따른 조사경비와 수수료 내용
 9. 그 밖에 손실액조사에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정하는 사항
- ⑤ 행정관청은 제4항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결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분쟁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 별지 제44호서식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③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부 칙 <제10호, 2008. 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우렁챙이 양식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양식어장의 청소 및 양식물 수확을 완료한 후 다시 시설하는 경우와 재해복구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

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리선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으로 등록되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 중인 어선의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해당 어업의 어장에 한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5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미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5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기간은 해당 계약에만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5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받은 해조류양식어업 중 일본홍·죽홍을 이용하는 건홍식양식어업과 패류양식어업 중 일본홍을 이용하는 건홍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양식물·어장의 수심 및 어장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5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1호, 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어장의 시설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하식 미더덕을 양식하고 있는 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10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7호, 201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및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에 적합한 지역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호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어장기본도의 어장의 구획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어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어장의 구획,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어장의 면적(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표시한다.
 - 나. 어장기본도에는 이동명칭과 어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 개발하려는 어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하여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 값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상에 같이 표기한다.
2. 기존어장과 개발하려는 어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어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려는 어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 가. 정치망어장: 홍색
 - 나. 해조류양식어장: 주황색
 - 다. 패류양식어장: 황색
 - 라. 어류등양식어장: 녹색
 - 마. 복합양식어장: 청색
 - 바. 협동양식어장: 남색
 - 사. 마을어장: 자색
3. 어장 간의 거리와 어장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조수로 등을 고려하고 어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어업별 어장구역의 획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 1) 양식어장구역: 별표 5에 따른 양식어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어장을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간의 거리 등 어장의 시설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정치망어장구역: 정치망어장은 과거의 어업실적과 영 제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적지 여부 및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 3) 마을어장구역: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을 미리 실측하여 어장 수심한계의 범위 안에서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 다. 제6조에 따라 같은 수면에 2종 이상의 어업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어업에 지장이 없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하며, 어업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8.5>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 지주망홍	김, 파래, 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40미터)	5부터 18까지
		김, 파래, 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40미터)	5부터 18까지
	2. 연승식	미역, 다시마, 툫, 파래, 갈래곰보 그 밖의 유용수산물	50제곱미터당 1줄 (100미터)	5부터 10까지
나.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 천 해	돌김, 우뚝가사리, 꼬시래기 그 밖의 유용수산물	1헥타르당 투석량 1천 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9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수하연식	굴 그 밖의 패류	18제곱미터당 1대 (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높이 2미터)	5부터 10까지
		굴	3.6제곱미터당 1대 (가로 1.2미터, 세로 3미터, 높이 1미터)	5부터 10까지
	2. 연승식	굴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1헥타르당 수하연은 7,000줄(남해군을 제외한 경상 남도는 5,000줄)이하, 수하연 1줄의 길이는 5미터(조립된 수하연 길이 6.5미터) 이하	5부터 10까지
		전복, 진주조개, 홍합, 가리비 그 밖의 패류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다만, 서해안,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있어서의 가리비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부터 10까지
		3. 뗏목식	굴, 진주조개 그 밖의 패류	165제곱미터당 1대(9미터×18미터)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랑조개, 그 밖의 패류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톤부터 3톤까지. 다만, 백합은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터 3톤까지	90 이상
	• 천 해	피조개, 새고막, 홍합, 가리비, 키조개, 전복 그 밖의 패류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터 1.5톤까지. 다만, 피조개는 20만마리부터 50만마리까지, 가리비는 5만마리부터 15만마리까지, 키조개는 3만마리부터 10만마리까지, 새고막은 1톤부터 3톤까지, 전복은 2만마리 이상	90 이상
	2. 투석식등			
	• 간석지	굴	1헥타르당 투석량 5천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또는 타이어 8천개부터 1만개까지	90 이상
	• 천 해	전복, 소라 그 밖의 패류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및 종묘 2만마리 이상 살포	9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3. 침하식			
	• 천 해	전복	25제곱미터당 1개(가로 3미터부터 5미터까지, 세로 3미터부터 5미터까지, 높이 2.5미터부터 5미터까지) 및 1헥타르당 종묘 2만마리 이상	5부터 10까지
	가두리식	전복 그 밖의 패류	25제곱미터당 1대(가두리 시설물의 내측으로부터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5부터 20까지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어류, 갑각류, 두족류, 해삼	25제곱미터당 1대(가두리 시설물의 내측으로부터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5부터 20까지
	2. 삭제 <2010.8.5>			
나.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 갑각류, 해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만 마리 이상	20 이상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우렁챙이, 미더덕류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다만, 우렁챙이는 1헥타르당 수하연 2,840줄 이하, 미더덕류는 봉그물 수하연(1헥타르당 6,680줄 이하) 또는 관그물 수하연(폭 4.5미터 이하, 연승 길이 기준 10퍼센트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시설	5부터 10까지
라.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간석지 ●천 해	갯지렁이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 부터 1.5톤까지	90 이상
		성게, 해삼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 부터 1.5톤까지	9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미역·다시마, 미역·툫, 다시마·툫, 미역·다시마·툫, 미역·감태·우렁챙이, 다시마·감태·우렁챙이, 다시마·전복, 툫·전복, 미역·전복, 미역·가리비, 다시마·가리비, 가리비·우렁챙이, 전복·미역·다시마	50제곱미터당 1줄 (100미터)	5부터 10까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나. 바닥식 양식어업	2. 건홍식과 연승식	김·가리비	김: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40미터) 가리비: 10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1. 살포식	해삼·성게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터 1.5톤까지	90이상
다. 축제식 양식어업	2. 살포식과 투석식	굴·바지락	굴: 1헥타르당 투석량 5천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바지락: 1헥타르당 2톤부터 3톤까지	10부터 25까지 80 이상
	축제식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어류·전복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만 마리 이상	20 이상
라.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김·바지락, 김·동죽, 김·개량조개, 파래·바지락	김, 파래: 100제곱미터당 1책(2.2미터×40미터)	5부터 18까지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툰·전복, 다시마·감태·전복, 미역·감태·전복	바지락, 동죽, 개량조개: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톤부터 3톤까지	80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전복·미역·감태, 전복·다시마·감태, 전복·미역·다시마	툰, 다시마, 미역, 감태: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전복: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및 종묘 2만 마리 이상 살포	5부터 10까지 80 이상
	4. 가두리식과 연승식	전복·미역·감태, 전복·다시마·감태, 전복·미역·다시마	전복: 25제곱미터당 1개 (가로 3미터부터 5미터까지, 세로 3미터부터 5미터까지, 높이 2.5미터부터 5미터까지 이상) 및 1헥타르당 종묘 2만마리 이상 미역, 다시마, 감태, 미역·다시마: 50제곱미터당 1줄 (100미터) 전복: 25제곱미터당 1대 (그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 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미역, 다시마, 감태, 미역·다시마: 50제곱미터당 1줄 (100미터)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수산관련법령집

5. 협동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양식어장시설기준에 따른다.

6. 외해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퍼센트)
외해가두리식 양식어업	외해가두리식	어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의 범위에서 시설규모를 정함	2부터 20까지

비고: 시·도지사는 지역여건 및 병충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식물별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마을어장 안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11조 관련)

지 역 별	포획·채취방법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장형망선,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또는 나잡. 다만,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복·소라·키조개 및 고등류 외의 패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장형망선·자원관리채취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또는 나잡. 다만, 강원도·경상북도의 양식장형망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장형망선·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복·소라·키조개 및 고등류 외의 패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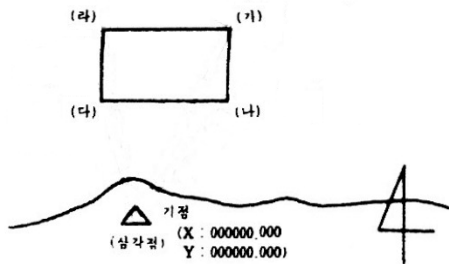
[별표 4]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1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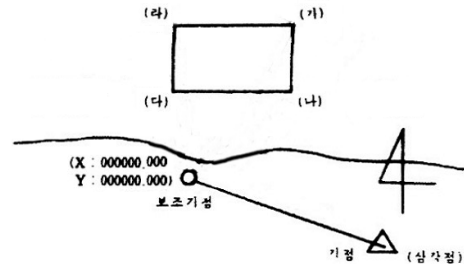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5. 어장의 면적: m^2 (ha)

구획점	직각좌표		경위도		점간거리(m)	
	X(N)	Y(E)	위도	경도	구간	거리
가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가-나	0,000.0
나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나-다	0,000.0
다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다-라	0,000.0
라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라-가	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도 ○○군 ○○면 ○○리 ○○번지

257mm×364mm(인쇄용지(2급) 60g/m²)

[별표 5]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제18조 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어장의 수심 (단위 : 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견홍식 • 지주망홍 • 부류망홍	김, 파래, 매생이	7 이내	1 이상	1부터 20까지	200 이상
		김, 파래, 매생이	40 이내	1 이상	1부터 20까지	200 이상
	2. 연승식	미역, 다시마, 톳, 파래, 갈래곰보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 천 해	돌김, 우뚝가사리, 꼬시래기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30 이내	1부터 30까지	1부터 20까지	20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단위 : 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굴 그 밖의 패류	2 이내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100 이상
	2. 연승식	굴, 전복, 진주조개, 홍합, 가리비 그 밖의 패류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30 이내	1부터 3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3. 뗏목식	굴, 진주조개 그 밖의 패류	30 이내	1부터 3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수산물관련법령집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량조개, 그 밖의 패류	0	1부터 10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 천해	피조개, 새고막, 가리비, 키조개, 전복 그 밖의 패류	40 이내(강원도의 가리비양식의 경우에는 50 이내)	1부터 30까지	1부터 20까지
	2. 투석식등 ● 간석지 ● 천해	굴	0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전복, 소라 그 밖의 패류	30 이내	1부터 3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3. 침하식 ● 천해	전복	30 이내	0.5부터 10까지	0.5부터 5까지	100 이상	
		30 이내	0.5부터 10까지	0.5부터 10까지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전복 그 밖의 패류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단위 : 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가두리식 2.삭제 <2010.8.5>	어류, 갑각류, 두족류, 해삼	30 이내	0.5부터 10까지	0.5부터 10까지	300 이상
나.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 갑각류, 해삼	20 이내	0.5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우렁챙이, 미더덕류 그 밖의 유용수산물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라.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갯지렁이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0	1부터 10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 간석지					
	• 천해	성게, 해삼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40 이내	1부터 3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단위 : 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미역·다시마, 미역·톳, 다시마·톳, 미역·다시마·톳	3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미역·감태·우렁행이, 다시마·감태·우렁행이, 다시마·전복, 톳·전복, 미역·전복, 미역·가리비, 다시마·가리비, 가리비·우렁행이, 전복·미역·다시마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2. 건홍식과 연승식	김·가리비	3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200 이상
	1. 살포식	해삼·성게	40 이내	1부터 3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다. 축제식 양식어업	2. 살포식과 투석식	굴·바지락	0	1부터 10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축제식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어류·전복	20 이내	0.5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

수산물관련법령집

라. 혼합양식 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김·바지락, 김·동죽, 김·개량조개, 파래·바지락	7 이내	1부터 100까지	1부터 20까지	20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	툫·전복, 다시마·감태 ·전복, 미역· 감태·전복	3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20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전복·미역· 감태, 전복· 다시마·감태 전복·미역· 다시마	30 이내	0.5부터 10까지	0.5부터 5까지	100 이상
	4. 가두리 식과 연승식	전복·미역· 감태, 전복· 다시마·감태 전복·미역· 다시마	30 이내	0.5부터 10까지	0.5부터 10까지	100 이상

5. 협동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협동양식어업과 마을어업이 연결되어 있고 어업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어장 사이의 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해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어장의 수심 (단위 : 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외해가두리식 양식어업	외해 가두리식	어류	35 이상	5부터 20까지	5부터 20까지	500 이상

- ※ 비교: 1. 해조류양식어업의 건홍식 양식물 중 파래·매생이, 패류양식어업의 살포식 간석지 양식물 중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량조개, 어류등양식어업의 축제식 양식물 중 어류·갑각류·해삼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대상 양식물 중 1개의 양식물만 선택하여 양식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어장정비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같은 어장면적의 범위에서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0.8.5>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제31조제3항 관련)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정치망어업·양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
마을어업	총톤수 20톤 미만

[별표 7]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제33조 관련)

보 호 구 역	보호구역 도해(예시)
<p>1.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은 각각 어장길이의 연장선 이내의 수면. 다만, 바다 쪽 보호구역의 길이는 55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p> <p>2. 어장의 좌·우측 보호구역과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의 좌·우측 보호구역의 총길이는 어장너비의 8배 이내로 하되, 2천 60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p>	<p>※ 어장길이: (가)기점에서 (나)기점 또는 (라)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p> <p>※ 어장너비: (가)기점에서 (라)기점 또는 (나)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p>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5>

어장이용개발계획서

(단위: 건, ha)

①총개발 적지면적	기개발여장			⑤ 미개발 면적	⑥()년 ()개발계획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사항					⑰ 개발하려 는 사유	
	② 어업별	③ 건수	④ 면적		⑦어업별			⑧ 수면의 위치	⑨ 수면의 번호	⑩ 건수	⑪ 면적	⑫ 국가 공익면	⑬ 자원 보호면	⑭ 어업 조정면	⑮ 수산 법규면		⑯ 기타
					종류	어업의 방법	품종										

369mm×268mm(신문용지 54g/m²)

비고: 기재요령

- ①란에는 관할 시·군·구 관내 총 개발적지 면적을 적는다.
- ② ~ ④란에는 이미 개발한 어업의 종류(정치망어업·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와 건수, 면적을 적는다.
- ⑤란에는 관할 시·군·구별 총 미개발적지 면적을 적는다.
- ⑥란에는 앞 ()에는 개발연도를, 뒤 ()에는 정기, 변경이라 적는다.
- ⑦란 중 어업의 방법란에는 양식어장은 양식방법을, 마을어장은 포획·채취수단을 적는다.
- ⑧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위치(행정구역상, 읍·면·동·리·번지명)를 적는다.
- ⑨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적는다.
-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란에는 이에 대한 면적을 적는다.
- ⑫란에는 법 제4조제4항·제6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하여야 할 법규의 관련여부를 검토 후 해당사항을 적는다.
- ⑬란에는 보호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소상어류보호수면 등 그 밖의 수산자원 보호상 관련되는 사항을 적는다.
- ⑭란에는 보호구역 저축, 어장과밀, 어도차단, 어장구역 중복, 인근어장과의 분쟁예상 등 그 밖의 어업조정상 관련되는 사항을 적는다.
- ⑮란에는 낙도, 무인도, 어장기점설치 가능여부, 육지와와의 거리, 수심, 인근어장과의 거리, 마을어장안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 등과의 관련여부를 적는다.
- ⑯란에는 그 밖의 신청수역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는다.
- ⑰란에는 신청수역을 개발하려는 구체적 사유를 적는다.
- ⑫~⑯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음”이라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승인(협의) 근거법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승인(협의)			
수면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승인 또는 협의 어업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 방법		면적	(ha)
승인(협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정항안		항로상	
	어항안		군사상	
	개항안		공원안	
	특정지역안		기타	
승인(협의) 신청사유에 대한 지장 유무				
그 밖의 참고사항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국 적	
	③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④ 주 소			
개발 계획 내용	⑤ 어업의 종류		⑥ 양식방법	
	⑦ 포획물 또는 양 식 물			
	⑧ 수면의 번호	제 호	⑨ 수면의 면적	ha
	⑩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⑪ 면 허 신 청 순 위				
<p>「수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어업면허를 하고자 협의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1부 2. 시·도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각 1부 3. 해당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4호식의 심의자료표 사본 1부 4. 해당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종합의견서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8.5>

어업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1. 어업면허(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가. 개발계획의 내용

①어업의 종류	②시설방법	③포획·채취물, 양식물	④수면의 번호
---------	-------	--------------	---------

나. 심의근거 및 내용

우선 순위 신청자	⑦ 법 제9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⑧법 제10조 각 호의 해당 여부						⑨ 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	⑩제1항제1호 해당				⑪제1항제2호 해당				
	제3항		제4항 해당자	제1호의	제2호의	제3호의	제4호의	제5호의		제6호의	수산기술자로서 면허 어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면허 어업의		수산기술자로서 허가어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허가어업의	
	제1호에 해당됨	제2호에 해당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다. 심의의견, 조정의견 및 사유

수 산 조 정 위 원 회 의 심 의 의 견	
시 장·군 수·구 청 장 의 조 정 사 유 및 결 정 의 견	

위한 심의자료표

⑤수면의 면적	⑥수면의 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	---------	-------	-------	-----	-------

법 제13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시·군·구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결과 면허의 우선순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정 및 결정 결과 우선순위	
⑫ 제2항 제1호 해당자	⑬제2항 수산기술자로서 신청어업의		⑭제3항		⑮ 제4항 해당 자	⑯제5항			⑰제6항			⑱제7항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법 제9조 제1항의	법 제9조 제3항의		법 제9조 제2항의			제1호 해당 자	제2호 해당 자			제3호 해당 자
					어 촌 계	지구 별 조합	어 촌 계	영어 조합 법인	지구 별 조합	어 촌 계	영어 조합 법인	지구 별 조합				

※ 심의요령

- 1) ⑦ ~ ⑱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되면 ○표, 해당되지 아니하면 ×표를 한다.
- 2) ⑪란의 허가어업에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제외한다.
- 3) ⑧ 또는 ⑨란에 ×표가 있는 자는 ⑩란 이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한다.
- 4) 우선순위는 ⑩ ~ ⑱란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한다.

520mm×268mm(신문용지 54g/m²)

2. 어업면허(법 제8조제1항제8호)

가. 개발계획의 내용

①어업의 종류		②시설방법		③포획·채취물, 양식물		④수면의 번호		⑤수면의 면적		⑥수면의 위치	군 면 리 번지 인접
---------	--	-------	--	--------------	--	---------	--	---------	--	---------	-------------

나. 심의근거 및 내용

우선 순위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									⑧ 법 제13조				중앙수산조정 위원회의심의 결과면허의우 선순위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의조정 및결정결과우 선순위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항						
신청자	외해시협어업 평가결과타당 성인정	외해시협 어업중간 평가결과 타당성 인정	외해이 설내만 가두리 면적	외해이 설내만 가두리 면적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어촌계	어업 법인	어업인	외해양식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제3호 해당자	제4호 해당자		

다. 심의의견, 조정의견 및 사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조정사유 및 결정의견	

※ 심의요령

- ⑦~⑧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되면 ○ 또는 면적(ha) 기재, 해당되지 아니하면 ×표를 한다.
- ⑧란에 ○표가 있는 자는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한다.

52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8.5>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신청면적	ha
⑥양식방법·양식시설량			⑦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⑧면허신청연월일		년 월 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장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⑨변경 전 대표자		⑩선정 또는 변경 후 대표자
공동신청자의 공유자 지분 변경사항	⑪성명	⑫변경 전 지분		⑬변경 후 지분
<p>「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물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수수료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조례에 따름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8.5>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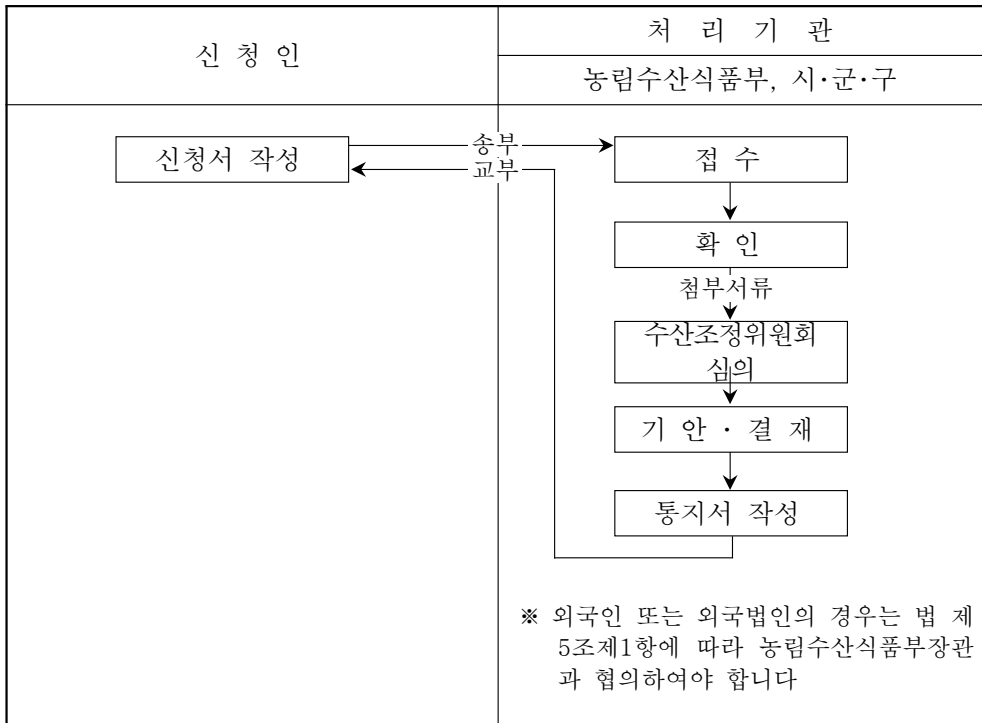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국 적	
	③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④ 주 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개 발 계 획 내 용	⑦ 어업의 종류		⑧ 양 식 방 법	
	⑨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⑩ 수면의 번호	제 호	⑪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⑫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p>「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로 결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뒤쪽)

<p>※ 첨부서류</p> <p>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영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p> <p>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p> <p>2. 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법 제4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p> <p>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하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p> <p>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8.5>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양 식 방 법
개발 계획 내용	⑥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⑦ 수면의 번호		⑧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⑨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⑩ 면허신청순위		⑪ 면허신청기간	. . . ~ . . .까지
<p>「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우선순위자를 신청한 수면에 대한 면허의 순위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직인</div>			
<p>※ 비고</p> <p>면허신청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어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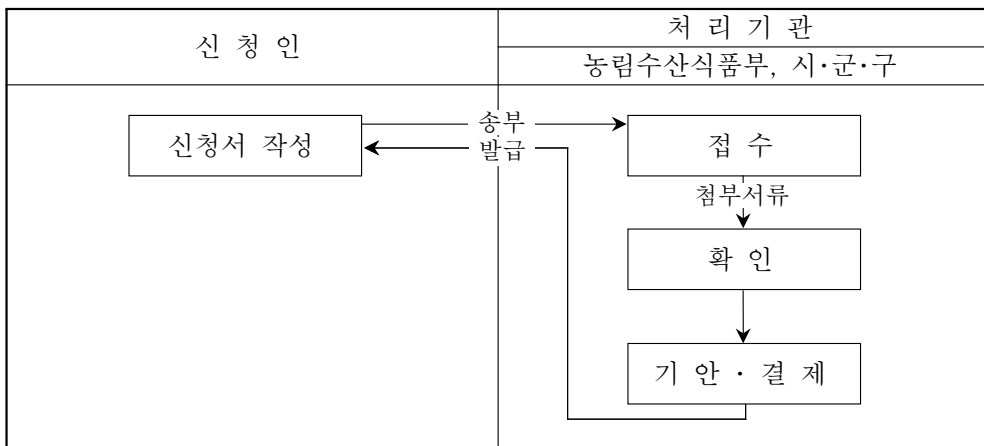
(앞쪽)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개발계획내용	④ 기업의 종류		⑤ 양 식 방 법	
	⑥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⑦ 수면의 번호		⑧ 수면의 면적	ha
	⑨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⑩ 면허의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 연장하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⑫ 연장신청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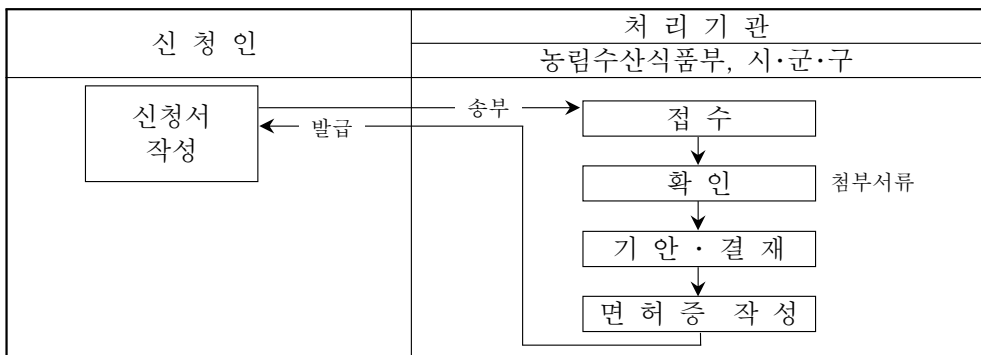
(앞쪽)

어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공 유 신청인 의지분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	-	-	-	
	⑥ 지 분						
⑦ 어업의 종류			⑧ 수면의 번호		⑨ 신청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⑩ 양 식 방 법 · 양 식 시 설 량			⑪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 식물				
⑫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⑬ 어 선 명	⑭ 어 선 번 호	⑮ 톤 수	⑯ 기관의 마력			
⑰ 어업의 시기		. 부터 . 까지 (월)					
⑱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 첨부서류						조례에 따름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8.5>

어 업 면 허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별지 도면과 같음)					
5. 어장면적 및 수심:	ha,		m			
6. 포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7. 포획·채취방법:						
8.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0. 제한 또는 조건:						
11. 등록일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물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직인</div>			

210mm×297mm(백상지 180g/m²)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8.5>

()어업권관리대장

어업의 종류	()어업	어구의 명칭 또는 양식방법		어장면적	(ha)			
면허번호	제 호	어장 위치	시·도 리·동	시·군·구 번지	읍·면·동			
어업 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주 소	시·도 리·동	시·군·구 번지	읍·면·동	계원수	명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권 연장 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양식시설량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획·채취방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의시기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가두리시설규모	(㎡)			
공 의 상 지장 여부	군사관계	어항	개항	특정지역	공원	항로	기타	관계법령
어장관리규약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년 월 일)			행사자선정방법				
어장의 관리선 사용	종류	지정받은 관리선			승인받은 관리선			
	어선등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호톤수(톤)							
	마력(마력)							
어장의 행사계 약관리	횟수	행사자의 대표 및 수		행사자신분	행사계약기간			행사료(천원)
	1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2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3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4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5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 법규 위반 사항	횟수	위 반 사 항		경 고 일		시 정 일		
	1차							
	2차							
	3차							
	4차							
어업권이전·분할 또는 변경인가사항								
비 고 ※ 공의상 지장 여부란에는 “있음”, “없음”으로 적고, “행사장 신분”란에는 “어촌계원” 등을 적음 ※ 어장도 별첨								

257mm×364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호서식]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통지서				
어업 권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면 허 번 호		() 제 호		
⑤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⑥ 어장의 면적		ha	⑦ 가두리시설면적	m ²
⑧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와 승인을 받으려는 수면의 수역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별지 도면과 같음)
<p>「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통지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1부				조례에 따름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1부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3호서식]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대장

설치번호	정치망 어업의 면허번호	확인을 받은 자		가두리시설규모 가로×세로×깊이(m ³)	설치기간	비 고
		성 명	주 소			

190mm×268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가두리시설설치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 정치망어업의 면허번호 ()어업 제 호

2. 가두리시설의 설치증번호 제 호

3.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별지 도면과 같음)

4. 가두리시설의 규모 가로 m × 세로 m × 깊이 m(m³)

5. 가두리시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제한 또는 조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의 설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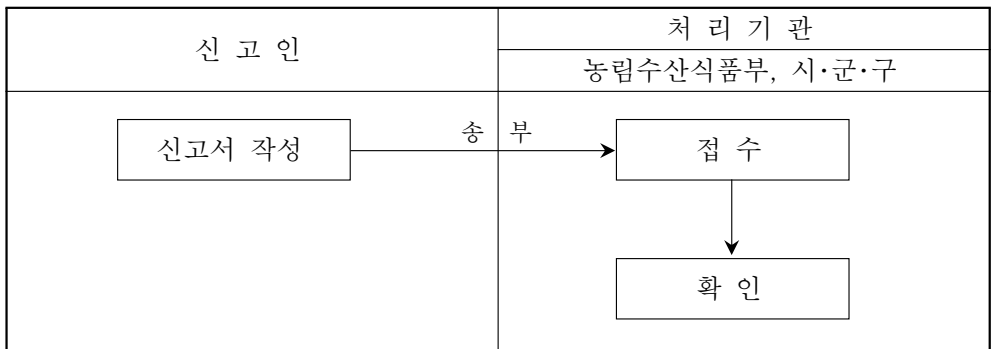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8.5> (앞쪽)

종묘살포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의 종류 ()어업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묘 살포	장소(지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날 짜 (시간을 적는다)		
	품 종 명			
	수 량(kg)			
그 밖의 사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장에 종묘를 위와 같이 살포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div>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0.8.5>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0.8.5>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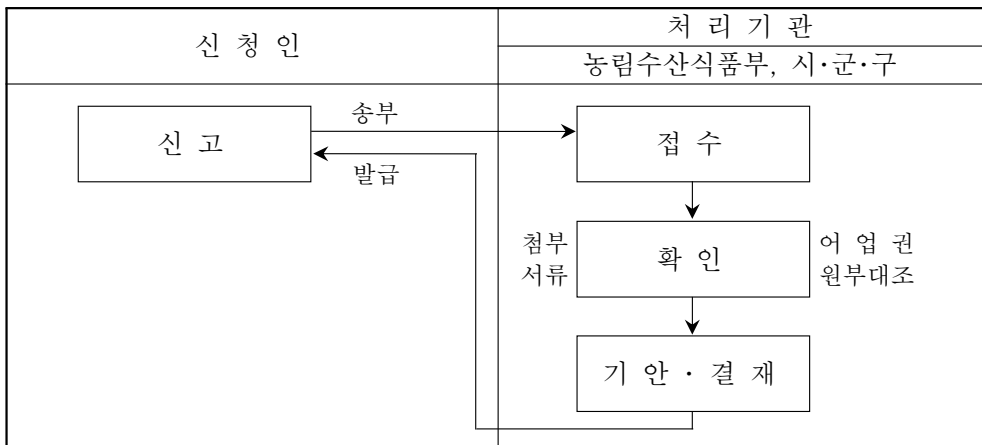
(앞쪽)

변경사항신고서				처리기간
(□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2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어촌계 포함)	⑥ 성명			
	⑦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자 (법인,어촌계 포함)	⑧ 성명			
	⑨ 주소 또는 주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⑩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⑪ 관리선의 어선명				
⑫ 변경사유				
「수산업법」 제10조·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9조제1항·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 첨부서류				조례에 따름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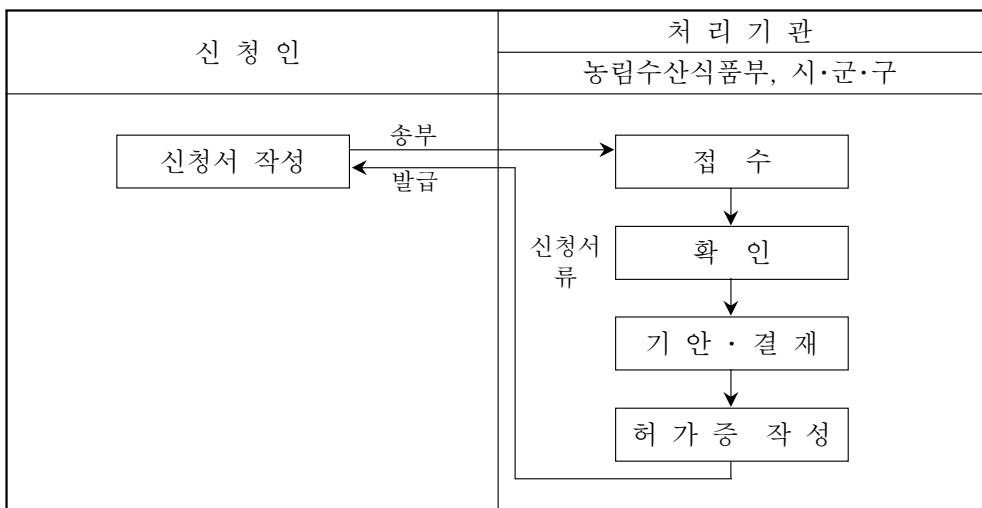
(앞쪽)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양식방법		
⑥ 면허번호	제 호	⑦ 포획·채취물, 양식물		
⑧ 면허기간	년 월 일	년부터	년 월 일	일까지(년)
⑨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부터까지(년)
<p>「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업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승인(협의)신청내용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승인(협의)				
신청수면(어장)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별첨도면)				
신청어업의 종류		양식 방법	시설 방법	면적	(ha)	
승인(협의) 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정항안	항로상				
	어항안	군항안				
	개항안	공원안				
	특정지역안	군사관계지역				
승인(협의) 신청 사유에 대한 지장 유무	항만건설상 지장					
	국토건설상 지장					
	항로상 지장					
	그 밖에 공익상 지장					
인접어업인 및 타어업 과의 이해 관계	인접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타 어업자와의 이해관계					
어장연혁	과거신청어장	과거타인어장	신규 개발어장	과거 공동어장		
어장가치 (생산성)	채포물 또는 양식장	좋다	나쁘다	모르겠다		
기타 참고사항						
승인(협의)처리에 대한 의견 및 참고사항						

268mm×380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1호서식]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증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양 식 방 법	
⑥ 면 허 번 호	제 호	⑦ 포획·채취물, 양식물	
⑧ 면 허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⑨ 연장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⑩ 등 록 일 자	년 월 일	⑪ 허 가 번 호	제 호
<p>「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연장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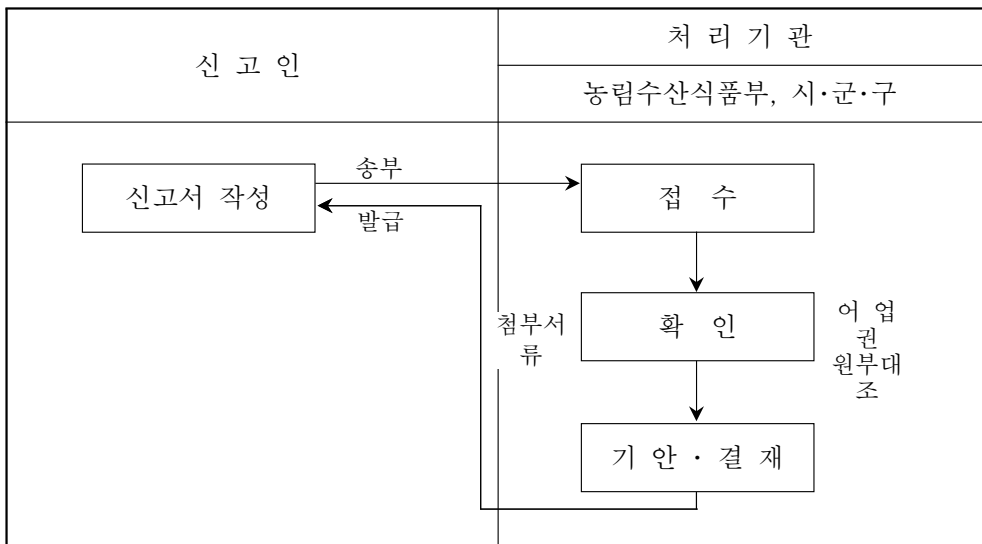
(앞쪽)

어업권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면 허 번 호	어업면호 제 호
⑥ 포 기 일 자		년	월	일
⑦ 포 기 사 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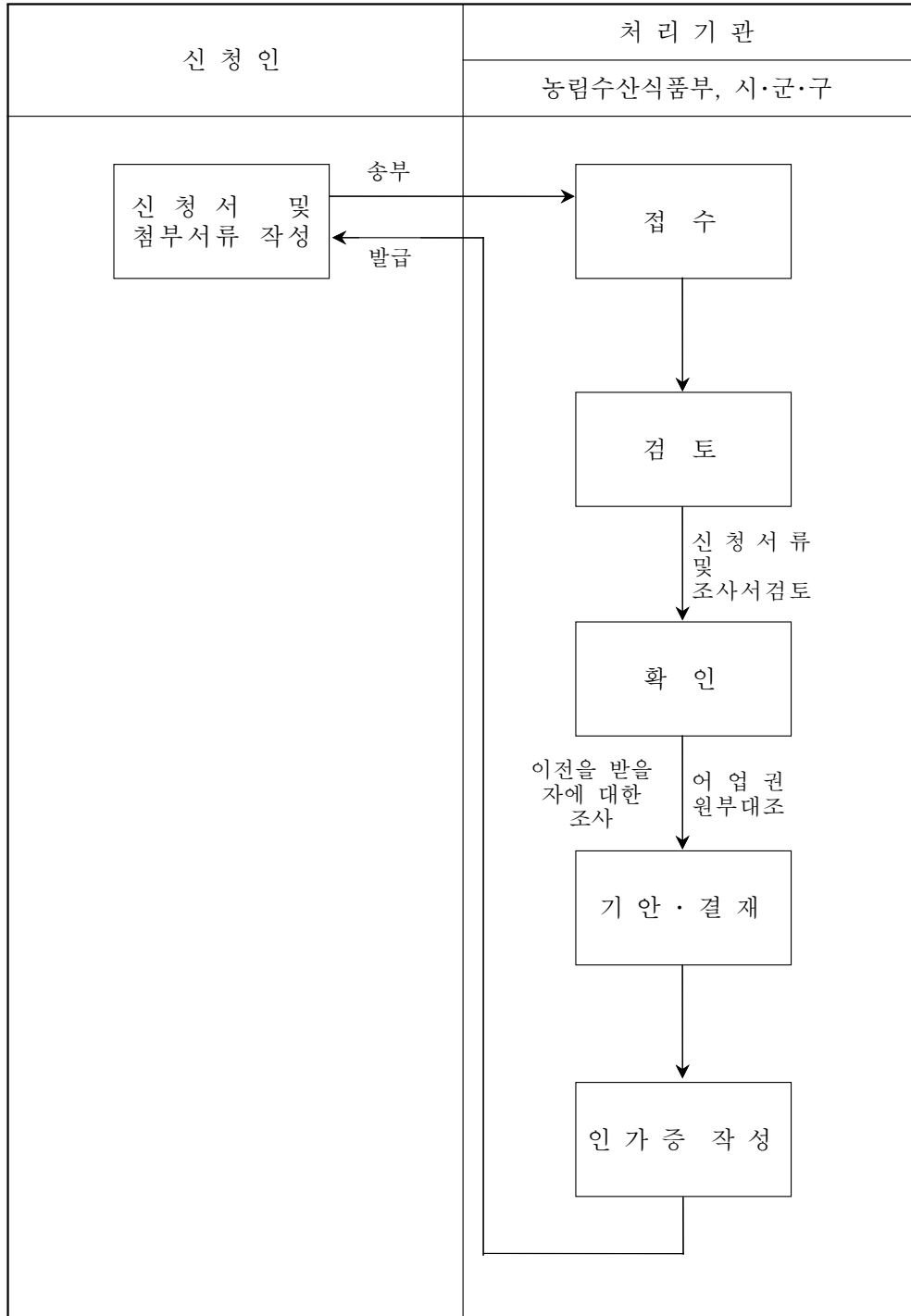
(앞쪽)

<input type="checkbox"/> 어업권 <input type="checkbox"/> 지 분		이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양 식 방 법	
⑥ 면 허 번 호			⑦ 포획·채취물, 양식물	
이전하는자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⑩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이전받는자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⑭ 이전하려는 지분			⑮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이전 하려는 자에 대한 조사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직업		겸업 또는 부업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 장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장의 종류		양 식 방 법		어 업 시 기			
	포 획, 채취 방법		포획·채취물, 양식물		이전하려는 지분			
	면 허 번 호		면허일	년 월 일	면허 만료일	년 월 일	면허 면적	ha
	이 전 사 유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	이전원인을 증명하려는 서류의 유무							
	이전하려는 자 및 이전을 받은 자의 인감증명 유무							
	이전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의 타당성							
	대리인에 따른 신청일 경우 그 권한 을 증명하는 서류의 유무							
	그 밖에 이전인가에 필요한 서류							
이전을 받으 려는 자에 대한 조사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직업		겸업 또는 부업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촌계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가입 일자		
	재산정도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계	천원	
	신용정도					경영능력		
	수산법규 위반여부							
조사자의견								
총 합 평 가								
조사일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성명	①	성명	①	

268mm×380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8.5>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이전 하는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이전을 받는자	④ 성 명		⑤ 생 년 월 일	
	⑥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 허 가 번 호	제 - 호	⑧ 이전 받은 지분		
⑨ 어업의 종류		⑩ 양 식 방 법		
⑪ 면 허 번 호		⑫ 포획·채취물, 양식물		
⑬ 이전의 사유				
<p>「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을 인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0px; margin-right: 10px;"> 직인 </div> </div>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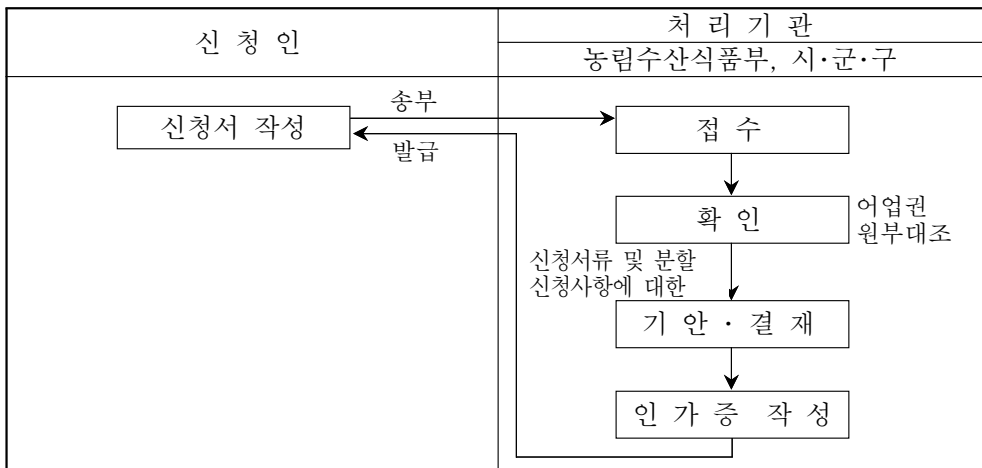
(앞쪽)

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양 식 방 법			
⑥ 면 허 번 호		제 호	⑦ 포 획·채 취 물, 양 식 물			
⑧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ha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	⑪ 어장면적 ha
	⑫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⑬ 성 명			⑭ 주민등록번호	-	⑮ 어장면적 ha
	⑯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⑰ 성 명			⑱ 주민등록번호	-	⑲ 어장면적 ha
⑳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⑳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분할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조례에 따름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어업권분할(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어업권자 및 어업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업		겸업 또는 분업		
	주소	시·도		시·군	읍·면·동	리·동	번지		
	어장위치	시·도		시·군	읍·면·동	리·동	번지		
	면허번호	제 호	면허일	년 월 일	면허 만료일	년 월 일	면허 면적	(ha)	어업 시기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포획·채취방법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양식물								
수산물법규 위반여부									
분할 또는 변경을 원하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업		겸업 또는 분업		
	주소	시·도		시·군	읍·면·동	리·동	번지		
	재산정도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계	천원	
	신용정도				경영능력				
	수산물법규 위반여부								
분할 또는 변경내용	종류	<input type="checkbox"/> 어업권분할()ha, <input type="checkbox"/> 어업권변경()							
	사유								
	내용	분할 또는 변경 전				분할 또는 변경 후			
그 밖의 참고사항 (먹이경쟁 및 해적생물관계등)									
조사자의견									
종합평가									
조사일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직급			
		성명		①		성명		①	

268mm×380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8.5>

어업권분할(변경)인가증					
분할(변경) 받은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 업 의 종 류		⑤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⑥ 어업면허번호		⑦ 포획물, 양식물			
⑧ 분할(변경)허가번호		제 - 호	⑨ 분할어장 면적		ha
변 경 대 상		변 경 내 용			
⑩ 양식방법 및 양식 시설량					
⑪ 양식물의 종류					
⑫ 포 획 물					
⑬ 양식어업의 종류					
⑭ 어업의 시기					
⑮ 분할된 수면의 위치와 수역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별지 도면과 같음)
<p>「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변경)을 인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직인</div>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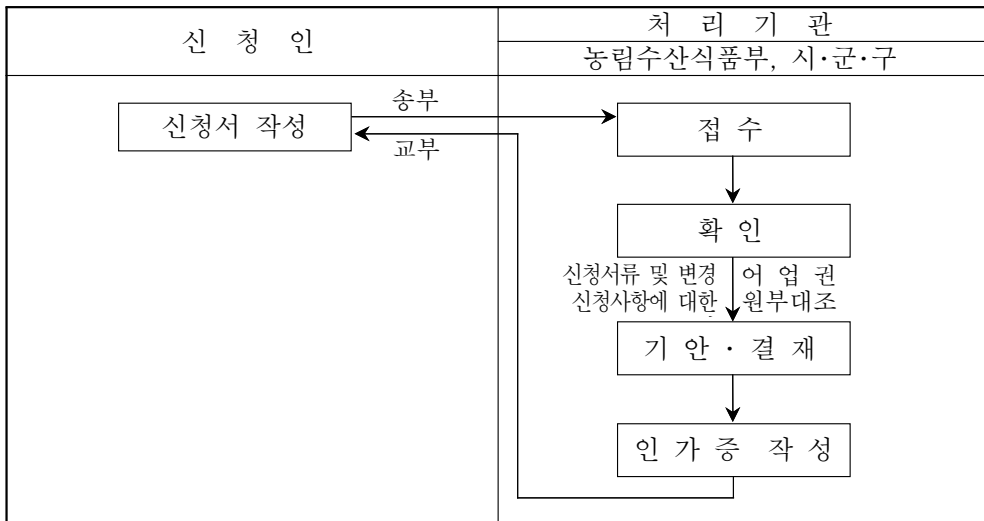
(앞쪽)

어업권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⑥ 면허번호		⑦ 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⑧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⑨ 양식물의 종류				
⑩ 포획물				
⑪ 양식어업의 종류				
⑫ 어업의 시기				
⑬ 변경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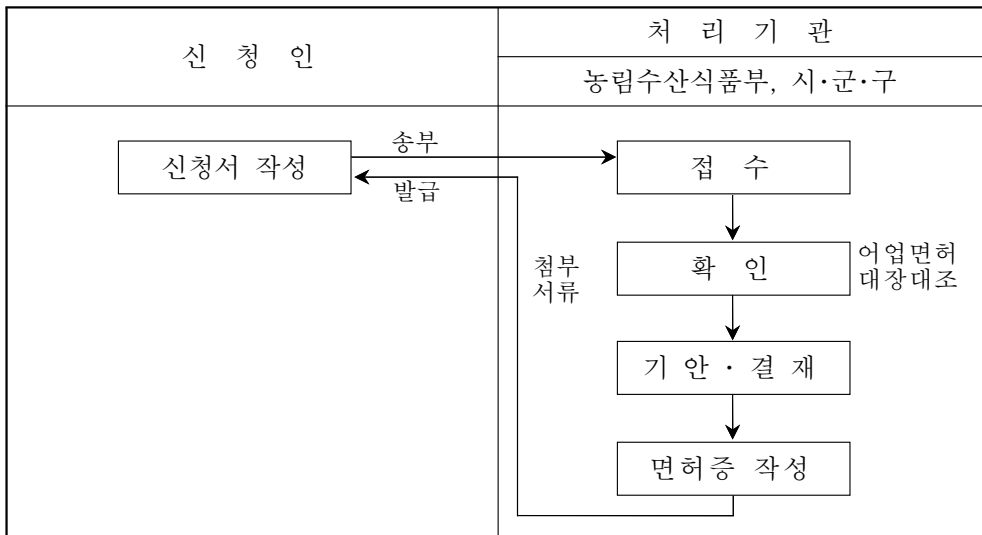
(앞쪽)

<input type="checkbox"/> 어업면허증 <input type="checkbox"/>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⑥ 분실(훼손) 연, 월, 일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		
⑦ 분실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8.5>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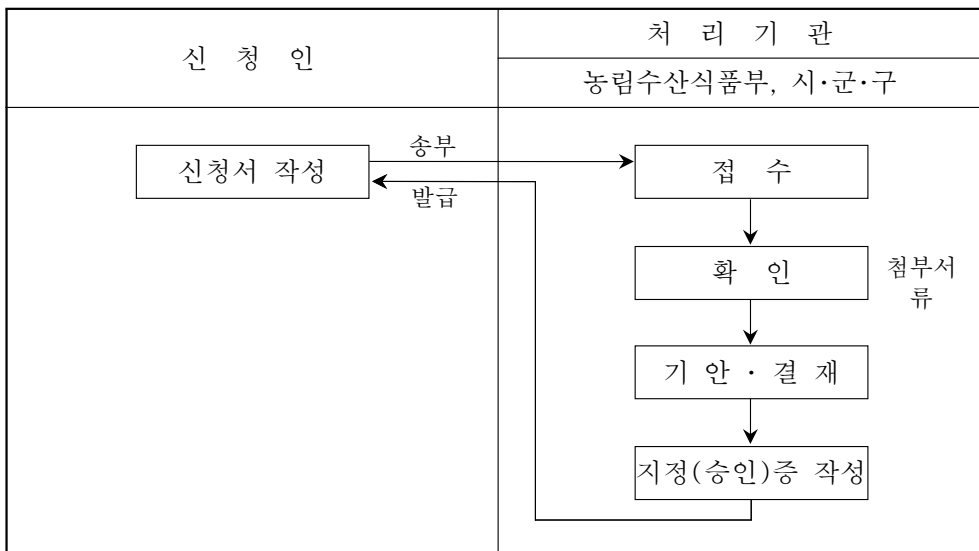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관리선사용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① 성명 또는 단체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주사무소)						
사 용 인 (행사자)	④ 성명 또는 단체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⑦어업권자	⑧어업의종류	⑨양식방법	⑩품종	⑪면허번호	⑫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지정 (승인)받으 려는 어선	⑬어 선 명		⑭어선번호	⑮어업허가종류		⑯어업허가번호	⑰톤 수
		⑰기관의 마력	⑱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⑳어선건조연월일	㉑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① 관리선 사용 지정 (승인) 번호	② 어업 권자	③ 사 용 인 (행사자)	④ 어업의 종류	⑤ 어구· 양식방법	⑥ 품 종	사용지정(승인)한 관리선						
						⑦ 어업 허가 종류	⑧ 어업 허가 번호	⑨ 어 선 명	⑩ 어선 번호	⑪ 톤 수	⑫ 마 력	⑬ 이용 장비

268mm×190mm(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8.5>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1. 관리선사용지정(승인)번호 및 기간							
① 지정(승인)번호	제 - 호	② 지정(승인)기간	. . . ~ . . .				
2. 관리선지정(승인)을 받은 어업권자							
③ 성명(단체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주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3. 사용인(행사자)							
⑥ 성명(단체명)		⑦ 생년월일	-				
⑧ 주소(주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4. 관리선을 공동사용하려고 지정(승인)받은 어업권자 및 어업권							
⑨ 어업권자	⑩ 어업의 종류	⑪ 어구, 양식방법	⑫ 품종	⑬ 면허번호	⑭ 어장면적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5. 지정(승인)받은 관리선의 내용							
⑮ 어선명	⑯ 어선번호	⑰ 어업허가 종류	⑱ 어업허가 번호	⑲ 어선 톤수	⑳ 기관 마력	㉑ 이용 장비	㉒ 선적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5항 에 따라 관리선사용을 지정(어선사용을 승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물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0px;"> 직인 </div> </div>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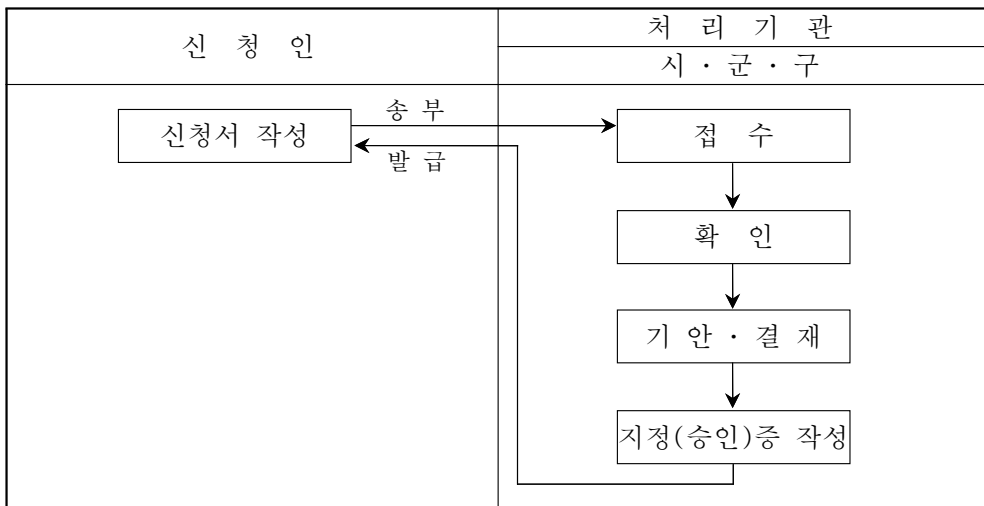
(앞쪽)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지정(승인)번호			
⑤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⑥ 변경의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조례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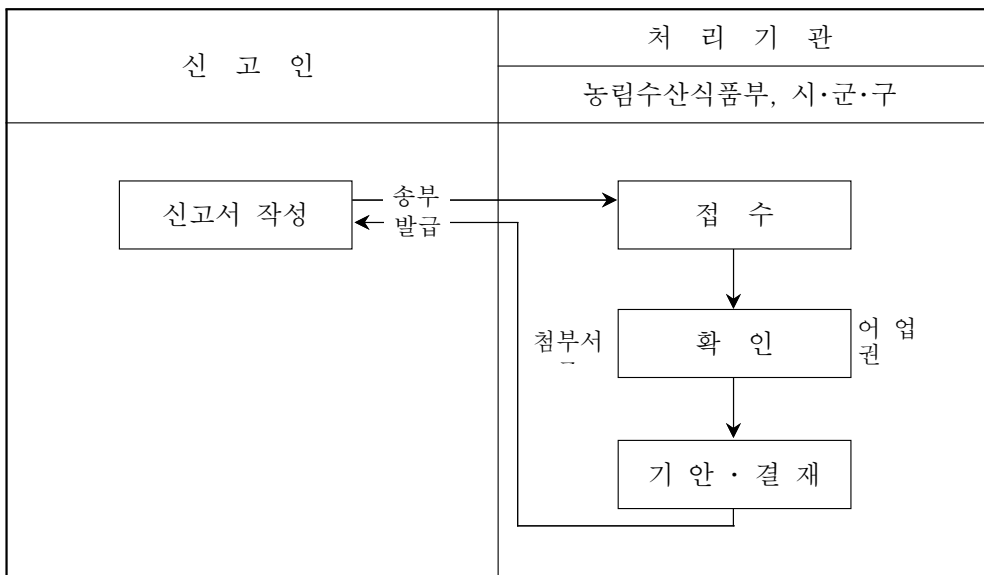
(앞쪽)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면허번호	어업면허제 호
⑥ 면허기간		. . .부터	. . .까지	
⑦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부터	. . .까지	년
⑧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휴업(휴업연장)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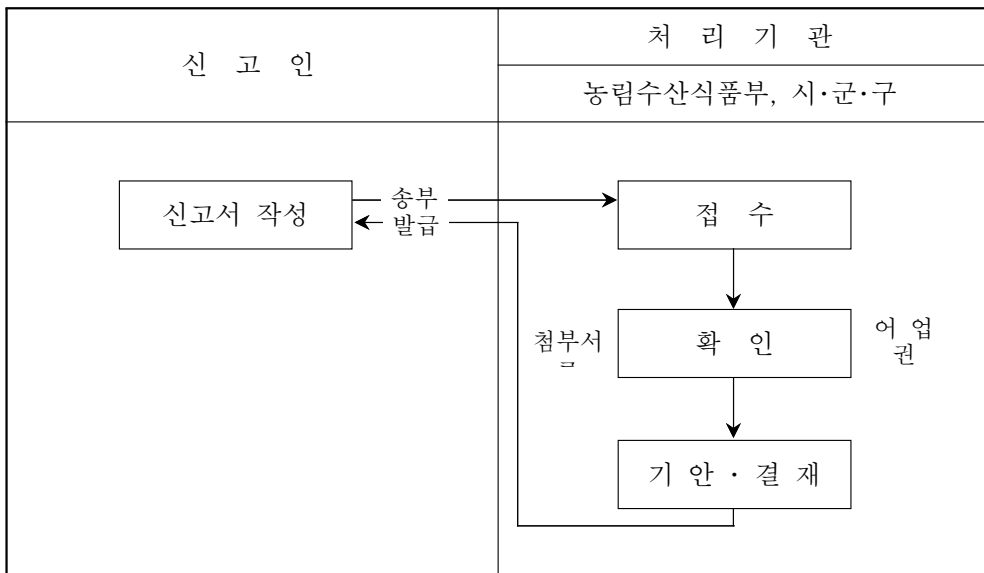
(앞쪽)

어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 어업의 종류			⑤ 면허번호	어업면허제호
⑥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⑦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p>「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업을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분기)해면어업면허처분상황보고서

가. 총괄표(년 월 일 현재)

(단위 : 건, ha)

어업별	구분	전분기말어업권		분기 중 포기 어업권		분기 중 취소 어업권		분기 중 면허어업권		금분기말 어업권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정 치 망 어 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 합 양 식 어 업											
협 동 양 식 어 업											
마 을 어 업											

※ 자연소멸어업권은 분기중 포기어업권란에 적는다.

나. (/)분기 해면어업 처분실적

어업의 명 칭	면허 번호	어업권자		면허면적 (ha)	면허 기간	어업권 이전인가		어업권 변경인가		기타 변동 및 처분사항	경고, 취소 및 포기사유	처분 연월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변경전	변경후			

268mm×380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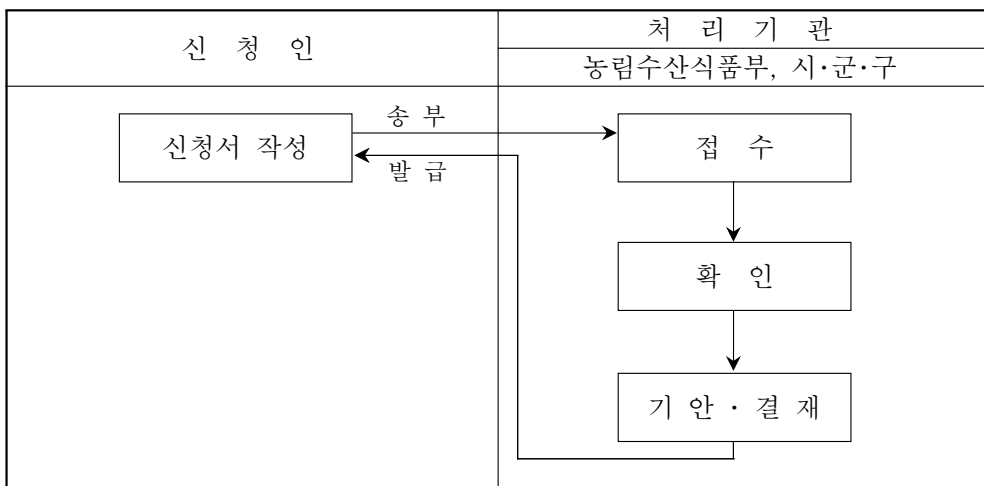
(앞쪽)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어업의 종류			⑤ 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⑥ 면 허 번 호	제 호	⑦ 면 적	ha		⑧ 품 종
⑨ 수면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철거의무를 면제(연장)받으려는 어장시설물					
⑩ 시설물의 종류		⑪ 시설물의 규모(m ²)		⑫ 수 량(개)	
⑬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연장) 받으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의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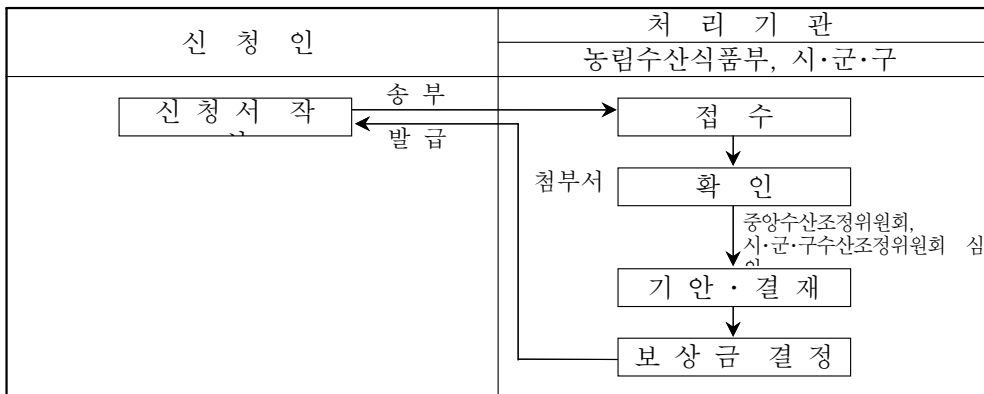
(앞쪽)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 또는 공작물의 표시	④ 어업의 종류	어업	⑤ 면허번호 제 호
	⑥ 공작물의 종류		⑦ 공작물의 규모 m ²
⑧ 처 분 사 항		⑨ 처분일자	년 월 일
손실의 내용	⑩ 손해액		
	⑪ 내역		
	⑫ 산출근거		
⑬ 손실액과 내역 및 산출방법			
⑭ 청구보상금액		일금	원정
<p>「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기재방법: ①~③란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8.5>

<p>기 관 명</p>				
주 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귀하	발 신(신청기관) 인		
제 목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신청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 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 기관 의 설립 근거	근 거 법 령			
	허 가 기 관			
	허 가 번 호			
	설 립 일 자			
기관 의 대표 및 구성 원수	대표자	성명		
		주소		
	조사기관의 조사구성원 수			
	상임조사자 수		특별조사자 수	보조조사자 수
	지정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붙임	1. 손실액 조사계획서 1부 2. 기관설립증서 사본 1부 3. 기관의 조직표 1부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0.8.5>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

기관명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 지정번호 어업손실액조사기관지정 제 호

2.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3. 조사자 구성원 수

상임조사자 수	특별조사자 수	보조조사자 수
(명)	(명)	(명)

4.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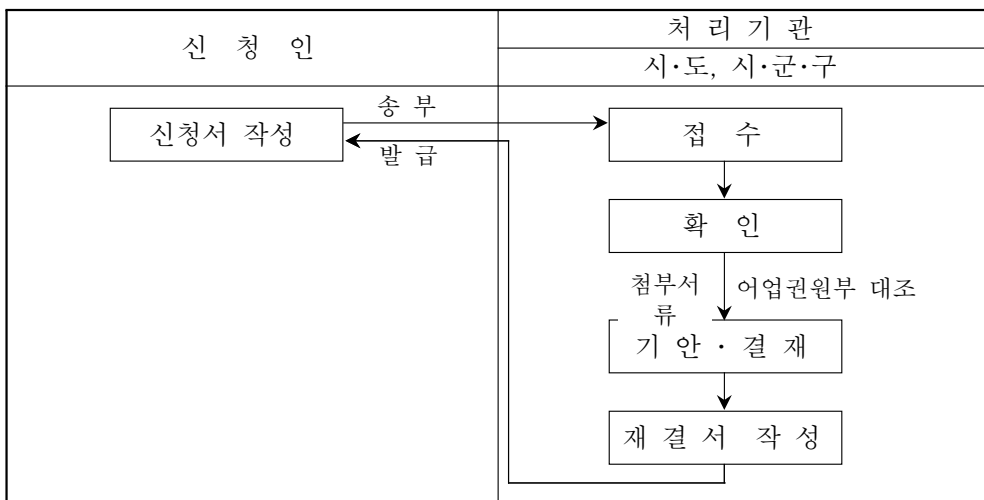
(앞쪽)

입어재결신청서		처리기간	
		시·도	14일
		시·군·구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 어업의 종류		어업	⑧ 면허번호 제 호
⑨ 제한을 하려는 사항			
⑩ 제한을 하려는 시기와 기간	시 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신청인의 목적과 사유	목 적		
	사 유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어에 관한 재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조례에 따름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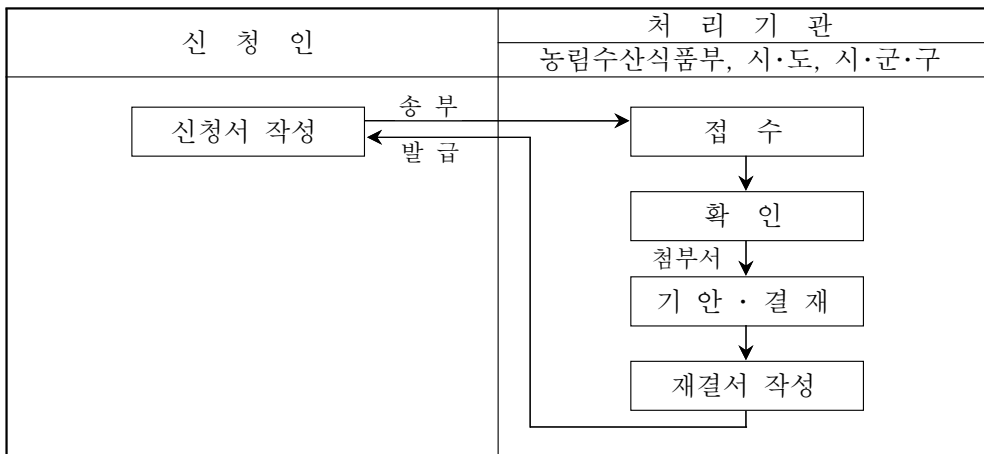
(앞쪽)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4일	
	시·도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피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주소			
⑦ 어장의 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⑧ 분쟁의 내용				
⑨ 재결신청의 목적과 내용	목적			
	내용			
⑩ 기타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수수료 조례에 따름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0.8.5>

재 결 서				
문서번호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 신 청 의 취 지				
⑧ 재 결 의 주 문				
⑨ 사 유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30px; display: inline-block;"></div> 직인 </div>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²]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1999. 12. 4 해양수산부령제151호
일부개정 2005. 7. 1 해양수산부령제298호
전문개정 2007. 11. 26 해양수산부령제391호
일부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1호
2010. 4.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3>

제2조(등록의 신청)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선박의 등록관청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획물운반업자”라 한다)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3>

1.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획물운반선 : 산소공급시설 및 활어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운반선 : 냉동·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제4조(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 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에 따라 어획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4.23>

1.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제5조(등록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57조제3항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 및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23>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을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어선이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이나 정지 또는 어선의 계선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제한 및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4.23>

제7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번호)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부여하되, 등록관청의 약칭·어획물운반업의 명칭·등록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강화 어획물운반업 제2007-1호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어획물운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1. 어획물운반업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주요 부분의 치수, 기관의 마력 및 주요 시설을 변경한 경우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사항을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어 지체 없이 이를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자의 주소지나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폐지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받으면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한 자, 그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어획물운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3]

제10조(휴업의 신고 등) 어획물운반업자는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휴업신고서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제1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어획물운반업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4.23>

1. 해당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에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후에 그 어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하는 경우

제12조(등록대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제2조제3항,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사항의 변경 및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획물운반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391호, 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118호, 2010. 4.23>

이 규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 및 어선에 대한 등록제한기간
(제5조제1항 관련)

등록취소의 사유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1년
2.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이하 “어획물등”이라 한다)을 운반한 경우	1년
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1년
4.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등이 아닌 어획물등을 운반한 경우	6개월
5.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처분 또는 어선의 계선처분을 위반하여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6개월
6. 해상에서 어획물을 매매한 경우	6개월
7.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6개월
8.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등을 운반한 경우	5개월
9. 그 밖에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5개월

[별표 2] <개정 2010.4.23>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 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은 그 운반을 의뢰한 어선의 양륙항에 양륙하여야 한다.
 - 라.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해상에서 어획물, 양식물 또는 그 제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이 노후되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선을 폐기하거나 수출 또는 다른 어선으로의 대체신청 등(이하 "어선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어선의 폐기등을 하는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사.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어획물운반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된 연료유 탱크 외의 장소에 유류를 적재·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가 가공하는 수산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어획물만을 운반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2 제8호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획물만을 운반하여야 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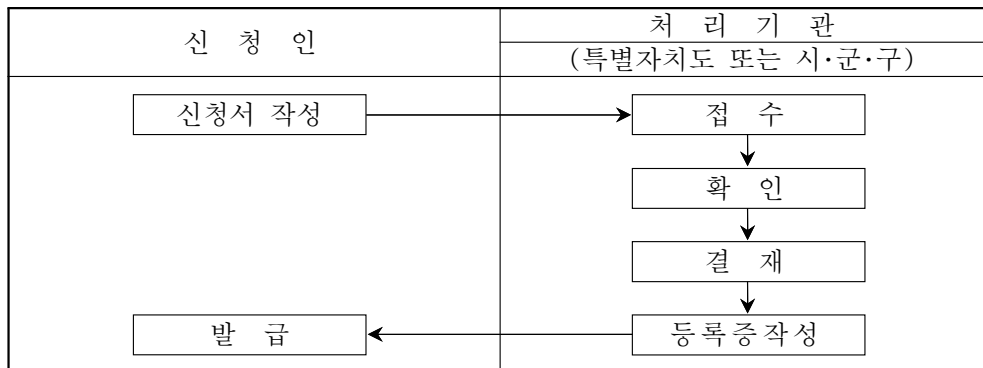
(앞 쪽)

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법인)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신청어선	⑤ 선박명		⑥ 톤수	G/T
	⑧ 진수연월일		⑨ 선적지 및 등록번호	
	⑩ 주요기기 및 시설			
신청내용	⑪ 운반수역			
	⑫ 운반대상어획물·양식물 또는 제품의 종류			
<p>「수산업법」 제57조와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4.23>

(앞 쪽)

어획물운반업등록증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용 어선	선 박 명		톤수	G/T	마력수	HP
	선 적 지			어 선 번 호		
	길 이		m	냉장창고부피	m³	
	넓 이		m	최대적재능력	m³	
	깊 이		m	최저냉장온도	℃	
⑤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 등록 제 - 호					
⑥ 주요시설 및 장비						
⑦ 운반구역						
⑧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제품의 종류						
<p>「수산업법」 제57조와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제한 또는 조건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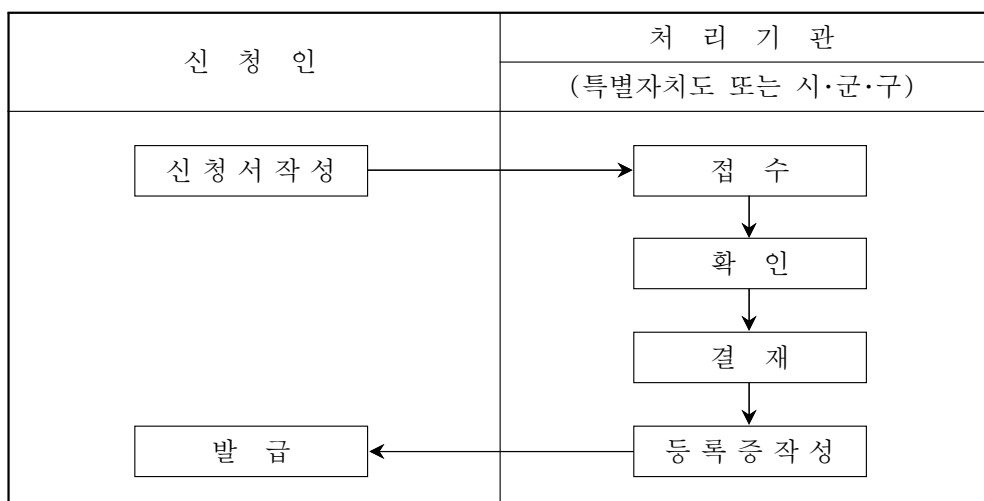
(앞 쪽)

어획물운반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상호(법인)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등록 제 - 호	
⑥ 분실(훼손)연월일		
⑦ 분실(훼손)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6호서식]

어획물운반업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상 호(법 인)			
	② 성 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등 록 번 호		어획물운반업등록 제 - 호		
⑥ 등 록 기 간		. . .부터 . . . 까지		
⑦ 휴 업 기 간		. . .부터 . . . 까지		
⑧ 휴 업 사 유				
<p>「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어획물운반업휴업기간중의 재개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상 호(법 인)		
	② 성 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등 록 번 호	어획물운반업등록 제 - 호		
⑥ 휴 업 기 간	. . .부터 . . . 까지		
⑦ 재 개 일 시	. . .		
⑧ 재 개 사 유			
<p>「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귀하</p>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어획물운반업등록대장						
① 등록번호			② 등록일자			
③ 성명(법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⑥ 사용어선	선박명		톤수	G/T	마력수	HP
	길이	m	넓이	m ²	깊이	m
⑦ 냉장창고부피	m ³		⑧ 최대 적재능력	m ³		
⑨ 최저냉장온도	℃		⑩ 유창부피	m ³		
⑪ 주요기기 및 시설						
⑫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제품						
⑬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등록구역						
⑮ 제한 또는 조건						
⑯ 선적항			⑰ 진수	년 월 일		
⑱ 선박번호			⑲ 조선소명			
⑳ 건조비 재원내용			㉑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사 항 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02. 2. 15	해양수산물부령 제215호
일부개정	2007. 3. 30	해양수산물부령 제361호
타법개정	2007. 12. 3	해양수산물부령 제392호
	2008. 3. 3	농림수산물부령 제1호
	2008. 5. 30	농림수산물부령 제10호
일부개정	2008. 12. 31	농림수산물부령 제48호
	2009. 11. 3	농림수산물부령 제9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제2조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나. 선박검사증서 사본
 - 다.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라.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장에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 및 배치도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30>

제3조 (유어장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허가어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어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총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유어장관리규정)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6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5조 (유어장관리선)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법 제4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비
- ③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탑재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 ⑤ 삭제 <2007.3.30>
- ⑥ 삭제 <2007.3.30>

제5조의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30]

제6조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7조 (유어장의 출입 등) ①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 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③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제8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제9조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 조성)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밀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개정 2008.12.31>) ①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3. 분뇨·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4. 야간낙시 금지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낙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 ③가두리등 낙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리등 낙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낙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낙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리등 낙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가두리등 낙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3. 가두리등 낙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 [본조신설 2007.3.30]

제11조 (사고발생의 보고) ①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1.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4.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5.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운영한 때
 6.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8.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1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12.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부 칙 <제215호, 2002. 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낚시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낚시터관리선은 이 규칙에 의한 유어장관리선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낚시터관리선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에 유어장이용자의 승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61호, 2007. 3.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가두리낙시터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받는 가두리낙시터부터 적용한다.
- ③(유어장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유어장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392호, 2007.12.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10호, 2008. 5.3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관련법령집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 <제48호,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호, 2009.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11.3>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

시설 내용	시 설 기 준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계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로프: 로프 Ø 40mm 이상 ○ 닻(철재): 450 kg 이상 ○ 가두리시설의 부력: 평방미터당 100kg이상(완충부자 400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식 및 석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교부력: 평방미터당 300kg 이상 ○ 콘크리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및 낚시터 내부에 사다리를 갖출 것
안전 시설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통로 1m 50cm ○ 난간보호대: 로프 Ø 40mm 이상 ○ 구멍등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수. 다만, 20% 이상은 반드시 어린이용일 것 ○ 구멍줄: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 ○ 구멍부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통로 1m 50cm ○ 난간보호대: 로프 Ø 40mm 이상 ○ 구멍줄: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이상 ○ 구멍부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수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오물이 해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방식) 1개 이상 ○ 차양(그늘막)시설 3 × 6m 1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수세식) 1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을 것 ○ 차양(그늘막)시설 3×6m 1개 이상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간판 1개 ○ 선박접안시설 1개소 ○ 구급약품, 피뢰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간판 1개 ○ 구급약품, 피뢰침

[별표 2] <개정 2008.12.31>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

유어장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패류·복합양식 어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등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어장에 면허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어업으로 해당 어장에 허가된 양식 대상 어종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앞 면)

유어장지정(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소속		()어촌계, 지구별조합					대표자								
	주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②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의 면허·허가 사항	위 치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면허·허가 번호		제 호	업종		면적	ha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m					
	평균수심		m	포획·채취물의 종류												
	면허·허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유어장의 위치·명칭 등	위치															
	유어장의 명칭							면적		ha						
④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																
⑤ 유어장의 시설계획	간이화장실		오물처리장			입간판		표지시설		기타편의시설						
	개소		개소			개		개		개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	관리선				안전장비											
	업종	선박의 종류	규모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소화기	구급약품	기타						
			톤													
⑦ 가두리등 낚시터 시설계획 등	안전시설							기타								
	계류로프	닻	부력	보행통로	난간	구명동의	구명줄	구명부환	화장실	차양시설	접안시설	수용인원				
⑧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⑩ 기타 참고사항																
「수산업법」 제57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 「수산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법 3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가두리등 낚시터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p>※ 기재요령</p> <p>②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재합니다.</p> <p>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허가어업을 모두 기재합니다.</p> <p>⑥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를 기재하거나 유선사업이라 기재하고,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기재합니다.</p> <p>⑦중 “로프”는 지름을 기재하고, “땃”은 kg, “부력”은 평방미터당 kg, “보행통로”는 폭, “난간”은 로프의 지름, “구멍동의”는 개수, “구멍줄”은 길이, “구멍부환”은 개수, “화장실”은 좌변기 개수, “차양시설” 및 “접안시설”은 개수를 각각 기재합니다.</p> <p>유어장의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 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유어장의 구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합니다.</p> <p>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p>	
<p>신 청 인</p>	<p>처 리 기 관(시·군·구)</p>
<p>신 청 서 작 성</p>	<p>접 수</p>
	<p>확 인</p>
	<p>기안·결재</p>
<p>교부</p>	<p>지 정 서 작 성</p>
<p>지 원 금 지 급</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31>

(앞면)

제 호 유어장지정서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	소속		()어촌계, 지구별조합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② 유어장의 지정사항	명칭		() 유어장				지정번호		제 호			
	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면적		ha	평균수심		m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m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④ 유어장의 시설상황	간이화장실		오물처리장		입간관		표지시설		기타편의시설			
	개소		개소		개		개		개			
⑤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	관리선			안전장비								
	업종	선박의 종류	규모	구멍 동의	구멍 부환	구멍줄	통신 기기	소화기	구급 약품	기타		
			톤									
			톤									
			톤									
			톤									
⑥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상황	시설장비											
	계류 로프	닢	부력	보행 통로	난간	구멍 동의	구멍 줄	구멍 부환	화장 실	차양 시설	접안 시설	수용 인원
⑦ 제한 또는 조건												
⑧ 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											
「수산업법」 제57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지정사항 변경내용 기재란(제6조 관련)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일자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관리선의 선명		
관리선		
가두리등 낚시터		
유어장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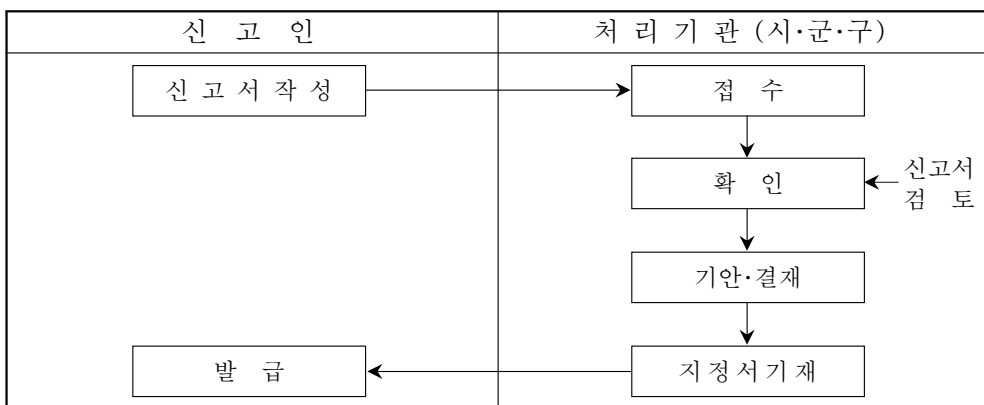
(앞 면)

유어장지정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신고인	소속	()어촌계, 지구별조합 대표자		
	주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② 유어장지정번호	제 호			
③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지정 사항		변경 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④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가. 나.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 가입증서 사본				조례에 의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31>

관리선 승선자 명부

(년 월 일)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07.3.30>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

(년 월 일)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유어장 관리일지

월 일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		이용료의 수입액		기타 참고사항
	종 류	수량(kg)	이용자수	수입액(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00·1·31 해양수산부령제157호
일부개정 2002·3·9 해양수산부령제220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2007·12·3 해양수산부령제392호
2008·2·4 해양수산부령제408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1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0호
2010·4·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근해어업·구획어업·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08.12.9, 2010.4.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차”라 함은 어로작업을 위하여 조업근거지항을 출항하여 귀항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국내기지식어선”이라 함은 어로작업을 위한 입출항의 조업근거지항을 국내에 두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3. “해외기지식어선”이라 함은 어로작업을 위한 입출항의 조업근거지항을 해외에 두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제3조(보고대상 및 서식) ①연안어업·근해어업·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식에 따라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0.4.27>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2)
 -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이 구축된 어선
- ②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식에 따라 조업상황·어획실적 및 어체측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양참치연승어업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2. 원양가다랭이채낚기어업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3. 원양선망어업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4. 원양붕수망어업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6. 북양트롤어업 :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7.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8. 해외트롤어업·원양기선저인망어업 및 원양새우트롤어업 :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제4조(보고서의 작성) ①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보고서는 해당 어선의 선장(어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항차별로 조업일마다 작성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요령 및 시기 등) ①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 2008.12.9>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 입항후 3일 이내에 업종별수산업 협동조합장(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 월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이 구축된 어선

②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9>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9>

④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양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을 거쳐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2008.3.3, 2008.12.9>

1. 허가받은 어선이 국내기지식어선인 경우 : 매항차 종료후 30일 이내
2. 허가 받은 어선이 해외기지식어선인 경우 : 매항차 종료후 60일 이내

제6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이 정하는 보고방법 및 보고시기에 따라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9>

제7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8조(보고서의 용도) 이 규칙에 의한 보고서는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57호, 2000. 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해및원양어업의 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0호, 2002. 3. 9>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관련법령집

제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원양자원과장”을 “해외자원과장”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 칙 <제392호, 2007.12.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⑦ 생략

부 칙 <제408호, 2008. 2.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을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1) 뒤쪽 및 (2)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뒤쪽 및 (2)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48>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40호, 2008.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호, 2010. 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08.12.9>

(앞 쪽)

연근해어업보고서

어선번호 :

업 종 :

선 명 :

(호출부호 :)

주소·성명 :

- 어업허가를 받은자

- 당해 어선의 선장

조업 일자	조업 해구	인망 횟수	어종별 어획량(kg)											
			어종	계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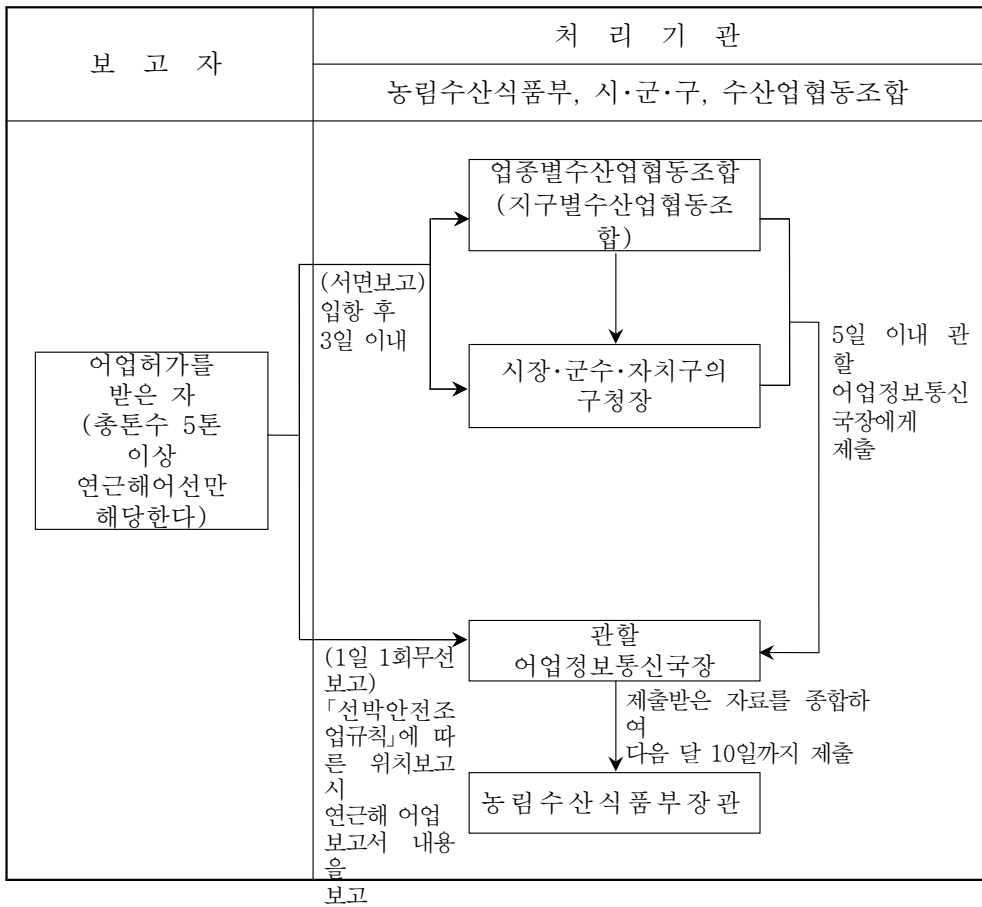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뒤 쪽)

※ 연근해어업보고서 작성요령

1. 어선번호는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번호(신어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업종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당해 항차에 조업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3. 선명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의 명칭을 기재하고, 호출부호는 어업무선국에 가입한 호출부호를 기재합니다.
4. 조업일자는 조업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5. 조업해구는 조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소해구 또는 위·경도로 기재합니다.
6. 인망횟수는 일일조업중 인망한 횟수를 기재합니다.
7. 어종별 어획량은 어종별로 구분하여 kg단위로 기재하되, 어획실적이 많은 어종부터 10개까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연근해어업보고서 보고요령 및 제출절차



[별지 제1호서식(2)] <개정 2008.12.9>

(앞 쪽)

(월)연근해어업보고서

- 어선번호 :
- 업 종 :
- 선 명 :
- 주소·성명 :
 - 어업허가를 받은 자
 - 당해 어선의 선장

조업 일자	조업 해구	인망 횟수	어종별 어획량(kg)																	
			어 종	계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257mm×364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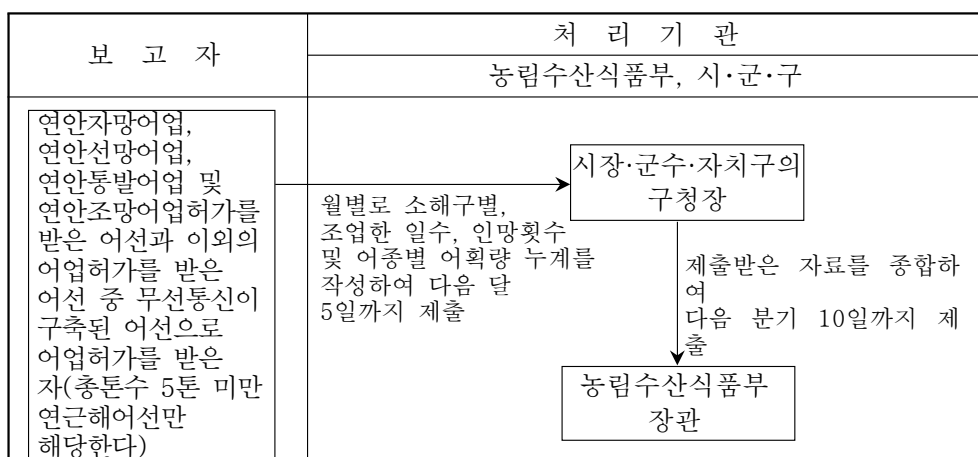
□ 월별누계

조업 해구	조업 일수	인망 횃수	어종별 어획량(kg)											
			어종	계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어종	계										
			어획량											

※ 연근해어업보고서 작성요령

1. 어선번호는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번호(신어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업종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항차에 조업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3. 선명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의 명칭을 기재하고, 호출부호는 어업정보통신국에 가입한 호출부호를 기재합니다.
4. 조업일자는 조업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5. 조업해구는 조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소해구 또는 위·경도로 기재합니다.
6. 인망횃수는 일일조업 중 인망한 횃수를 기재합니다.
7. 어종별 어획량은 어종별로 구분하여 kg단위로 기재하되, 어획실적이 많은 어종부터 10개까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연근해어업보고서 제출절차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참치연승어업어획실적보고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서명)
 (TEL :)

보고선박	총톤수	톤	마력	HP
항해차수01	차입항연월일02	월	일	항해일수03
				조업일수04
				일 승무원05
				명

보고일	년	월	일
선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해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항출항
			항입항

조업형태 06		구분	정오위치		표면수온	남시수 빛시수	다량어류					새치류					가다랑어 Skip-jack	상어 Shark	기타 Others	계 Total												
1. 태평양(기지, 독항)	4. 기타		위도	경도			날개 다랑어 Albacore	황다랑어 Yellow fin	눈 다랑어 Bigeye	참 다랑어 Bluefin	인도다랑어 Southern bluefin	청새치 Blue marlin	녹새치 Striped marlin	황새치 Sword fish	백새치 White marlin	돛새치 Sail- fish																
2. 대서양(기지, 독항)		날짜	도	N.S별	도	E.W별	월	일	20	21	22	23	30	31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90	00				
어선규모 07		1		1N2S		1E2W																										
1. 100톤~150톤	5. 301톤~350톤	2		1N2S		1E2W																										
2. 151톤~200톤	6. 351톤~400톤	3		1N2S		1E2W																										
3. 201톤~250톤	7. 401톤~450톤	4		1N2S		1E2W																										
4. 251톤~300톤	8. 451톤~이상	5		1N2S		1E2W																										
주어장 08		6		1N2S		1E2W																										
1. 0도이북 180도이서	4. 0도이남 180도	7		1N2S		1E2W																										
태평양	이동 태평양	8		1N2S		1E2W																										
2. 0도이남 180도이서	5. 인도양	9		1N2S		1E2W																										
태평양		10		1N2S		1E2W																										
3. 0도이북 180도이동	6. 대서양	11		1N2S		1E2W																										
태평양		12		1N2S		1E2W																										
주로 사용한 이료 09		13		1N2S		1E2W																										
1. 풍치	3. 기타	14		1N2S		1E2W																										
2. 오징어		15		1N2S		1E2W																										
기재요령		16		1N2S		1E2W																										
1. 조업기간이 두개의 달에 걸쳐 있을 때는 월별로 별지를 작성합니다.		17		1N2S		1E2W																										
2. 조업형태로부터 주로 사용한 이료까지의 난 및 정오위치의 N.S별 E.W별의 난은 해당되는 것에 ○표를 합니다.		18		1N2S		1E2W																										
3. 어종별 어획량은 각난마다 상단은 중량(kg)을 하단은 마리수를 기재합니다.		19		1N2S		1E2W																										
예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kg</td></tr><tr><td>마리수</td></tr></table>		kg	마리수	20		1N2S		1E2W																								
kg																																
마리수																																
		21		1N2S		1E2W																										
		22		1N2S		1E2W																										
		23		1N2S		1E2W																										
		24		1N2S		1E2W																										
		25		1N2S		1E2W																										
		26		1N2S		1E2W																										
		27		1N2S		1E2W																										
		28		1N2S		1E2W																										
		29		1N2S		1E2W																										
		30		1N2S		1E2W																										
		31		1N2S		1E2W																										
		어획량 총계		어획량 M/T		미당평균중량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가랑다랭이채낚기어업어획실적보고

문서번호 :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서명)

시행일자 :

(TEL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책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년 월 일 항입항

보고선박	신호부자	허가번호	톤수	톤
항 차 수	항해일수	승 무 원	명	채낚기인수

조업형태		정 오 위 치				표면 수온	가다랑어 Skipjack	물치다래 Frigate Mackerel	참다랑어 Bluefin	날개다랑어 Albacore	눈다랑어 Bigeye	황다랑어 Yellowfin	기타 Others	계 Total				
1. 태평양(기지, 특항)	4. 기 타	구분	도	N.S별	도										E.W별			
어선규모		월	일	20	21	22	23	30	31	32	33	34	35	36	40	41		
1. 100톤~150톤	5. 301톤~350톤	1		1N2S		1E2W												
2. 151톤~200톤	6. 351톤~400톤	2		1N2S		1E2W												
3. 201톤~250톤	7. 401톤~450톤	3		1N2S		1E2W												
4. 251톤~300톤	8. 451톤~이상	4		1N2S		1E2W												
주 어 장		5		1N2S		1E2W												
1. 0도이북 180도이서 태평양	4. 0도이남 180도 이동 태평양	6		1N2S		1E2W												
2. 0도이남 180도이서 태평양	5. 인도양	7		1N2S		1E2W												
3. 0도이북 180도이동 태평양	6. 대서양	8		1N2S		1E2W												
주로 사용한 이료		9		1N2S		1E2W												
1. 풍 치	3. 기 타	10		1N2S		1E2W												
2. 오징어		11		1N2S		1E2W												
기 재 요 령		12		1N2S		1E2W												
1. 조업기간이 두개의 달에 걸쳐 있을 때는 월별로 별지를 작성합니다.		13		1N2S		1E2W												
2. 조업형태로부터 주로 사용한 이료까지의 난 및 정오위치의 N.S별 E.W별의 난은 해당되는 것에 O표를 합니다.		14		1N2S		1E2W												
3. 어종별 어획량은 각난마다 상단은 중량(kg)을 하단은 마리수를 기재합니다.		15		1N2S		1E2W												
예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kg</td><td>마리수</td></tr></table>		kg	마리수	16		1N2S		1E2W										
kg	마리수																	
		17		1N2S		1E2W												
		18		1N2S		1E2W												
		19		1N2S		1E2W												
		20		1N2S		1E2W												
		21		1N2S		1E2W												
		22		1N2S		1E2W												
		23		1N2S		1E2W												
		24		1N2S		1E2W												
		25		1N2S		1E2W												
		26		1N2S		1E2W												
		27		1N2S		1E2W												
		28		1N2S		1E2W												
		29		1N2S		1E2W												
		30		1N2S		1E2W												
		31		1N2S		1E2W												
		어획량 총계				어획량 M/T												
						미당평균중량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선망어업어획실적보고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서명)

(TEL :)

보고선박명	신호부자	톤수	톤	헬기적재	유·무	조업해역
출항항구 및 일자	입항항구 및 일자	승무원수	명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책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년 월 일 항입항

일 자			투망 횃수	조업 위치			표면온 수(°C)	어군 형태	투망 시작 시간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기 타		비 고	폐 기 량		기 재 요 령					
년	월	일		위도	1:N 경도	1:E 2:W				어획량 (톤)	평균 중량 (kg)	어획량 (톤)	평균 중량 (kg)	어획량 (톤)	평균 중량 (kg)	어획량 (톤)	평균 중량 (kg)		다랑어 (톤)	기타 (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 조업이 있는 날은 조업 위치, 조업이 없는 날은 정오위치를 분까지 기재합니다. 2. 투망횃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어군형태 구분 ①자연유목 ②인공유목 ③부상군 4. 비 고 ①출 항 ②입 항 ③항 해 ④조 업 ⑤어 탐 ⑥전 재 ⑦어구수리 및 선박고장 ⑧기 타				
총 계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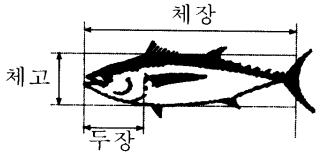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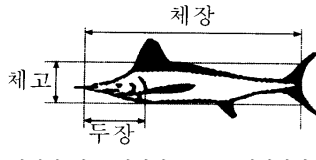
원양부어류어체측정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성명)
 (TEL :)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년 월 일 항입항

어 종 별	대 양 별	조 사 선 명	톤 수

번호	어획연월일	위도	경도	체장(cm)	체중(kg)	두장(cm)	체고(cm)	성별	위내용물	생식선중량	기 재 요 령
1											1. 어종구분 : 날개다랑어(Albacore), 참다랑어(Bluefin), 인도다랑어(Southern bluefin), 황다랑어(Yellowfin), 눈다랑어(Bigeye), 황새치(Swordfish), 돛새치(Sail-fish), 가다랑어(Skipjack) 등으로 구분합니다. 2. 대양별 :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으로 구분합니다. 3. 측정미수 : 다랑어류는 1회 30미 이상, 새치류는 전수를 측정합니다. 4. 측정단위 : 체장은 1cm, 체중은 1kg단위로 합니다. ○측정부위   ○위내용물 : 위내에 있는 먹이의 종류를 기입합니다. ○생식선중량 : 암컷은 난소중량, 수컷은 정소의 중량을 기입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붕수망어업어획실적보고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서명)
 (TEL :)

보고선박명	신호부자	주기마력	톤수	톤 선박전장	m
일일냉동능력	상자 발전기용량	KW	허가번호	승무원수	명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서명 또는 인
작 성 책 인 자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일 항입항

공치 1상자당 평균 중량 : kg	
공치 1상자당 평균마리수	
L size	미
M size	미
S size	미
그 물 길 이	m
그 물 폭	m
땀 대 길 이	m
품 명	용 량 개 수
집 어 등	
홍 등	
백 등	
수온등	
기 타	
탐 조 등	
총 불 대 수	

기 재 요 령
1. 조업기간이 두개의 달에 걸쳐 있을 때는 월별로 별지를 작성합니다.
2. 조업이 있는 날은 주조업위치를, 조업이 없는 날은 정오위치를 기재합니다.

월 일	주 조 업 위 치		표 수	면 온	투 망 수	공치어획량 (상자)				공치 폐기량 (상자)	부 수 어 획 물																				
	위 도	경 도				L	M	S	계		고등어	멸치	방어류	오징어류	연어	정어리	물치다래	미수		미수		기타									
	도·분	N·S·별	도·분	E·W·별	°C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미수	중량			
1		1N2S		1E2W																											
2		1N2S		1E2W																											
3		1N2S		1E2W																											
4		1N2S		1E2W																											
5		1N2S		1E2W																											
6		1N2S		1E2W																											
7		1N2S		1E2W																											
8		1N2S		1E2W																											
9		1N2S		1E2W																											
10		1N2S		1E2W																											
11		1N2S		1E2W																											
12		1N2S		1E2W																											
13		1N2S		1E2W																											
14		1N2S		1E2W																											
15		1N2S		1E2W																											
16		1N2S		1E2W																											
17		1N2S		1E2W																											
18		1N2S		1E2W																											
19		1N2S		1E2W																											
20		1N2S		1E2W																											
21		1N2S		1E2W																											
22		1N2S		1E2W																											
23		1N2S		1E2W																											
24		1N2S		1E2W																											
25		1N2S		1E2W																											
26		1N2S		1E2W																											
27		1N2S		1E2W																											
28		1N2S		1E2W																											
29		1N2S		1E2W																											
30		1N2S		1E2W																											
31		1N2S		1E2W																											
계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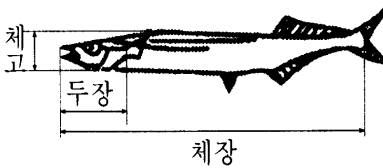
뽕치어체측정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서명)
 (TEL :)

어업명		보고 선박		신호 부자		총 톤수	
-----	--	----------	--	----------	--	---------	--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책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년 월 일 항입항

번호	어획 연월일	위도	경도	체장 (cm)	체중 (g)	두장 (cm)	체고 (cm)	성별	비고	기 재 요 령
1										1. 측정미수 : 뽕치는 1회 30마리 이상 측정합니다. 2. 측정횟수 : 월 1회 3. 측정단위 : 체장·두장 및 체고는 0.1cm, 체중은 1g단위로 기록합니다. ● 측정부위  4. 성별 : 암컷(♀), 수컷(♂)으로 기록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어획실적보고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서명)
 (TEL :)

선 명	총 톤 수	항해자수	신호부자
항해일수	조업일수	승무원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해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항입항

조업어장 1. 뉴질랜드 2. 호주 3. 북태평양 어선규모 1. 200톤 이하 2. 201톤~300톤 3. 301톤~400톤 어구조사 조획기종 류 수동조획기 자물래 동 2중물래 기타사항 1. 상자당평균무게 2. 상자당평균마리수 기재요령 1. 조업기간이 두개의 달에 걸쳐있을 때 는 월별로 별지에 작성합니다. 2. 조업어장·어선규모·어업종류 및 위도 (N.S) 경도(E.W)란에는 해당되는 것에 ○표를 합니다. 3. 자동조획기 1) 물래 : 물래 하나 있는 것 2) 2중물래 : 물래 2개 있는 것 ※ 어종별 코드번호 기재방법 1. 뉴질랜드 : 1-1 윙팅톤오징어 1-2 콜드오징어 2. 호주 : 콜드오징어 3. 북태평양 : 3-1 빨강오징어 3-2 살오징어 4. 포클랜드 : 4-1 아르헨티나 짧은 지느러미오징어 4-2 벨오징어 5. 페루 :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주조업위치 위도 도분 NS 경도 도분 EW 해저수심	기 상				이 장 환 경 표면 수온 수온	수동조획기 사용수 용수 대수	조업시간			수동조획기 획량	자동조획기 사용대수		소요인원	조업시간			자동조획기 획량			총어획량														
		풍향력	기압	기온	천후			시작	종료	소계		물래	2중물래		시작	종료	소계	상자	상자	상자		상자													
		~m	~m	~m	~m			시분	시분	시분		상자	대수		대수	인	시분	시분	시분	상자		상자	상자	상자											
1	IN2S																																		
2	IN2S																																		
3	IN2S																																		
4	IN2S																																		
5	IN2S																																		
6	IN2S																																		
7	IN2S																																		
8	IN2S																																		
9	IN2S																																		
10	IN2S																																		
11	IN2S																																		
12	IN2S																																		
13	IN2S																																		
14	IN2S																																		
15	IN2S																																		
16	IN2S																																		
17	IN2S																																		
18	IN2S																																		
19	IN2S																																		
20	IN2S																																		
21	IN2S																																		
22	IN2S																																		
23	IN2S																																		
24	IN2S																																		
25	IN2S																																		
26	IN2S																																		
27	IN2S																																		
28	IN2S																																		
29	IN2S																																		
30	IN2S																																		
31	IN2S																																		
								합 계																											
											대수																								
											상자																								
											M/T	대수	대수	인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두족류어체측정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서명)
 (TEL :)

어종명	조사선명	선박톤수	신호부자
어획연월일	어획위치	표층수온	어획연월일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년 월 일 항입항

번호	전장(mm)	동장(mm)	체중(g)	성 별		생식선속도			번호	전장(mm)	동장(mm)	체중(g)	성 별		생식선속도			비 고	
				암컷(♀)	수컷(♂)	미숙	중숙	완숙					암컷(♀)	수컷(♂)	미숙	중숙	완숙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기 재 요 령

- 어종구분 : 갑오징어류-문어류 및 오징어류는 종명까지 분류 기재합니다.
- 측정횟수 : 순별(10일간격)로 1회 측정하되 월 2회 측정합니다.
- 측정미수 : 무작위 추출하여 1회 30미터씩 측정합니다.
- 측정단위 : 전장, 동장은 mm, 체중은 g단위로 합니다.
- 측정기준 : ①체중-어체 가공처리전의 전중량(Round Weight)에 대하여 측정합니다.
 ②크기-문어류에 대하여는 전장을, 갑오징어류 및 오징어류에 대하여는 동장을 측정합니다.



- 성별구분 : 외부형태에 의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형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 생식선속도 상태 : 아래의 판정기준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단계에 ○표 합니다.

미 숙	암 컷(♀)		수 컷(♂)
	난립식별 불가		
난소에서 난립식별 가능			정낭보유
중 숙	난소 및 수란관에 반투명한 황색의 완속란이 보임		정소 및 정낭집 보유
완 숙	난소 아래의 부난포선이 홍색을 띠		정소 충만 정낭 보유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물관련법령집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2.3.9>

북양트롤어업어획실적보고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성명)
 (TEL :)

보고선박	선박번호부자	총 톤 수	마 력	HP
항해차수	차 항 해 일 수	일 조업일수	승 무 원	명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일 항입항

항 목	사용어구 종류	월	일	주 조 업 위 치 도				오토 트롤	저층 수은	사 어 구 인망횟수	용 어 구 인망횟수	사 어 구 인망시간 (시간분)	용 어 구 인망시간 (시간분)	저층 수심 (m)	어획 수심 (m)	명태	대구	인연 어	불락 류	가자 미류	청어	기타 어류	오징어 류	가오 리류	기타								계	
				도·분·초	N·S	분·초	E·W																											
그물제작회사				1	1N2S	1E2W	종 회 초	℃								216	211	602	589	129	761	899	979	859	999									
				2	1N2S	1E2W																												
치사용연도및항차				3	1N2S	1E2W																												
				4	1N2S	1E2W																												
어구전장(m)				5	1N2S	1E2W																												
				6	1N2S	1E2W																												
코드앤드망목(mm)				7	1N2S	1E2W																												
				8	1N2S	1E2W																												
HR 길이(m)				9	1N2S	1E2W																												
				10	1N2S	1E2W																												
GR 길이(m)				11	1N2S	1E2W																												
				12	1N2S	1E2W																												
SR 길이(m)				13	1N2S	1E2W																												
				14	1N2S	1E2W																												
망 고(m)				15	1N2S	1E2W																												
				16	1N2S	1E2W																												
망구둘레(m)				17	1N2S	1E2W																												
				18	1N2S	1E2W																												
				19	1N2S	1E2W																												
				20	1N2S	1E2W																												
				21	1N2S	1E2W																												
				22	1N2S	1E2W																												
				23	1N2S	1E2W																												
				24	1N2S	1E2W																												
기 재 요 령				25	1N2S	1E2W																												
				26	1N2S	1E2W																												
1. 하루중 조업위치가 크게 변경될 경우에는 위치별로 기재합니다.				27	1N2S	1E2W																												
				28	1N2S	1E2W																												
2. 하루중 사용어구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용 어구별로 인망횟수·인망시간 및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합니다.				29	1N2S	1E2W																												
				30	1N2S	1E2W																												
3. 어종별 1상자당 중량은 어체 가공전의 원어 중량(Round weight)에 대한 무게로 기재 합니다.				31	1N2S	1E2W																												
				합 계				회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상자 kg
4. 위도 및 경도는 분단위까지 기록하며 망 위는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합니다.				1상자당 평균중량																														
				월 별 총 중 량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저연승어업 및 통발어업어획실적보고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성명)
 (TEL :)

선 박	총 톤 수	항 해 자 수
항해일수01	조업일수02	승 무 원03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책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일 항입항

조업어장 04		월 일	양 승 초 위 지				부 승 초시각	부 승 종시각	양 승 초시각	양 승 종시각	평 균 회 회 시간	난 시 수 통발	투 승 횟수	어 류										기타	합계	비 고					
1. 베링해	4. 중남부태평양		위도 N/S	경도 E/W	21	22								23	24	30	31	32	33	34	35	36	37								
2. 동북태평양	5. 인도양	1	1N2S	1E2W				1조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3. 서북태평양	6. 대서양	2	1N2S	1E2W				2조																							
어 선 규 모 05		3	1N2S	1E2W				2조																							
1. 200톤 이하	5. 501톤 이상	4	1N2S	1E2W				2조																							
2. 201톤~300톤		5	1N2S	1E2W				2조																							
3. 301톤~400톤		6	1N2S	1E2W				1조																							
4. 401톤~500톤		7	1N2S	1E2W				2조																							
어 업 종 류 06		8	1N2S	1E2W				2조																							
1. 돛저연승	4. 계통발	9	1N2S	1E2W				1조																							
2. 저어류저연승	5. 새우통발	10	1N2S	1E2W				2조																							
3. 장어통발	6. 기 타	11	1N2S	1E2W				2조																							
기 타 사 항		12	1N2S	1E2W				2조																							
저연승 바스켓트 낚시수	개	13	1N2S	1E2W				1조																							
양 육 항		14	1N2S	1E2W				2조																							
상자당평균무게	kg	15	1N2S	1E2W				2조																							
기 재 요 령		16	1N2S	1E2W				2조																							
		17	1N2S	1E2W				1조																							
		18	1N2S	1E2W				2조																							
		19	1N2S	1E2W				2조																							
		20	1N2S	1E2W				2조																							
		21	1N2S	1E2W				2조																							
		22	1N2S	1E2W				2조																							
		23	1N2S	1E2W				2조																							
		24	1N2S	1E2W				2조																							
		25	1N2S	1E2W				1조																							
		26	1N2S	1E2W				2조																							
		27	1N2S	1E2W				2조																							
		28	1N2S	1E2W				2조																							
		29	1N2S	1E2W				2조																							
		30	1N2S	1E2W				1조																							
		31	1N2S	1E2W				2조																							
		총 계									개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2.3.9>

원양저어류어체측정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 조 : 해외자원과장

발 신 : 회사(선장) (직인 또는 성명)
 (TEL :)



어 종 별 (지명명)	어 획 및 측정연월일	어 획 위 치 (위도,경도)	사용어구	표본추출당시의 측정어종어획량	어획수심	어획수온	조사선명	선박번호부자

보 고 일	년 월 일
선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해 기 간	년 월 일 항출항 년 월 일 항입항

번 호	전장 (mm)	미 차 체장 (mm)	체 중 (g)	성 별		생식선속도				번 호	전장 (mm)	미 차 체장 (mm)	체 중 (g)	성 별		생식선속도				특이 사항	
				암컷 (♀)	수컷 (♂)	미숙	중숙	완숙 (방중)	방후					미숙	중숙	완숙 (방중)	방후				
1										31											
2										32											
3										33											
4										34											
5										35											
6										36											
7										37											
8										38											
9										39											
10										40											
11										41											
12										42											
13										43											
14										44											
15										45											
16										46											
17										47											
18										48											
19										49											
20										50											
21										51											
22										52											
23										53											
24										54											
25										55											
26										56											
27										57											
28										58											
29										59											
30										60											

기 재 요 령

- 어종구분 : 어종을 종명까지 정확히 구분하여 가능한 영명 혹은 지명명을 병기합니다.
- 측정횟수 : 매월별 주어획어종에 대하여 1회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표본추출방법 : 어종별로 특정양망(haul)어획물에 대하여 1회 60마리이상 무작위 추 출하되 손상되지 아니한 어체에 대하여 측정합니다.
- 측정단위 : 체장은 mm, 체중은 g단위로 합니다.
- 측정기준 : ①체중-어체 가중처리전의 전중량(Round Weight)에 대하여 측정합니다.
 ②체장-명태·대구·임연수어 및 적어등에 대해 서는 미차체장을 가자미류에 대하여는 전장을 측정합니다. 다만, 북해도 근해 출 어선의 경우, 대구는 전장을 측정합니다.

- 성별구분 : 어체의 흉배설강을 중심으로 복부를 절개하여 난소 혹은 정소를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생식선 속도 상태 : 생식선의 상태를 아래의 판정기준을 참조하되, 육안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 미숙 : 생식선이 작음
 암컷-육안으로 난소내에 난립을 구분할 수 없음
 수컷-회고 딱딱함
 - 중숙 : 생식선이 복강의 1/2-2/3를 차지
 암컷-육안으로 난립의 구분이 가능하며 다소 투명함
 수컷-회고 딱딱함
 - 완숙(방중) : 생식선이 복강에 충만
 암컷-난소가 둥근난으로 충만되어 있으며 투명함
 수컷-회고 덜 딱딱함
 - 방후 : 생식선이 거의 텅 비어 있음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1998. 5. 6	해양수산부령제 57호
일부개정	2000. 5. 29	해양수산부령제163호
	2001. 2. 7	해양수산부령제183호(어장관리법시행규칙)
	2002. 4. 9	해양수산부령제221호(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2002. 9. 2	해양수산부령제232호(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4. 1. 16	해양수산부령제264호
	2004. 2. 28	해양수산부령제269호
	2004. 12. 18	해양수산부령제283호
	2005. 7. 1	해양수산부령제299호
	2006. 2. 6	해양수산부령제327호
	2007. 12. 3	해양수산부령제392호
	2008. 2. 4	해양수산부령제408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전부개정	2008. 4.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호
일부개정	2010. 5.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정지·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은 어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

수산관련법령집

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2. 「수산자원관리법」

3. 「어장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사실 확인서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海況)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하고 어업면허증등을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의 조건, 종묘의 수급상황, 어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횟수를 포함한다)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어획물운반선의 대체·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을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해기사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외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그 억류기간을 감경한다.
4. 관할 행정청은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어업의 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관할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를 포함한다)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등이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장(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II.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어업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의 대상인 경우 : 행정처분등 기준일수의 2분의 1
 - 나.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 또는 해기사면허취소 요구의 대상인 경우 : 90일 이상의 어업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

II. 개별기준

1. 면허어업

가. 수산업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8조	경고	취소	-
2.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3.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에 관한 시설·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4. 가두리시설의 설치사실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5.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6.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을 위반한 경우(「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7.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장에서 잠수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8조 제4항	경고	경고	취소
8.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9.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19조	경고	취소	-
10.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19조	경고	경고	취소
11. 어업권자가 어업면허변경사항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제20조	경고	경고	취소
12.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1조	경고	취소	-
13.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3조	경고	취소	-
14.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27조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수산물관련법령집

15.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28조	경고	경고	취소
16.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경고	경고	취소
17.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0조	경고	취소	-
18.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경고	경고	취소
19.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	경고	취소	-
20.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3조	경고	취소	-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35조 제1호	취소	-	-
22.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38조	경고	경고	취소
23. 어촌계 등이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경고	경고	취소
24. 입어 등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한 경우	제40조	경고	경고	취소
25.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1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26.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66조	경고	취소	-
27.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경고	경고	취소
28.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69조 제1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9.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69조	경고	경고	취소
30.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2조	경고	경고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나. 수산자원관리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14조 제5항	경고 정지30일	경고 정지45일	취소 취소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경고	경고	취소
3.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망·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제25조	경고	취소	-
4.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경고	취소	-

다. 어장관리법

위반 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해조류 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으로 한정한다)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2.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제30조 제49조 제60조	경고	취소	-	-	-	-

수산관련법령집

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0조 제49조 제60조	경고	취소	-	-	-	-
4.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제49조 제60조	경고	경고	취소	-	-	-
5.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 제49조 제60조	경고	취소	-	-	-	-
6.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정지 30일 추가	취소	-	정지 30일 추가	정지 30일 추가	-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8. 출항·입항 신고 또는 출항·입항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	제3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9.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한 경우(「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6조)	제34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어선단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조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	제34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1. 어선단으로부터 어선이탈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선단장의 어선만 해당된다)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	제3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12. 지정된 안전항로경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8조)	제3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13. 어로 또는 항해가 금지되는 구역 또는 시간을 위반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9조)	제3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14.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해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0조)	제34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가. 피랍(被拉)되거나 나포(拿捕)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취소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15. 어로한계선 이북의 도서지역 어선이 어로한계선 바깥쪽에 설정한 조업구역을 벗어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0조)	제3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6. 서해특정해역 안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제3항)	제3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7. 동·서해특정해역 안에서 10톤 미만의 어선이 동해에서는 동경 130도 59분 51.10초부터 그 동쪽 해역, 서해에서는 동경 124도 59분 53.06초부터 그 서쪽 해역에 출어한 경우(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 밖의 해역에서 조업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3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18. 특정해역의 출어선이 어업정보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	제3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19. 출어한 연근해어선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	제3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0. 거짓으로 위치보고를 한 경우(대리자 및 의뢰자를 포함한다)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	제3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1. 통신기가 설치된 연근해어선이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청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6조)	제34조	-	-	-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22. 경비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7조)	제3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23. 간부선원이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출어한 경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	제3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수산관련법령집

2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35조 제1호 제49조 제60조	취소	-	-	-	-	-
25.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6.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취소	-	-	취소	-	-
		정지 90일	취소	-	정지 90일	취소	-
27.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1조 제57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8.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9. 근해어업·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64조	정지 30일	취소	-	-	-	-
30.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한 경우	제41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45일	-	-	-
31.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제41조	경고	경고	취소	-	-	-
33.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제5항)	제41조 제64조	경고	경고	취소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34.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 종묘시설을 한 경우	제41조	경고	취소	-	-	-	-
35.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밖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3조 제1항	경고	취소	-	-	-	-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36.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경고	10일	15일	-	-	-
37.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44조	30일	45일	60일	-	-	-
38.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 증명서 회수	-	-	-
39. 어업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의 경우	제48조	경고	경고	취소	-	-	-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40.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의 경우	제48조	경고	경고	취소	-	-	-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	-	-
41.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8조	경고	취소	-	-	-	-
4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	제49조 제58조						

수산관련법령집

장이 어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가. 정지요청을 한 경우 나. 취소요청을 한 경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4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7조 제2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4.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8조 제1항 제1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5.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3조 제60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6.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8조 제60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47.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39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8.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선망어업으로 한정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9.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제4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50. 외국과의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5호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51.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66조	취소	-	-	취소	-	-
52. 어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53.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 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69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54.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69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9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9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55.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가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70조 제2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6.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2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57.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위 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2.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14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제장은 채중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5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거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4조 제5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수산관련법령집

6.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의끌이·서남해구의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소형 선망어업으로 한정한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2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7.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2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8.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9.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1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연근해 어선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선장이 어선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의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제22조 제1호·제2호 제22조 제3호	정지 3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45일	정지 90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45일	정지 90일 정지 60일
11.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제2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2.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의끌이·서남해구의끌이·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대형·소형 선망어업으로 한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13.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제1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4.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23조 제2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5. 승인 또는 어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한 경우	제23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였거나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7.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25조	정지 60일	취소	-	-	-	-
1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멸종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의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5조 제1항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19.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4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0.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한 포획·채취의 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1.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어획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8조 제4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2.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의 대상 수산자원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수산관련법령집

다. 어장관리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밭줄식· 말목식·뗏목식종묘생산어업으로 한정한다)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선박안전 조업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전문개정	1982. 3. 17	내 무 부 령제 367호 · 국방부령제 342호 · 농 산 부 령제 859호 · 교통부령제 733호
개정	1985. 6. 7	내 무 부 령제 432호 · 국방부령제 371호 · 농 수 산 부 령제 934호 · 교통부령제 819호
	1987. 7. 3	내 무 부 령제 458호 · 국방부령제 388호 · 농 립수산부령제 982호 · 교통부령제 856호
	1989. 4. 13	내 무 부 령제 489호 · 국방부령제 401호 · 농 립수산부령제1026호 · 교통부령제 904호
	1991. 9. 19	내 무 부 령제 543호(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
	1992. 9. 5	내 무 부 령제 571호 · 국방부령제 433호 · 농 립수산부령제1104호 · 교통부령제 985호
	1994. 10. 15	내 무 부 령제 628호 · 국방부령제 450호 · 농 립수산부령제1156호 · 교통부령제1032호
	1997. 8. 30	내 무 부 령제 716호 · 국방부령제 478호 · 해양수산부령제 30호
	1999. 8. 24	해양수산부령제 133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시행규칙)
	2000. 8. 9	행정자치부령제 104호 · 국방부령제 518호 · 해양수산부령제 172호
	일부개정	2006. 3. 17 국 방 부 령제 594호 · 공동부령제00333호
전부개정	2007. 12. 3	해양수산부령제 392호
일부개정	2008. 3. 3	농 립수산식품부령 제1호
	2010. 1. 14	농 립수산식품부령 제111호
타법개정	2010. 4. 28	농 립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에 대한 어업 및 항해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과 항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8>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어로한계선) ① 동해에서 어로(漁撈)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이하 “어로한계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1. 북위 38도 33분 09.8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2.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 동경 132도 34분 17초)

② 서해에서 어로한계선은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1.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2.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3. 미법도 최동단
4. 서검도 최동단
5. 불음도 최남단
6. 주문도 최서단
7. 주문도 최남단
8.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39초)
9.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03분)
10. 북위 37도 31분 31.06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1분 21초, 동경 126도 03분)
11.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0분, 동경 126도 00분)
12.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0분, 동경 125도 50분)
13. 북위 37도 25분 10.10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25분, 동경 125도 50분)
14. 북위 37도 25분 10.08초, 동경 124도 43분 33.18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25분, 동경 124도 43분 40초)
15. 북위 37도 44분 54.94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44분 45초, 동경 124도 43분 40초)
16. 북위 37도 47분 54.92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47분 45초, 동경 124도 39분 45초)
17. 북위 37도 52분 09.89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2분, 동경 124도 39분 45초)
18.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6분 59.20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37분 06초)
19.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00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로한계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부도 1 및 부도 2와 같다.

제4조(성어기의 설정 등) ① 어획고의 증대와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성어기(盛漁期)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동해

가. 명태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나. 오징어 성어기 :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서해

가. 오징어 성어기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 홍어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 병어 성어기 :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꽃게 성어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7조에 따른 각 어로보호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어기 동안 특정해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1. 해양경찰함정이나 어업지도선의 배치 및 어선과의 통신방법

2. 어선의 특정해역 출입시간과 조업시간 등에 관한 통제대책

제5조(조업해역의 구분) ① 어선의 조업해역은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으로 구분한다.

② 특정해역은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말한다.

1. 동해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 동경 132도 34분 17초)

나. 북위 38도 00분 10.06초, 동경 132도 49분 50.5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

다. 북위 38도 00분 09.97초, 동경 130도 09분 51.3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00분, 동경 130도 10분)

라. 북위 38도 15분 09.86초, 동경 129도 59분 51.4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15분, 동경 130도 00분)

마. 북위 38도 15분 15.84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2. 서해

가.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 37

도 30분, 동경 126도 00분)

나. 북위 37도 00분 10.28초, 동경 125도 59분 52.77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다. 북위 37도 00분 10.25초, 동경 123도 59분 53.42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라.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00분)

③ 조업자제해역은 서해 및 대화퇴해역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④ 일반해역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제6조(조업자제선) 조업자제선은 서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 대화퇴해역에서 어로금지나 항해금지를 표시하는 선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선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7조(어로보호본부) ① 특정해역의 어로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속초해양경찰서에 동해어로보호본부를 두고, 인천해양경찰서에 서해어로보호본부를 둔다. <개정 2010.1.14>

1. 어로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어선 출항·입항 및 어선 출어등록 현황의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 해양사고 구조
4. 범법 어선의 적발·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어로보호본부는 해당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경비합정근무자는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 2010.1.14>

1. 삭제 <2010.1.14>
2. 삭제 <2010.1.14>
3. 삭제 <2010.1.14>

③ 각 어로보호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어로보호본부장은 그 해양경찰서장이 되며, 그 어로보호본부의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삭제 <2010.1.14>
- ⑤ 삭제 <2010.1.14>
- ⑥ 삭제 <2010.1.14>
- ⑦ 삭제 <2010.1.14>

⑧ 어로보호본부의 경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와 군부대 간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⑨ 삭제 <2010.1.14>

제8조(어로보호협의회) ① 어로보호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에 어로보호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보호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어로보호본부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① 선박의 출항·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포구에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1.14>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포구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포구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항·포구

② 신고기관은 출항·입항 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 출항·입항 신고소(이하 “신고소”라 한다) 및 출항·입항 대행신고소(이하 “대행신고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14>

③ 통제소에는 경찰요원(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파견하는 어선안전점검요원(이하 “수협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신고소에는 경찰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며, 대행신고소는 그 항·포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자가 운영한다. <개정 2010.1.14>

④ 통제소의 등급 구분과 경찰요원 및 수협요원(이하 “통제요원”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항·포구별로 선적(船籍)을 둔 선박의 수, 출항·입항의 빈도 및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1.14>

⑤ 통제소 및 신고소에 각각 통제소장 및 신고소장(이하 이 조에서 “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14>

⑥ 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통제요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⑦ 소장은 수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협요원의 조합장에게 교체하거나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협요원으로 배치받은 경우
 2. 자질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통제요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거짓으로 하거나 조작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⑧ 소장은 성어나 그 밖에 선박의 출항·입항이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통제요원만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해양경찰서장 또는 조합장에게 통제요원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조합장은 출항·입항신고 및 통제업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통제소) ①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어로보호본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 통제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포구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그 항·포구의 등급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08.3.3>

③ 경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1. 출항·입항 신고의 접수
2. 선원의 신원 확인
3. 선박에 대한 임검(臨檢)
4. 삭제 <2010.1.14>
5. 선박출항·입항 현황을 해양경찰서장에 보고
6. 귀항하지 아니한 선박을 수배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
7. 범법 선박을 관계 기관에 통보
8. 그 밖에 어로보호본부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④ 수협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1.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출어선에 관한 출어등록
2. 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수의 확인
3. 어선단 편성 또는 어선단 편성의 확인과 어선 승선지도
4. 어선검사 유효기간 및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검사결과의 확인
5. 어선 항해장비(나침반·해도·구명조끼)의 비치 여부 및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된 어선에 대한 그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과 기관설비의 육안이나 청각

등에 의한 안전 점검

6. 어선출항·입항현황, 어선단 편성현황 및 출어등록 현황을 어업정보통신국과 어로보호본부에 통보
7. 선원자격(해기사면허증·선원수첩)의 확인
8. 어업정보통신국에의 가입 여부 확인
9. 그 밖에 어로보호본부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11조 삭제 <2010.1.14>

제12조(신고소) ①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신고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0.1.14>

② 신고소의 임무에 관해서는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4>

제13조(대행신고소) 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소 또는 신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포구에 대행신고소를 지정한다. <개정 2010.1.14>

② 대행신고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항·입항 신고의 접수
2. 귀항하지 아니한 선박이나 의심스러운 선박을 군이나 경찰기관에 신고

제14조(관할 군부대장의 통제)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그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4]

제15조(출항·입항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제6항에 따른 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이하 “선박출입항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출항·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처음으로 출항·입항하는 경우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4>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거나 그 해역에서 조업한 후 귀항하는 경우 외에는 어선출항·입항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4, 2010.4.28>

1. 특정해역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 ⑤ 해양경찰서장은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전화신고 등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서면 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 ⑥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 명부를 첨부(승선원이 1명인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은 그 어선의 선적항에 설치된 통제소나 신고소(1개의 항·포구에 2개 이상의 통제소 또는 신고소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통제소 또는 신고소)에서 발급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
4. 선박무선국허가증

5.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

⑦ 어선이 출항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업장소, 기항지 또는 귀항 예정일자를 변경하려면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어업정보통신국은 해당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은 변경된 기항지에 입항한 즉시 모든 사용가능항수단으로 출항지의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⑧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입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입항통보를 하여야 하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開局)하여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하는 5톤 미만 어선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제16조(어선 출어등록) 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신고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은 법에 따라 어업이 허가·면허 또는 신고된 어선만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출어등록을 한 어선에는 출어등록번호를 매기며,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출어등록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을 구분하여 매겨야 한다.

④ 제3항의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어선단 조업) 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신고소의 통제요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하며,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 출어·조업하려는 어선 중 통신시설이 없는 어선은 통신시설이 있는 어선과 어선단을 편성한 후 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② 같은 어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통제요원이 지정한 선장(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어업인이 자체 지정한 선장을 말한다. 이하 “선단장”이라 한다)의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선단장은 어선단에 속하는 선박이 선단장이 승선한 어선과 동시에 출항·입항하고,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③ 제1항에 따른 어선단은 어선의 업종·성능·지역 및 선장 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2척 이상으로 편성하고 선단장은 선장의 지휘능력과 어선의 성능을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④ 어선단은 동시에 출항·입항하고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어선단에서 이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업정보통신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1. 어선장비의 고장
2. 인명사고
3. 조기 만선(조기 만선)
4. 일반 안전해역으로 조업장소의 이동
5.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避航)
6. 어구·어법의 특성상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⑤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 해당 신고기관에 어선의 이탈 현황을 지체 없이 알리고, 잔류어선이 1척일 경우에는 그 어선을 다른 어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기상 악화 시 또는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단에 편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⑥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은 어로보호본부장이 통제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4항에 따른 어선단 이탈의 승인을 받아 귀항한 어선이 다시 출어하려는 경우, 다른 출어선이 없어 어선단을 편성하여 출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출항을 승인하여 본래의 어선단에 복귀하게 하거나 다른 어선단에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안전항로경유지를 지정·고시하고, 선박이 그 지정된 경유지를 거쳐 항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 필요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면 일정 해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정된 해역에서의 항해 또는 어로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②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 외의 해역에 대하여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어로 및 항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역의 범위와 시간 및 안전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방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 어로와 항해가 금지되는 시간에 긴급 출항·입항할 수 있는 항·포구 및 통로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월선의 금지 등) ① 선박은 제3조에 따른 어로한계선이나 제6조에 따른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어로한계선 인근지역·도서의 어선. 이 경우 어로 및 항해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결정하여 고시한다.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어선 또는 외국정부의 입허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수역에 출어하는 어선. 이 경우 출입항로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결정하여 고시하거나 통보한다.

-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신시설·나침반·해도·구명조끼·조석표·라디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해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 및 10톤 미만의 어선은 예외로 하되, 닻과 노를 갖추어야 한다.
- ②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해에서는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부터 그 동쪽 해역, 서해에서는 동경 124도 59분 53.06초(동경측지계 : 동경 125도 00분)부터 그 서쪽 해역에 출어할 수 없다. 다만,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까지 출어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하면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2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어로 제한)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어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3조(어업정보통신국에의 가입 및 위치보고 등) ①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어업정보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선은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에, 그 밖의 해역 출어선은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이나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중계보고할 것을 의뢰하여야 하며, 중계보고의 의뢰를 받은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이나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4>

1. 특정해역 출어선 : 1일 3회 이상

2.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 1일 2회 이상

3. 일반해역 출어선 : 1일 1회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 : 속초어업정보통신국

2. 서해 : 인천어업정보통신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단을 이탈하여 단독 귀항하는 어선은 4시간마다 어업정보통신국에 그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역별 출어선의 위치보고를 종합하여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하여는 어로보호본부에 보고하고, 그 밖의 해역 출어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해서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수배방송 등의 방법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위치보고 시기까지도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어선을 해당 어로보호본부, 해양경찰서 및 출항·입항 신고기관 등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⑥ 출어 중인 어선이 통신기가 고장나서 제1항에 따른 위치보고를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소속 선단선(船團船)이나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려 다른 어선이 위치보고를 대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제24조 삭제 <2010.1.14>

제25조(의심스러운 선박의 보고) ①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하여진 긴급보고제도에 따라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발견일시, 의심스러운 선박의 위치·승선자·항해방향·항해목적 등 발견 당시의 관찰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보고 후에도 가능하다면 그 선박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기가 없는 선박의 선장은 통신기가 있는 선박에 제1항의 보고를 의뢰하여야 하며, 보고의뢰를 받은 선박의 선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없으면 귀항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보고를 의뢰하거나, 귀항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어업정보통신국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긴급보고제도에 따라 즉시 인근 경비함정·군부대·경찰관서 및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경보청취의무)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 동안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가 있는 선박은 뉴스 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 ① 선장은 경비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으면 즉시 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대피상황을 지체없이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 및 대피신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기적을 길게 5회 이상 울린다.
2. 야간 : 빛을 짧은 부호(符號)로 10회 이상 비춘다.

제28조(정선명령의 준수) ① 선장은 경비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정선명령신호를 받은 때와 우리나라 항공기가 어선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을 투하할 때에는 정선(停船)하고, 정하여진 신호로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신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황색 및 흑색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한다.

2. 야간 : 기적을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계속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은 부호, 긴 부호 순으로 계속 비춘다.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간부선원”이라 한다)는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책임 아래 조합 단위로 피교육자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연 1회 4시간씩 정기교육(정기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해당 조합의 지소 또는 출장소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기관의 장(시장·군수·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업종별로 성어기간 전에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특별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 및 특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어로보호본부장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⑦ 「항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성된 어민예비군 및 어선단예비군으로서 예비군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4>

제31조(범법 선박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 및 그 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법, 「어선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어업자원보호법」 및 「개항질서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1.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무단으로 넘은 선박
2. 출어등록 및 출항·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
3.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어선
4. 교육(특별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부선원이 승선하여 출어한 어선
5. 어선단에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어선단으로부터 무단으로 이탈한 어선
6.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으로서 어업정보통신국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기가 고장난 상태로 출어한 어선
7. 특정해역 내의 어로제한에 관한 제21조를 위반하여 특정해역에 출어한 어선
8. 그 밖에 이 규칙을 위반한 선박

부 칙 <제392호, 2007.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중 “10톤”을 “15톤”으로 한다. 다만, 개측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기관”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II.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

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④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⑦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

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제2호,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6>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111호, 2010. 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입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동신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신고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신고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

수산관련법령집

규칙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20호, 2010.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번호 : 호		어선출(입)항신고서						처리기간			
선명											
신고인인적사항	선 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 락 처 (전 화)					
	선 장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 락 처 (전 화)					
선박 제원	등록번호			톤 수			업 종				
	속 력			통신기			선적지 (船籍地)				
신고사항											
출 항							입 항				
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항예정		신고자 성 명 (인)	확 인		통제 (신고) 소장	일시	장소	확인 (인)
			일시	장소		수협	경찰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수산관련법령집

(뒤 쪽)

일시	출항지	조업해역	입항 예정		신고자 성명 (인)	확 인		통제 (신고) 소장	일시	장소	확 인 (인)
			일시	장소		수협	경찰				
<p>「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항 사실을 신고합니다.</p> <p>출항·입항 소장 귀하</p>											
<p>구비서류: 선원명부 1부(승선원이 1명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p>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수 협	경 찰	소 장	
번호 : 호		선박출(입)항신고서				처리기간	
선명						즉 시	
신 고 인	선 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박신고원사 및 항	선 종		등록번호		선 적 지 (船籍地)		
	총 톤 수		순톤수		출항·입항지		
	출(입)항 일 시		목적지		목적지 출항·입항 일 시		
	기 항 지		계선장소		선 원 수	명	
	비 고						
적 재 화 물 목 록							
품 명	수 량	톤 수	송 화 인	수 화 인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항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출항·입항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3호서식]

선 원 명 부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 및 수첩번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14>

<p style="text-align: center;">↕ 6mm</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은 출항신고를 할 때에 제시하여야 합니다.2. 이 증에 적힌 사항 중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그 증서를 제시하고 기재사항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3. 이 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합니다.4. 이 증은 조업할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5. 이 증은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div> <p style="text-align: center;">↕ 6mm</p>	<p style="text-align: center;">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구비서류확인증</p> <p>선 명 :</p> <p>선박번호 :</p> <p>선주 성명 :</p> <p>주민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88mm×125mm[(인쇄용지(특급) 120g/m²)]</p>
--	---

(내부)

건 명	기 재 사 항			
	내 용	1회	2회	3회
선박검사증	증서번호			
	유효기간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증서번호			
	선 적 항			
	발 행 일			
어업허가장	허가번호			
	어업종류			
	유효기간			
선박무선국 허가장	허가번호			
	유효기간			
어업정보통 신국 가입증	증서번호			
	가입일자			
	유효기간			

확 인

위의 증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출항·입항 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출 어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 사항	등록번호		선 명	선 종	
	선박번호		톤 수	마력 수	
	어 업 명		어업허가번호	승선원 수	명
	비 고				
간 부 선 원 명 단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어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출항·입항 소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14>

(앞 쪽)

등 록 증				
등록번호:		선 명:		
선박번호:		호(톤 디젤소구	마력)	
어업명:		어업허가번호:		
등록지: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확인(수협요원 또는 경찰요원)
선 주				
선 장				
선 장				
선 장				
위와 같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출어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출입항		년 월 일 소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60g/m²]

(뒤 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하면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선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출 어 등 록 대 장

등록일자	등록번호	선명	톤 수	마력	어업명	어업허가번호	승선원 수	선주 성명	선주 주소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p>제 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p> <p>선박번호 :</p> <p>선 명 :</p> <p>톤 수 :</p> <p>호출부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선박의 교신가입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어업정보통신국장</p>
--

88mm×125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 쪽)

구 분 연도별	상 반 기		하 반 기	
	확인일자	확인자 직책·성명 [㉠]	확인일자	확인자 직책·성명 [㉠]
년				
년				
년				
년				

주 의 사 항

이 증은 매년 상·하반기에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제9호서식]

(앞 쪽)

<p>제 호</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10px 0;">교육(정기·특별)이수증</p> <p>성 명:</p> <p>주민등록번호:</p> <p style="margin-top: 20px;">위 사람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수산업협동조합장 <input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right;">어로보호본부장 <input type="checkbox"/></p>
--

65mm×95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 쪽)

교육이수내용			
구분(정기·특별)	일시	실시자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제1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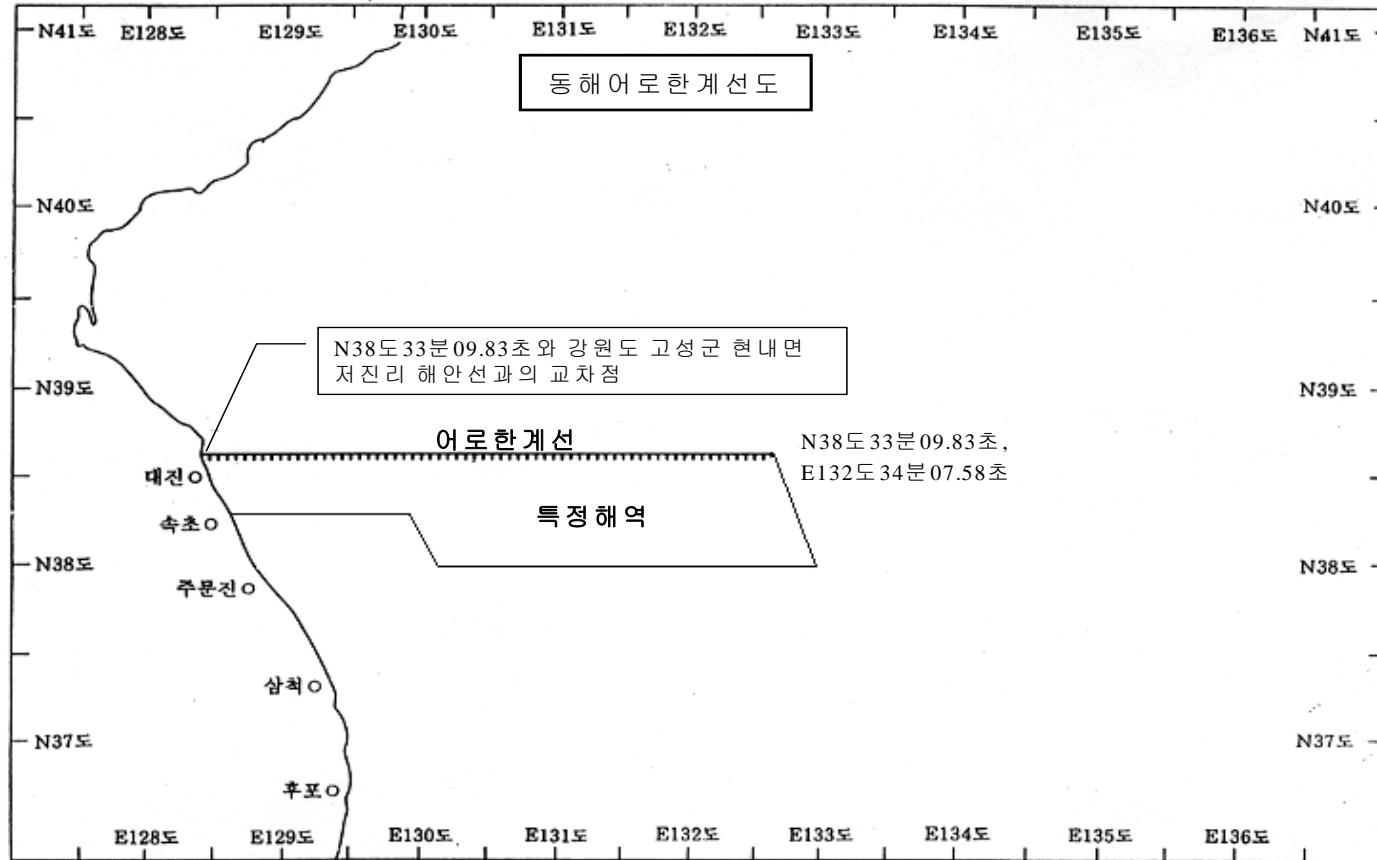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발급 연월일	어업별	선명	성명	직책	교육 실적				비고
						1회	2회	3회	4회	

교육실적란에는 교육 연월일과 담당교관의 직책·성명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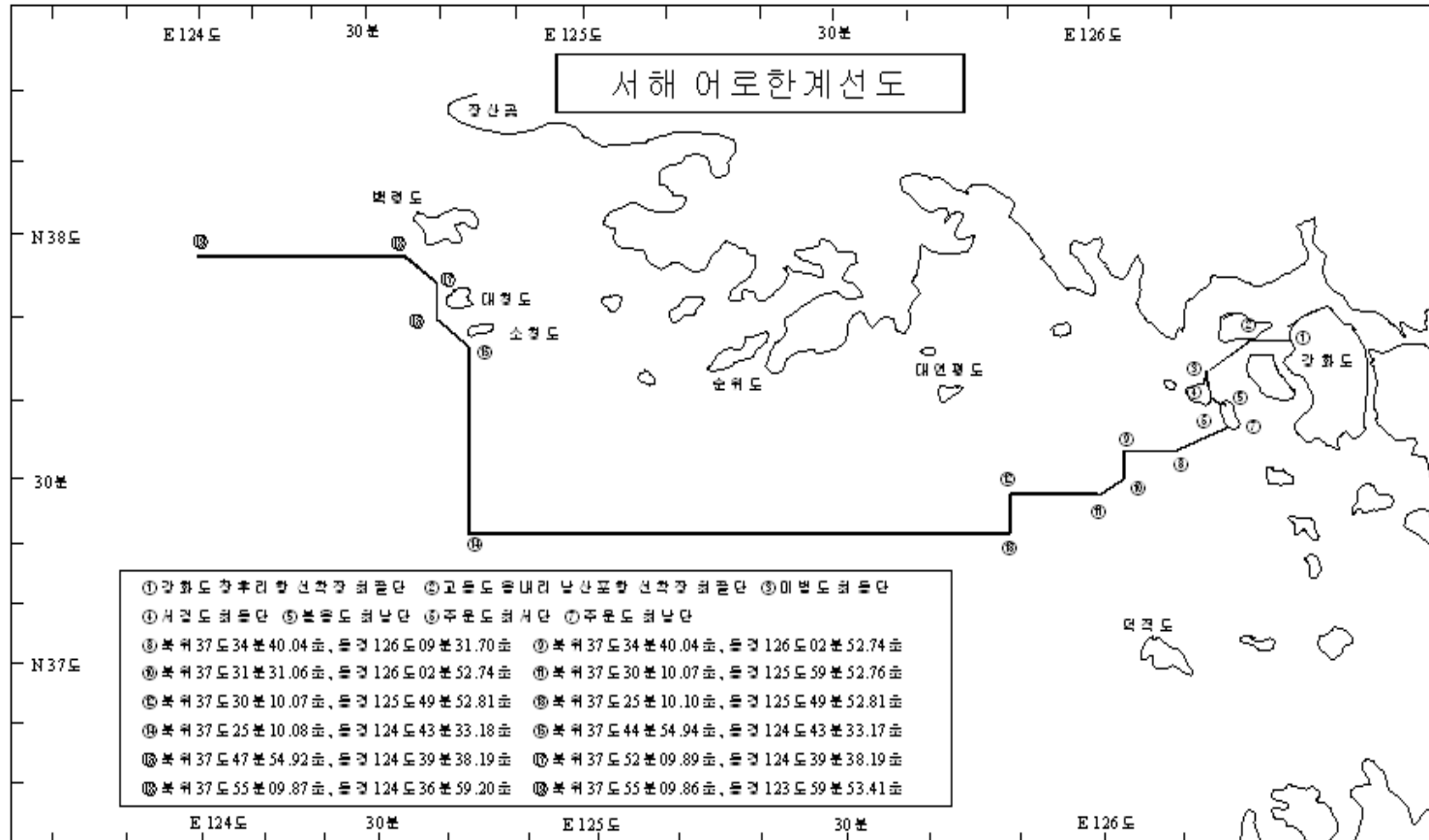
297mm×210mm(인쇄용지 60g/m²)

[부도 1]



[부도 2]

(부 도 2)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제정	2000·3·18	해양수산부령 제161호
전부개정	2007·9·7	해양수산부령 제384호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1호
	2008·4·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호
타법개정	2010·4·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제2조(적용 범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용자하는 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제3조(용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용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용자금의 지원 한도, 용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용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용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용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4조(용자금취급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용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5조(용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용자금취급기관은 용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제4조에 따른 용자금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용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받은 경우
2. 용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수산관련법령집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부 칙 <제384호, 2007.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5호, 2008. 4. 8>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제120호, 2010.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2009· 4· 22 법률 제9627호
일부개정 2010· 5· 17 법률 제1029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제4조(국제협력증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 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 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에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 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 1 절 포획·채취 등 제한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부착된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업금지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휴어기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구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절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어선의 선복량 제한기준 및 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식어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②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 절 어업자협약 등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①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협약 체결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약 실행의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 1 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汚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대상어종·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이하 “부수어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채취

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수산자원조성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방류
2. 건강한 수산종묘의 부화·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종묘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화·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묘를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묘를 생산·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종묘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그 밖의 수산자원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수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요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5조(수산자원의 점·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2개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

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이용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

태체협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

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심의
2. 시행계획의 심의
3. 제21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4. 수산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심의
2.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심의
3.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수산자원사업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③ 수산자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 및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수산자원사업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수산자원사업단의 설치·운영과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5·17]

제55조의3(공무원의 파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7]

제56조(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사법경찰관)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직무·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사업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준용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제63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7 장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6.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공작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0.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2.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수산관련법령집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오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제68조(몰수) 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

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생산·방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 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2중 이상의 자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 보호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호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 5년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으로 지정받

은 수면은 나머지 유효기간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등의 허가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한 원상회복 명령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성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과·징수 또는 면제 대상자로 본다.

제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水産動植物”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水産業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規定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0291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를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 상의 정년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 2010·4·23 대통령령 제22128호
일부개정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제 2 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자원 조달 방안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의 내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구성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 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 3 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 1 절 포획·채취 등 제한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끝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끝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2 절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어구의 규모 제한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은 별표 12와 같다.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은 별표 13과 같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제12조(제작·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채취 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제 3 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 1 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채취를 금지

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시·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54조에 따른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제 2 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종묘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선발육종(選拔育種)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종묘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제24조(수산종묘의 생산·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

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나잠어업(裸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어업 또는 바닥식양식어업
 -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또는 혼합양식어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어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뗏목식종묘생산어업

의 허가를 받은 자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대장의 기록·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2.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시·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人工魚礁施設)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할 내용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관련법령집

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할 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서식에 미치는 영향
2.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림(造林)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의 규모 또는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 6 장 보 칙

제43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 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 조합장(업종별수협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4.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5.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만들어 회의 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갖추 두어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의2(수산자원사업단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수산자원사업단"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수산자원사업단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1.10]

제47조의3(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11.10]

제47조의4(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수산자원사업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수산자원사업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0]

제47조의5(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사업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0]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지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④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처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어업지도사무소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묘의 생산·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7 장 별 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22128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4) 및 나목1), 제21호가목2)·3) 및 나목2)·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3), 제6호가목4), IV.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1.10>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224호, 2010. 6.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헥타르당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헥타르당 21만 6천원
---	------------------

"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22476호, 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다만,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라. 연어	<i>Oncorhynchus keta</i>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i>Konosirus punctatus</i>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	<i>Raja pulchra</i>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i>Larimichthys polyactis</i> Bleeker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3. 갑각류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3) 및 주4)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i>Chionoecetes spp.</i>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수산물관련법령집

			<p>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p> <p>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p>
	다. 붉은대게	<i>Chionoecetes japonicus</i>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i>Penaeus orientalis</i>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필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i>Fulvia mutica</i>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i>Batillus cornutus</i>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꼬끼리조개	<i>Panopea japonica</i>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i>Atrina pectinata</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i>Patinopecten yessoensis</i>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해조류	가. 깨다시마	<i>Kjellmaniella crassifolia</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 검둥감태	<i>Ecklonia cava</i> <i>Ecklonia kurome</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곰피	<i>Ecklonia stolonifera</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i>Undariopsis peterseniana</i>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대황	<i>Eisenia bicyclis</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진도박, 먹도박)	<i>Grateloupia spp.</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 뜸부기	<i>Silvetia siliquosa</i>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뭇가사리	<i>Gelidium amansi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자. 툇	<i>Hizikia fusiformis</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6. 기타	해삼	<i>Stichop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수산관련법령집

-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 가. 북위37도40분29.45초, 동경125도43분02.91초(대연평도 동쪽 끝)
- 나. 북위37도36분46.02초, 동경125도45분04.83초
- 다. 북위37도36분46.02초, 동경125도46분28.83초
- 라.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1분04.80초
- 마.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
- 바. 북위37도00분10.28초, 동경125도59분52.77초
- 사. 북위37도00분10.26초, 동경124도44분38.18초
- 아. 북위37도25분10.08초, 동경124도41분11.19초
- 자.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22분52.96초
- 차. 북위37도28분50.07초, 동경125도22분52.96초
- 카.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5도24분52.95초
- 타. 북위37도32분35.04초, 동경125도29분52.92초
- 파. 북위37도38분00.01초, 동경125도39분57.86초
- 하. 북위37도40분46.27초, 동경125도40분34.93초(대연평도 서쪽 끝)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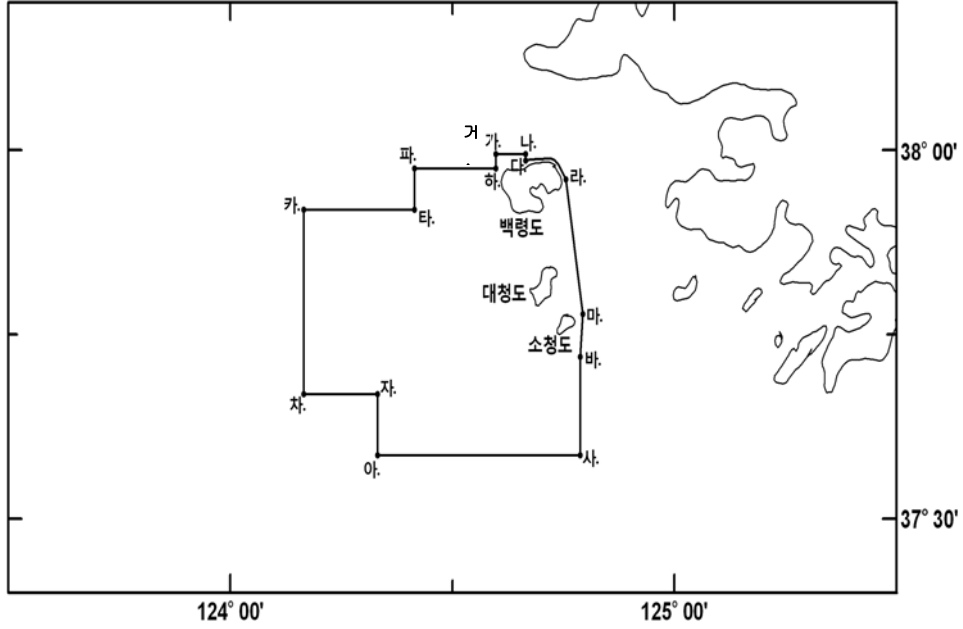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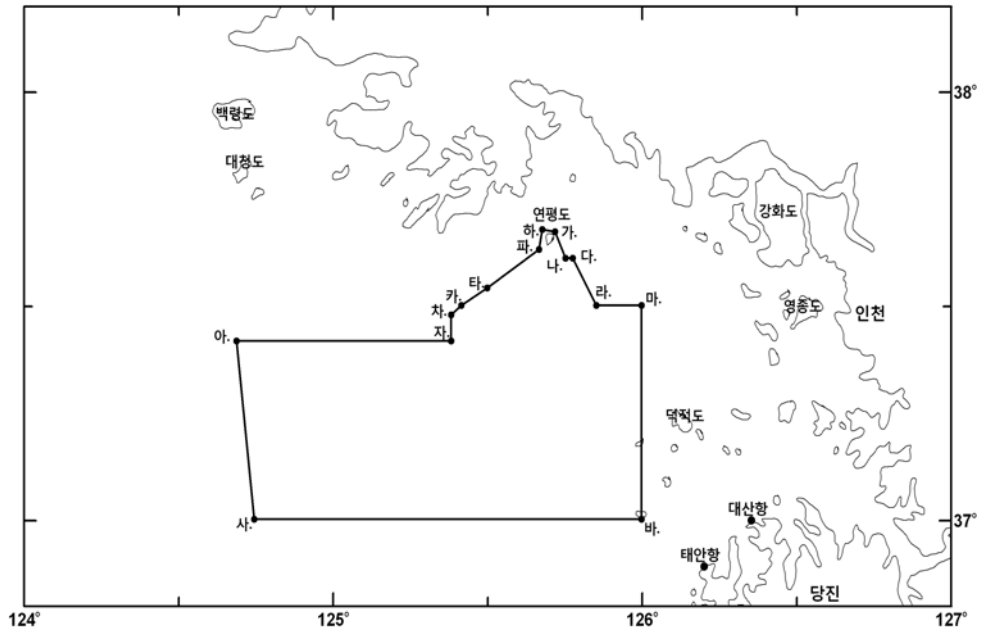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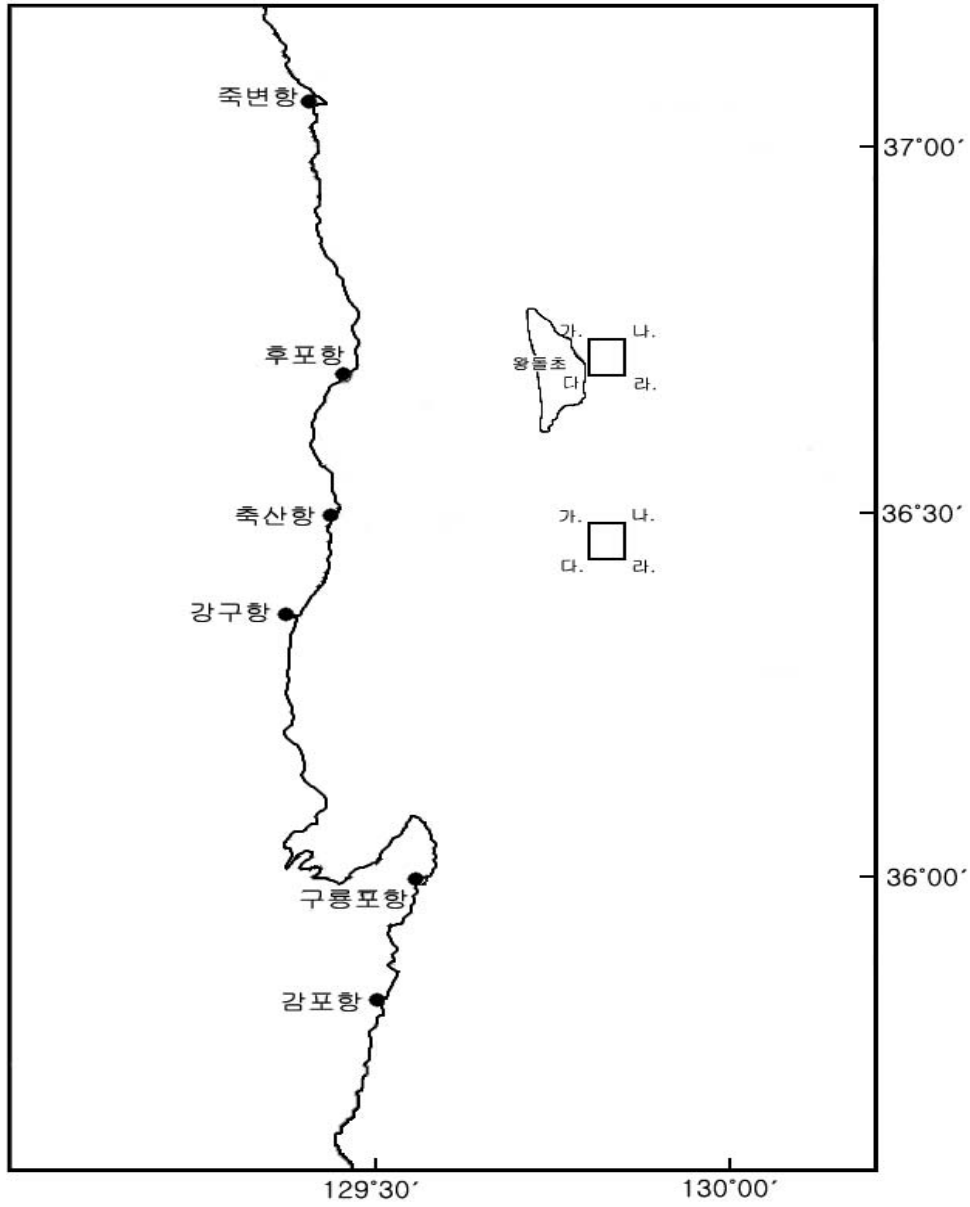


[부도 2]



[별도 3]

대게포획 금지구역도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15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i>Pleuronectes herzensteini</i>	12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2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i>Oplegnathus fasciatus</i>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i>Pagrus major</i>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i>Dentex tumifrons</i>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i>Paralichthys olivaceus</i>	21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i>Lateolabrax japonicus</i>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30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i>Arctoscopus japonicus</i>	11센티미터 이하
	타. 명태	<i>Theragra chalcogramma</i>	27센티미터 이하
	파. 민어	<i>Miichthys miiuy</i>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i>Seriola quinqueradiata</i>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i>Sebastes inermis</i>	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i>Conger myriaster</i>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i>Sebastes schlegeli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i>Raja pulchra</i>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i>Chionoecetes opilio</i>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수산물관련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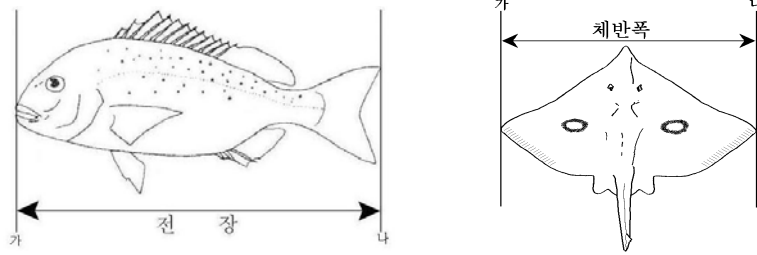
	라.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5센티미터 이하
	마.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10센티미터 이하
3.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i>Batillus cornutus</i>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i>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	<i>Corbicula japonica</i>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4. 기 타	대문어	<i>Octopus dofleini</i>	300그램 이하

※ 비교: 수산동물의 체장(전장, 체반폭, 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측한 값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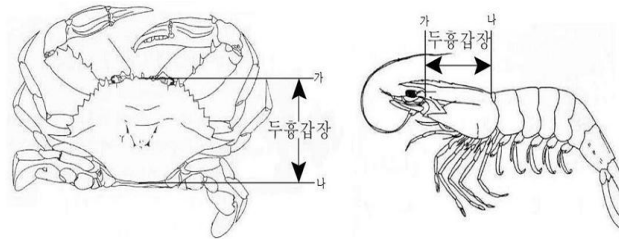
[부도]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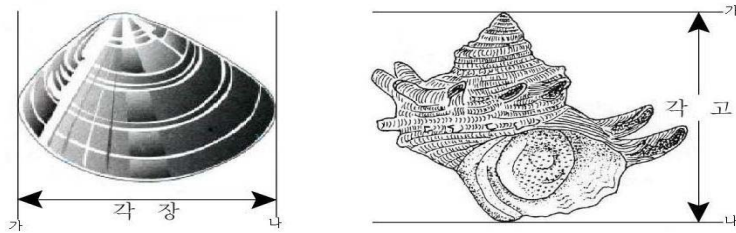
[어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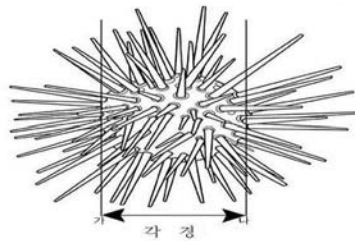
[갑 각 류]



[패 류]



[성 계]



[별표 3]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동경127도59분52.21초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의 교차점,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매화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과 교차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에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별도 1 참조

[별표 4]

동해구의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서남해구의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서남 60도 동 3해리 반의 점, 함경북도 경흥군 난도 고정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부령군 화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 암불 정동 1해리의 점을 거쳐 경성군 어즉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2. 함경북도 경성군 어즉단에서 함경북도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3.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명천군 강면 이도 동쪽 끝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성진군 영대봉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남도 이원군 남도 고정 남동 2해리의 점, 함경남도 이원군 황단단 남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북청군 마양도 영어단 남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함흥군 외양도단 남동 3해리의 점, 그 점에서 강원도 통천군 국도 고정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 고정에서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에 이르는 선의 교차점 및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을 거쳐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양양군 웅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정동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이산포 북쪽 끝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장기갑 정동 2해리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정동 10해리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남동 8해리의 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정남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군도

수산관련법령집

횡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고정 정서 6해리의 점,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천면 매노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천486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릉도 동쪽 끝 북위35도00분11.19초 동경129도59분51.58초의 교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쪽 끝, 북위32도45분12.01초 동경126도59분52.57초의 교점, 북위32도45분12.00초 동경125도59분52.87초의 교점,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암포읍 매로리 동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1.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수원단,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양양군 강현면 용진단에서 90도 7천412미터의 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90도 1만1천199미터의 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울진군 기성면 화모말에서 90도 2만384미터의 점, 영덕군 강구면 강구동 등대에서 90도 2만1천310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갑에서 90도 1만1천119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리말에서

90도 1만2천972미터의 점,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107도 2만2천237미터의 점 및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교: 별도 1 참조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1.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포 동북쪽 끝, 영덕군 강구면 강구 등대 90도 9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청하면 작도 동쪽 끝 90도 1만1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북동쪽 끝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남동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3.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60도 3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암초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이서리 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한산면 외부지도 남쪽 끝, 한산면 추도 남쪽 끝, 통영시 육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주리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쪽 끝 90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라도 소용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라도 죽암각 250도 2천미터의 점, 남면 금오도 원포 남군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지미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녹동 쌍충동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쪽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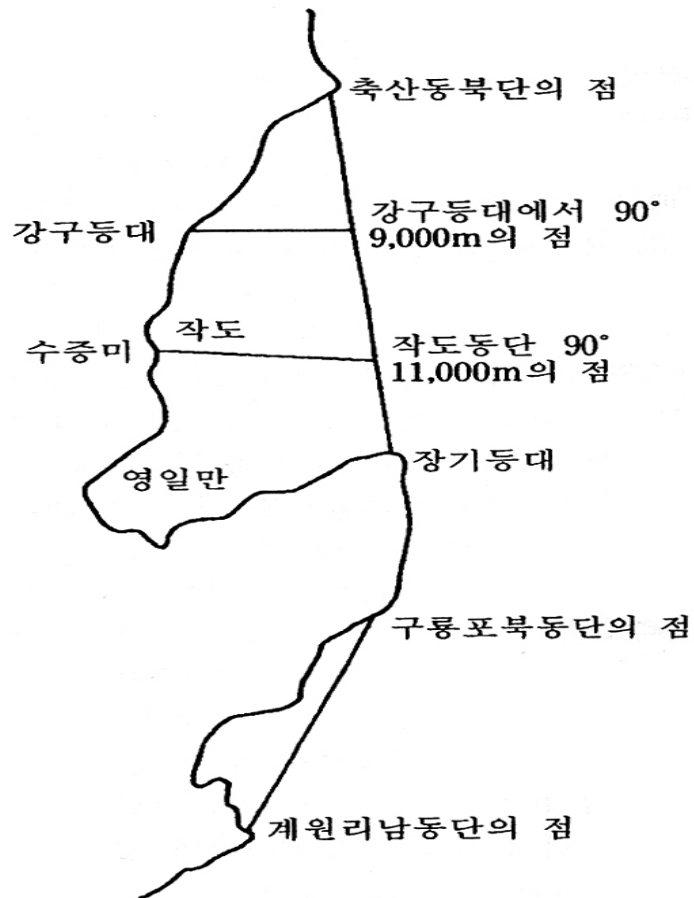
장흥군 관산면 선자리 동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광도·평도·소평도·순도·선죽도·거문도·초도·대삼부도, 완도군 금일면 원도·장도·황제도·덕우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여단도·대제도·소제도,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넙도, 진도군 조도·면관매도·득거도·동거차도·서거차도·만재도, 신안군 흑산면 상죽도·하죽도·승도·다물도·대둔도·가도·대흑산도·영산도·대장도·홍도·단어도·삼태도·소흑산도 거안 각 1천미터 이내의 해역
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서북쪽 끝 290도 2천5백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끝 277도 3천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동굴서 끝 225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속도 다랭이 끝 85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속도 단각 50도 2천5백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1천5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7.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망월산정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죽도 남쪽 끝, 군산시 연도 남쪽 끝, 군산시 연도 서북쪽 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 동북쪽 끝, 태안군 안면면 나지도 북쪽 끝,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서쪽 끝, 태안군 원북면 안도등대, 당진군 석문면 대란지도 용지 서쪽끝, 당진군 석문면 대란지도 동쪽 끝과 당진군 석문면 석문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북쪽 끝, 북제주군 제주시 추자면 다무래미도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추자면 다무래미도 북쪽 끝, 추자면 수령도 서남돌각을 연결한 선, 추자면 수령도 동쪽 끝, 추자면 추포도 남쪽 끝, 추자면 흑검도 서남쪽 끝을 연결한 선, 추자면 흑검도 동쪽 끝, 추자면 우두도 서남돌각, 추자면 하추자도 동북돌각을 연결한 선, 추자면 하추자도 서쪽 끝, 추자면 상추자도 동남돌각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부도 1부터 부도 8까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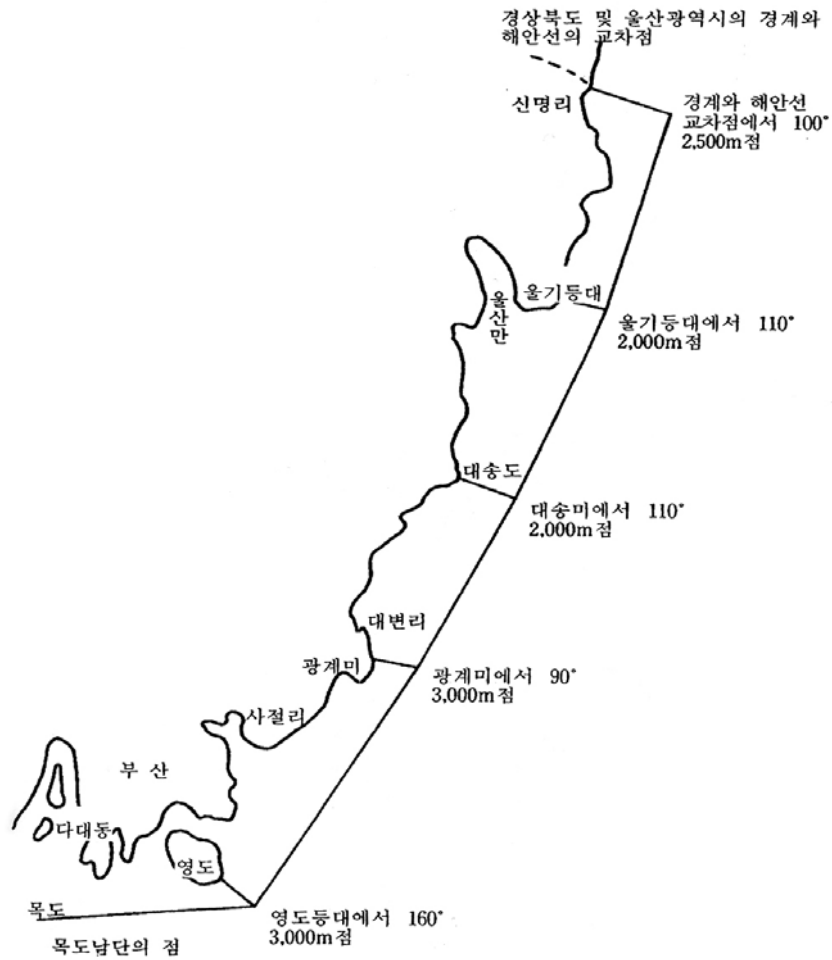
[부도 1]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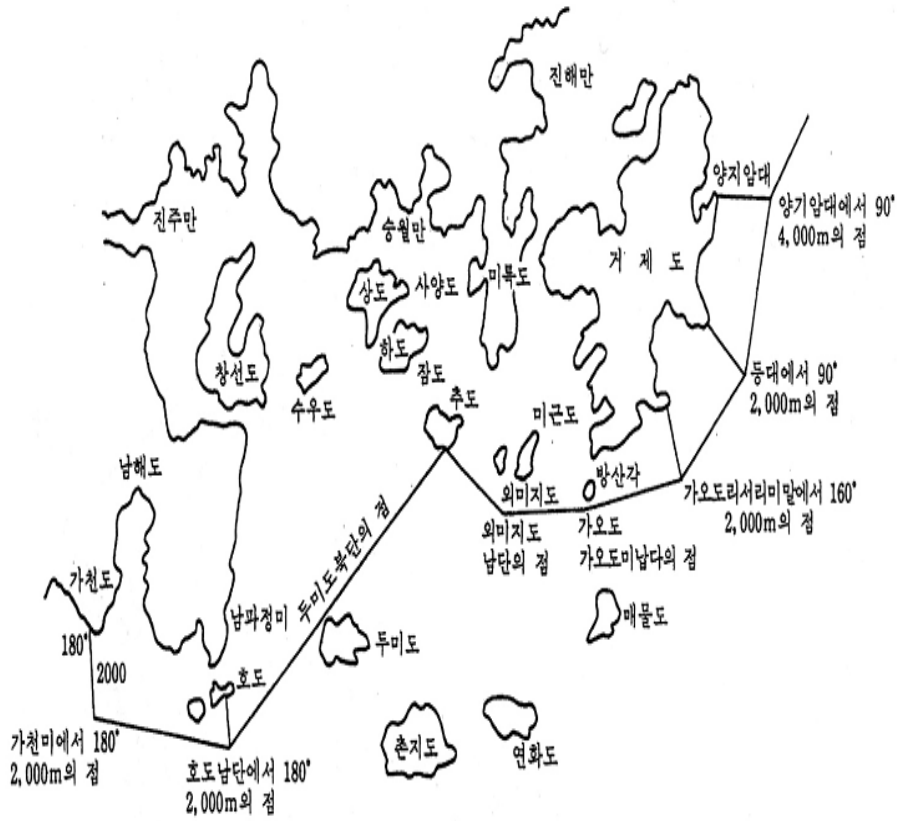
[부도 2]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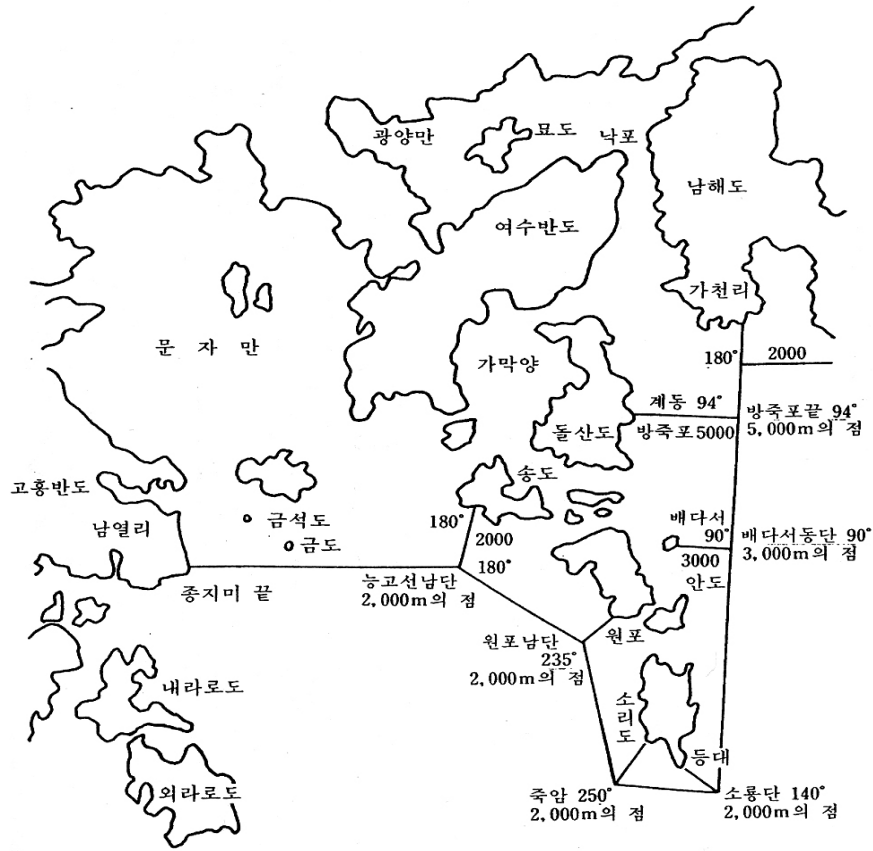
[부도 3]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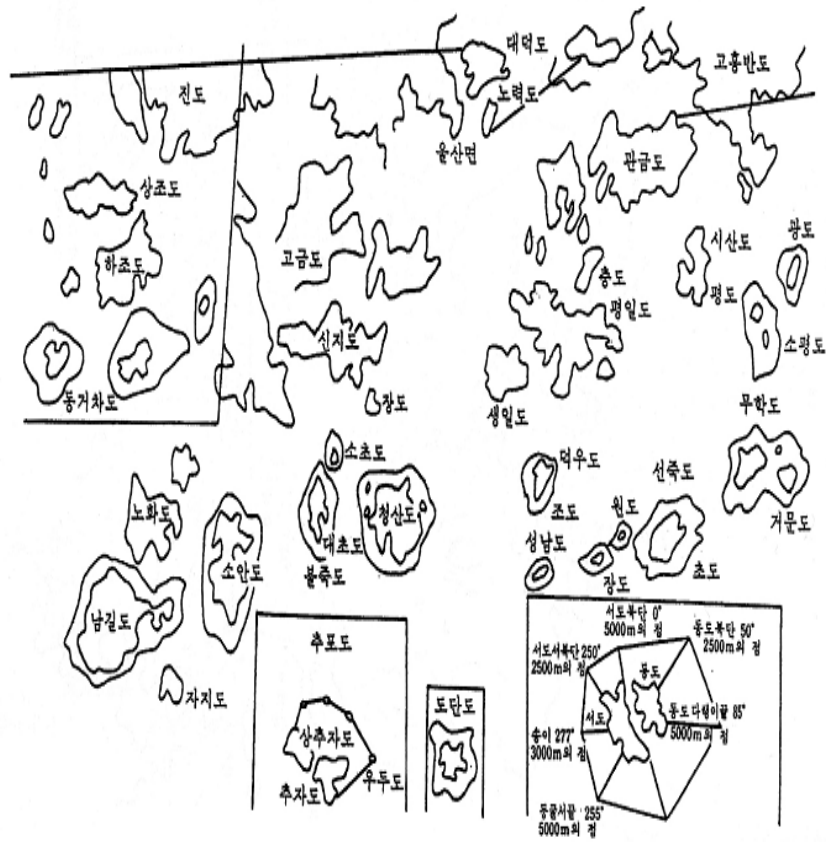
[부도 4]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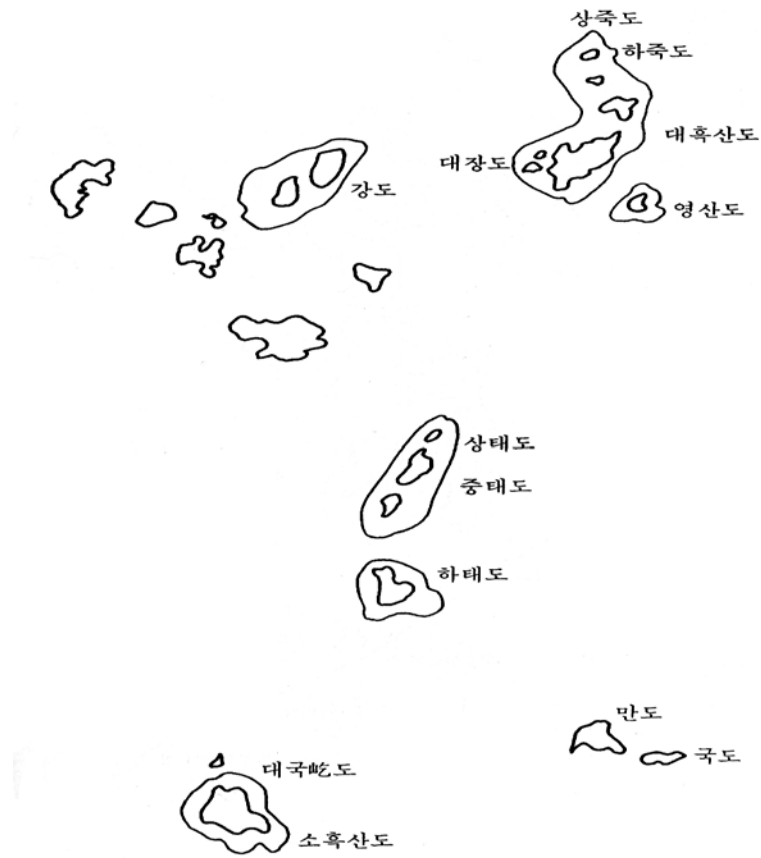
[부도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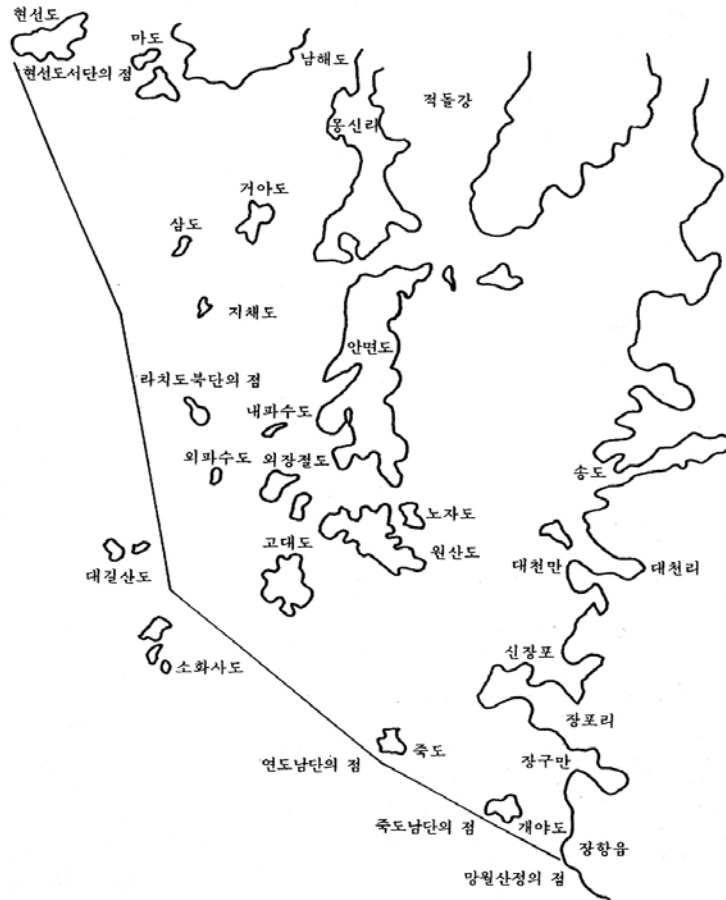
[부도 6]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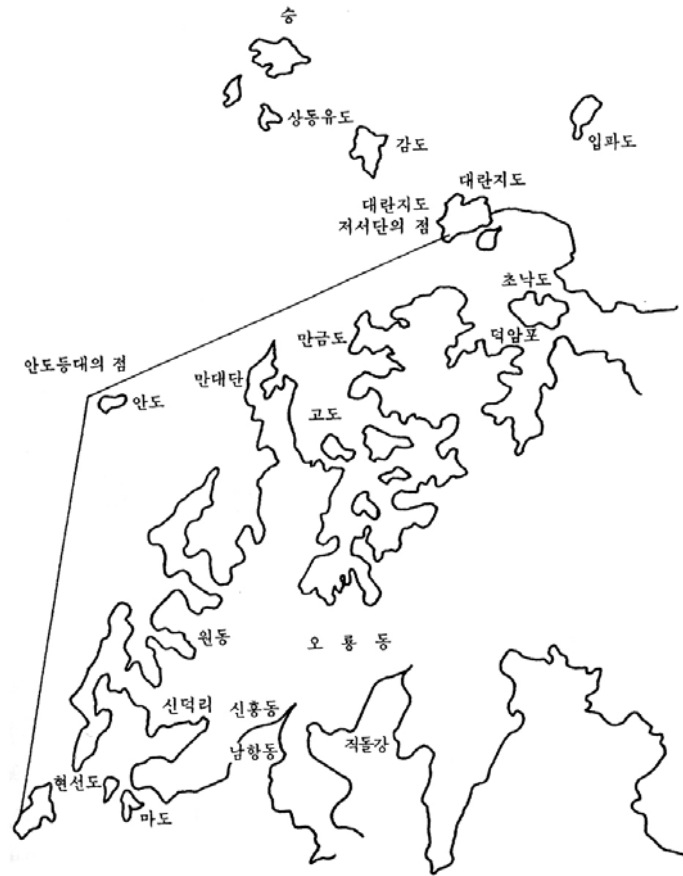
[부도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8]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별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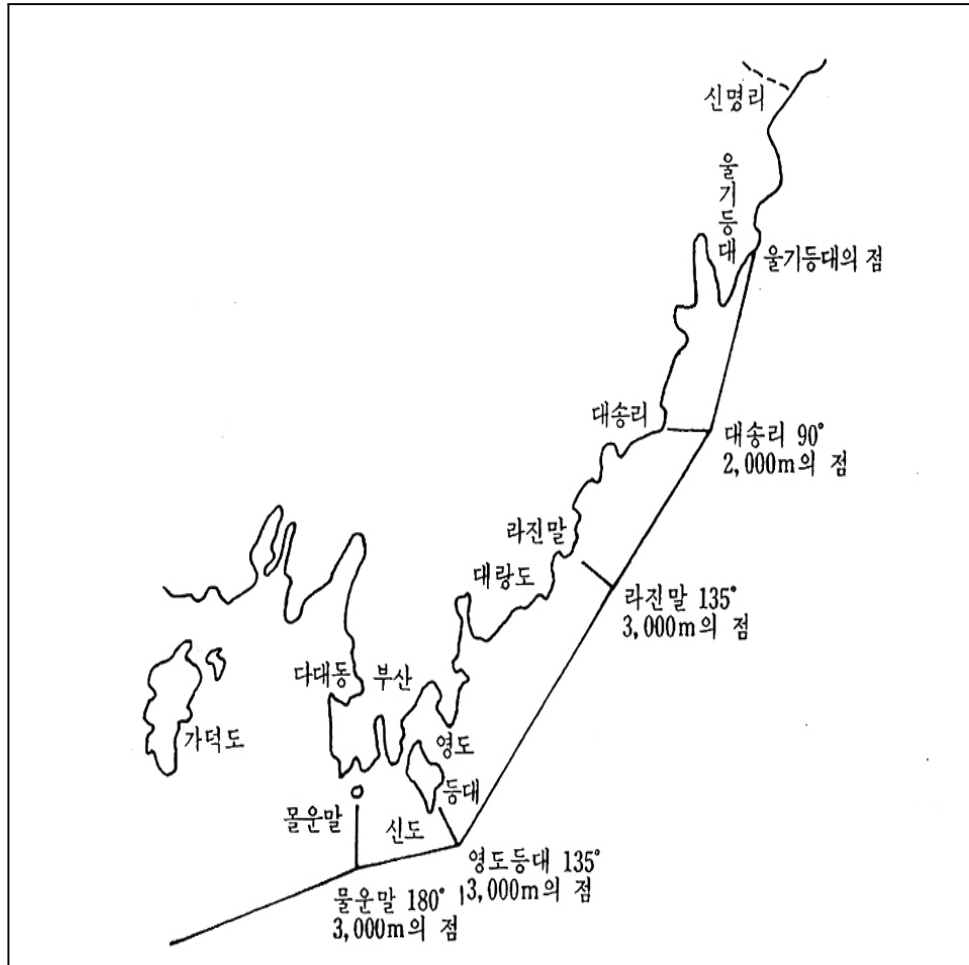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9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라진말 135도 3천미터의 점, 영도구 영도 등대 135도 3천미터의 점, 사하구 다대동 물운말 180도 3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취 90도 3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가천리 가천도 남쪽 끝 160도 2천미터의 점, 통영시 한산면 가오리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한산면 외부지도 남쪽 끝, 통영시 사랑면 추도 남쪽 끝, 남해군 삼동면 대지리 마안도 동쪽 끝 90도 3천미터의 점,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목과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호도 남쪽 끝, 남해군 남면 가천리 가천말 180도 150미터의 점 및 남면 가천리 가천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부도 1 및 부도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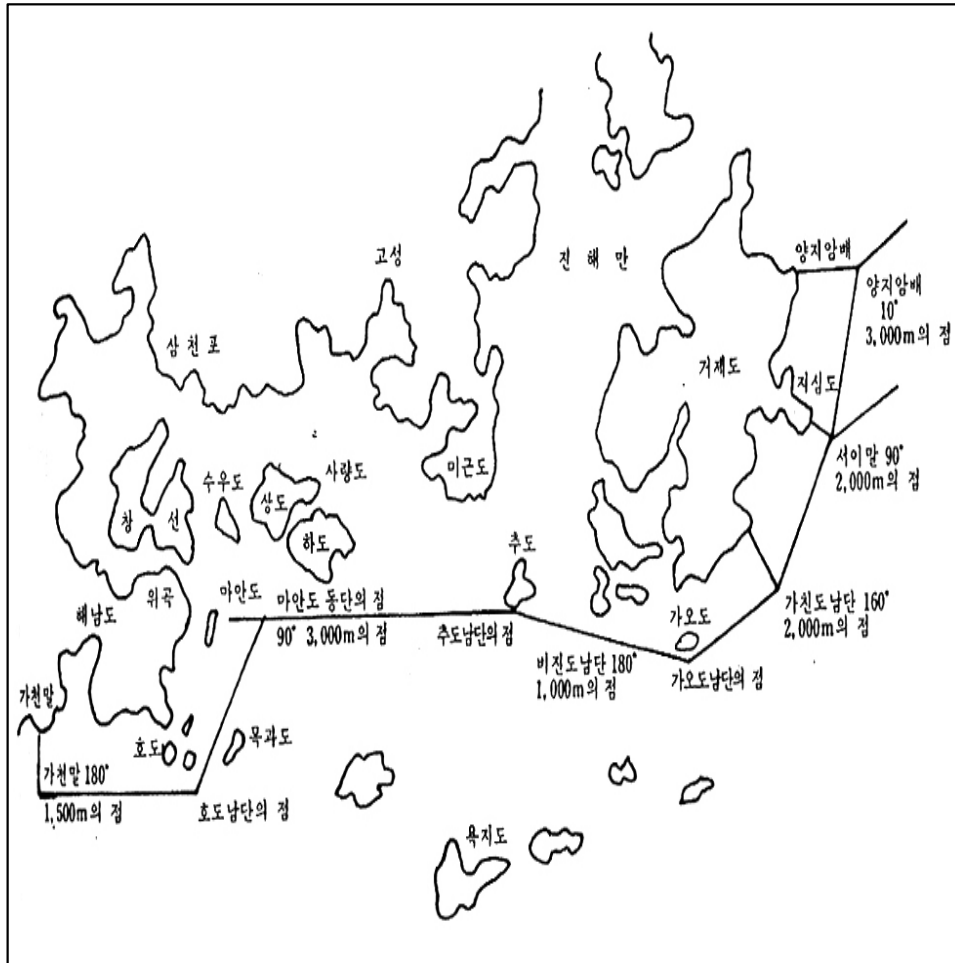
[부도 1]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별표 9]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1.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당강 말단, 부산광역시 서구 두도 북쪽 끝, 두도 남쪽 끝, 사하구 다대동 쥐섬 북쪽 끝, 사하구 다대동 쥐섬 남쪽 끝 및 사하구 다대동 물론 말단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섬암말,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격도 동쪽 끝, 장목면 이수도 동쪽 끝,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말,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동북쪽 끝 사이의 돌단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3.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수산리 남쪽 끝 및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 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4.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열녀산등말 서북쪽 끝 및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도산면 수월리 마장도 북쪽 끝, 도산면 함박 북쪽 끝, 도산면 수월리 서단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과 통영시 남망산돌각, 통영시 도남동 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및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남쪽 끝과 도산면 잠포 서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6.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고성군 하일면 안도 남쪽 끝,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울도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장포돌단, 남해군 삼동면 마암도 동쪽 끝, 삼동면 미조리 동과정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8.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암말,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포도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동해면 용정리 송산말에서 130도 1천미터의 점, 동해면 장좌리 용암말에서 160도 1천미터의 점 및 용암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9.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갈모개 남쪽 끝 돌단, 사천시 신수도 남쪽 끝 및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동북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광계말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및 영도구 영도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북서쪽 끝(평산등대),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 등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에서 103도 8천4백미터의 점,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에서 90도 4천5백미터의 점,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과 여수시 남면 유송리 소유마을 동쪽 끝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과 6천4백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끝 돌각(소리도 등대), 여수시 남면 소리도 서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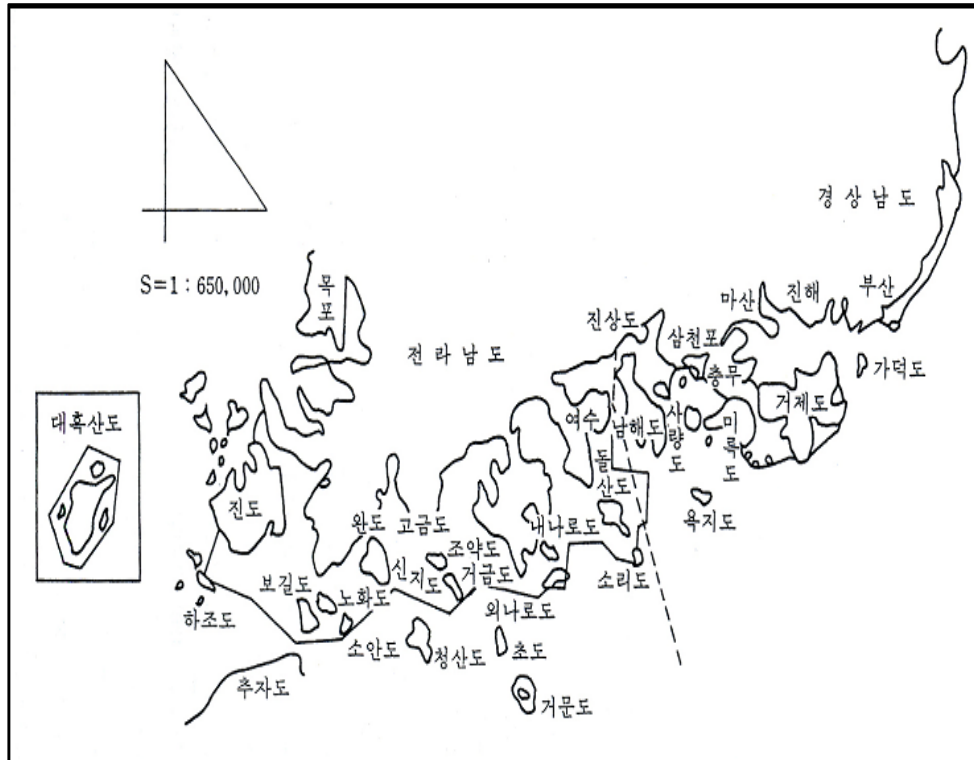
끝 돌각(죽암각),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리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지미 끝,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외나로도) 동쪽 끝,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외나로도) 최남단, 고흥군 풍양면 시산도 북쪽 끝, 완도군 금일면 소량도 남쪽 끝, 완도군 금일면 소덕우도 남쪽 끝, 완도군 신지면 장도 남쪽 끝, 완도군 완도읍 큰개머리 동남돌각,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남쪽 끝,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 및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2.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서북쪽 끝 및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 서돌단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3.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서북쪽 끝에서 29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끝에서 277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굴서 끝에서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에서 16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다랭이 끝에서 8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에서 50도 2천미터의 점 및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에서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4.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영산도 동쪽 끝에서 130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영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대흑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대흑산도 서남쪽 끝에서 210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대장도 서쪽 끝에서 270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호장도 북쪽 끝에서 305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승도 북쪽 끝에서 315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하죽도 북쪽 끝에서 45도 2천미터의 점, 흑산면 대둔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부도 참조

[부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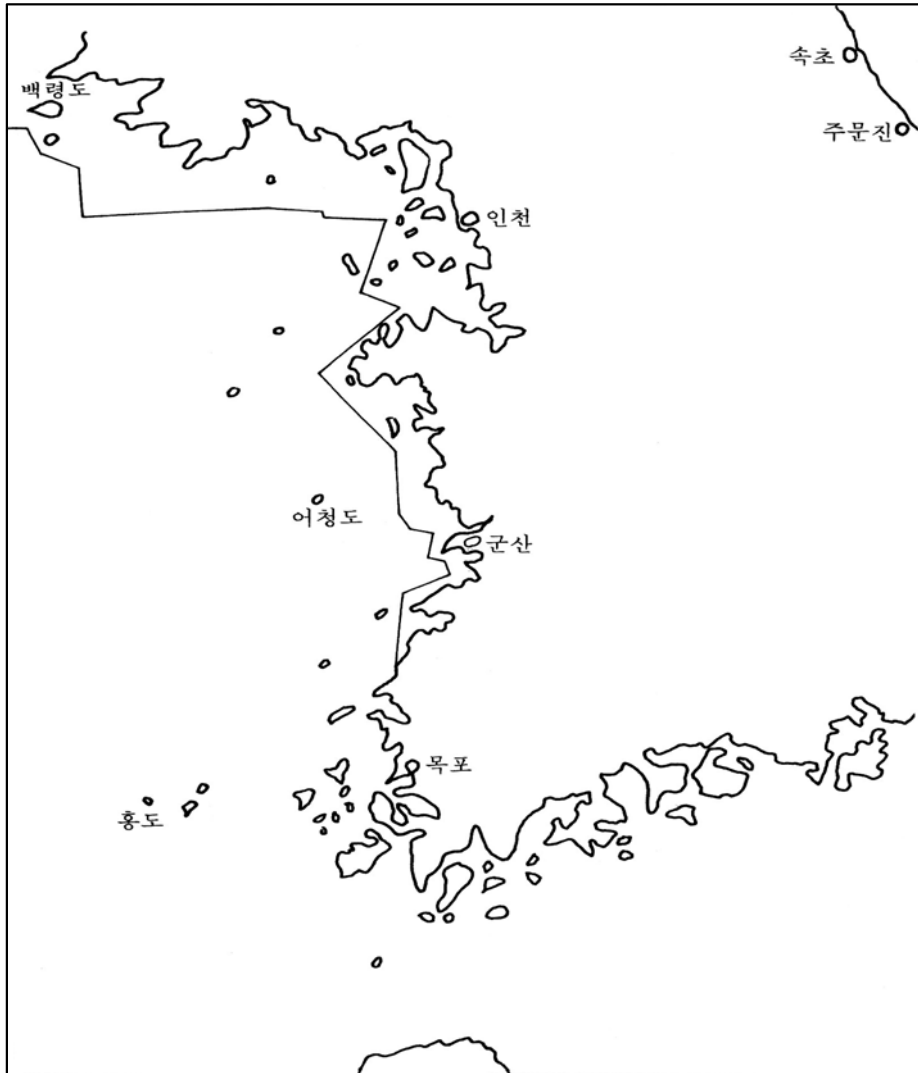
다음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연안측 해역

1.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3도59분53.41초
2.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6분23.21초
3. 북위37도47분09.93초, 동경124도38분33.20초
4.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6분53.16초
5. 북위37도30분10.05초, 동경124도47분53.16초
6.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4도59분53.09초
7. 북위37도36분00.03초, 동경125도42분52.85초
8. 북위37도33분10.05초, 동경125도59분52.76초
9.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
10. 북위37도30분10.08초, 동경126도17분52.66초
11. 북위37도12분25.20초, 동경126도11분22.71초
12. 북위37도00분10.29초, 동경126도19분52.67초
13. 북위36도45분10.39초, 동경125도59분52.78초
14. 북위36도20분10.56초, 동경126도19분52.69초
15. 북위36도07분40.65초, 동경126도19분52.69초
16. 북위36도04분35.67초, 동경126도26분45.66초
17.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2분59.63초
18. 북위35도56분45.73초, 동경126도31분12.64초
19. 북위35도53분20.75초, 동경126도36분32.61초
20. 북위35도47분21.79초, 동경126도37분52.61초
21. 북위35도44분35.81초, 동경126도26분52.67초
22. 북위35도26분50.93초, 동경126도25분37.68초
23. 북위35도25분25.94초, 동경126도24분59.69초

※ 비고: 부도 참조

[부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별표 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제1항 관련)

I. 일반사항

1.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2. "어법"(漁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도 이에 포함된다.
3.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한다.
4.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5. "조업모식도"란 조업하는 방법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말한다.
6. "뜸"이란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부자"(浮子)라고도 한다.
7. "발돌"이란 물속에서 어구를 가라앉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침자"(沈子)라고도 한다.
8. "투망"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을 말하며, 낚시나 줄을 투망할 경우에는 "투승"이라고 말한다.
9. "예망"(曳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
10. "양망"(揚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며, 낚시나 줄을 양망할 경우에는 "양승"이라고 말한다.
11.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

II.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관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수산관련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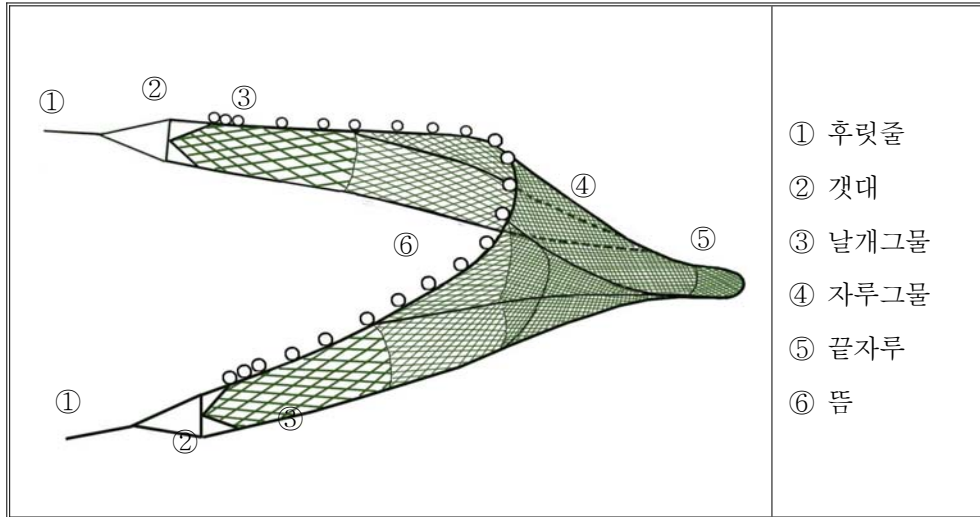
- * 날개그물: 자루그물 입구 양쪽 옆판 쪽에 붙어있는 그물
- * 자루그물: 밑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그물.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는 부분을 "끝 자루"라 함
- * 전개판(장치): 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어지도록 하는 판(장치)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3과 같다.

- 1)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끝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2)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끝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 후릿줄: 그물과 끝줄 사이를 잇는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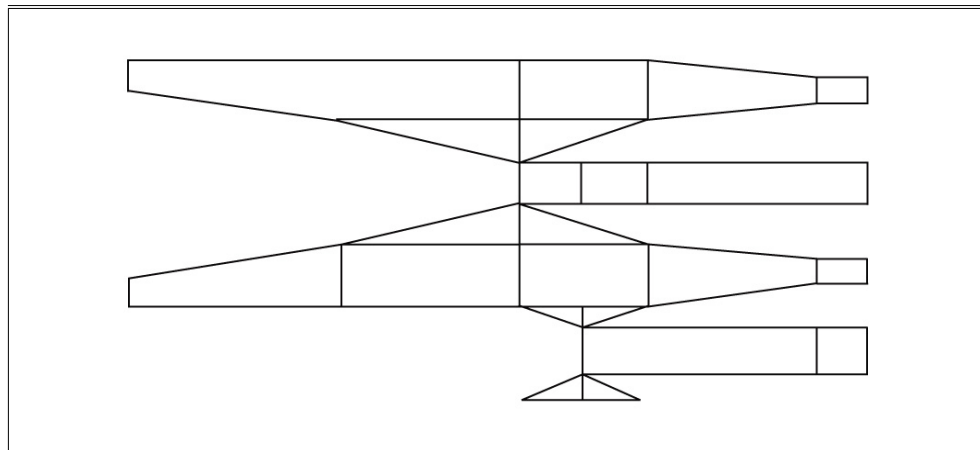
[부도 1-1]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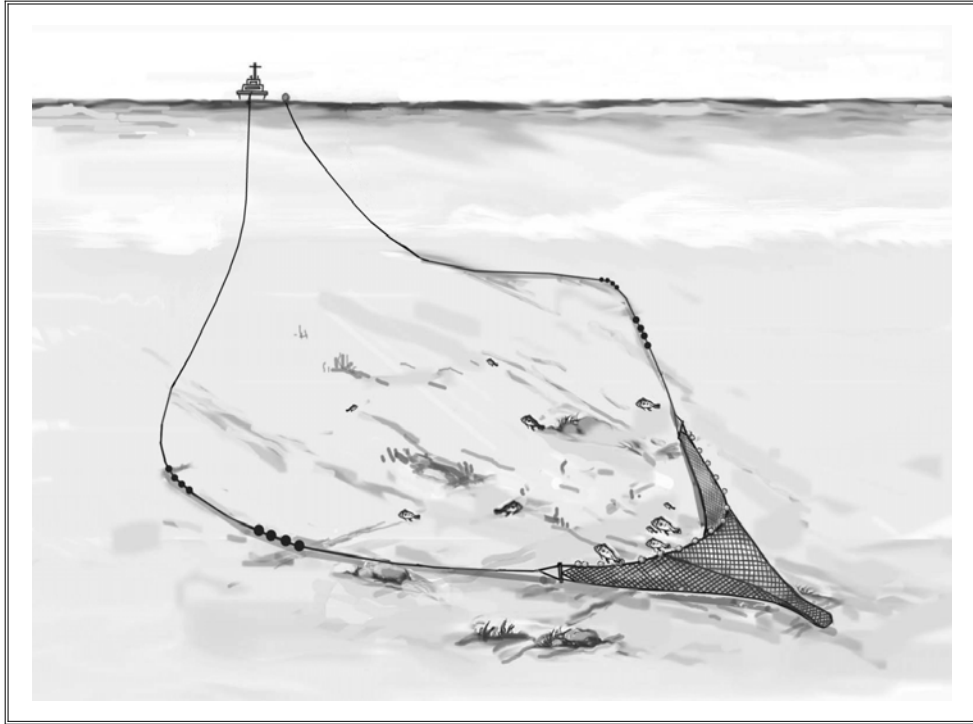
[부도 1-2]

외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3]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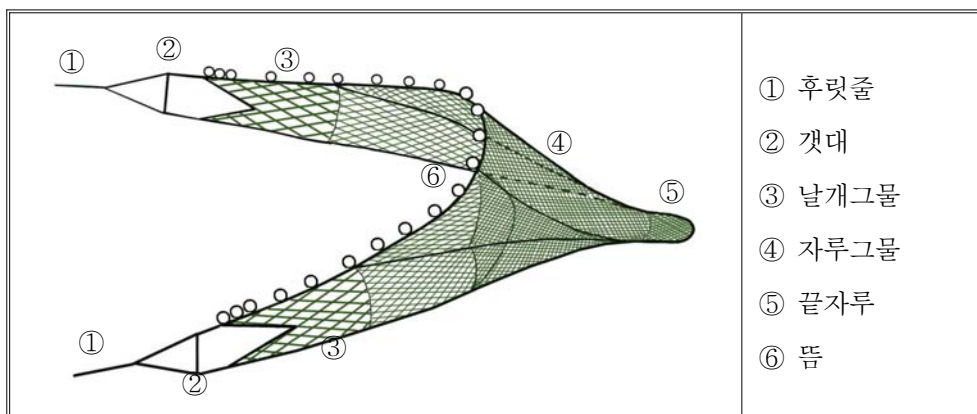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3과 같다.

- 1) 주선이 선미(船尾)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끝줄을 내어 준다.
 - * 주선(主船): 그물을 투망·양망 및 예망하는 그물배
 - * 종선(從船): 조업 시 주선을 도와 예망하는 보조선
- 2)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끝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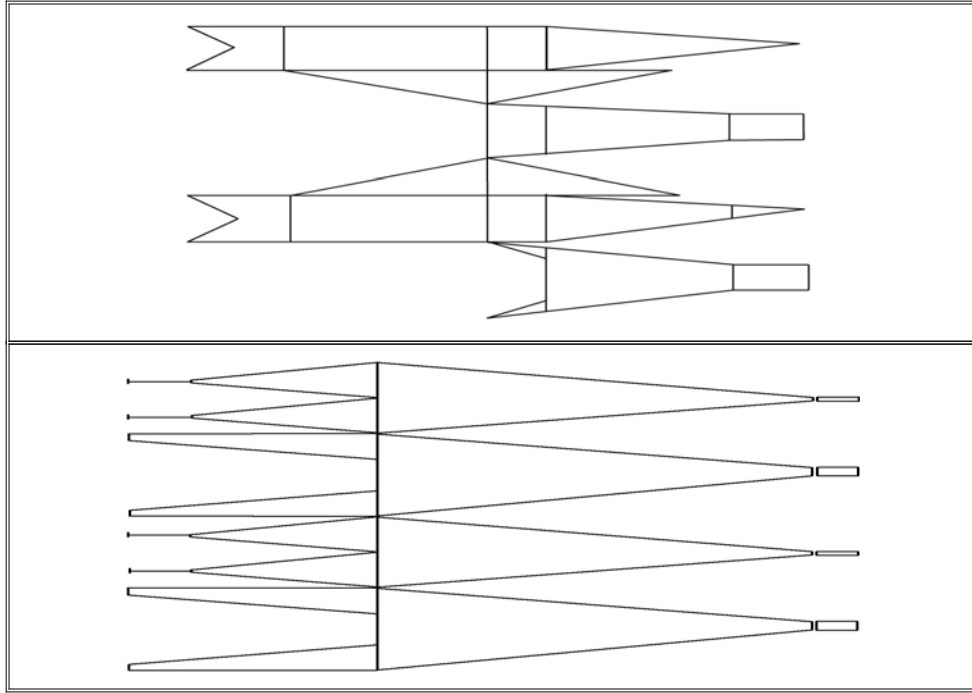
[부도 2-1]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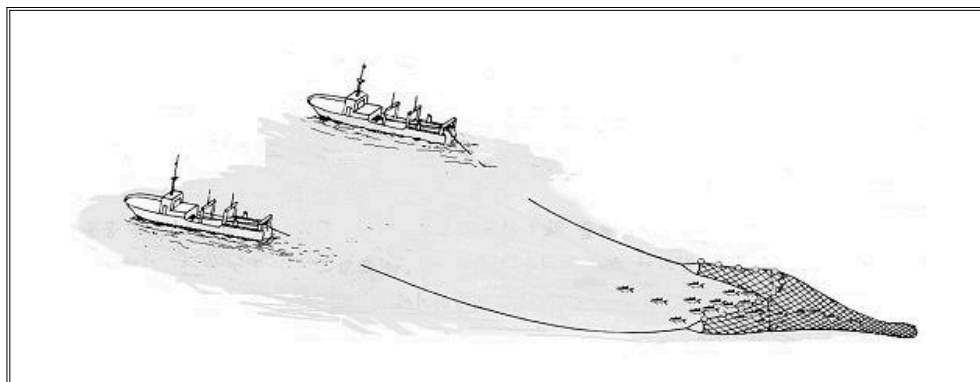
[부도 2-2]

쌍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2-3]

쌍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3. 동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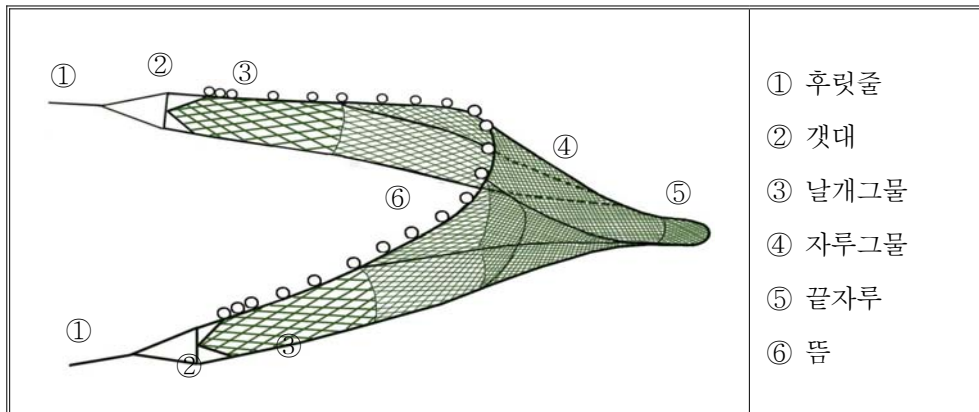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 1)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끝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2)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끝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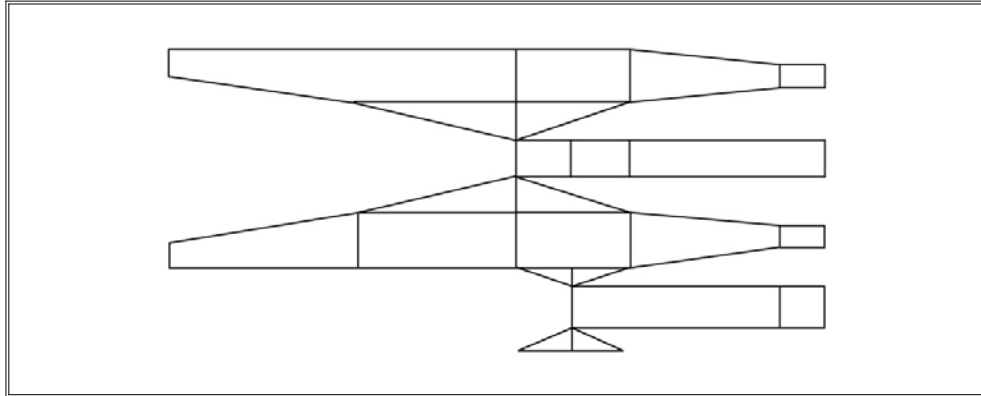
[부도 3-1]

동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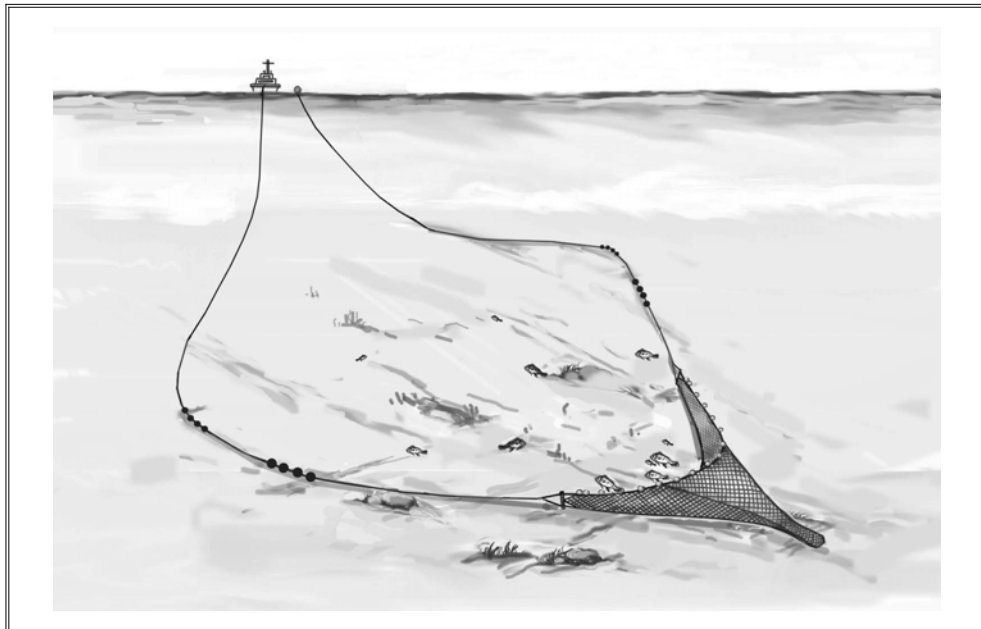
[부도 3-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3-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4. 서남해구의끼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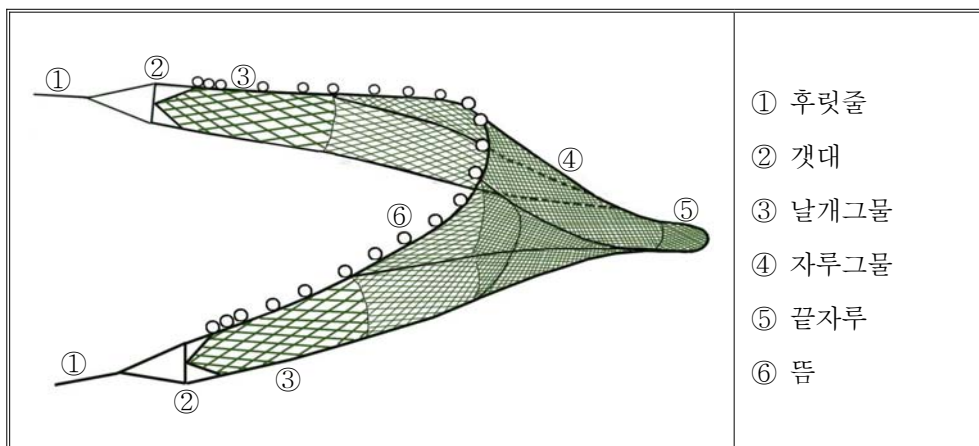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3과 같다.

- 1)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끝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2)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끝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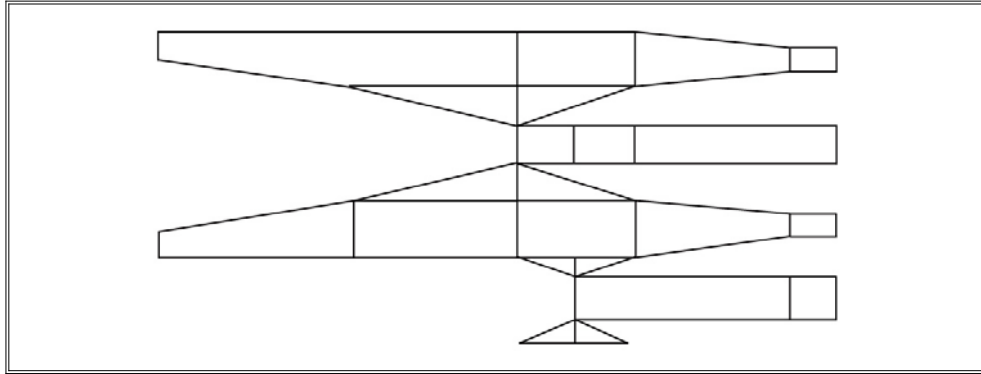
[부도 4-1]

서남해구의끼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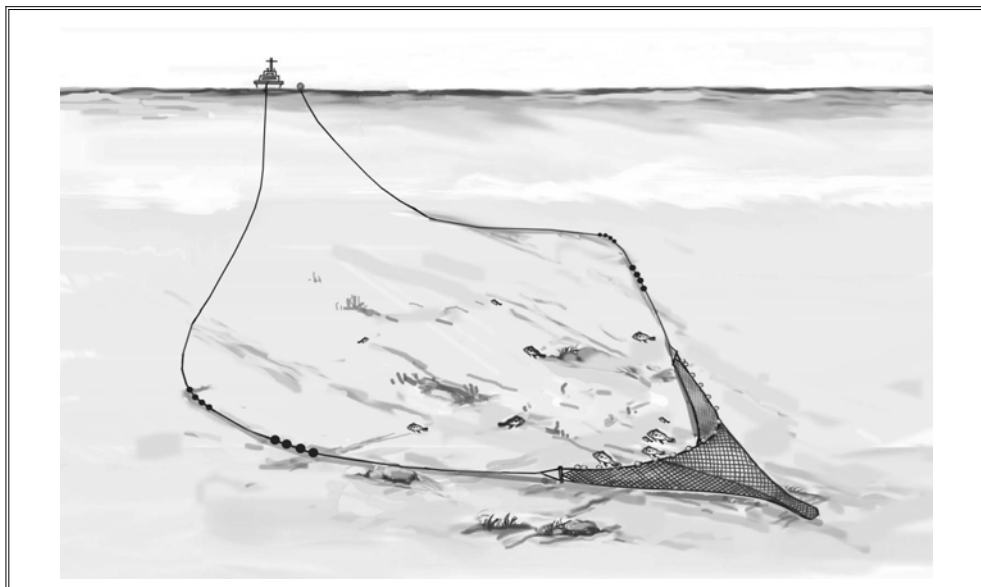
[부도 4-2]

서남해구의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4-3]

서남해구의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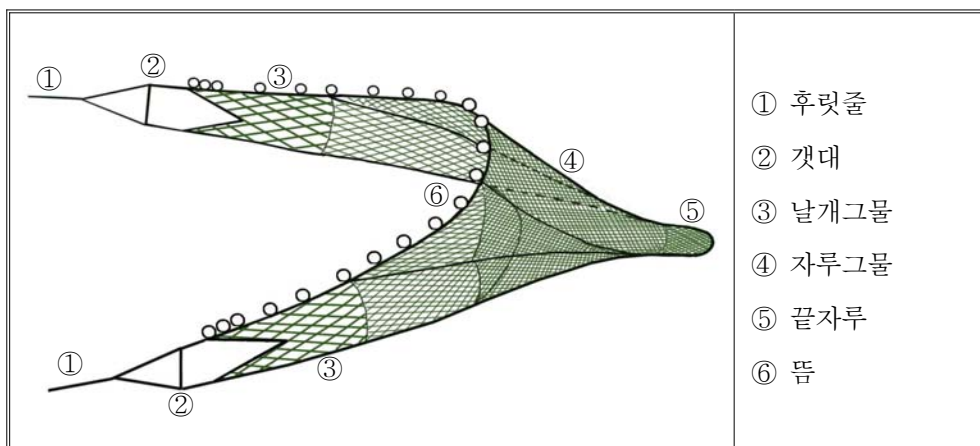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3과 같다.

- 1) 주선이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내어 준다.
- 2)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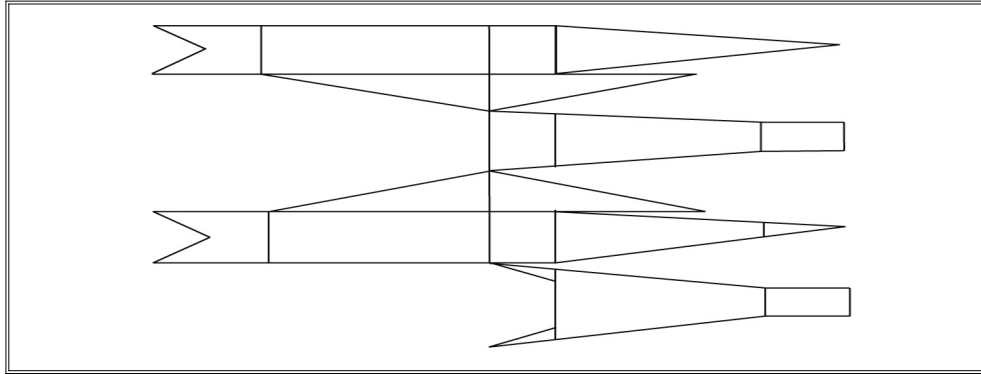
[부도 5-1]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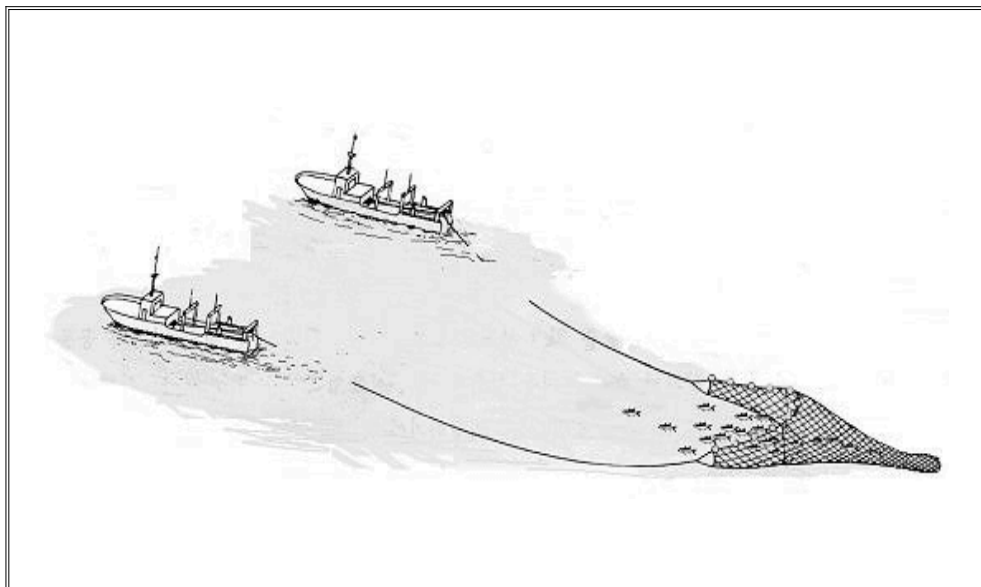
[부도 5-2]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5-3]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6. 대형트롤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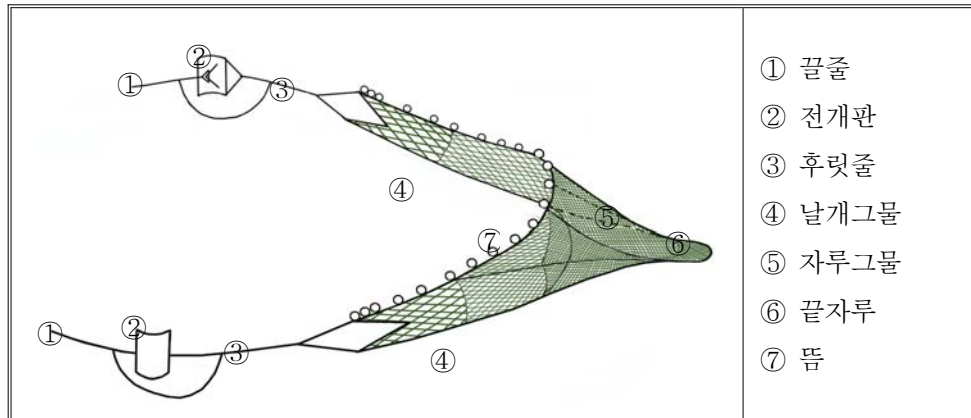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선미에서 투망한다.
- 2)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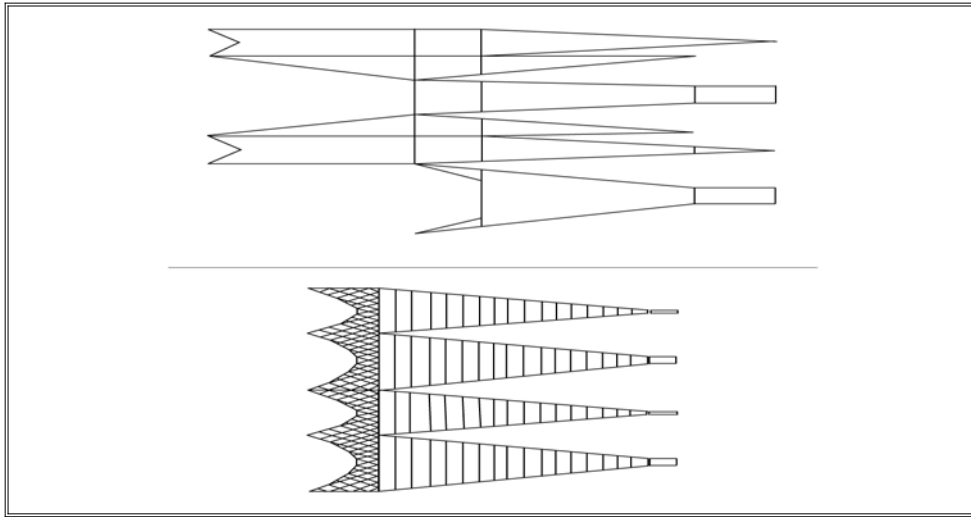
[부도 6-1]

대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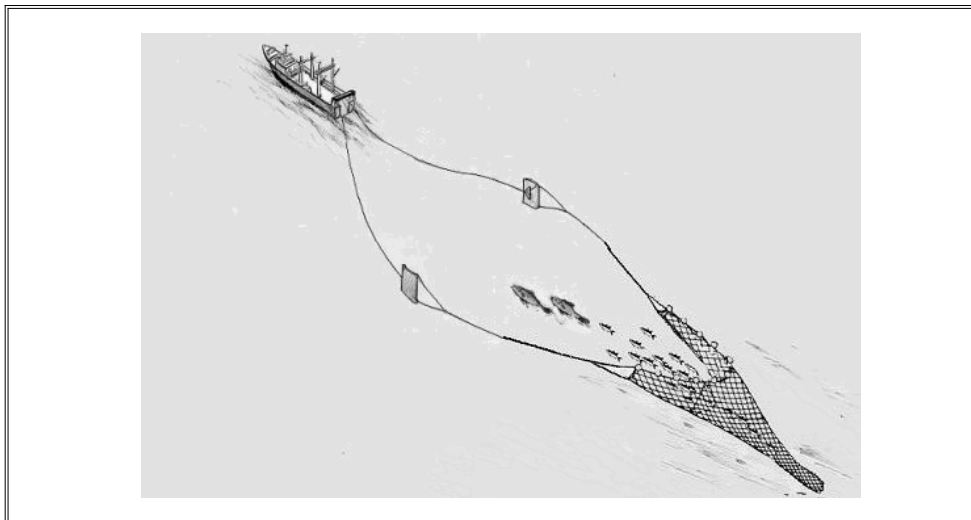
[부도 6-2]

대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6-3]

대형트롤망 조업모식도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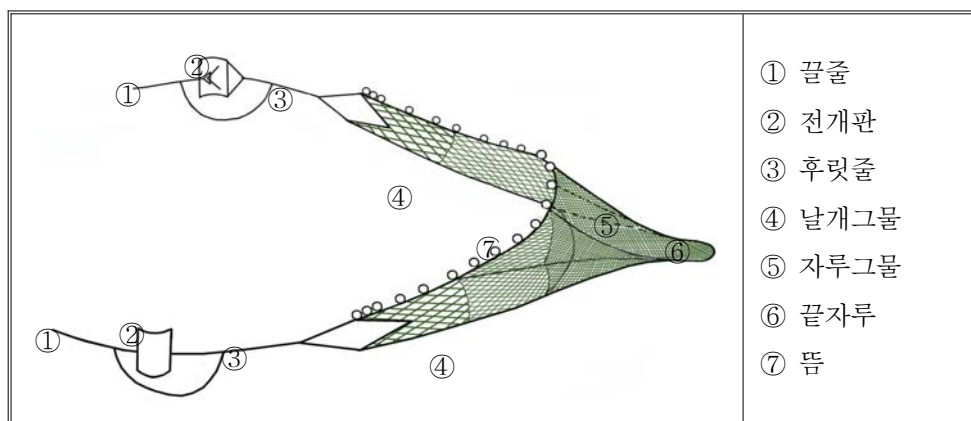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3과 같다.

-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舷側)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
* 현측: 어선의 옆 부분
- 2)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망구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3)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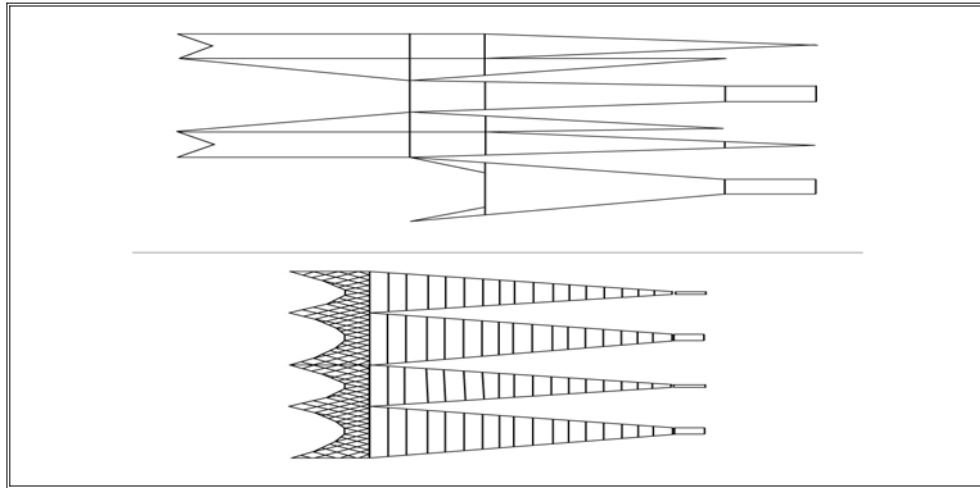
[부도 7-1]

동해구중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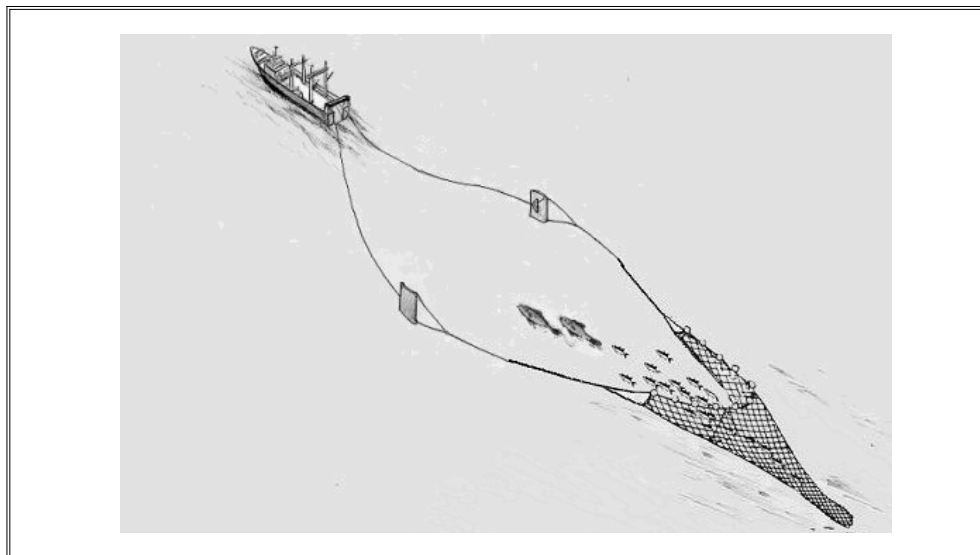
[부도 7-2]

동해구중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7-3]

동해구중형트롤망 조업모식도



8. 대형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8-1 및 부도 8-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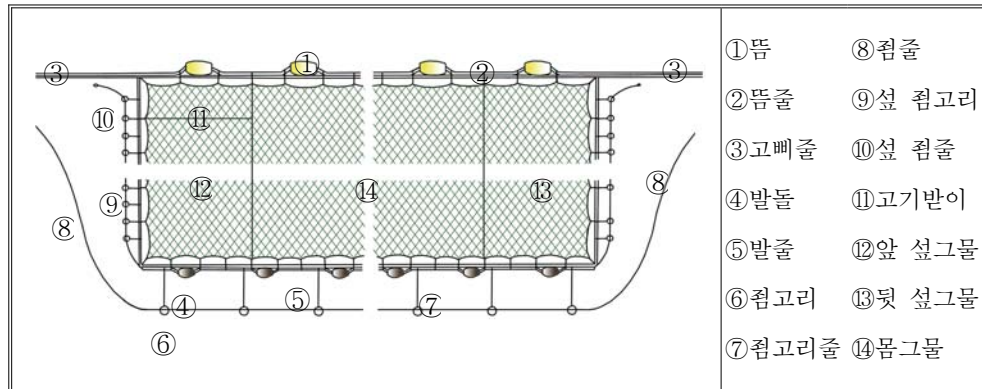
-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쇄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3) 발줄에 줍고리와 줍줄을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포위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3과 같다.

- 1) 본선은 등선에 고삐줄과 줍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줍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 본선(本船): 어구를 투망·양망하는 그물배
 - * 등선(燈船): 어군(魚群) 탐색, 집어 등을 하는 보조선을 말하며, 어탐선이라고도 함
- 2) 1)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줍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줍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3) 양망 시 등선 1척은 본선이 그물쪽으로 달려 들어가지 않도록 본선의 양망 현 반대쪽에서 당겨주기도 하고, 다른 등선 1척은 뜸줄이 엉키지 않도록 뜸줄을 잡아당겨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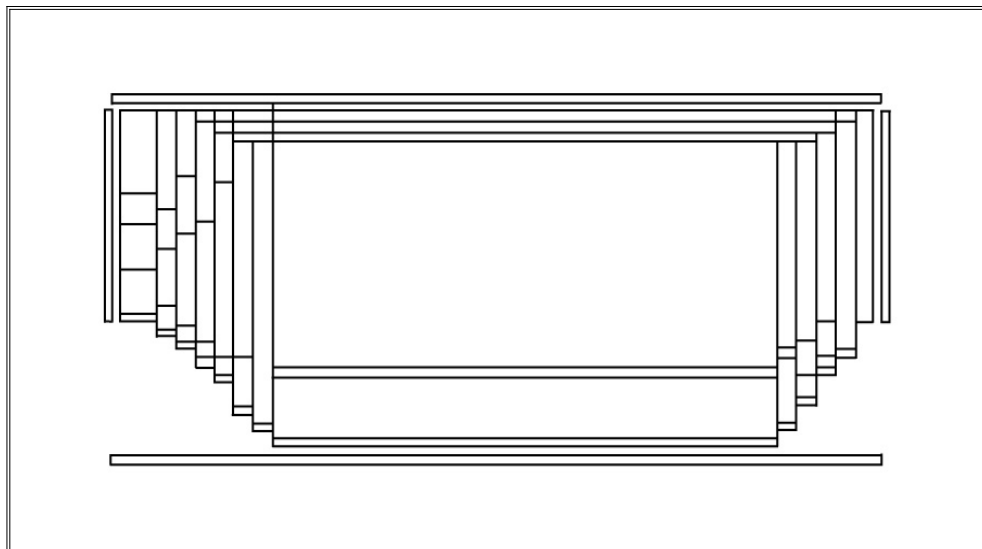
[부도 8-1]

대형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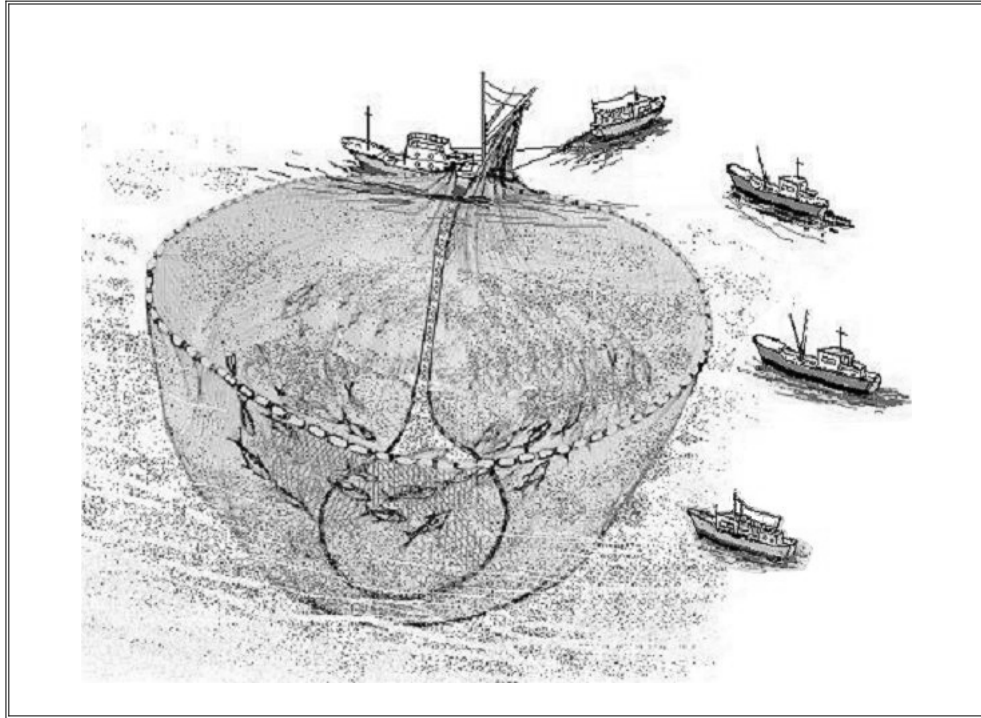
[부도 8-2]

대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8-3]

대형선망 조업모식도



9. 소형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9-1 및 부도 9-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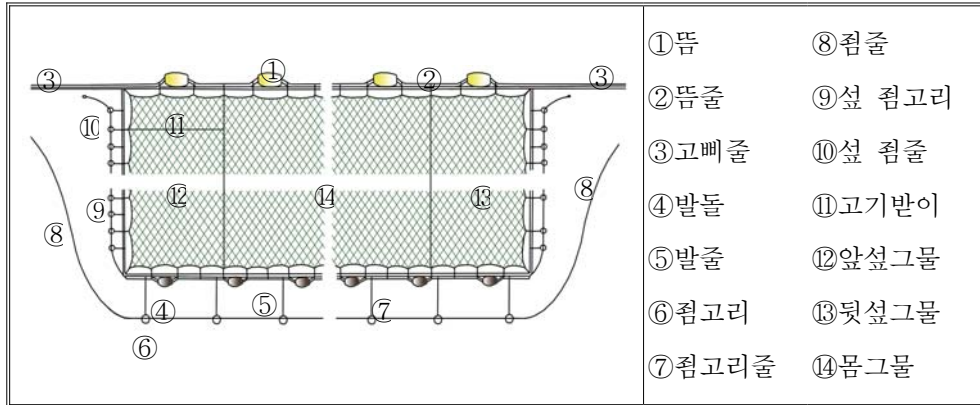
-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섯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3) 발줄에 침고리와 침줄을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9-3과 같다.

- 1) 본선은 등선에 고삐줄과 침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침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2) 1)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침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침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3) 등선 또는 운반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침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 4) 본선에만 어구를 실어야 하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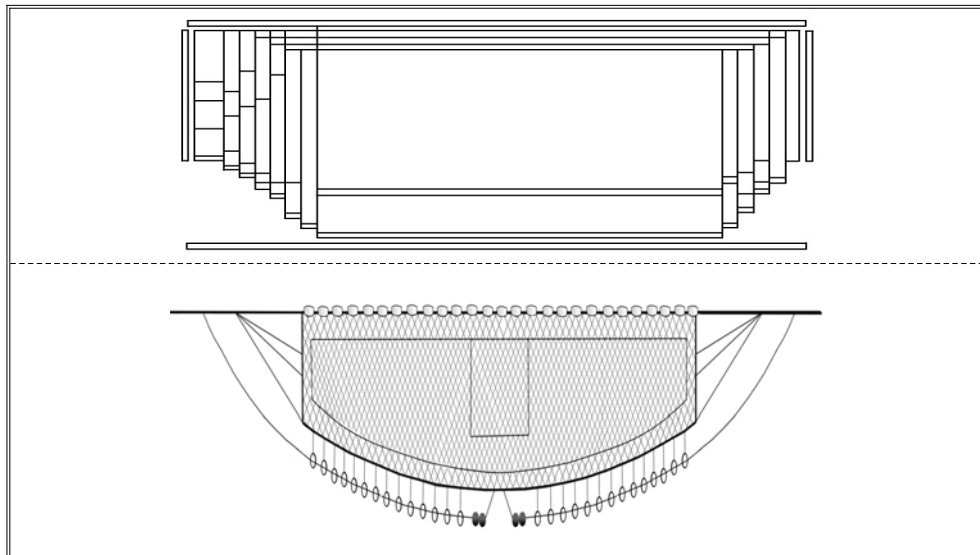
[부도 9-1]

소형선망 어구 겨냥도



[부도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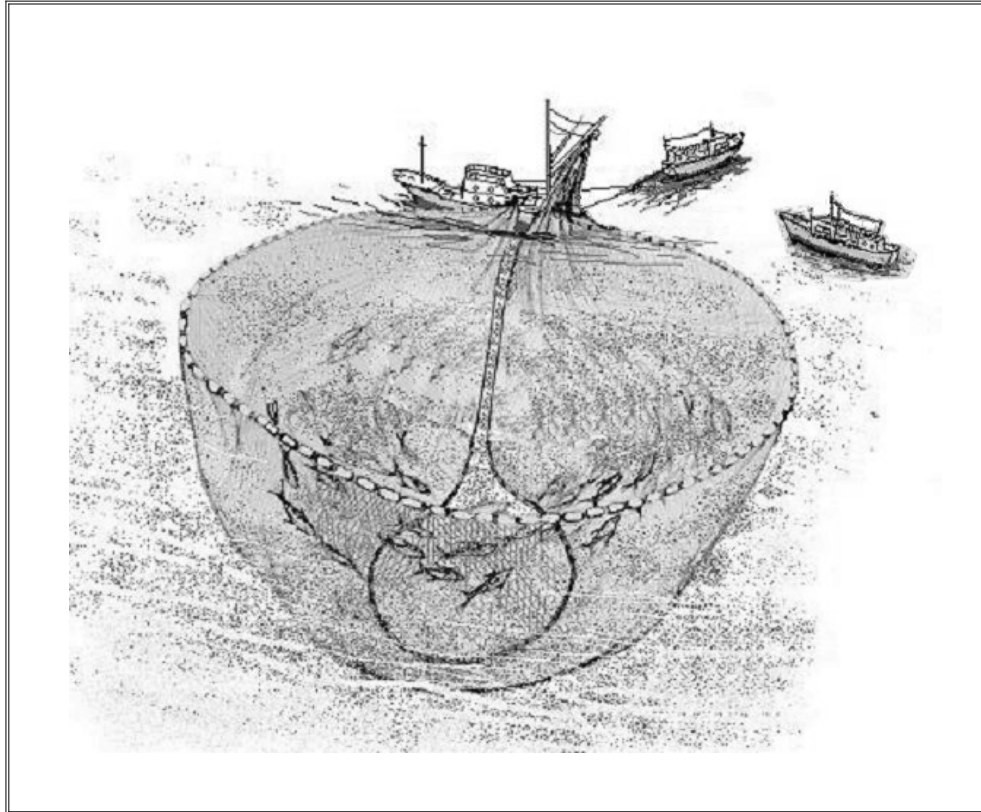
소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수산관련법령집

[부도 9-3]

소형선망 조업모식도



10. 근해채낚기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0-1 및 부도 1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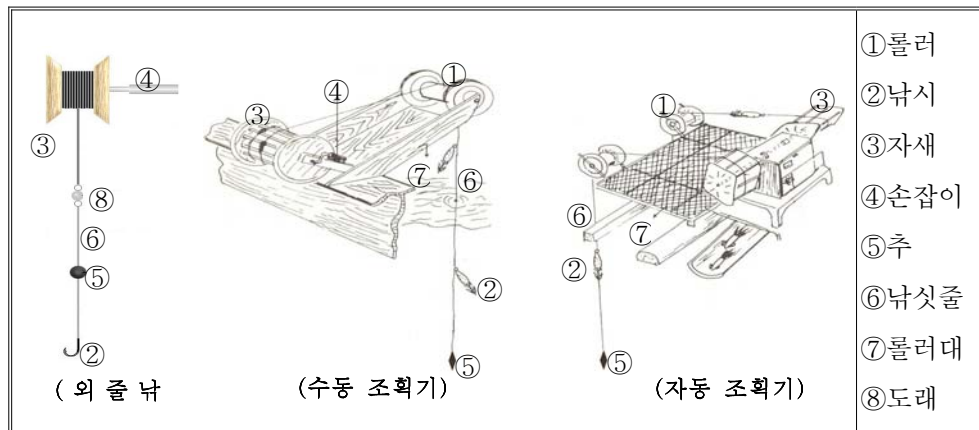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0-3과 같다.

- 1) 낚시가 달린 줄을 낚싯대, 자동조획기, 수동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 2) 집어등, 물뚫(Sea-anchor)을 사용하기도 한다.

* 물뚫(Sea-anchor): 물속에서 저항을 받아 배가 바람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일론 등의 천을 이용하여 낙하산 모양으로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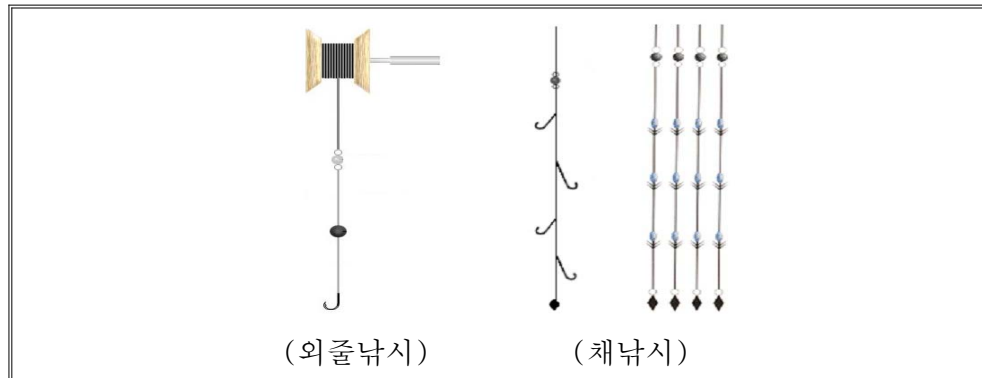
[부도 10-1]

근해채낚기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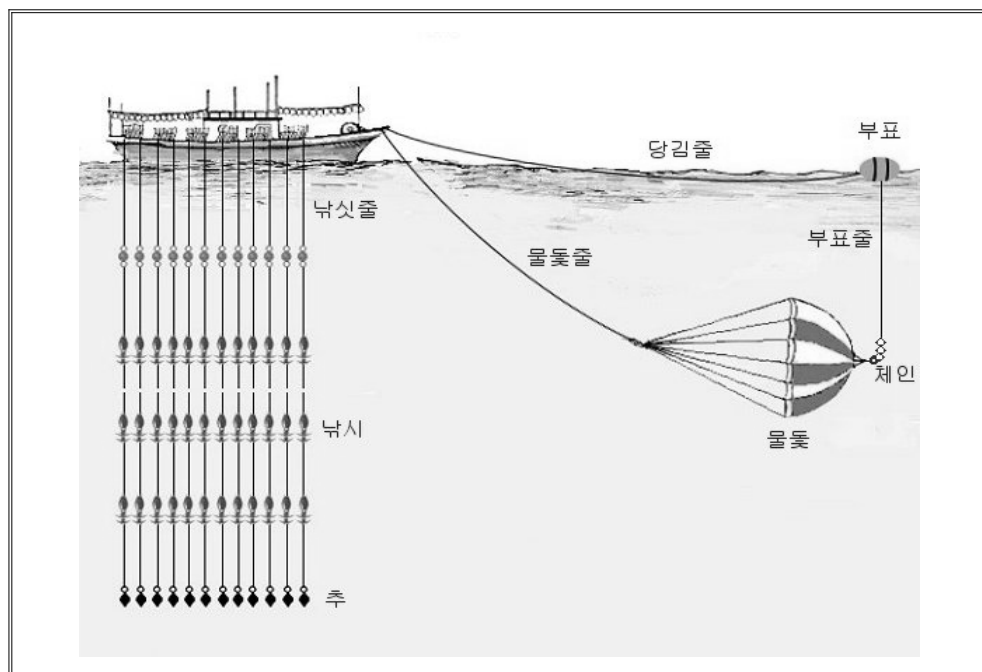
[부도 10-2]

근해채낚기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0-3]

근해채낚기 조업모식도



11. 근해자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1 및 부도 11-2와 같다.

- 1)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2)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 3) 뺨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뺨침대를 뜰과 발줄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 뺨침대: 자망어구에서 뜰과 발줄을 수직방향으로 연결하는 막대
- 4)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어구를 부설한 경우에는 어구의 틀 양쪽 끝으로부터 닻이나 부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의 길이는 제외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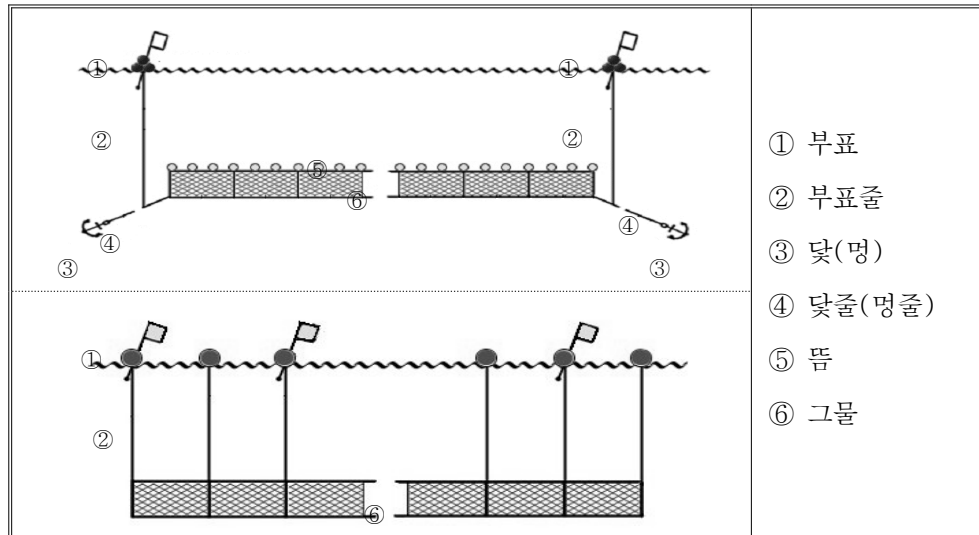
어선 규모	어구량
8톤 이상 20톤 미만	1만 2천미터. 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20톤 이상 40톤 미만	1만 4천미터. 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4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40톤 이상	1만 6천미터. 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7만미터. 다만,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일부 허가받은 부속선 사용 가능)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낚히도록 하거나 엮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3과 같다.

- 1) 부표, 닻(명), 그물, 닻(명),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 3)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4) 다만, 갯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뺨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갯새우를 그물에 낚히도록 하여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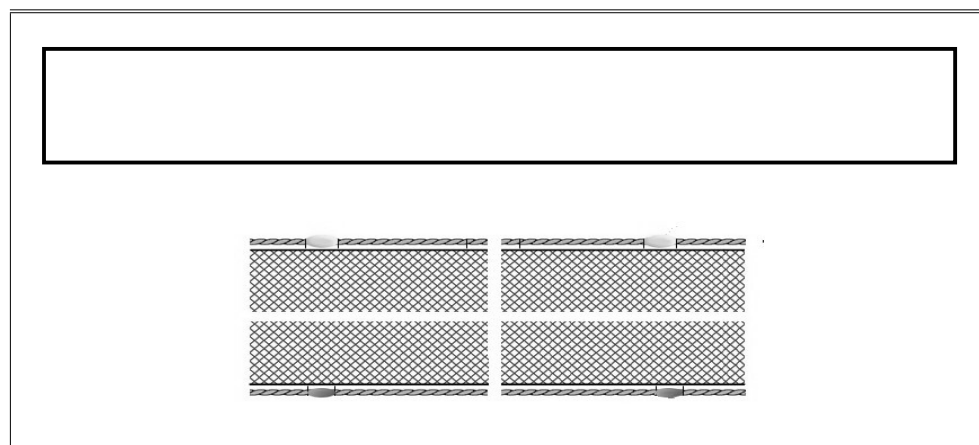
[부도 11-1]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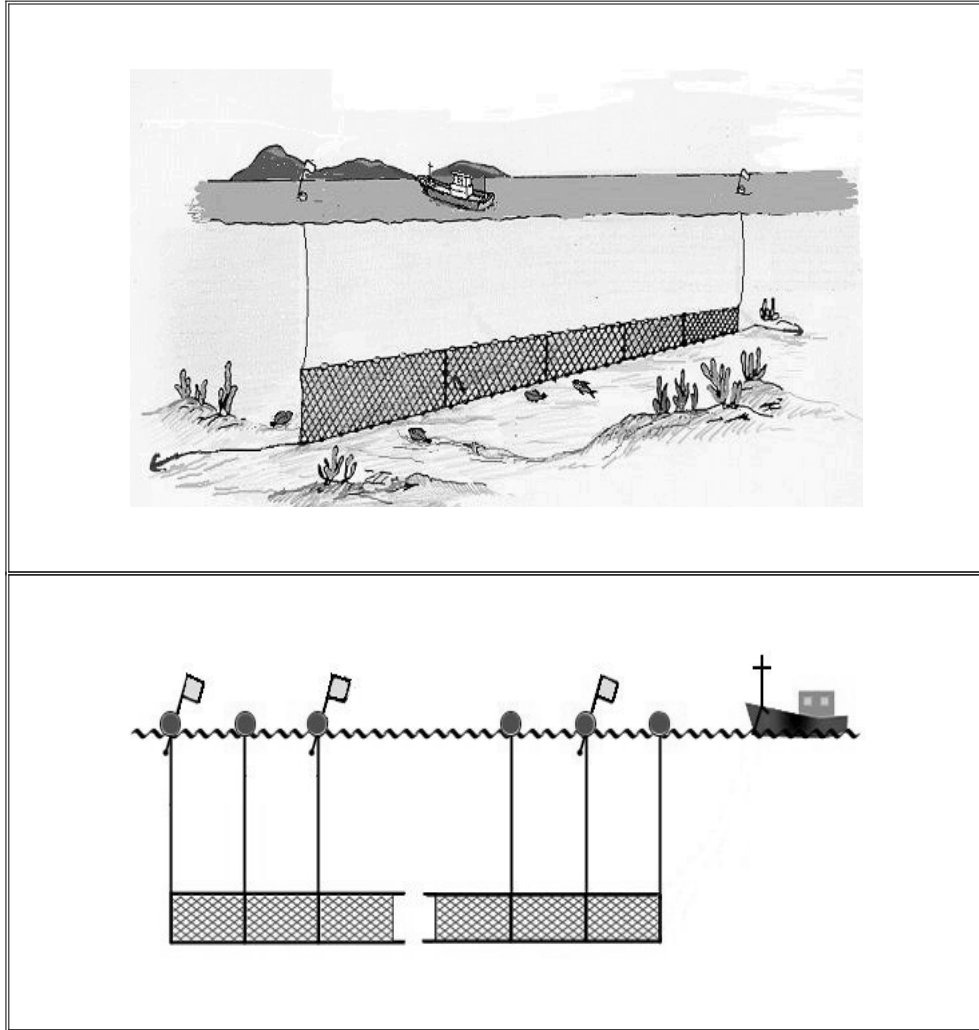
[부도 11-2]

근해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1-3]

근해자망 조업모식도



12. 근해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12-1부터 부도 12-3 까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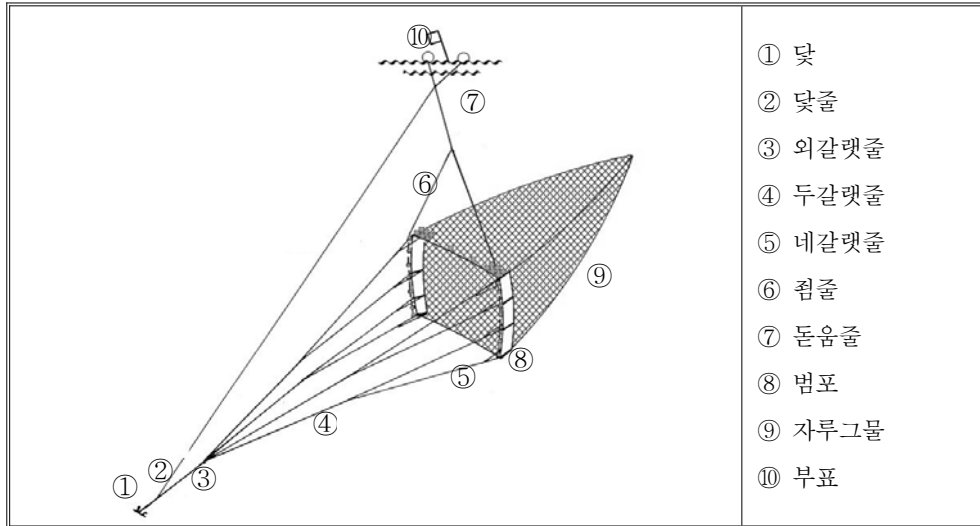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상·하,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3)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4)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2-4와 같다.

-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줌줄, 돛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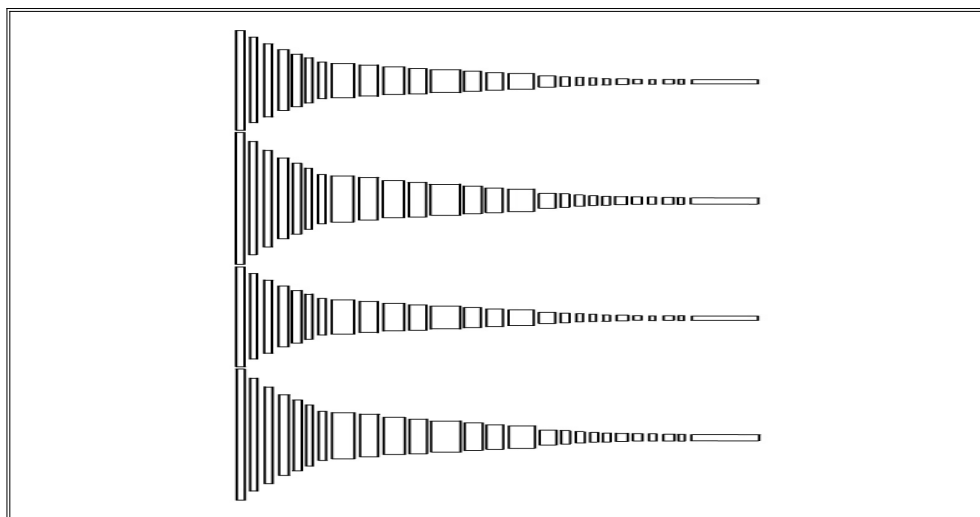
[부도 12-1]

근해안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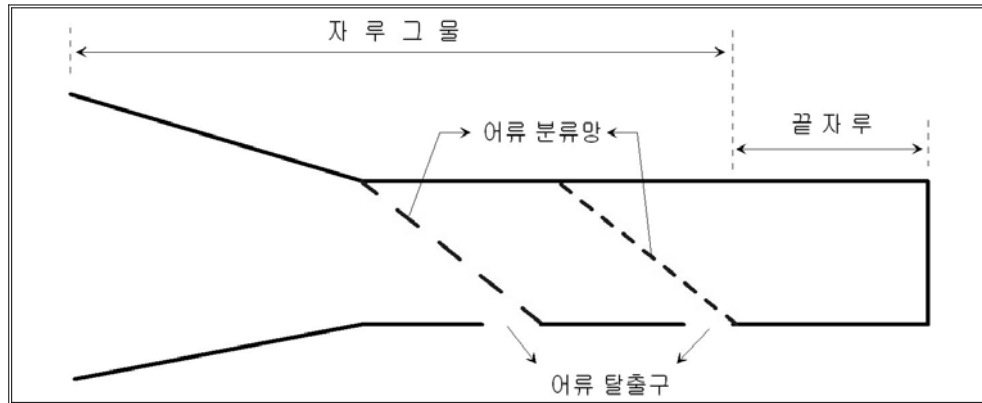
[부도 12-2]

근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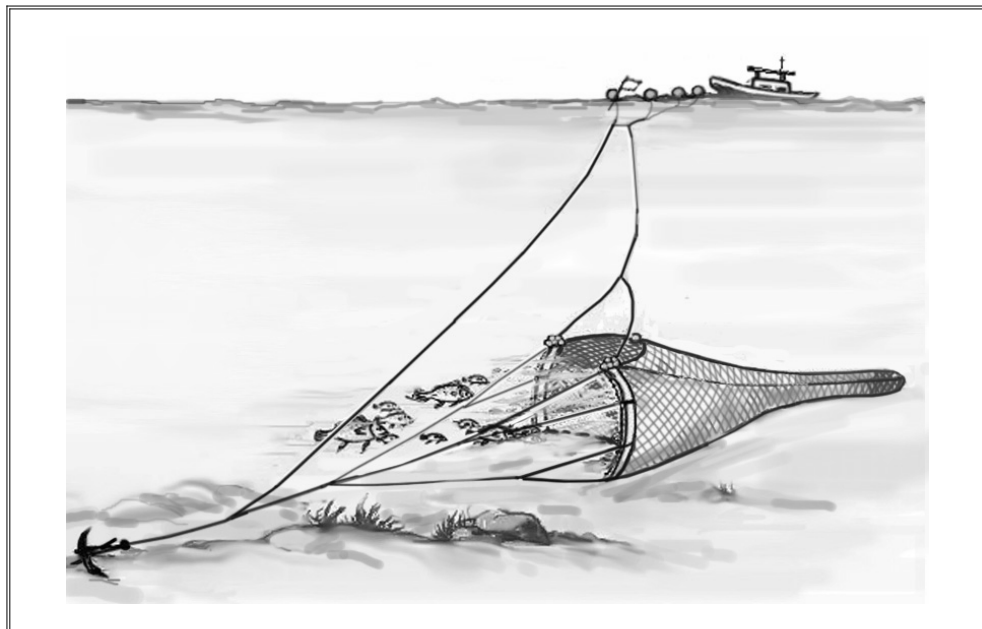
[부도 12-3]

근해안강망 어류분류망 구성도



[부도 12-4]

근해안강망 조업모식도



13. 근해붕수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3-1 및 부도 1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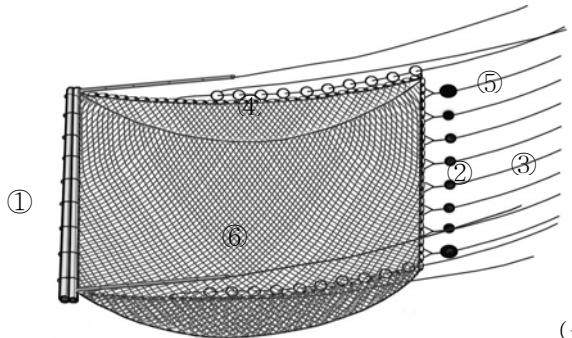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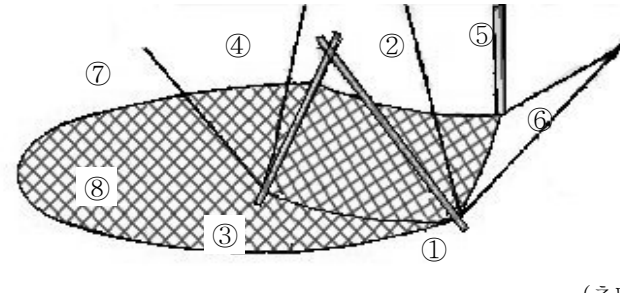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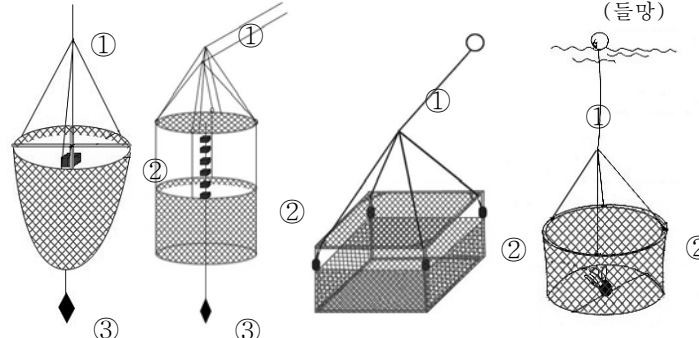
- 1) 사각형 모양의 그물 상부는 뜬대로, 하부는 발돌과 돋움줄로, 양측은 줍고리와 줍줄로 구성된 어구(붕수망)
- 2) 긴 찻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 3)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3-3과 같다.

-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1) 또는 물속에 미리 부설하여 놓은 어구 속으로 수산동물을 유도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3)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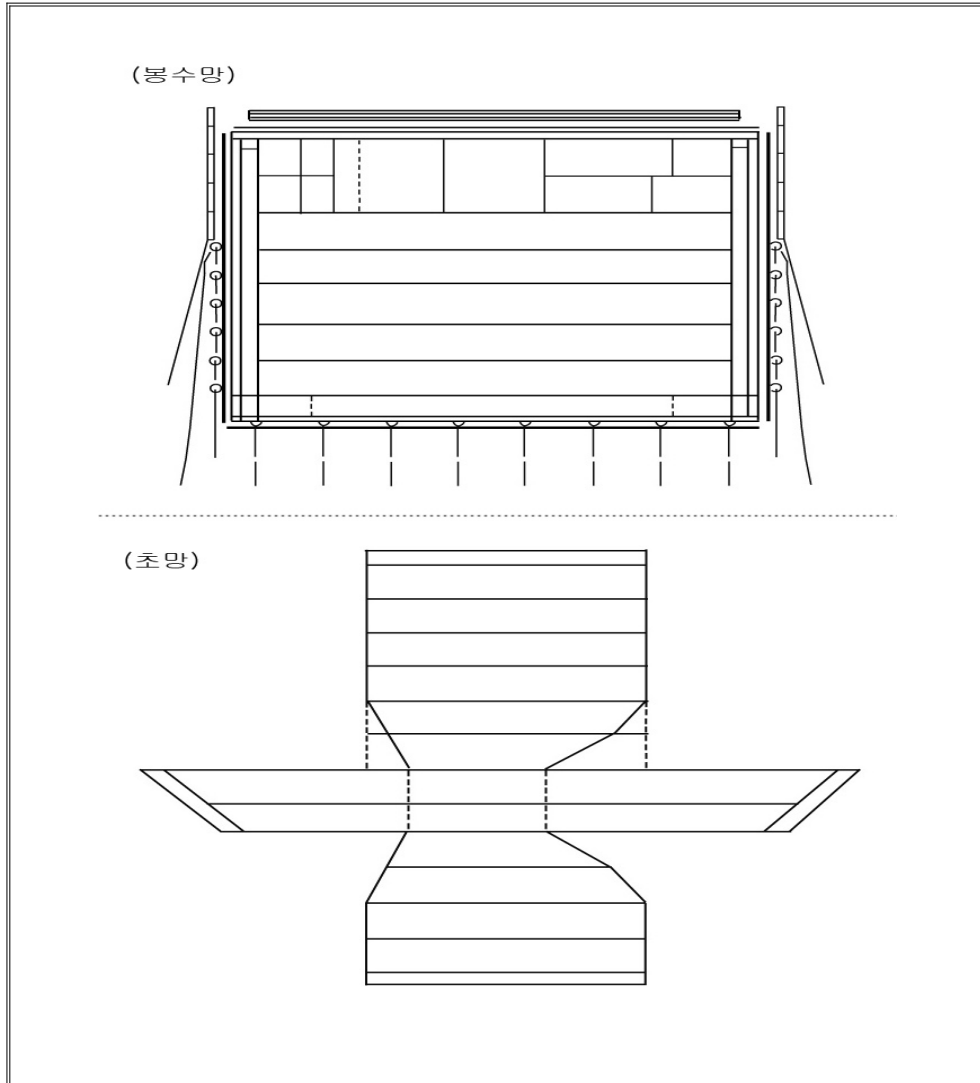
[부도 13-1]

근해붕수망 어구 겨냥도

 <p>(붕수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뜬대 ② 받들 ③ 뜬움줄 ④ 씬고리 ⑤ 씬줄 ⑥ 그물
 <p>(초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큰챗대 ② 큰챗대줄 ③ 작은챗대 ④ 작은챗대줄 ⑤ 콧대 ⑥ 앞잡이줄 ⑦ 뒷잡이줄 ⑧ 자루그물
 <p>(들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뜬움줄 ② 고정테 ③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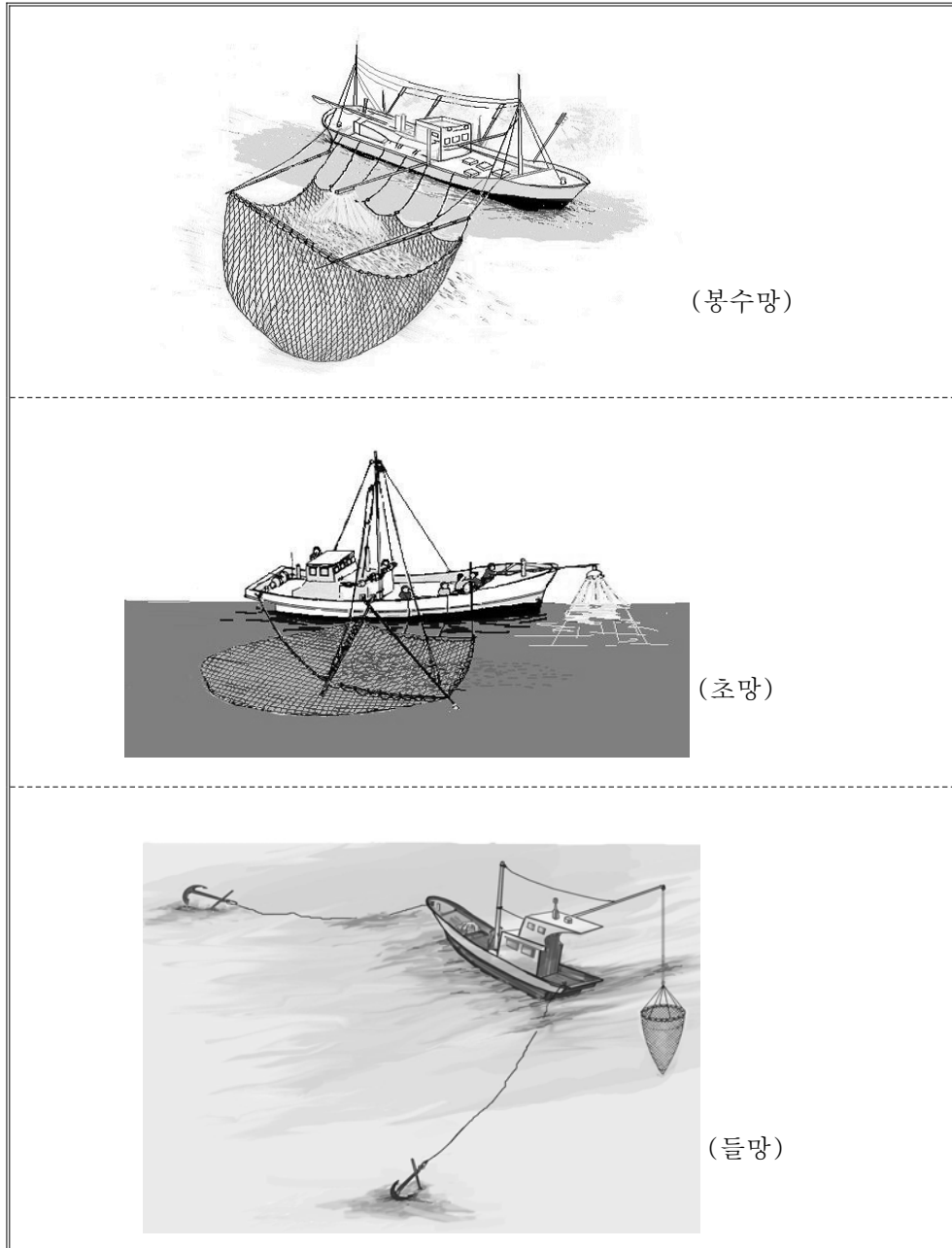
[부도 13-2]

근해붕수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3-3]

근해봉수망 조업모식도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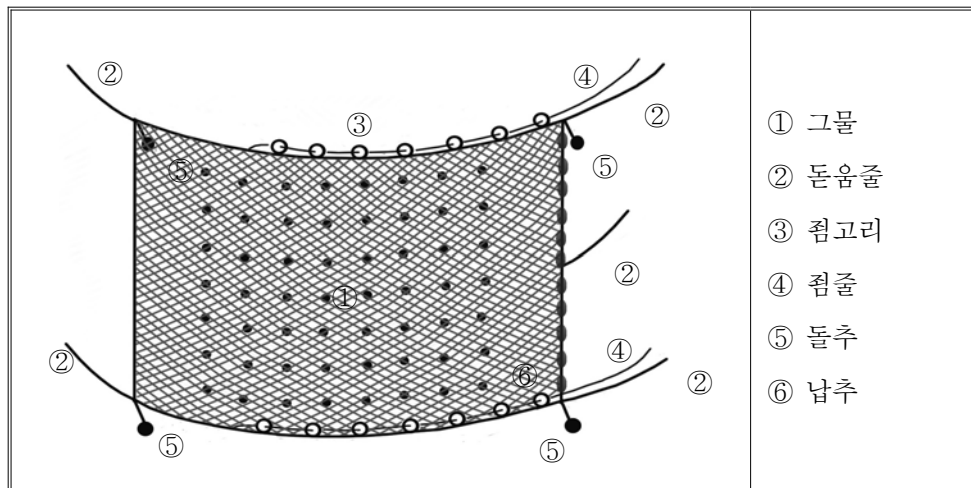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움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4-1 및 부도 14-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어로보조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4-3과 같다.

-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그물의 네 모서리에 닻을 투하하고 돌움줄로 그물을 펼치면서 투망한 후, 그물 위에 대상 수산동물이 모이면 돌움줄을 당기면서 그물을 들어 올려 오목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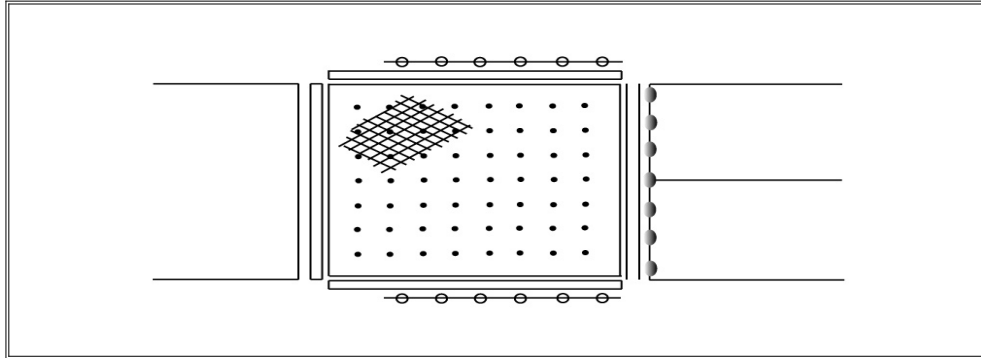
[부도 14-1]

근해자리돔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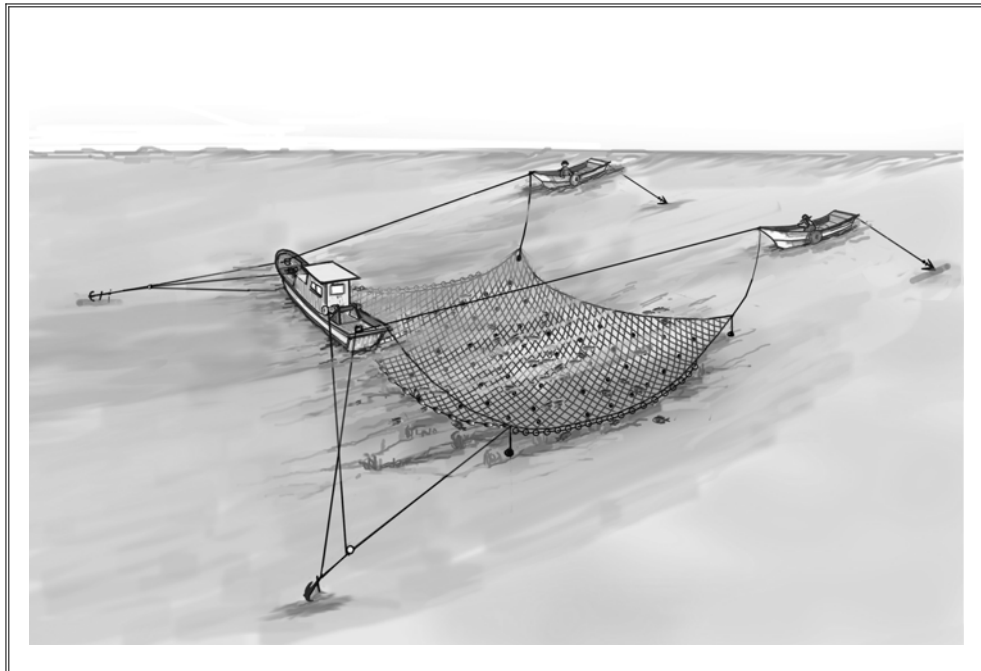
[부도 14-2]

근해자리돔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4-3]

근해자리돔들망 조업모식도



15. 근해장어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15-1과 같다.

- 1)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 2)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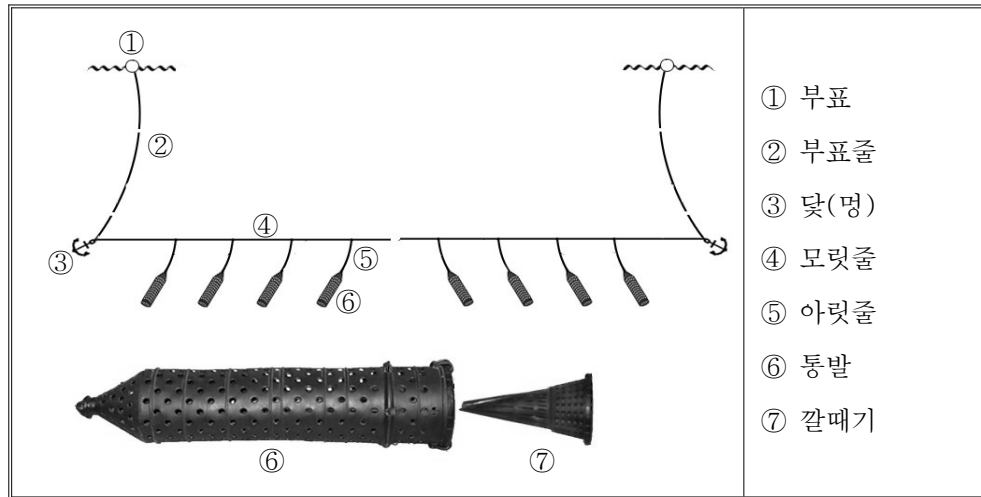
어선 규모	어구량
8톤 이상 2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3,200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20톤 이상 4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5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4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7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5-2와 같다.

- 1)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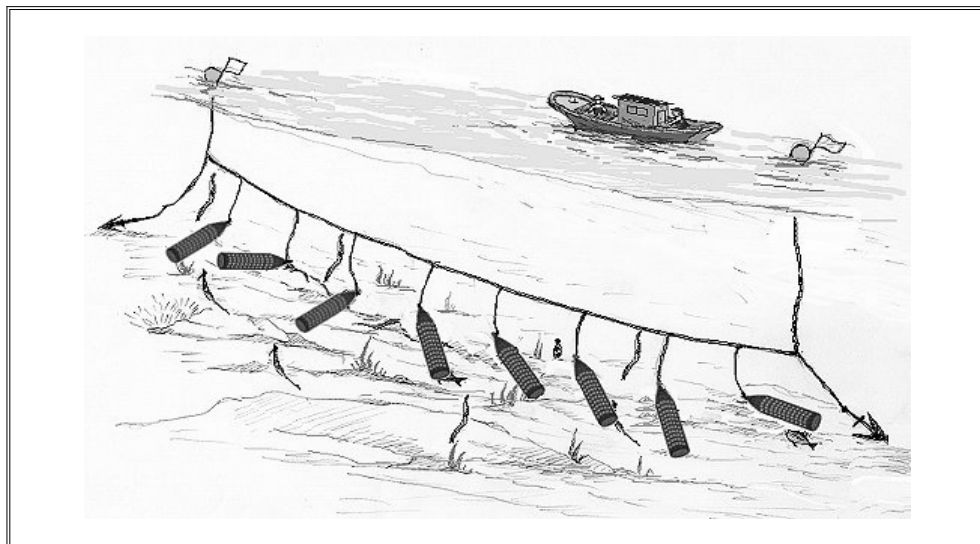
[부도 15-1]

근해장어통발 어구 겨냥도



[부도 15-2]

근해장어통발 조업모식도



16. 근해문어단지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16-1과 같다.

- 1)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 2)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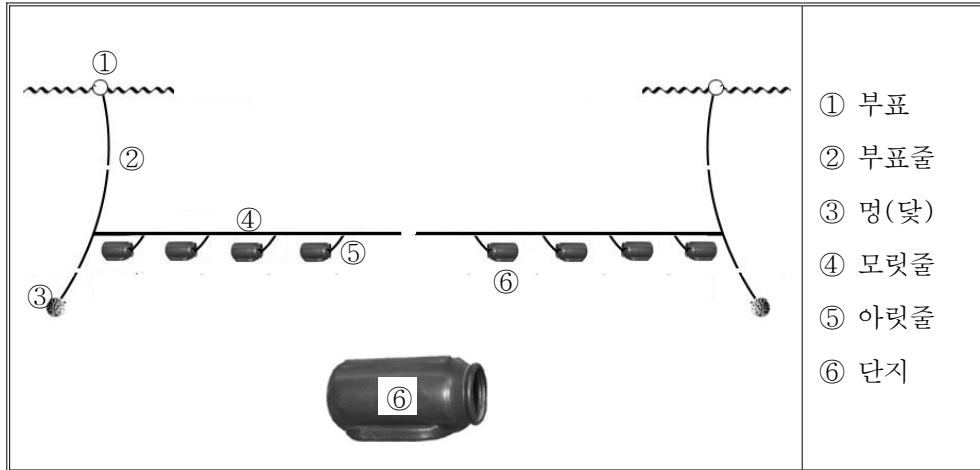
어선 규모	어구량
8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의 개수는 2만 4천개 ○ 단지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지 속으로 들어간 대상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6-2와 같다.

- 1) 여러 개의 단지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단지가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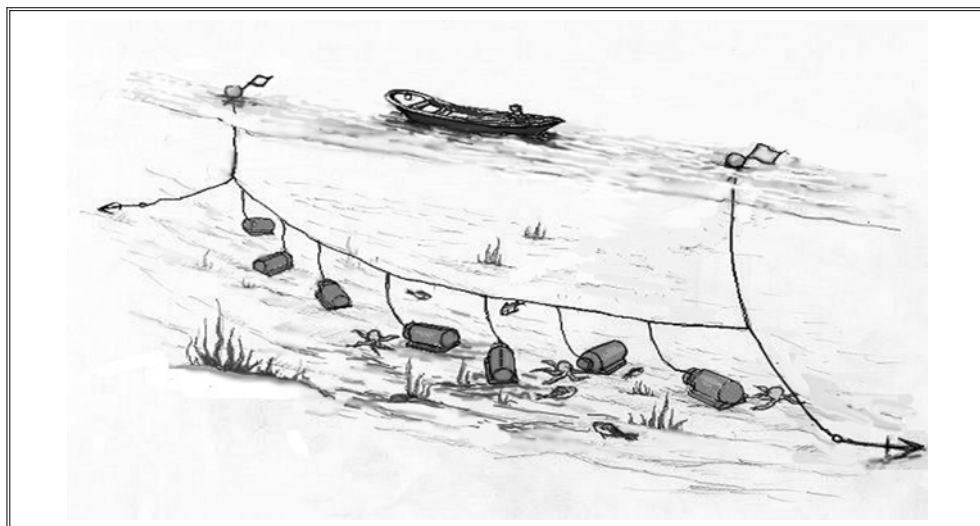
[부도 16-1]

근해문어단지 어구 겨냥도



[부도 16-2]

근해문어단지 조업모식도



17. 근해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7-1 및 부도 17-2와 같다.

-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2) 합성수지·철사·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3) 가로·세로·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4)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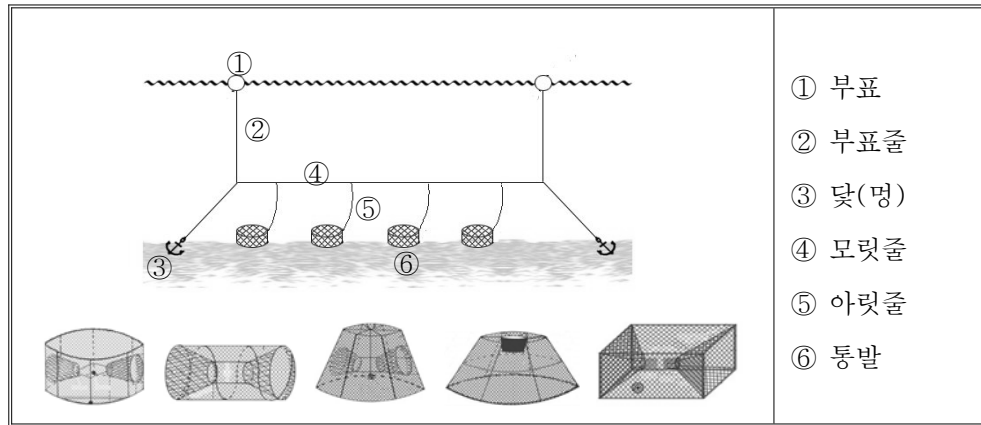
어선 규모	어구량
8톤 이상 2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20톤 이상 4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4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5천개. 다만, 동해안은 7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7-3과 같다.

- 1)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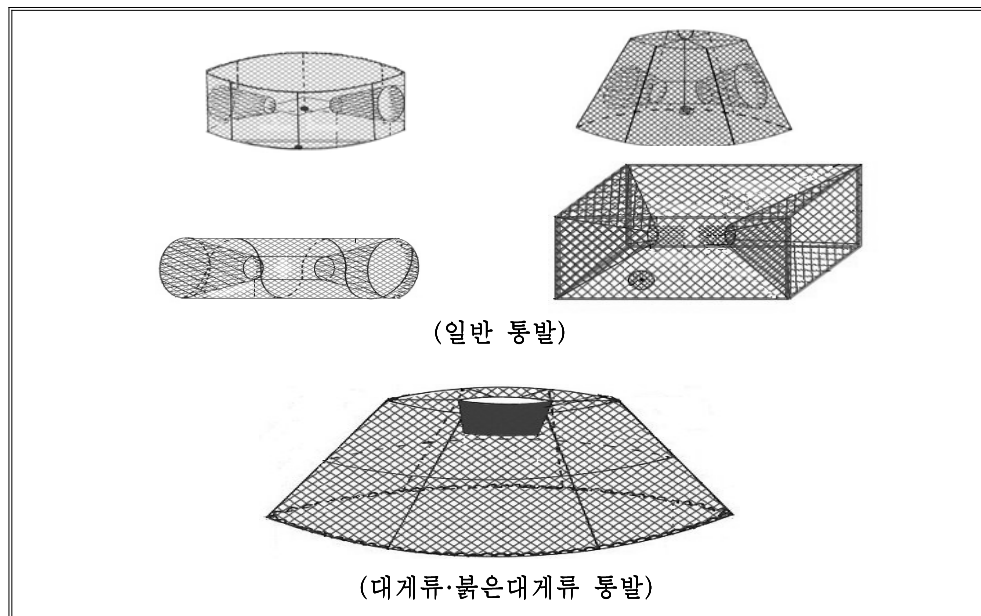
[부도 17-1]

근해통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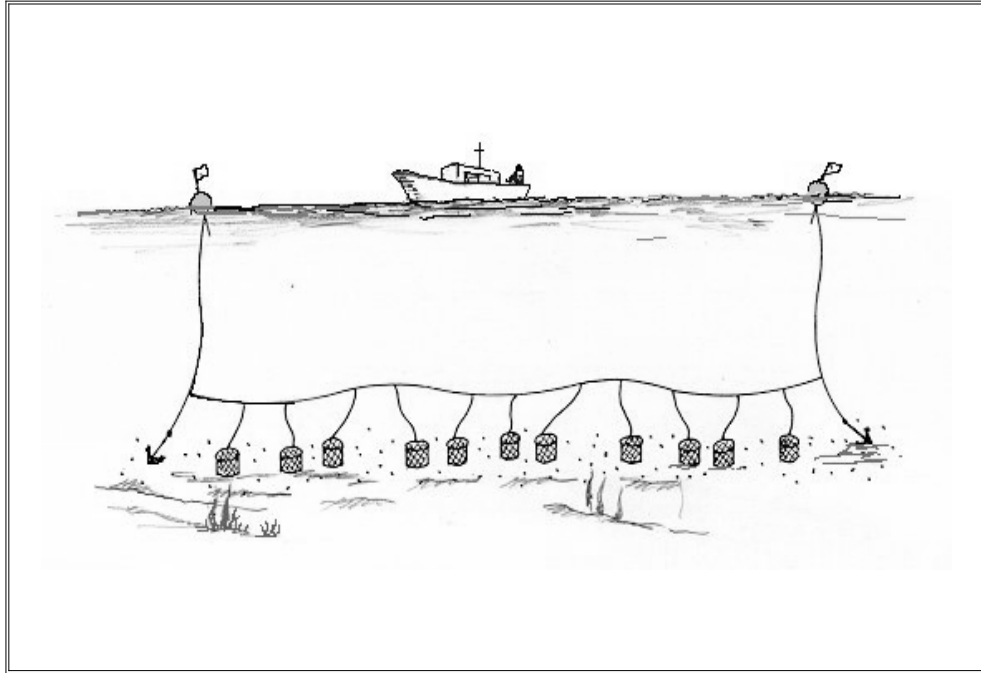
[부도 17-2]

근해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7-3]

근해통발 조업모식도



18. 근해연승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8-1 및 부도 18-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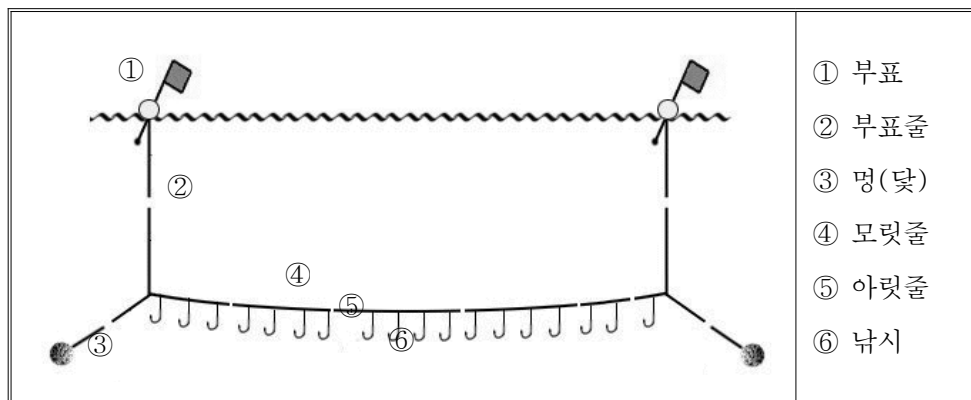
- 1) 낚시, 아릿줄, 모릿줄 등으로 구성된 어구
- 2) 모릿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아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8-3과 같다.

- 1) 여러 개의 낚시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낚시가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 4) 수산동물의 분포 수층(水層)에 따라 모릿줄에 뜬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표 줄의 길이로 어구의 부설 수층을 조절할 수 있다.

[부도 18-1]

근해연승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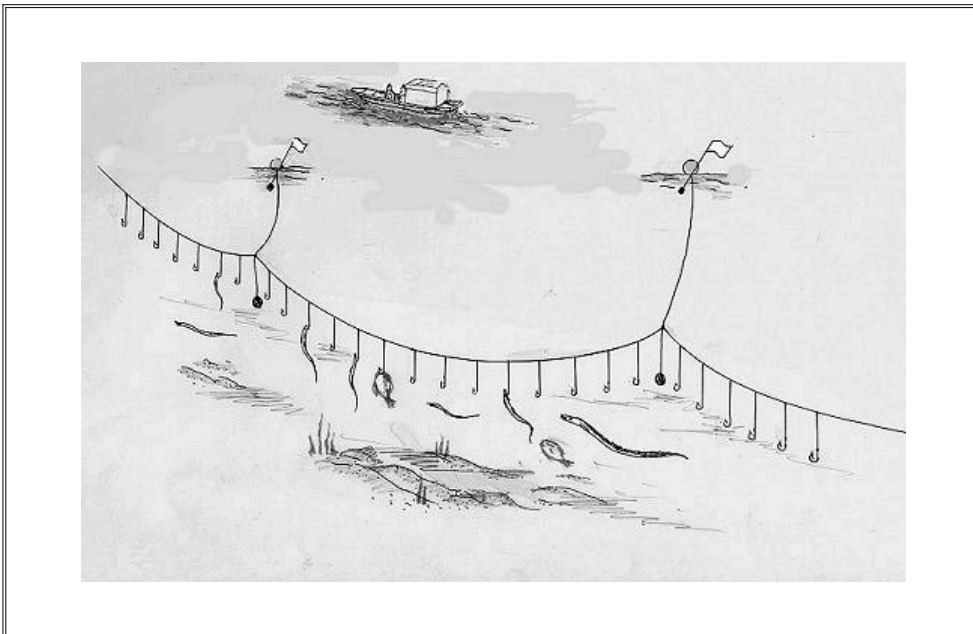
[부도 18-2]

근해연승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8-3]

근해연승 조업모식도



19. 기선권현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9-1 및 부도 19-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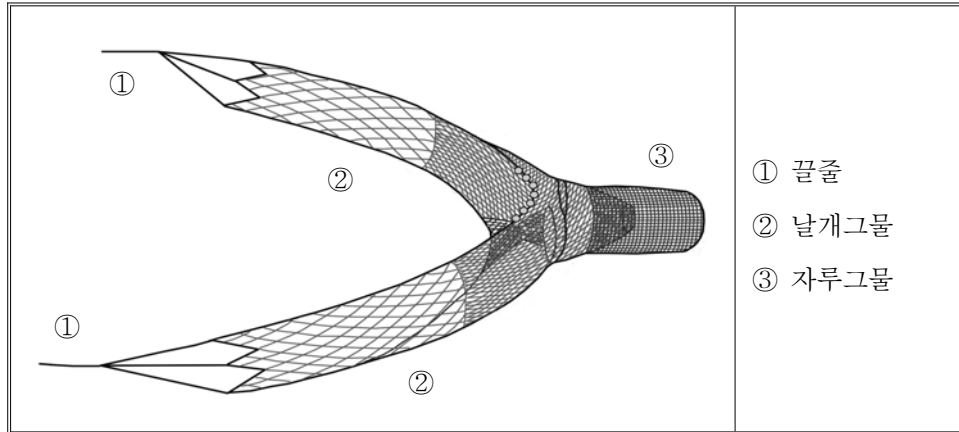
- 1)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한 어구
 - 3) 전개관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 오비기·수비: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며 그물코가 큰 것을 사용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9-3과 같다.

- 1)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신고 향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한다.
- 2) 본선 간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한다.
- 3) 예망이 끝나면 본선에서는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 4) 어로보조선은 어군을 탐색하거나 본선의 조업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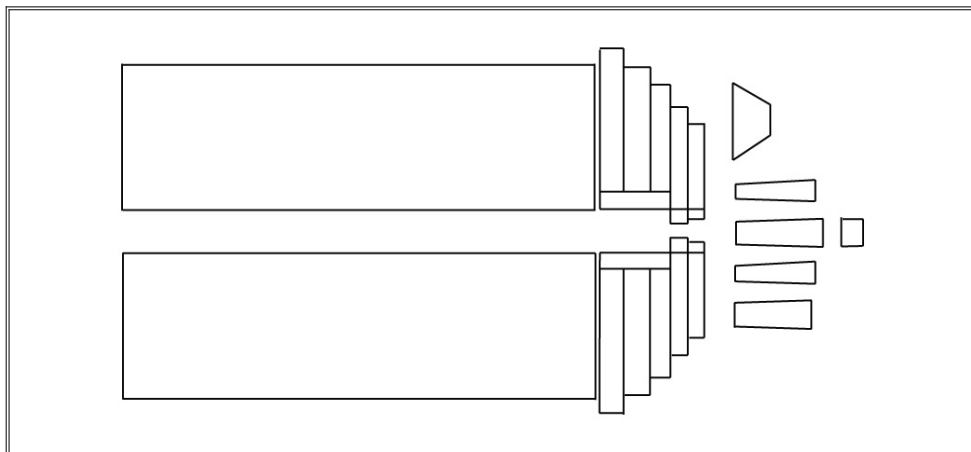
[부도 19-1]

기선권현망 어구 겨냥도



[부도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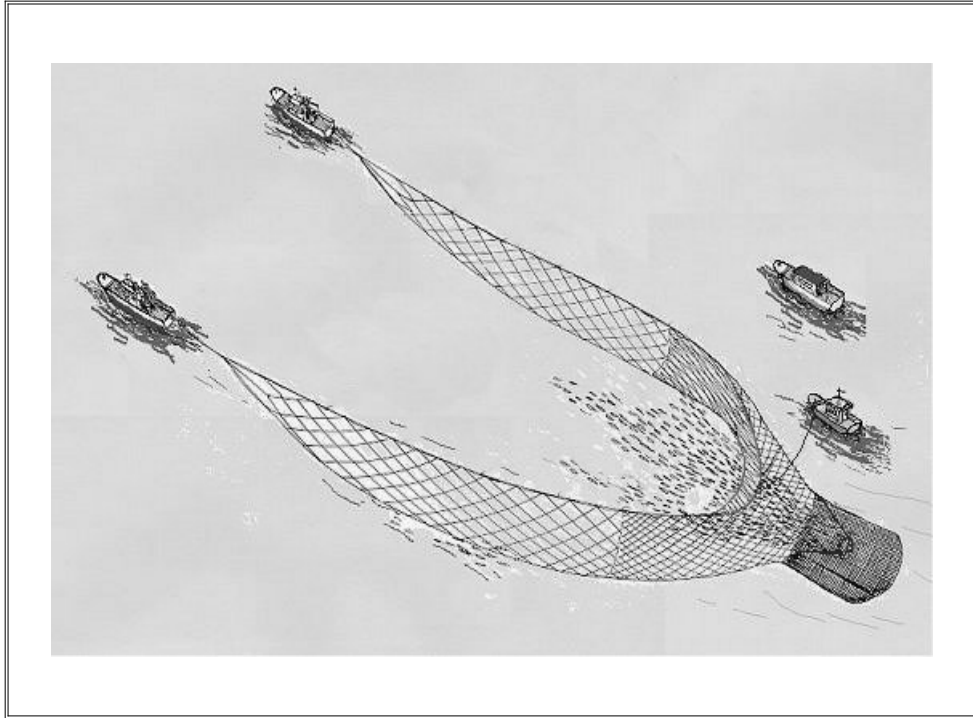
기선권현망 표준어구 구성도



수산관련법령집

[부도 19-3]

기선권현망 조업모식도



20. 근해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0-1 및 부도 2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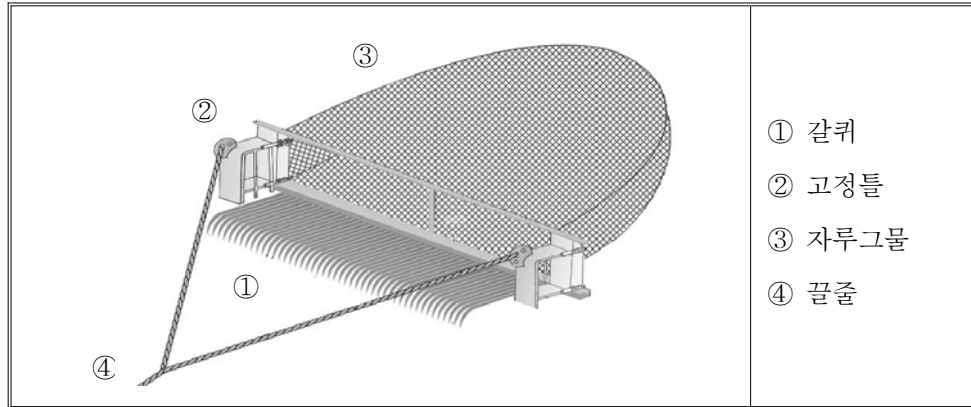
- 1) 일정한 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다만, 키조개, 고둥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갈퀴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3) 갈퀴의 간격이 4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센티미터 이상인 어구
- 4)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5)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6)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 * 썰매판: 펄이나 모래가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정틀 좌·우에 부착한 장치
 - * 갈퀴: 해저 속에 서식하는 패류를 채취하기 위해 고정틀의 밑면에 해저방향으로 부착된 여러 개의 꼬챙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4통 이하의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0-3과 같다.

- 1) 한 통 또는 4통 이하의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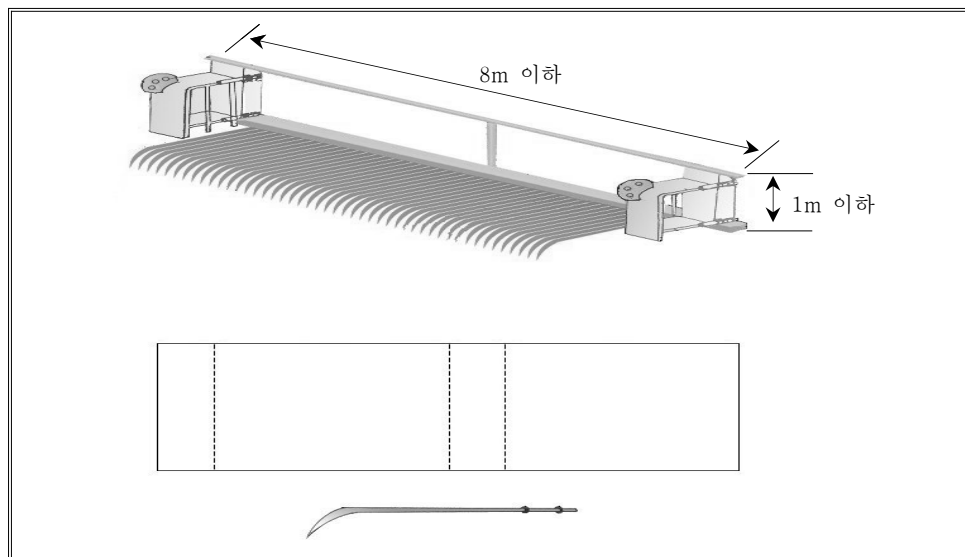
[부도 20-1]

근해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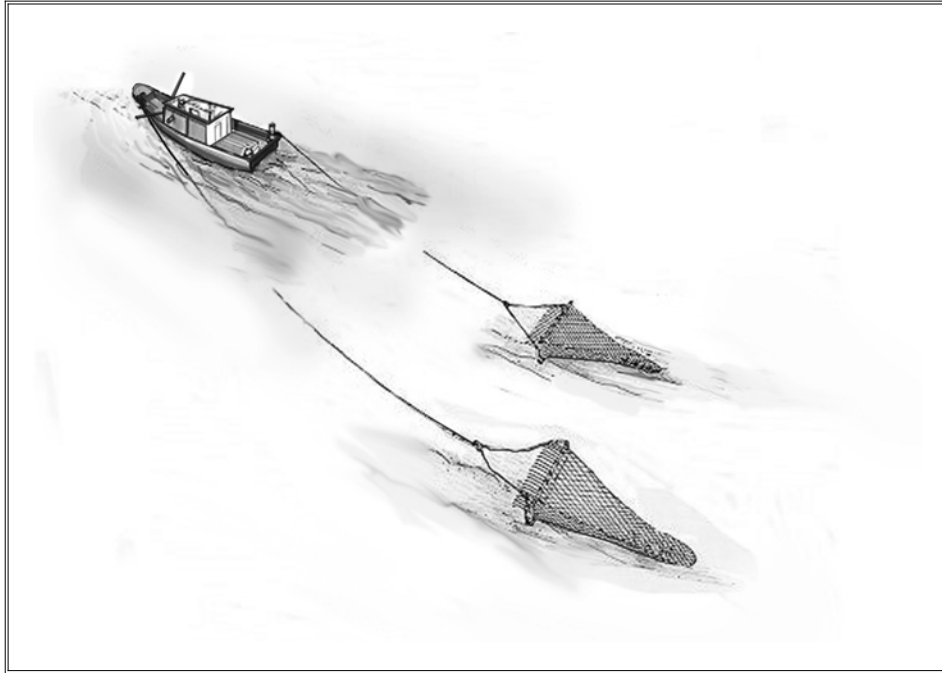
[부도 20-2]

근해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20-3]

근해형망 조업모식도



21. 잠수기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장비
겨냥도는 부도 2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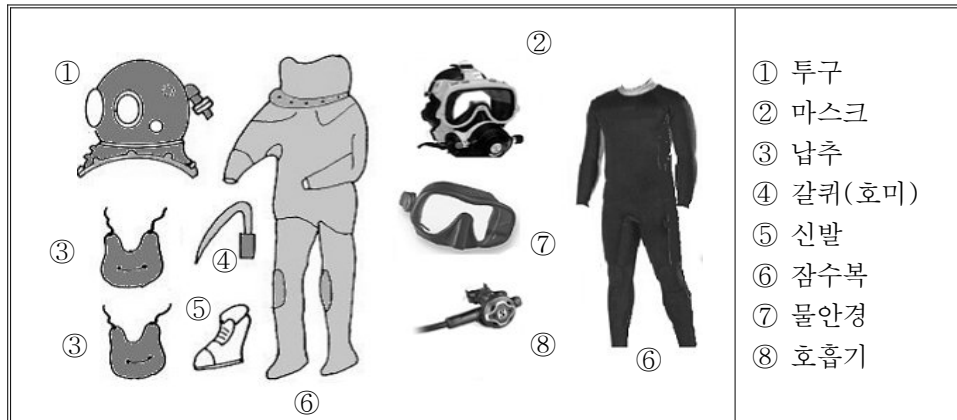
- 1) 잠수복, 투구 또는 마스크, 낚, 신발,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공기공급용 호스 등
의 장비와 갈퀴, 칼, 망태 등으로 구성된 어구
- 2)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3) 배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船首部) 좌·우 현(舷)의 외판(外板)은 노
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
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1-2와 같다.

- 1)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
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다.
- 2) 호스를 사용한 투구식 또는 마스크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 3)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
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
획할 수 있는 매물성 수산동물[개조개·키조개·왕우럭·코끼리조개·바지락(법 제
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개불로 한정한다]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8마력 이하로 한정한다) 및 노즐
규격을 정하는 경우로서 이에 적합하게 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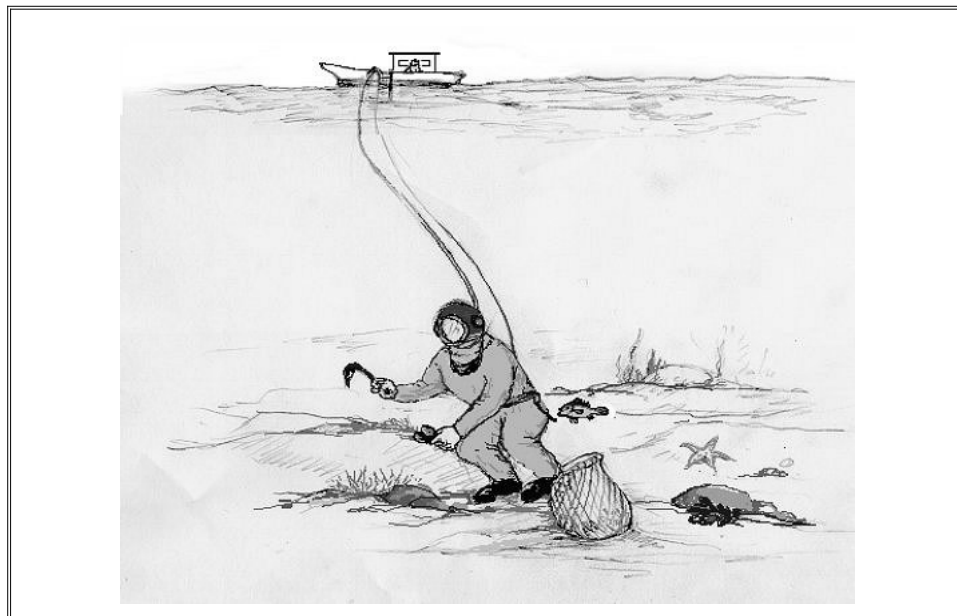
[부도 21-1]

잠수기어업 장비 겨냥도



[부도 21-2]

잠수기어업 조업모식도



Ⅲ. 연안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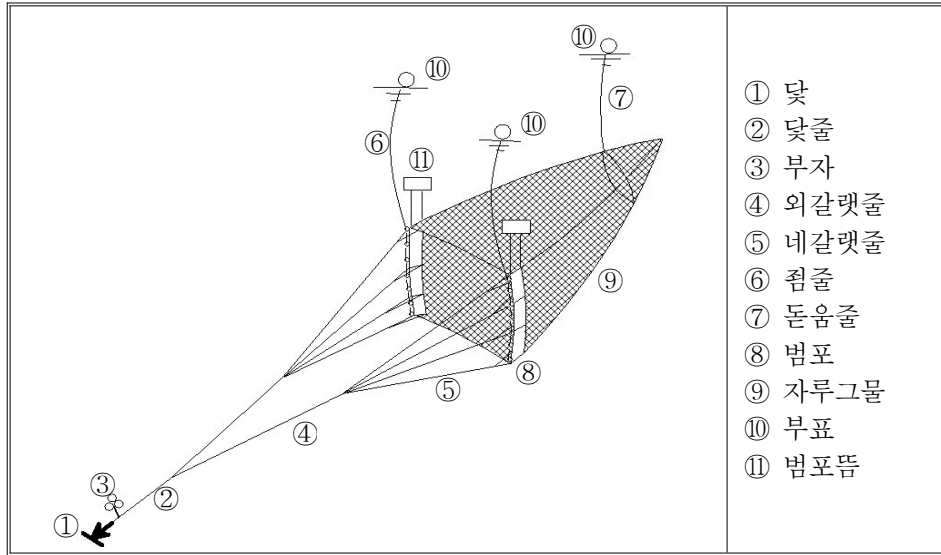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뺨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 3)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의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4)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3과 같다.

-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쫓대 또는 뺨침대)를 투하한 뒤 줍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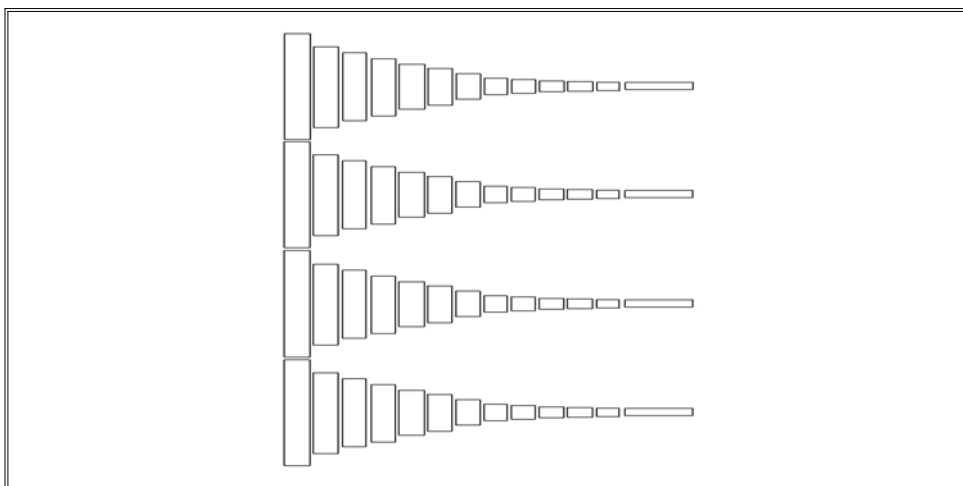
[부도 1-1]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부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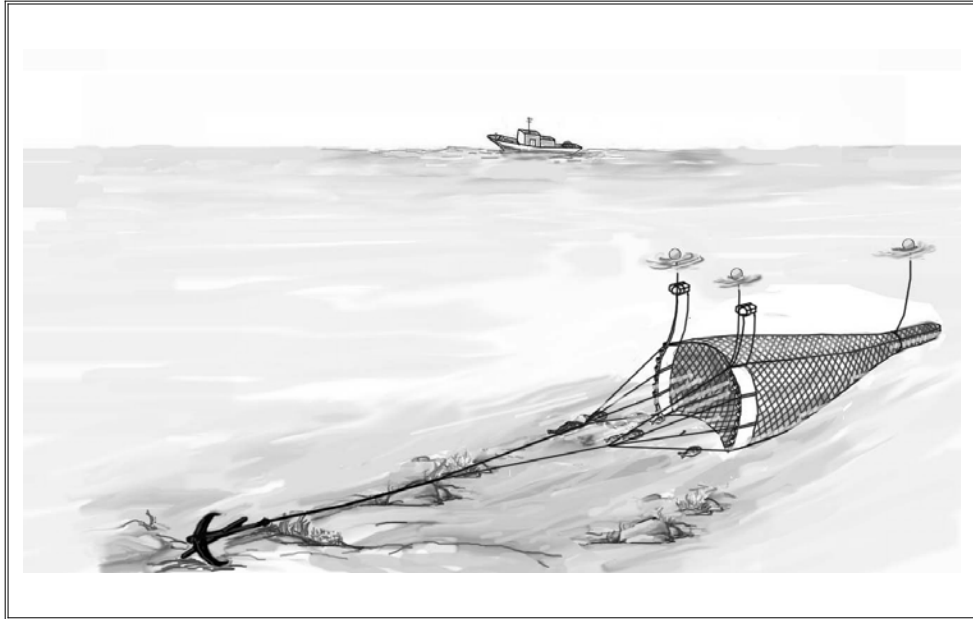
연안개량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수산관련법령집

[부도 1-3]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모식도



2. 연안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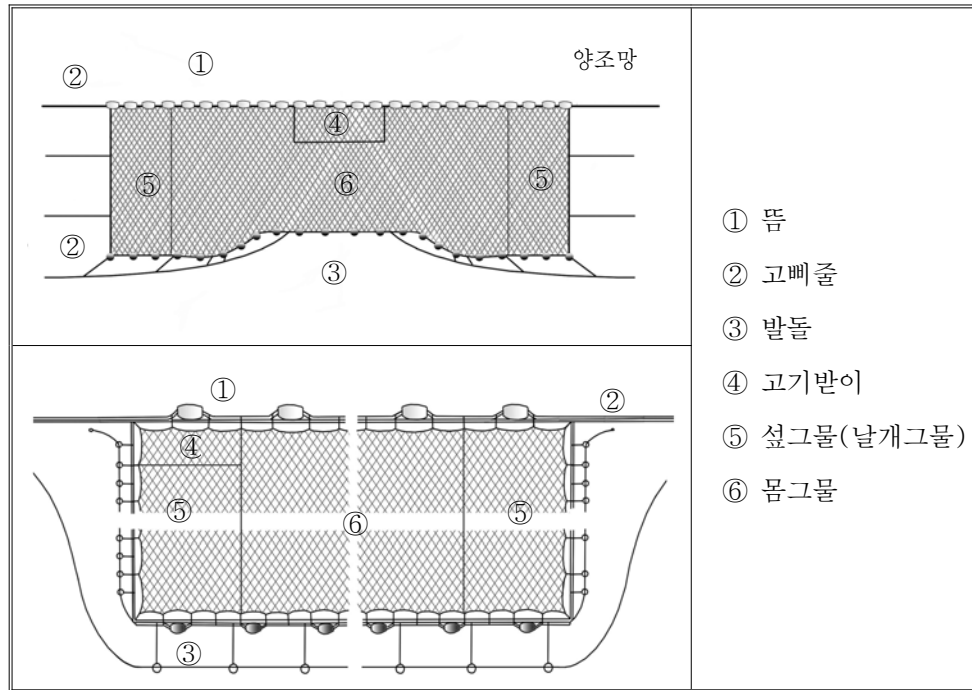
-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섯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3과 같다.

- 1) 본선은 부속선에 고삐줄과 줍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줍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2) 부속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줍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 3) 본선에만 어구를 실어야 하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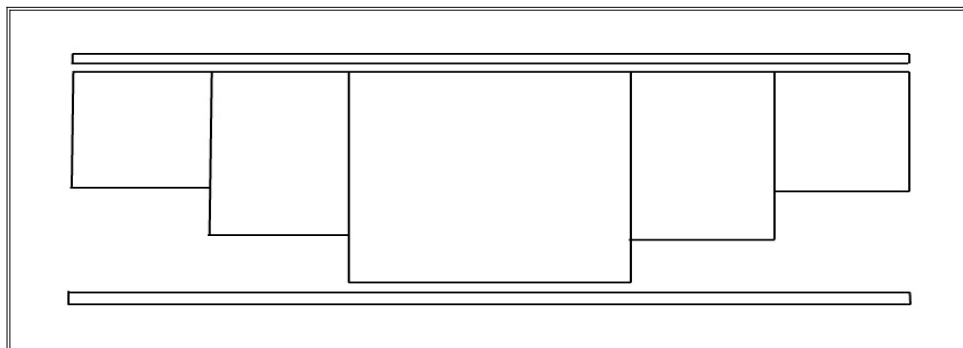
[부도 2-1]

연안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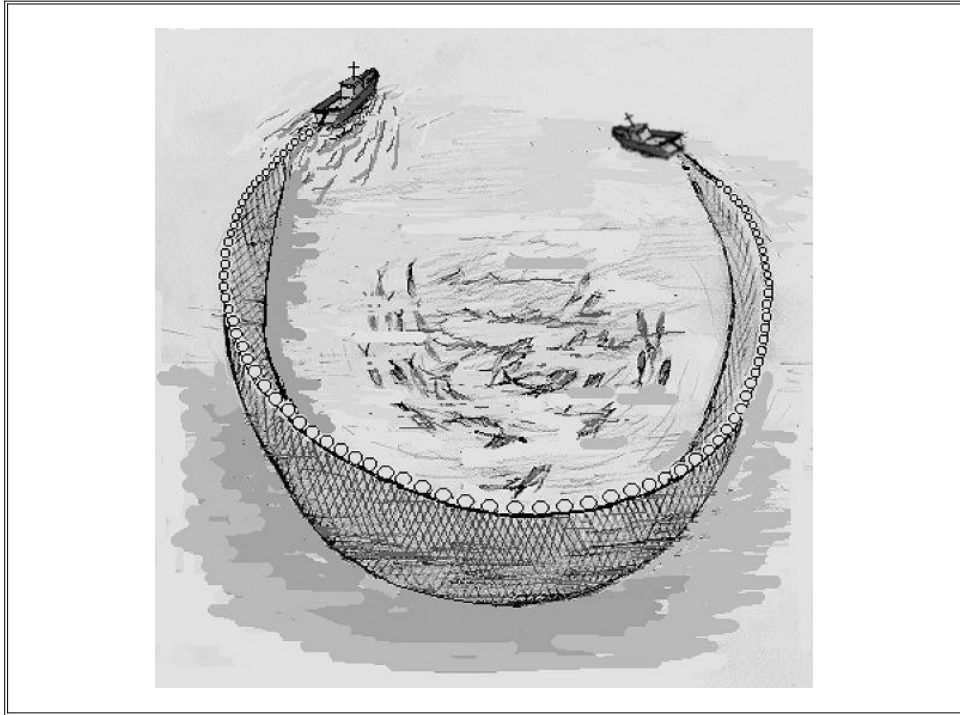
[부도 2-2]

연안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2-3]

연안선망 조업모식도



3. 연안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2) 합성수지·철사·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3) 또는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 4) 가로·세로·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5)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을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및 통발 간격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 및 통발 간격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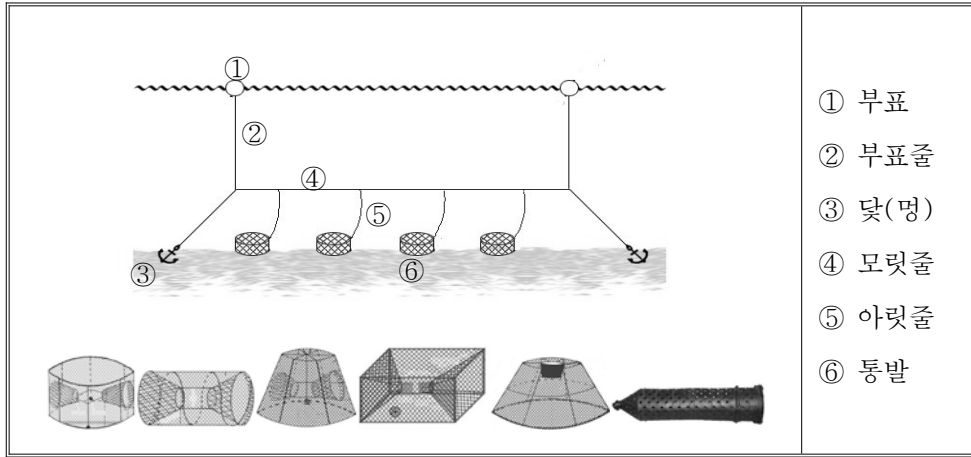
어구량 및 통발 간격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다만, 장어를 주로 포획하려는 경우 통발의 개수는 3,2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 1) 통발 1개씩을 부표에 직접 달아 부설하거나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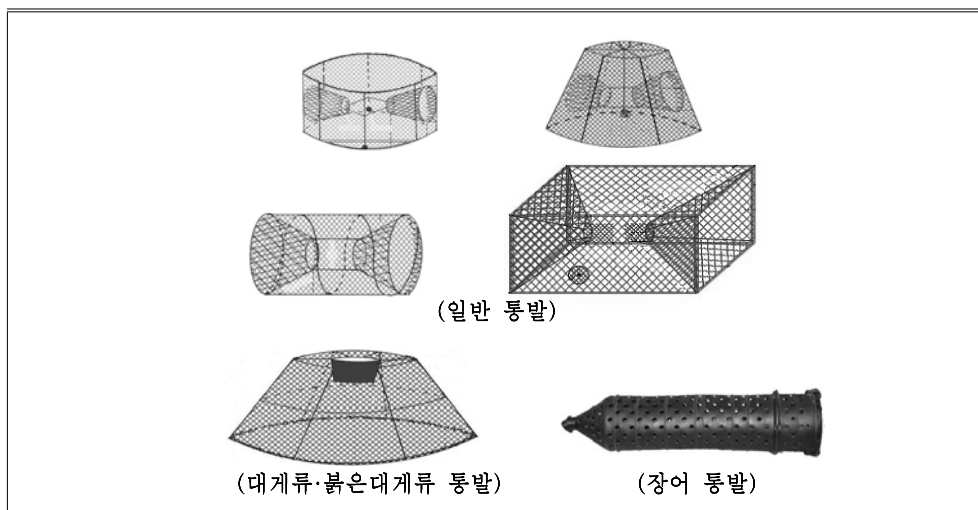
[부도 3-1]

연안통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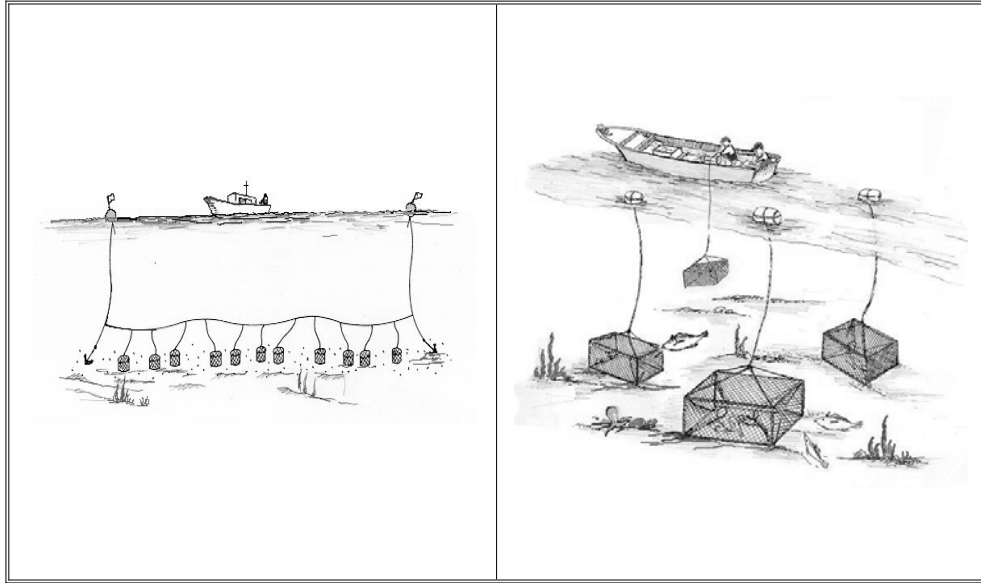
[부도 3-2]

연안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3-3]

연안통발 조업모식도



4. 연안조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 3) 망 입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12미터 이하인 어구
- 4)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 5) 막대의 좌·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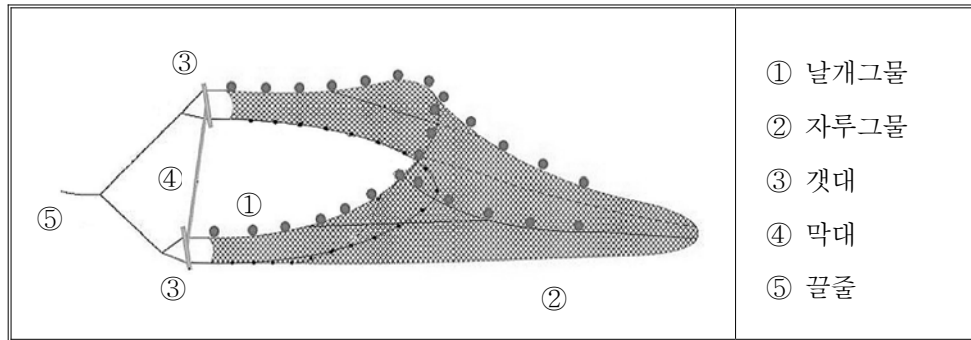
* 갯대: 날개그물의 끝을 상·하로 벌려주는 철봉이나 나무로 된 장치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3과 같다.

- 1)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를 포획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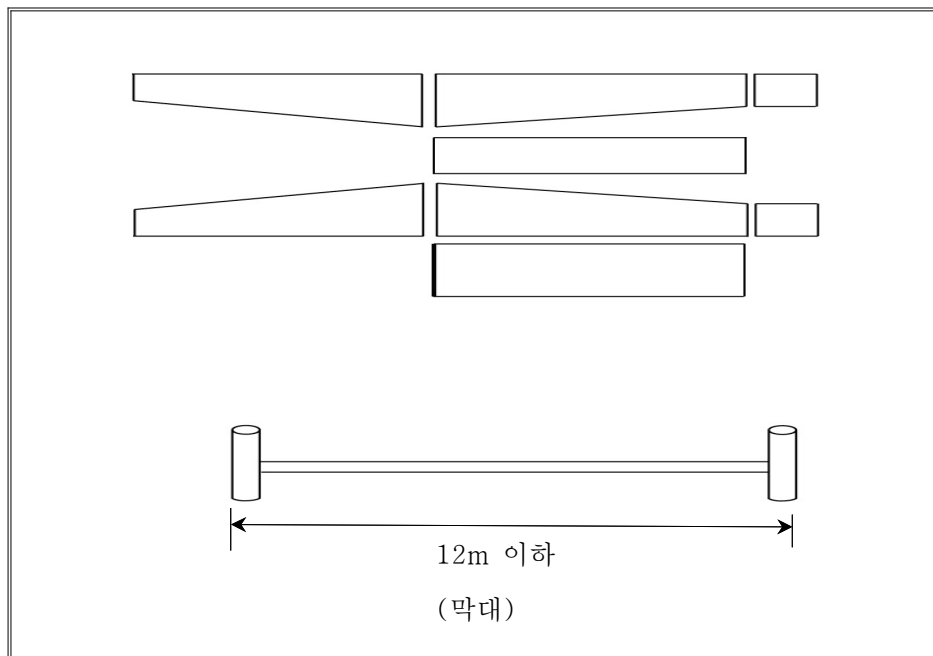
[부도 4-1]

연안조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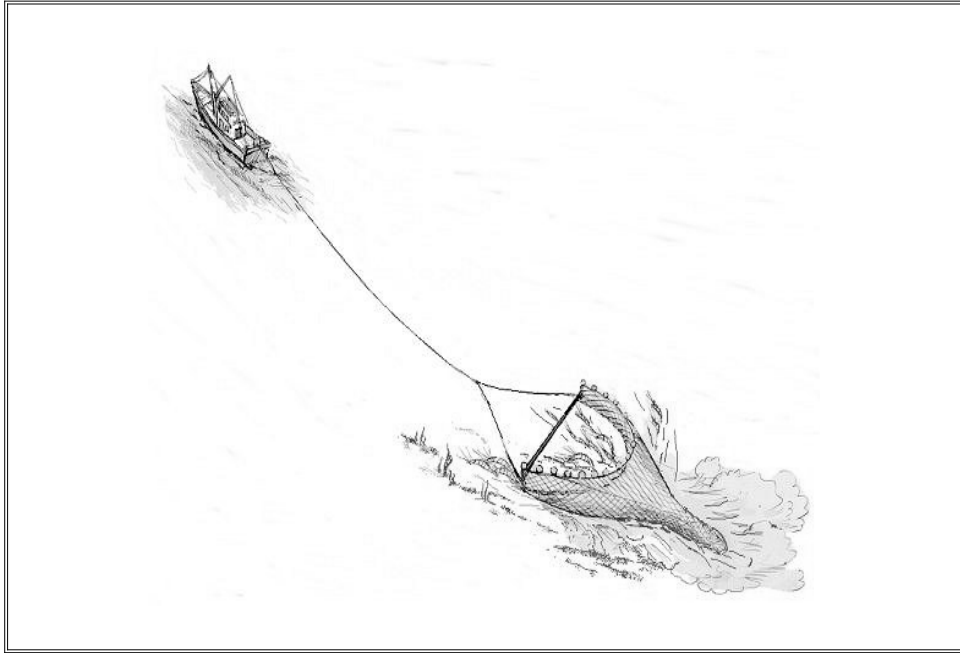
[부도 4-2]

연안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4-3]

연안조망 조업모식도



5. 연안선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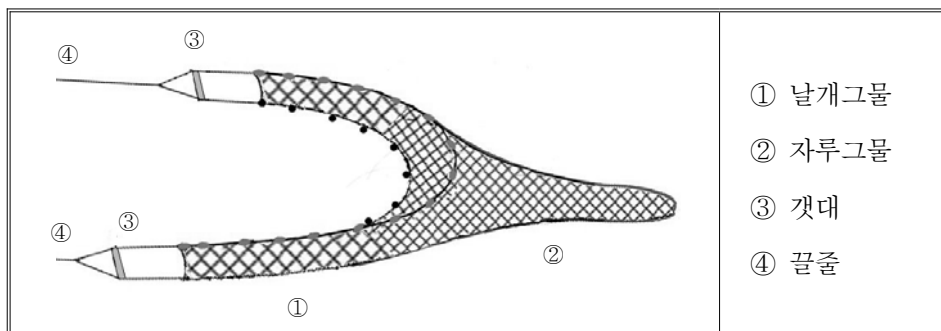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망구전개관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2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3과 같다.

- 1) 주선은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끌줄 순서로 투망한다.
- 2) 투망이 완료되면 종선은 주선으로부터 끌줄 1가닥을 넘겨받아 선체에 고정시키고, 주선과 종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층 또는 중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한다.
-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끌줄을 넘겨받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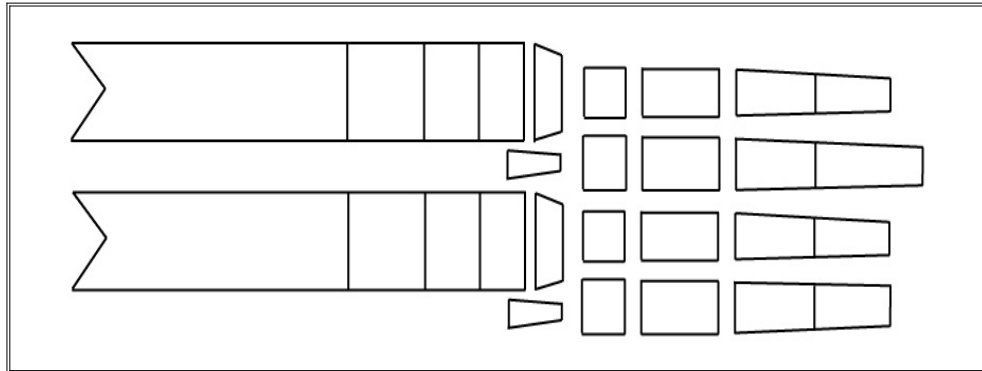
[부도 5-1]

연안선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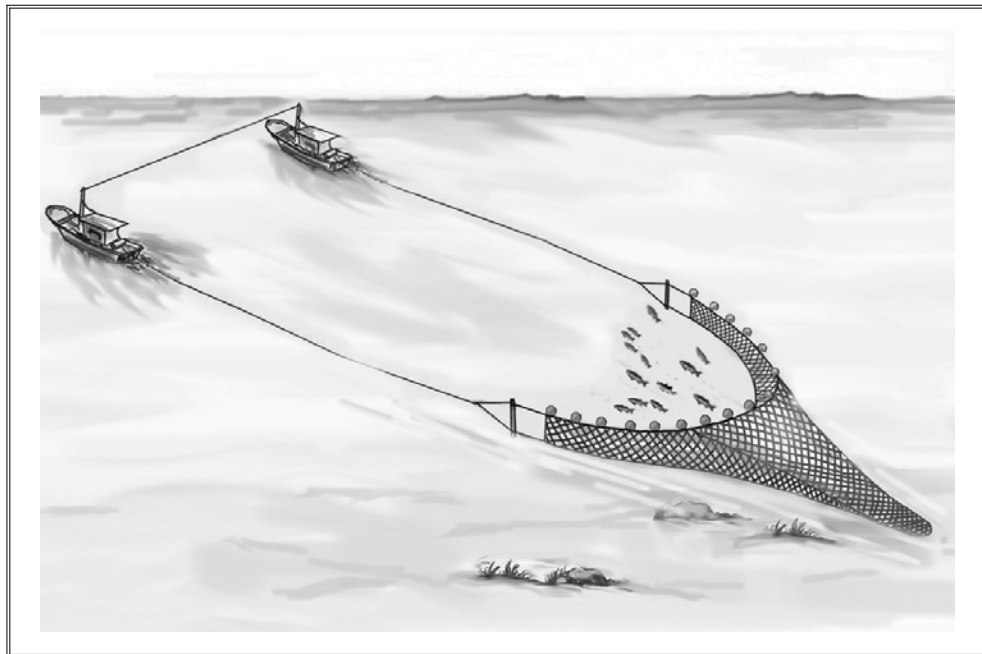
[부도 5-2]

연안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5-3]

연안선인망 조업모식도



6. 연안자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 1)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2)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 3) 뺨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뺨침대를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 4)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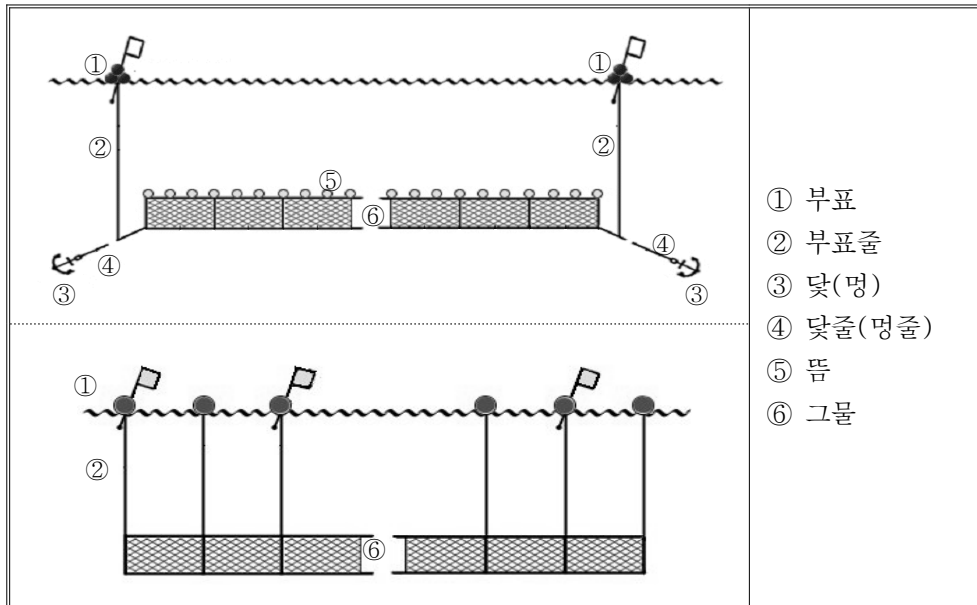
어구량
1만 2천미터. 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낚히도록 하거나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 1) 부표, 닻(명), 그물, 닻(명),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 3)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4) 다만, 갯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뺨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갯새우를 그물에 갇히도록 하여 포획한다.
- 5)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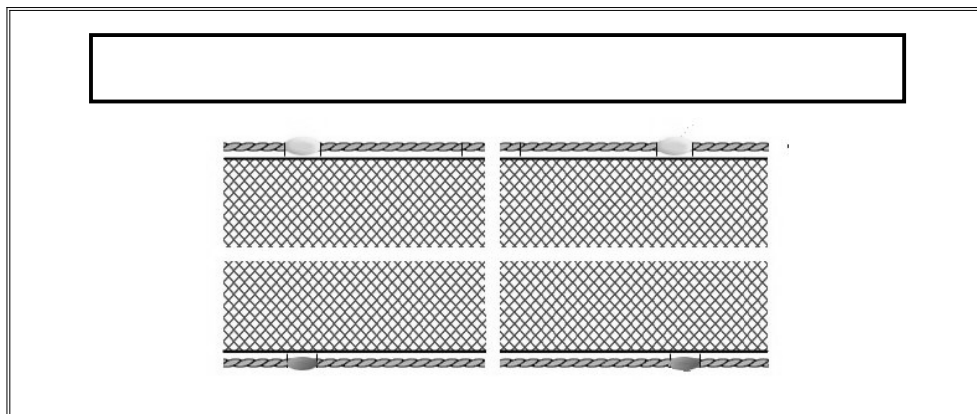
[부도 6-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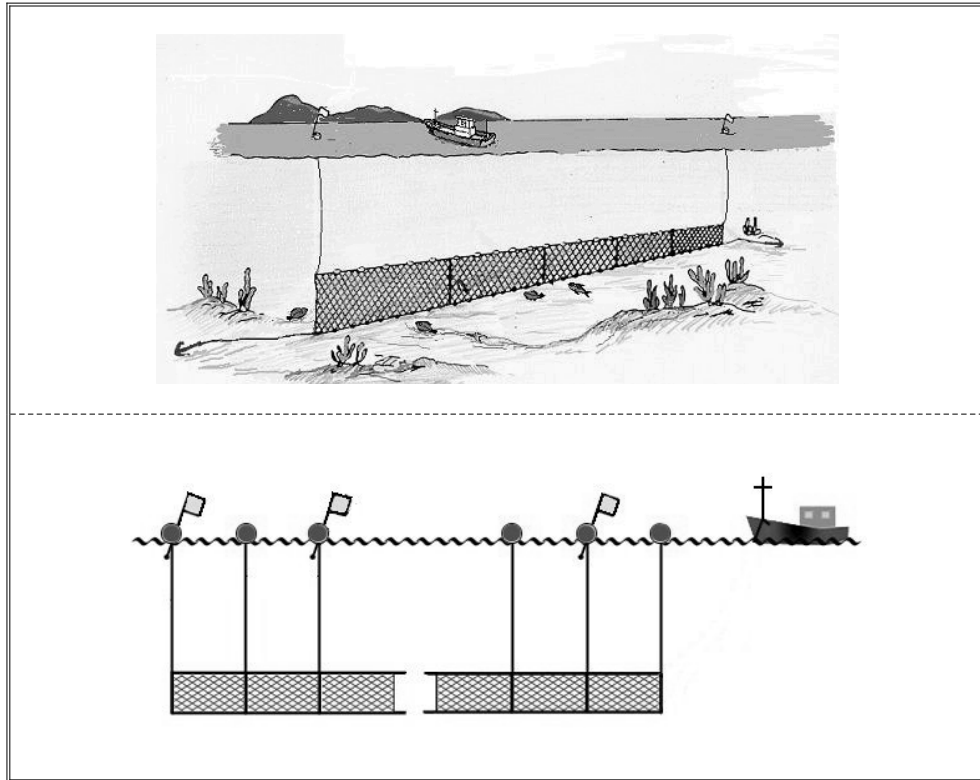
[부도 6-2]

연안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6-3]

연안자망 조업모식도



7. 연안들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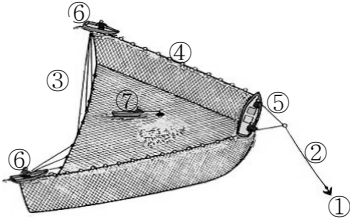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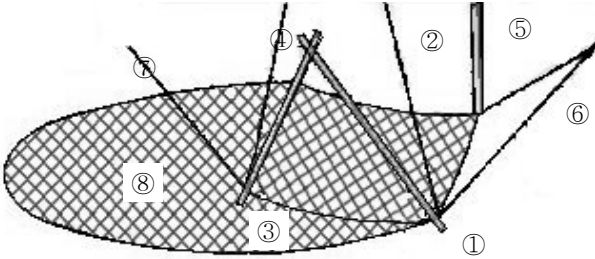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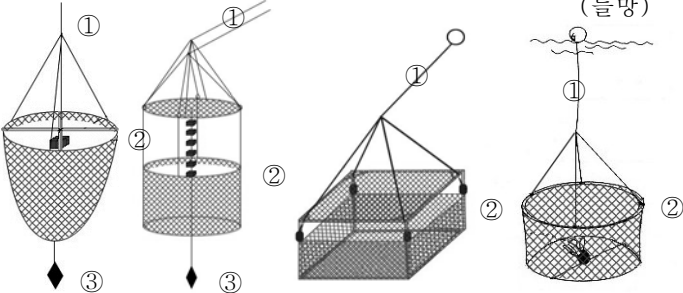
- 1)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 2) 기다란 칠팔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3과 같다.

-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1) 또는 물속에 미리 어구를 부설하여 놓고 수산동물을 어구 속으로 유도하여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3) 야간에는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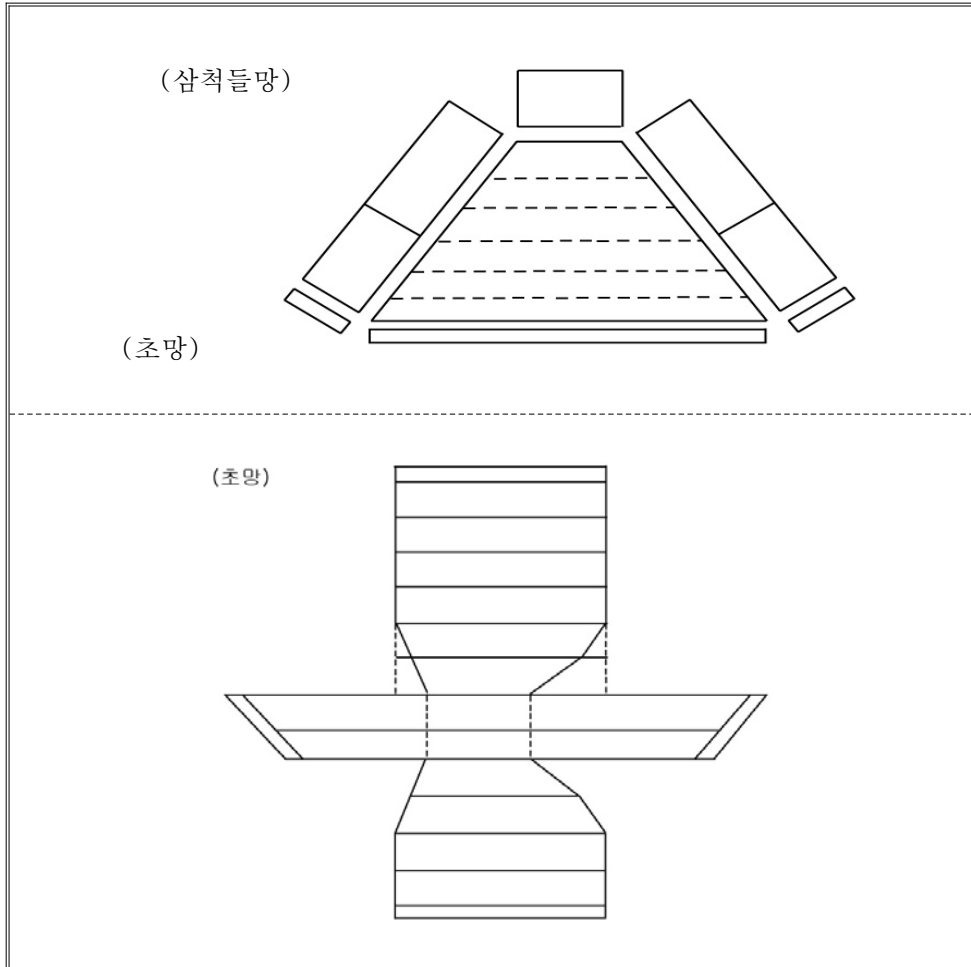
[부도 7-1]

연안들망 어구 겨냥도

 <p>(삼척들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닛 ② 닛줄 ③ 돈움줄 ④ 뜸 ⑤ 본선 ⑥ 부속선 ⑦ 불배
 <p>(초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큰챗대 ② 큰챗대줄 ③ 작은챗대 ④ 작은챗대줄 ⑤ 콧대 ⑥ 앞잡이줄 ⑦ 뒷잡이줄 ⑧ 자루그물
 <p>(들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돈움줄 ② 고정테 ③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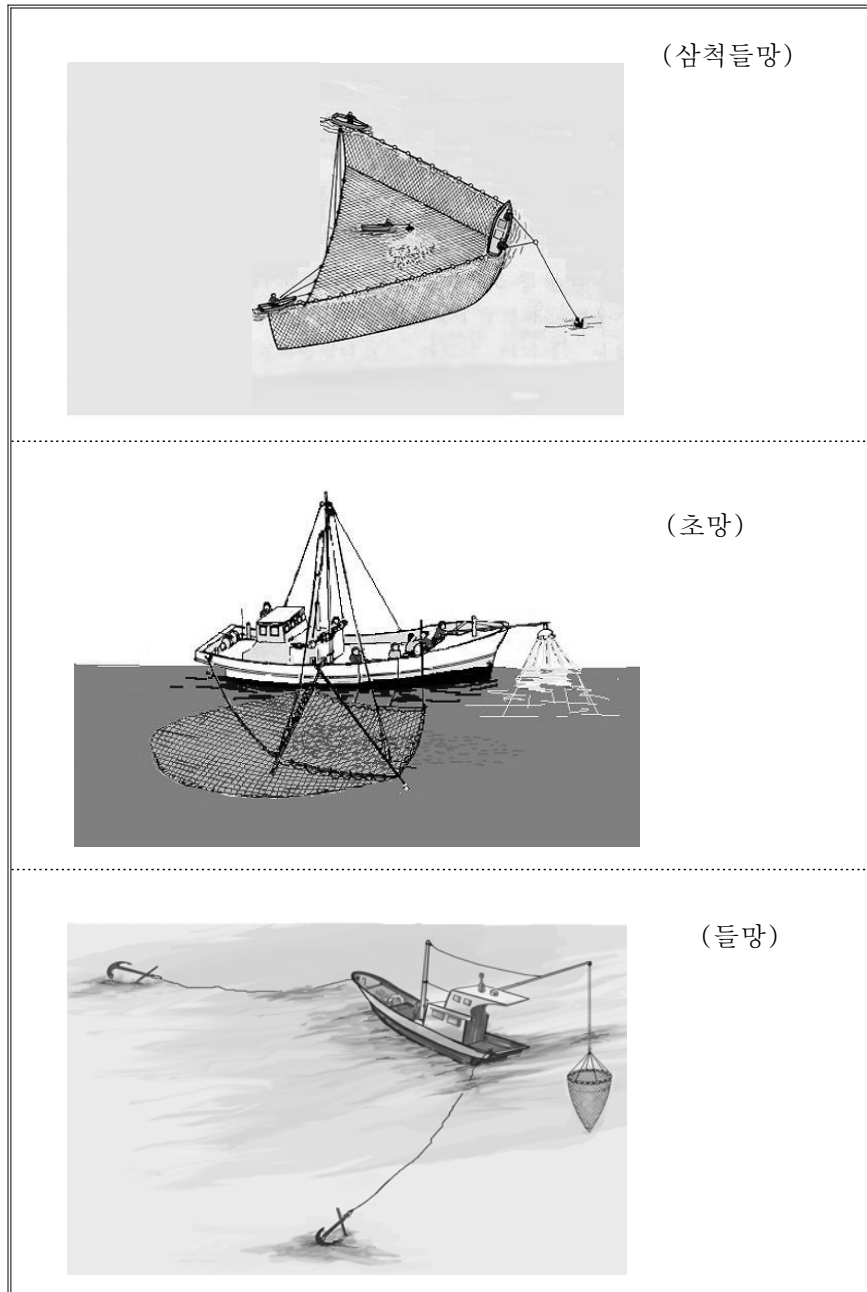
[부도 7-2]

연안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7-3]

연안들망 조업모식도



8. 연안복합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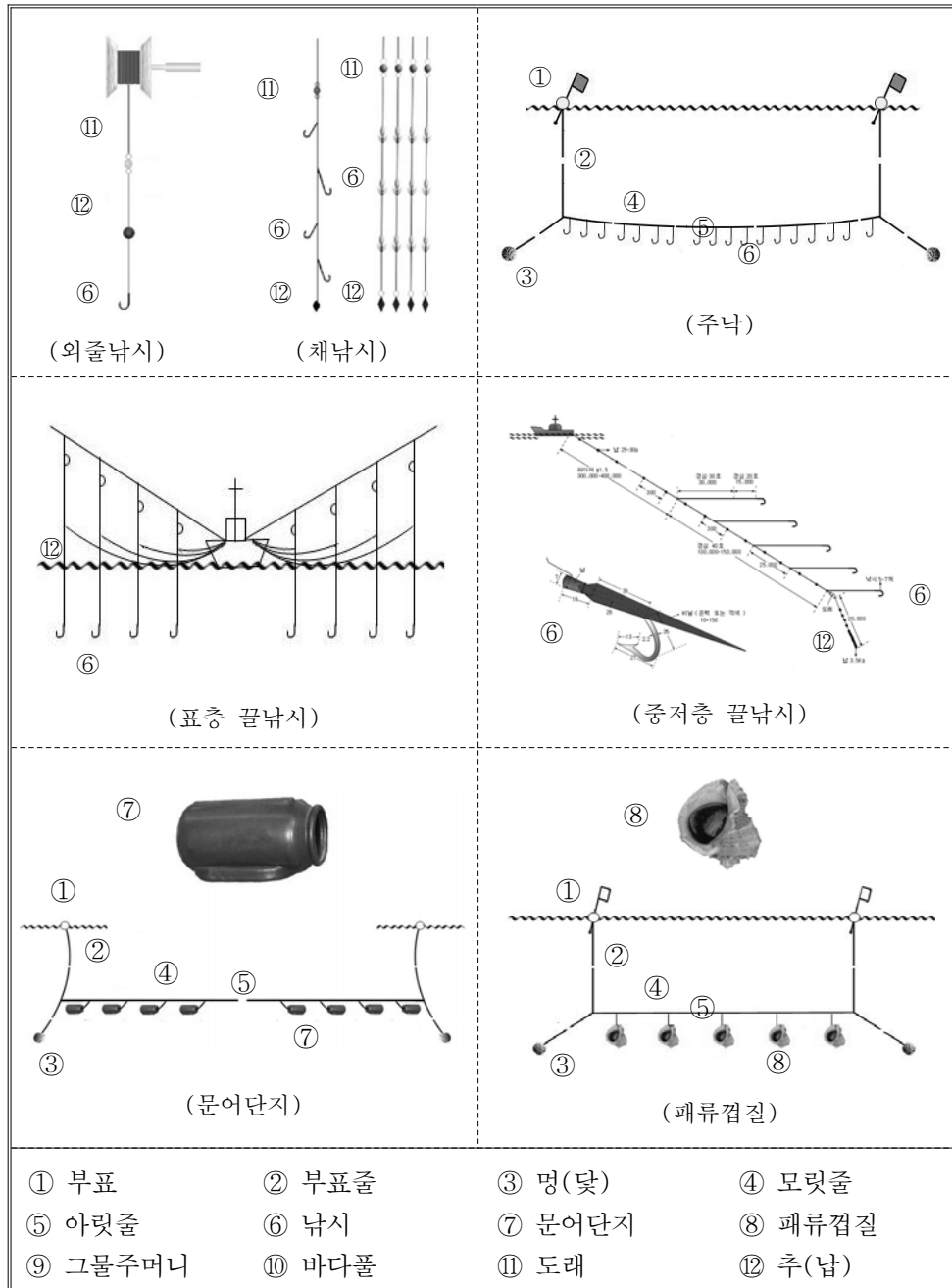
- 1) 낚시어업: 주낙, 외줄낚시, 끝낚시, 채낚시 등 낚시로 구성된 어구
- 2) 문어단지어업: 토기,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 3) 패류껍질어업: 패류껍질로 구성된 어구
- 4) 패류미끼망어업: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물주머니로 구성된 어구
- 5) 손꽂이어업: 바다풀 또는 대나무 등을 엮어서 구성된 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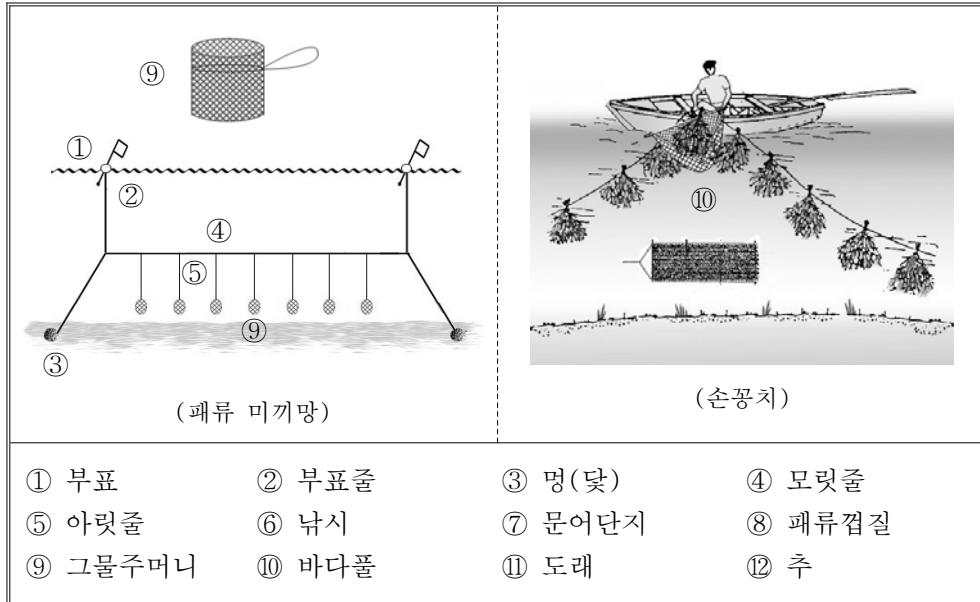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과 같다.

- 1) 낚시어업의 어법: 가목1)의 어구를 모릿줄, 낚싯대, 자동조획기, 수동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 2) 문어단지어업의 어법: 가목2)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3) 패류껍질어업의 어법: 가목3)의 어구를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4) 패류미끼망어업의 어법: 가목4)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미끼주머니에 달라붙은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미끼를 넣은 그물주머니의 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패류가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 5) 손꽂이어업의 어법: 가목5)의 어구를 꽂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꽂치가 모이면 손이나 족대그물로 꽂치를 포획한다.

[부도 8]

연안복합어업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IV.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1. 건간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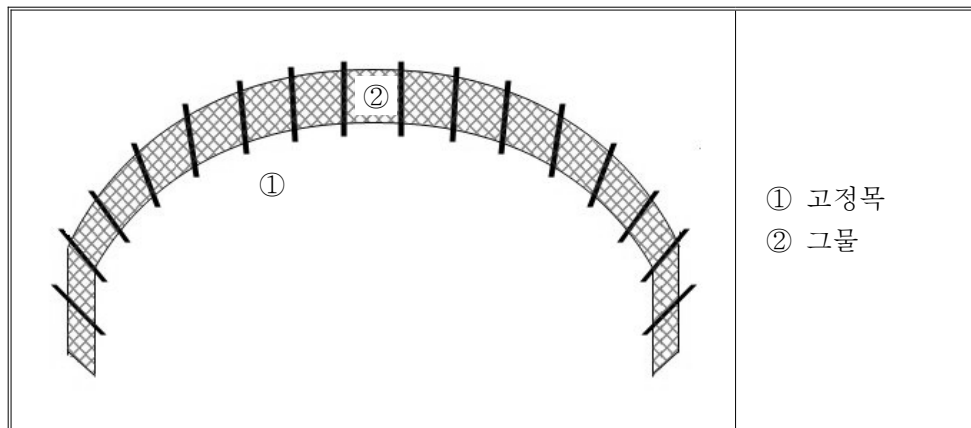
- 1) 여러 개의 고정목을 해저에 박고 그물을 병풍처럼 부착한 어구
- 2) 병풍처럼 쳐진 그물에 고깔 형태의 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과 같다.

- 1) 간조 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얇은 곳에 활, 반원, 원 등의 모양으로 고정목을 부설하고 고정목에 그물을 설치한다.
- 2)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 때 그물에 갇히게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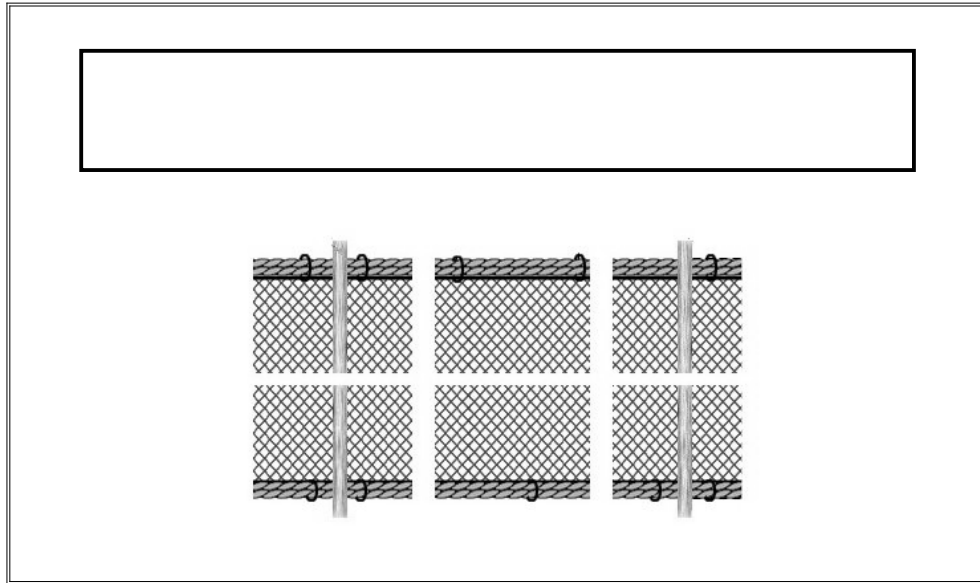
[부도 1-1]

건간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1-2]

건간망 표준어구 구성도



2. 건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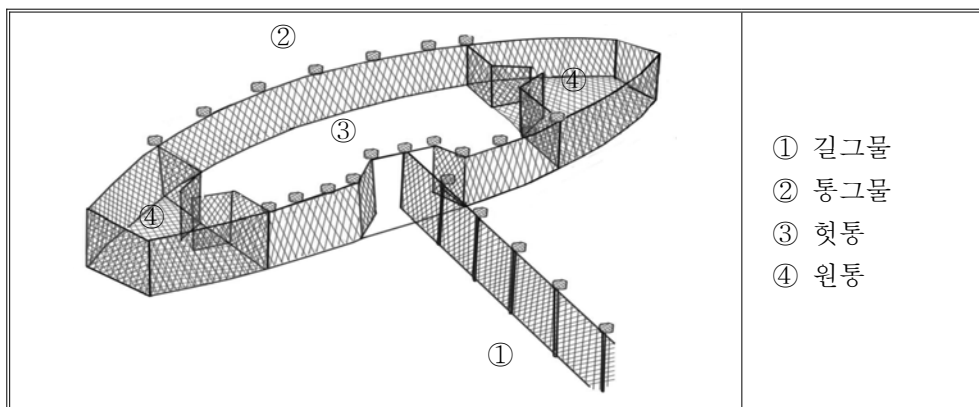
- 1)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통그물은 헛통과 원통으로 구성된 어구
- 3) 2)의 원통 입구(안)에 비탈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 * 길그물: 어군의 통로를 차단하여 어군을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그물
 - * 통그물: 길그물의 바닷쪽 끝에 설치되어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우리. 헛통과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원통: 어군을 최종적으로 가두어서 어획을 마무리 하는 곳
 - * 비탈그물: 헛통에 있는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는 경사진 통로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1과 같다.

- 1)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통그물을 설치한다.
- 2) 통그물의 원통을 한쪽부터 들어 올려 원통의 한쪽으로 수산동물을 몰아서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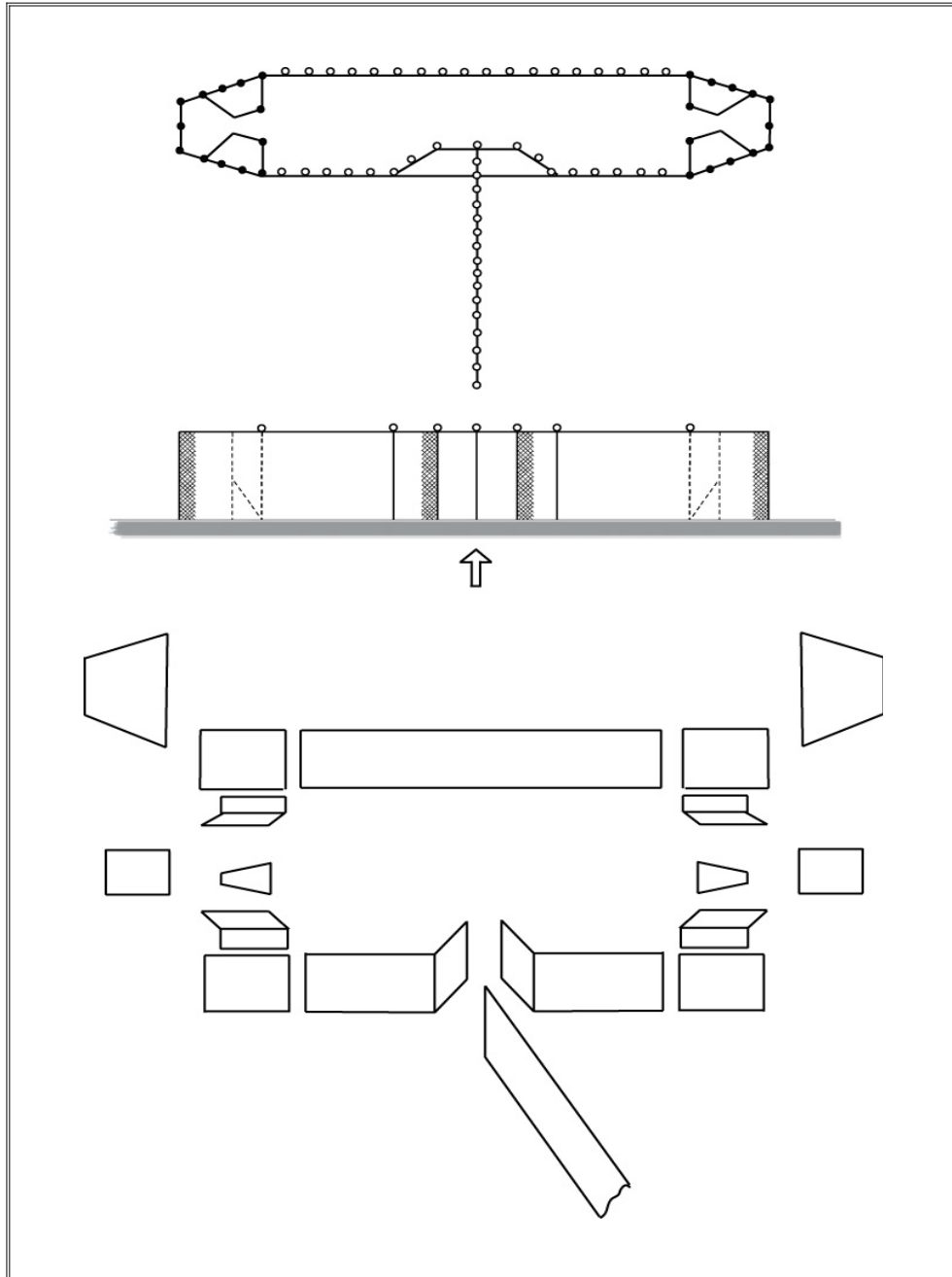
[부도 2-1]

건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2-2]

건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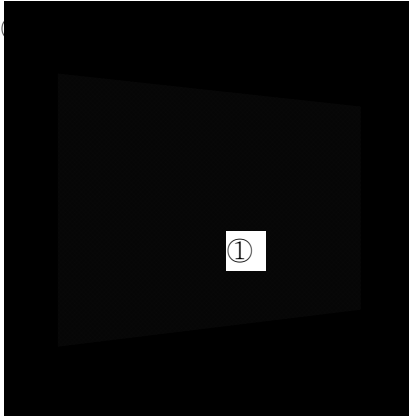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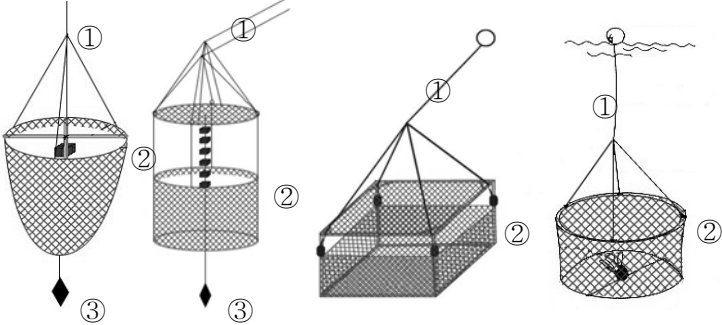
3. 들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음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돌음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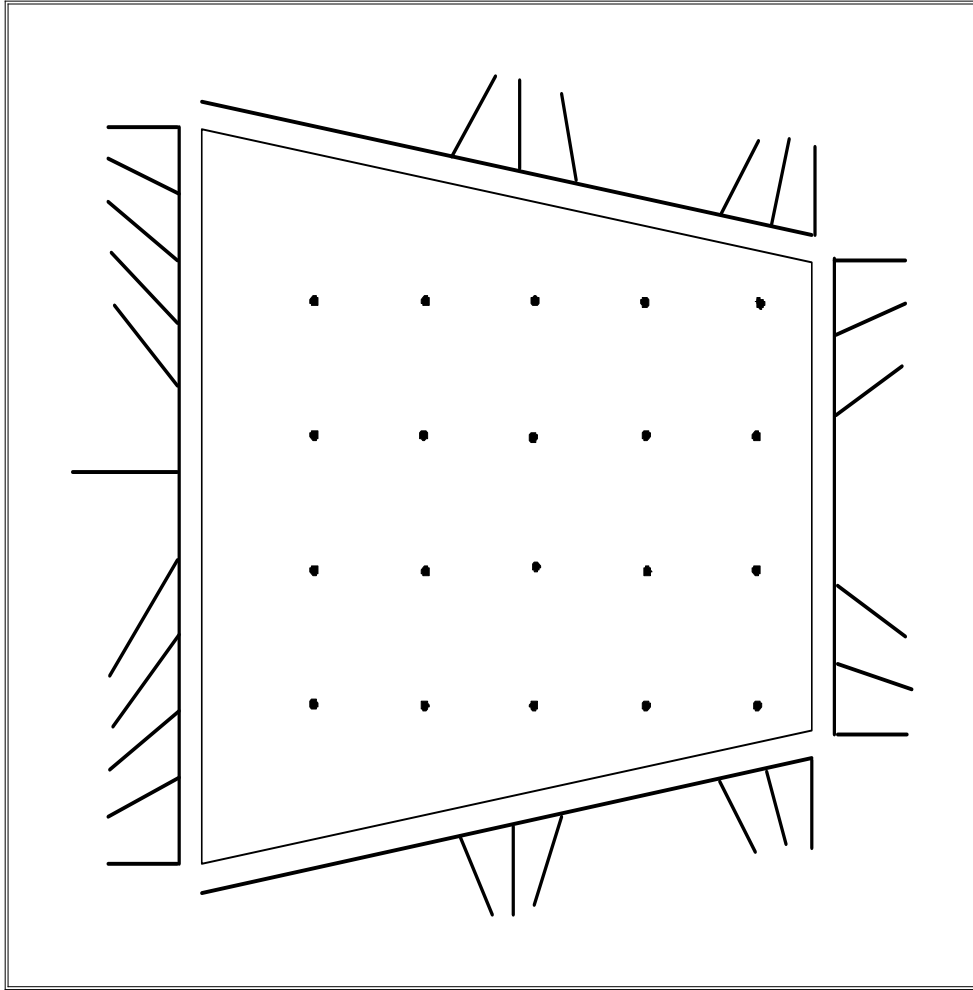
[부도 3-1]

들망 어구 겨냥도

	<p>②</p> <p>① 그물 ② 뜬움줄 ③ 망줄</p>
	<p>① 뜬움줄 ② 고정테 ③ 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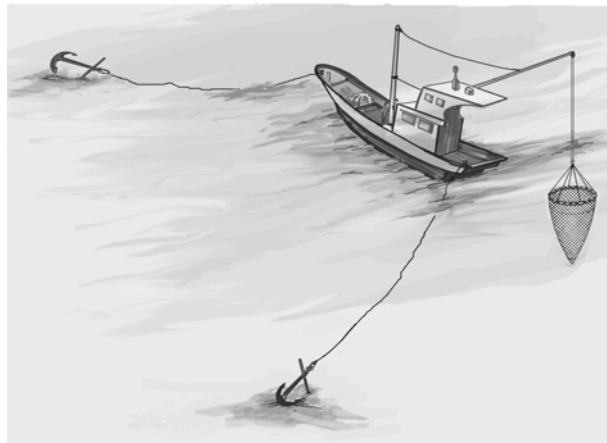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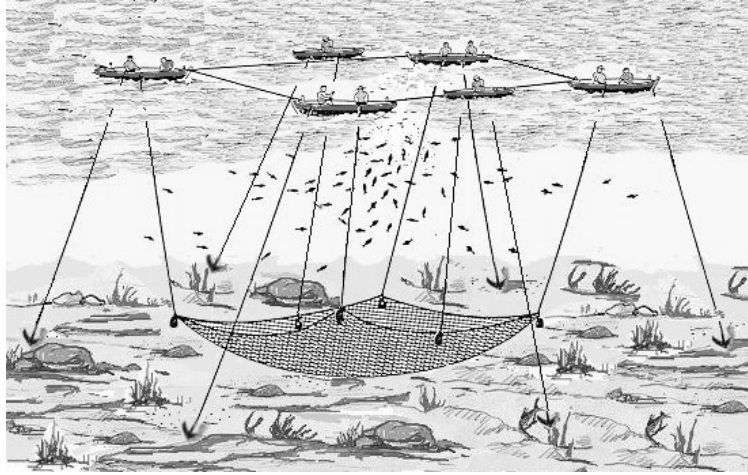
[부도 3-2]

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3-3]

들망 조업모식도



4. 선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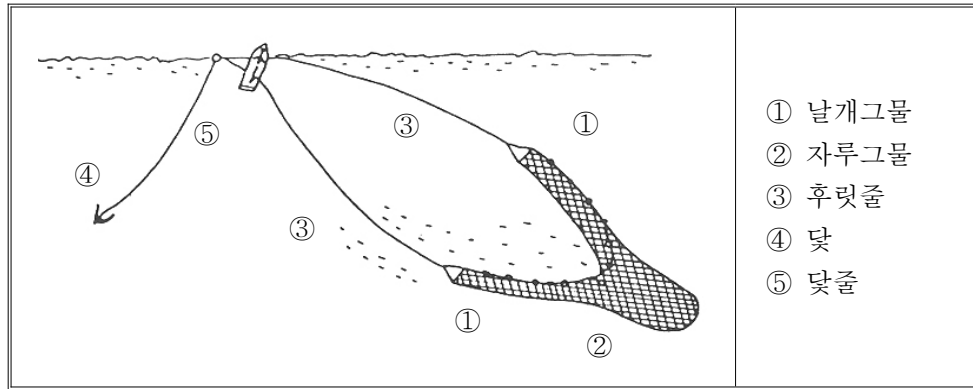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1과 같다.

- 1)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다.
- 2) 끌줄 길이 만큼 떨어진 곳에 닻을 투하하여 어선을 고정시킨 후 날개그물의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어선에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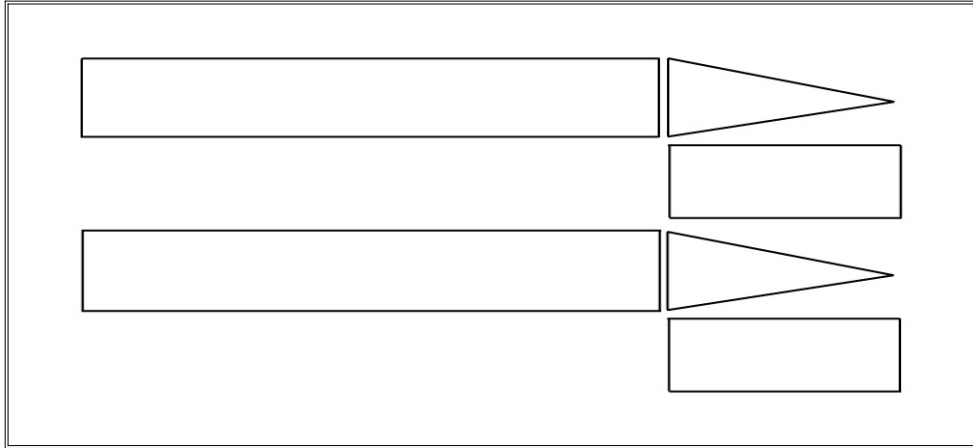
[부도 4-1]

선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4-2]

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5. 승망류어업(호망·승망·각망)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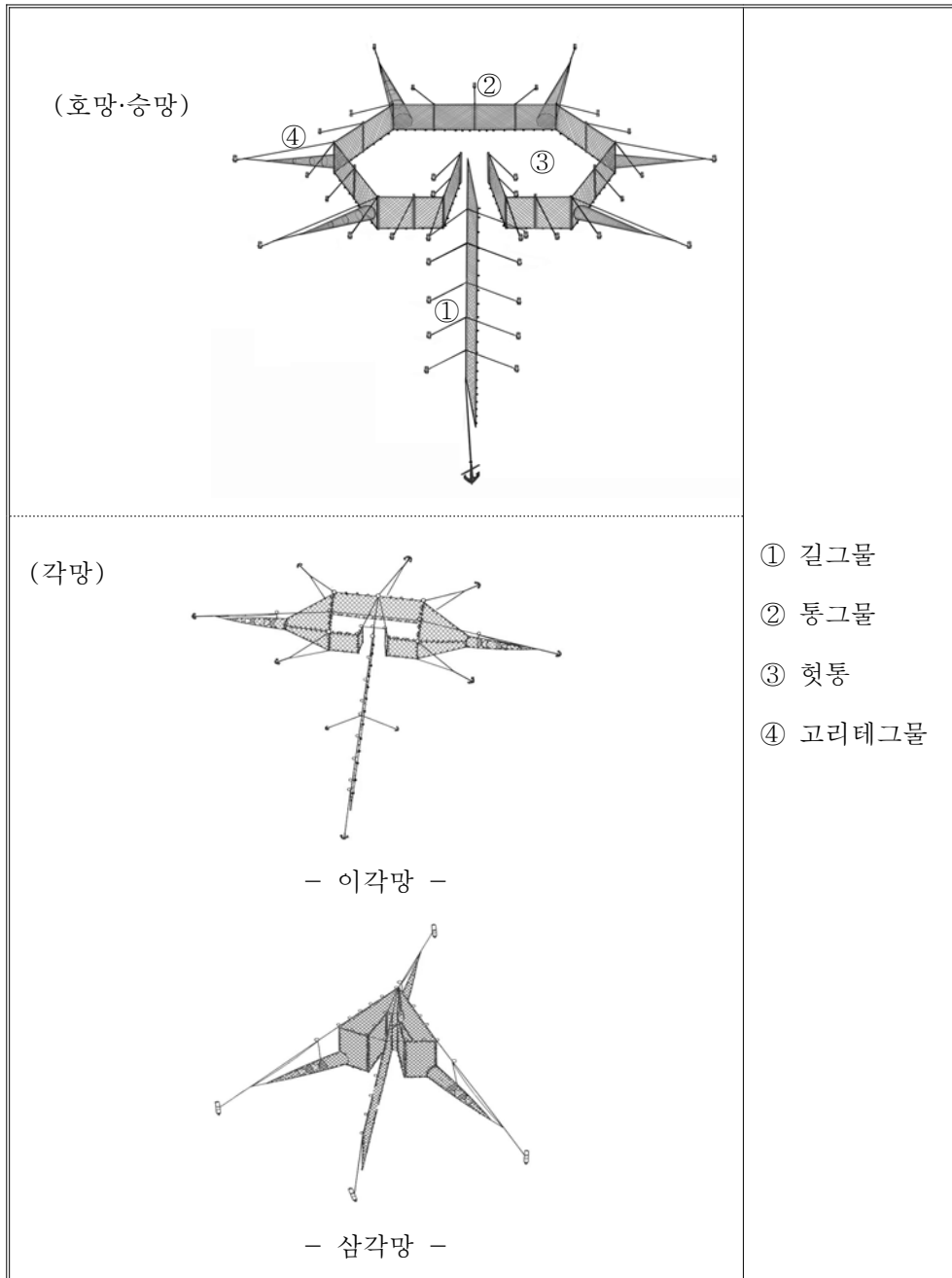
- 1)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된 어구
- 3) 통그물에 고리테그물을 부착한 어구. 다만, 고리테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할 수 있다.
 - * 헛통: 통그물로 유도된 어군이 1차적으로 머무르는 곳
 - * 고리테그물: 자루그물의 중간부분에 성형된 테(고리)를 부착한 나팔 모양의 그물(고리테그물의 개수에 따라 2각망, 3각망 등으로 불림)
 - * 깔때기: 자루그물 속에 부착되는 원추대 모양의 그물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1과 같다.

- 1)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통그물을 설치한다.
- 2) 통그물에 달린 고리테그물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처리한 후 다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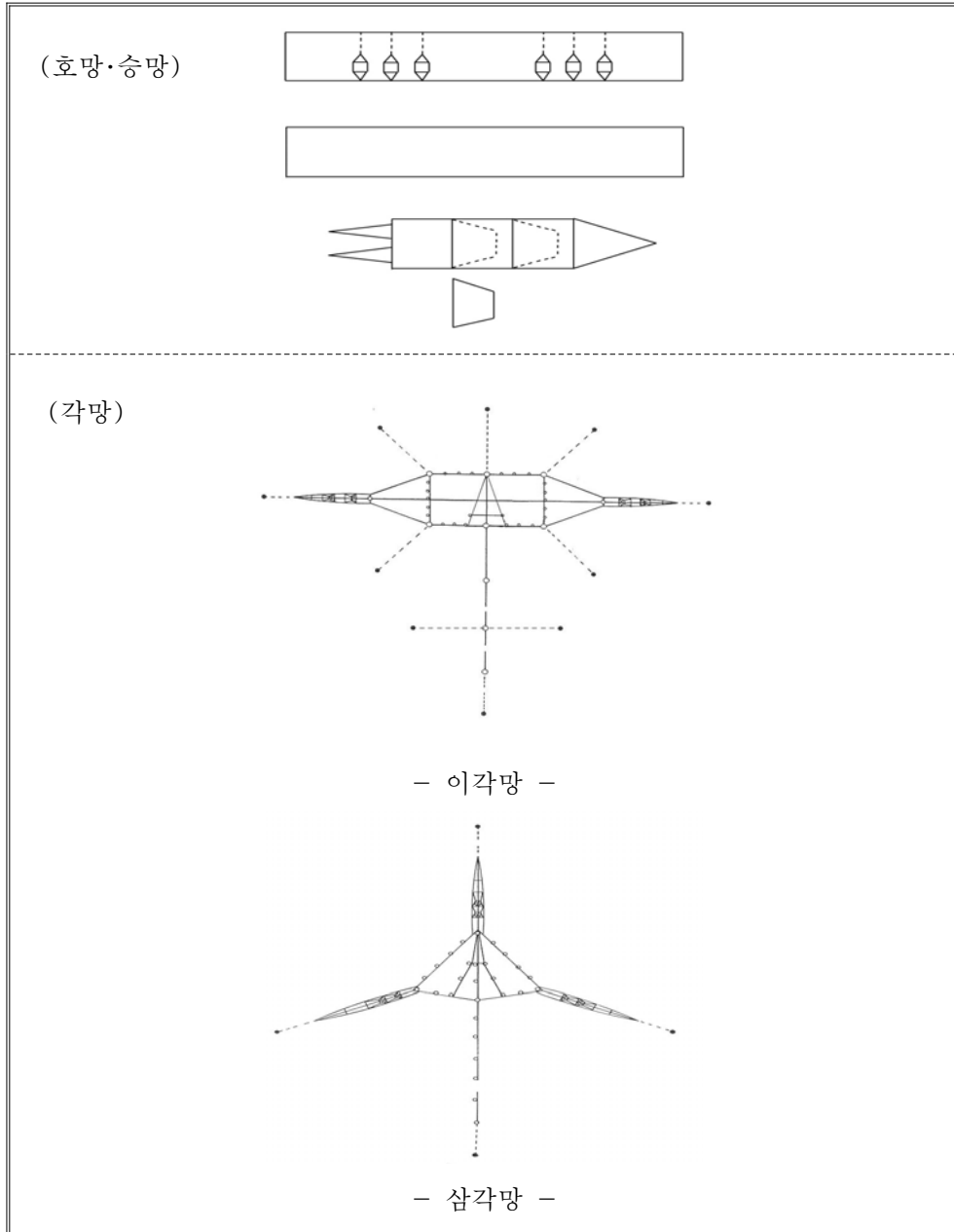
[부도 5-1]

승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5-2]

승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6. 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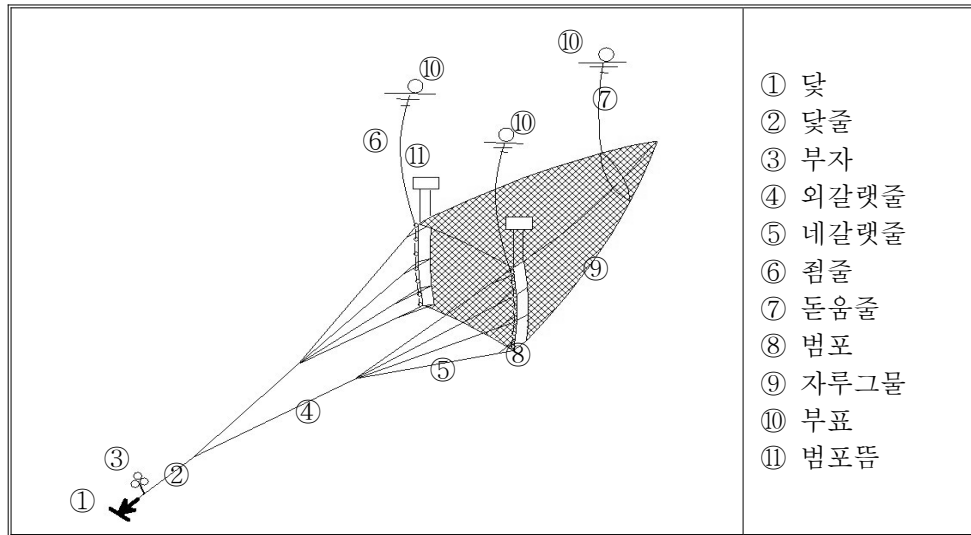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뜬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
 - * 수해: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부착하는 부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쇠파이프
 - * 암해: 자루그물 입구 하부에 부착하는 침강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철봉
- 3)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의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된 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닿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조임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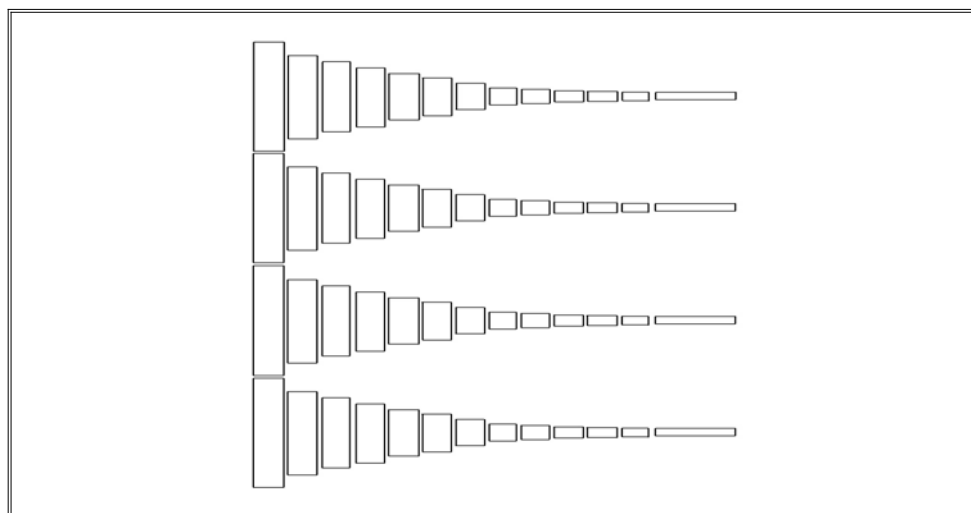
[부도 6-1]

안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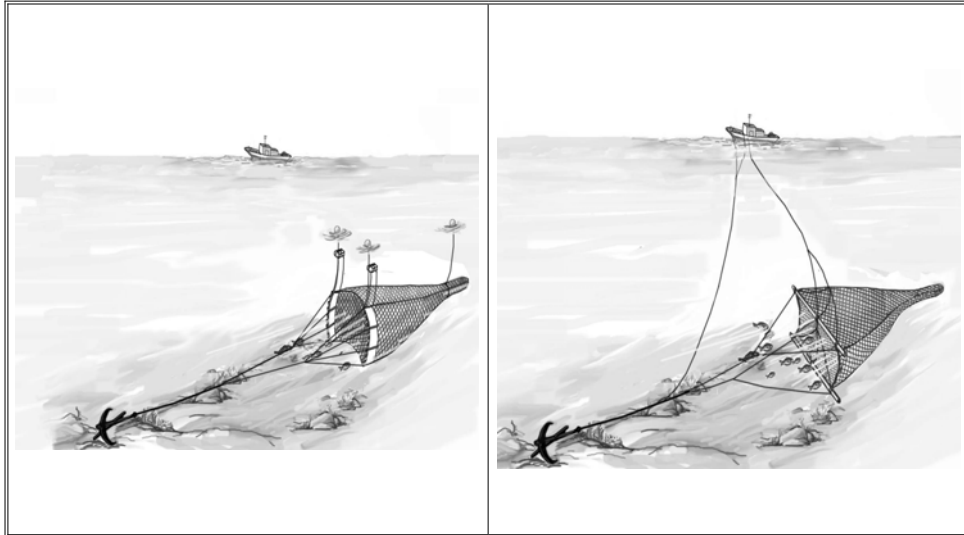
[부도 6-2]

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6-3]

안강망 조업모식도



7. 장망류어업(주목망·장망·낭장망)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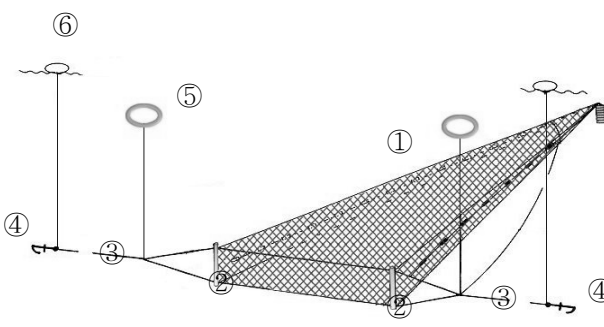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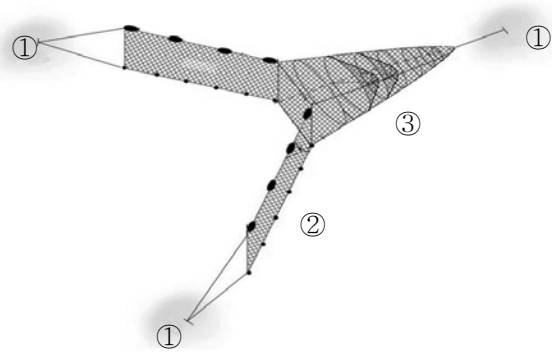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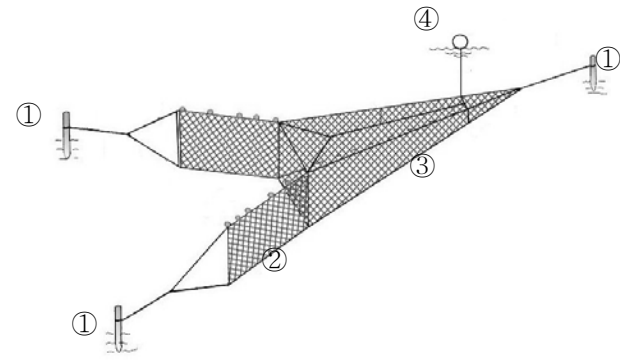
-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로 구성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선택적으로 깔때기 부착이 가능하다. 다만, 주목망어업은 날개그물을 부착할 수 없다.
- 2)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우 양측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뺨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주목망)
- 3)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명,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고리테를 선택적으로 부착한 어구(장망)
- 4)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명,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낭장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1과 같다.

- 1) 2개의 말뚝을 해저에 박고 거기에 그물 입구를 벌려서 고정시켜 부설하거나 그물 입구 양측에 뺨침대를 대고 닻(명)줄을 좌·우 방향으로 내어 그물 입구가 벌어지게 부설(주목망)한다.
- 2) 날개그물 양쪽 앞쪽과 자루그물 끝을 닻(명, 말뚝)으로 벌려서 고정하여 부설(장망, 낭장망)한다.
- 3) 수산동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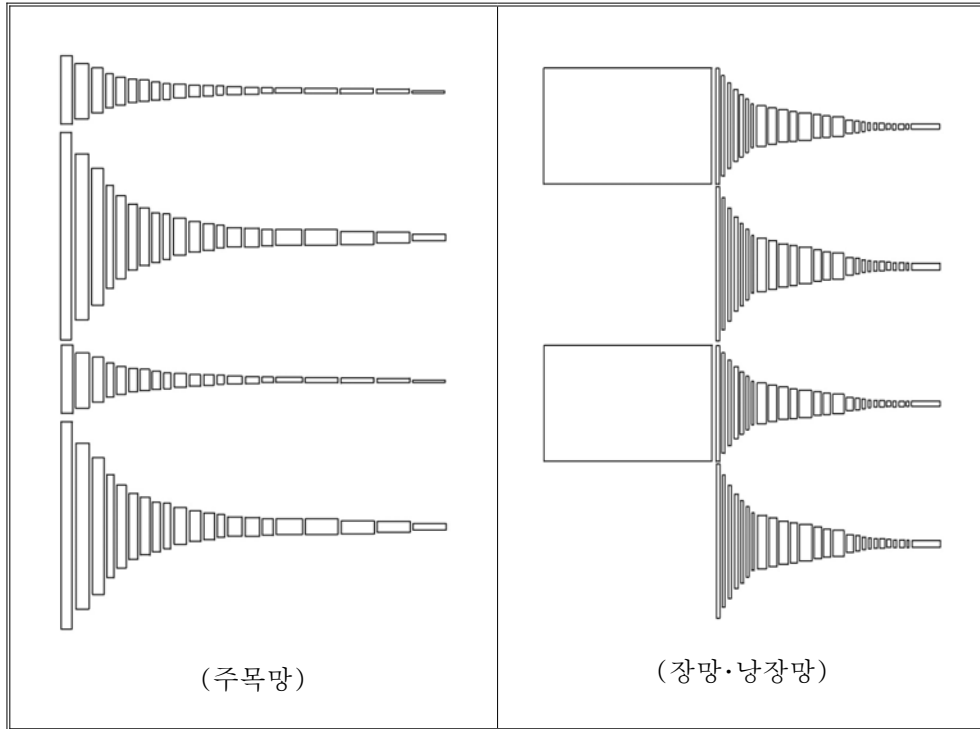
[부도 7-1]

장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p>(주목망)</p>	<p>① 자루그물 ② 뺨침대 ③ 닻(명)줄 ④ 닻(명) ⑤ 뜸 ⑥ 부표</p>
 <p>(장망)</p>	<p>① 닻(명, 말뚝) ② 날개그물 ③ 자루그물</p>
 <p>(낭장망)</p>	<p>① 닻(명, 말뚝) ② 날개그물 ③ 자루그물 ④ 부표</p>

[부도 7-2]

장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8. 지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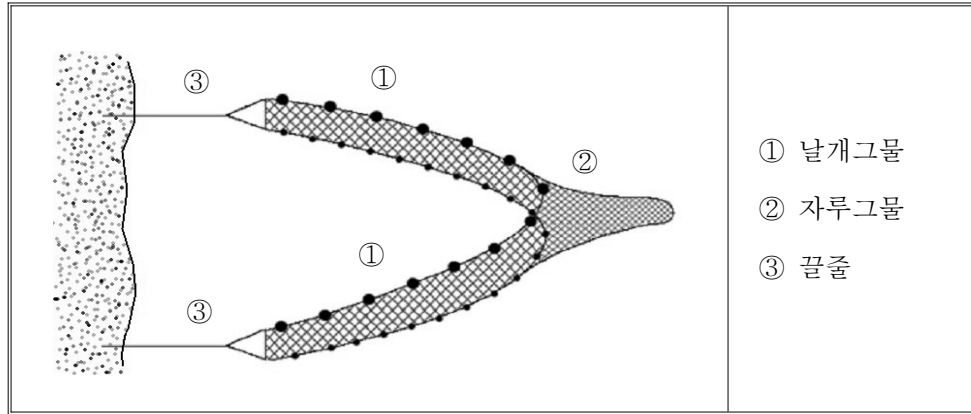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8-1 및 부도 8-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1과 같다.

- 1) 해안에서 끌줄의 한쪽을 육지에 고정시킨 후 어선을 이용하여 그물 입구가 육지 쪽으로 향하도록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 다음 다른 쪽 끌줄을 육지로 넘겨 준다.
- 2) 날개그물의 양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끌어당겨 자루그물을 육지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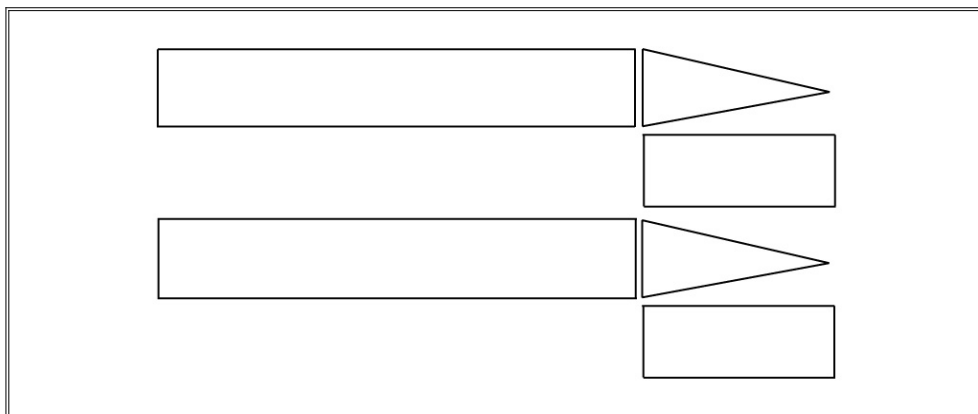
[부도 8-1]

지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8-2]

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9. 해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부도 9-1 및 부도 9-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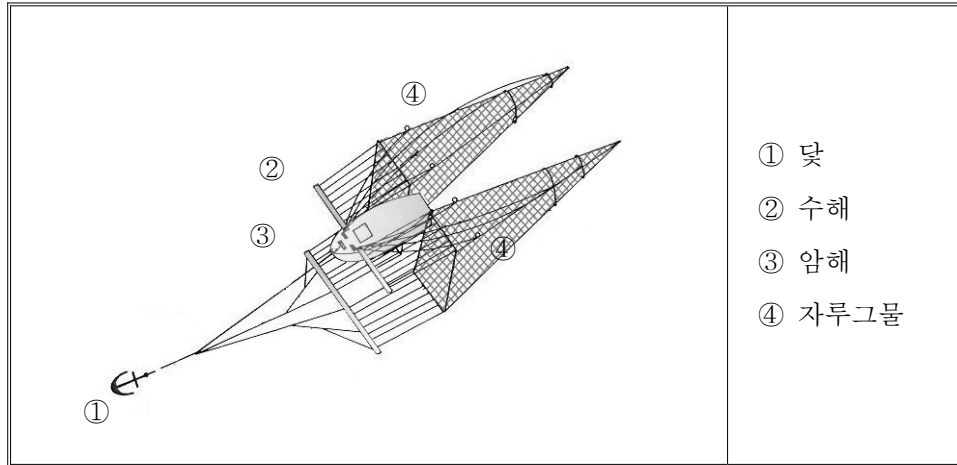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
- 3)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9-1과 같다.

- 1)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수해와 암해를 선미부에 매달고 자루그물을 투망한다.
-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거두어 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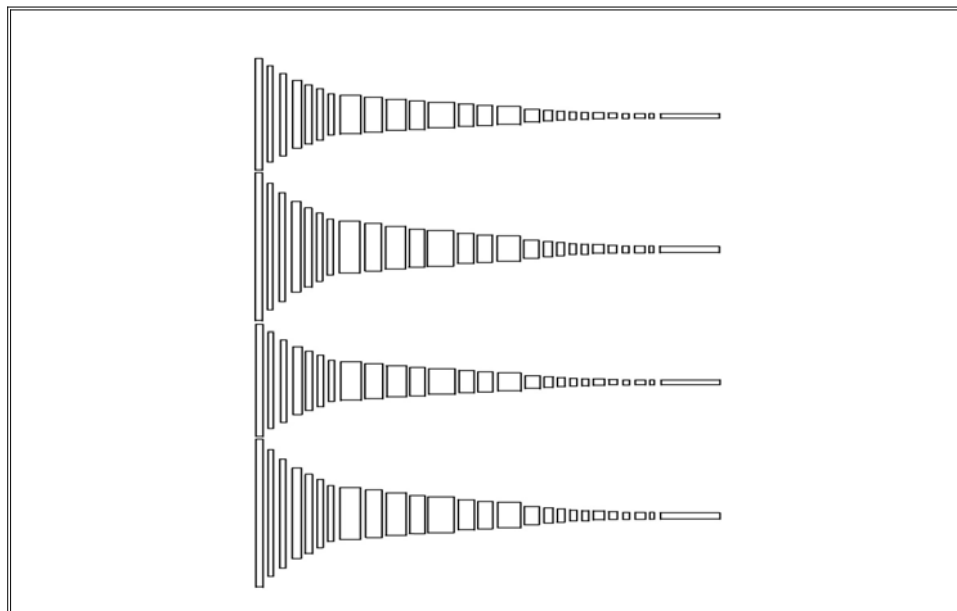
[부도 9-1]

해선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9-2]

해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10. 새우조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0-1 및 부도 1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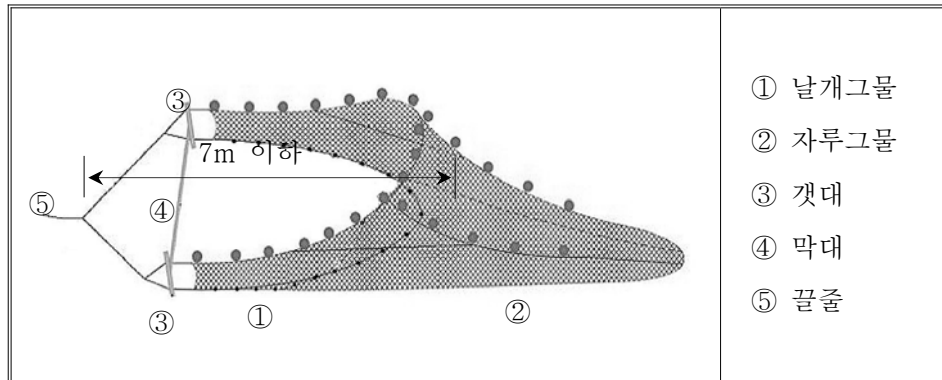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 3) 망목의 안지름은 16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루그물에 혀그물(누두망)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 4)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8미터 이하인 어구
- 5) 날개그물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어구
- 6)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의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 7) 막대의 좌·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0-3과 같다.

- 1)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를 포획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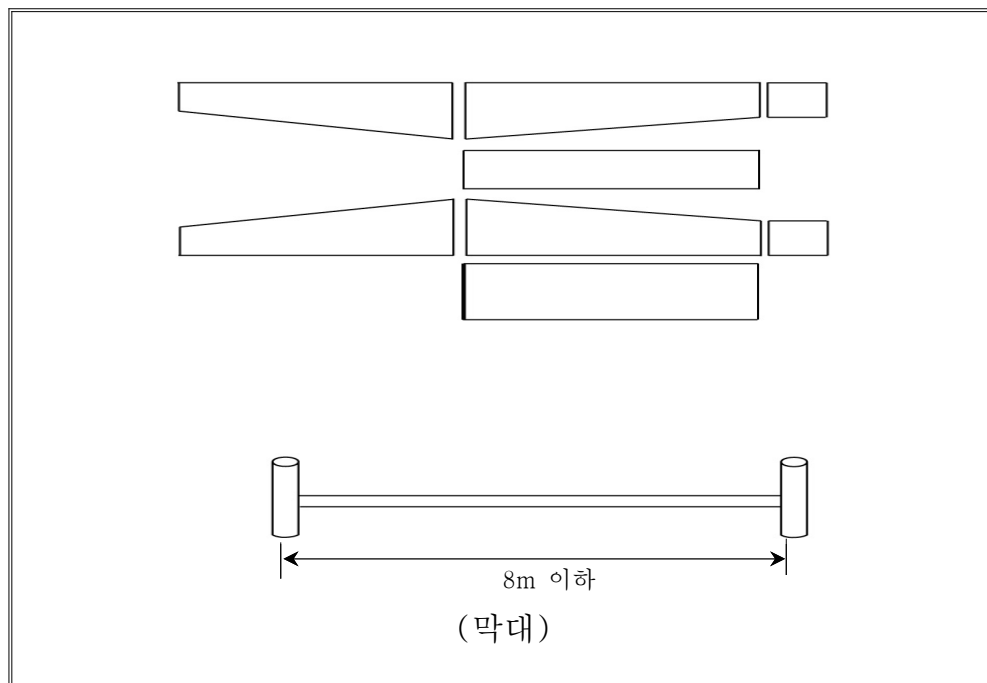
[부도 10-1]

새우조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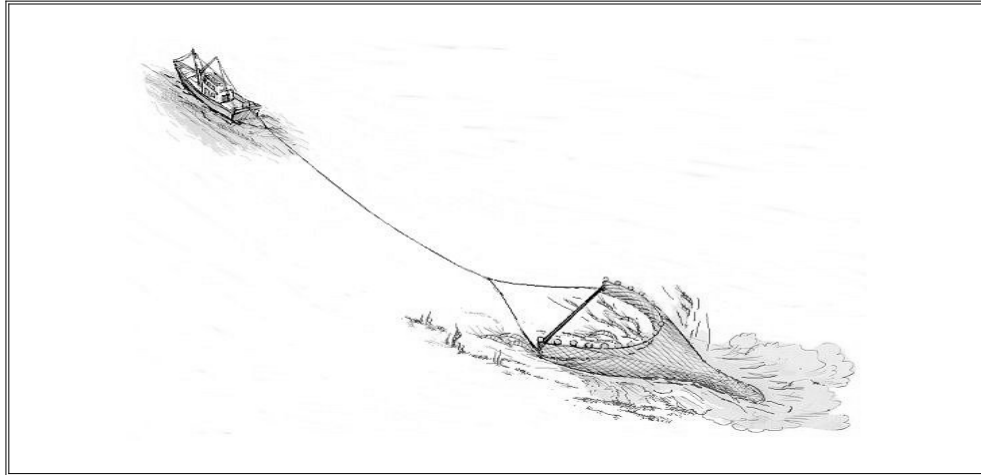
[부도 10-2]

새우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0-3]

새우조망 조업모식도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1 및 부도 1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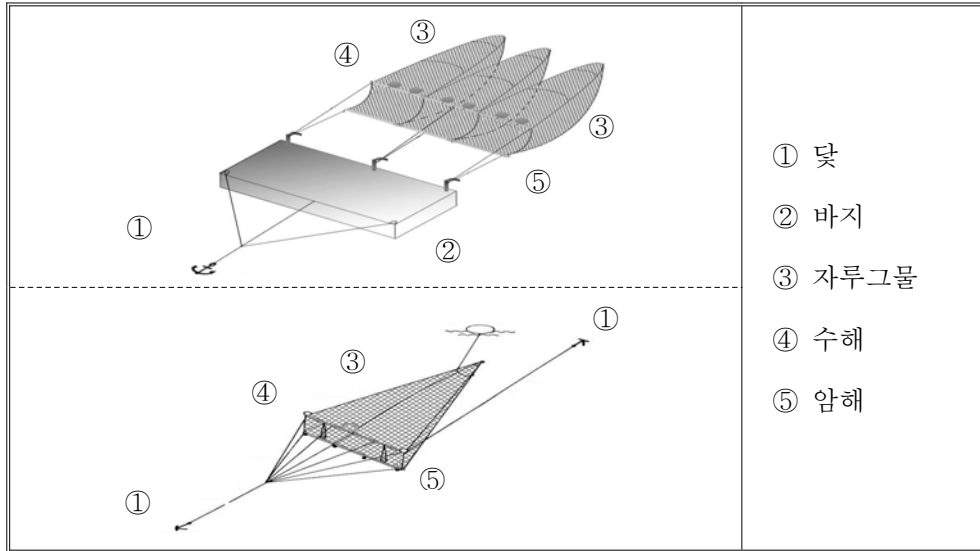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 3)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1과 같다.

- 1)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 3) 가목의 수해·암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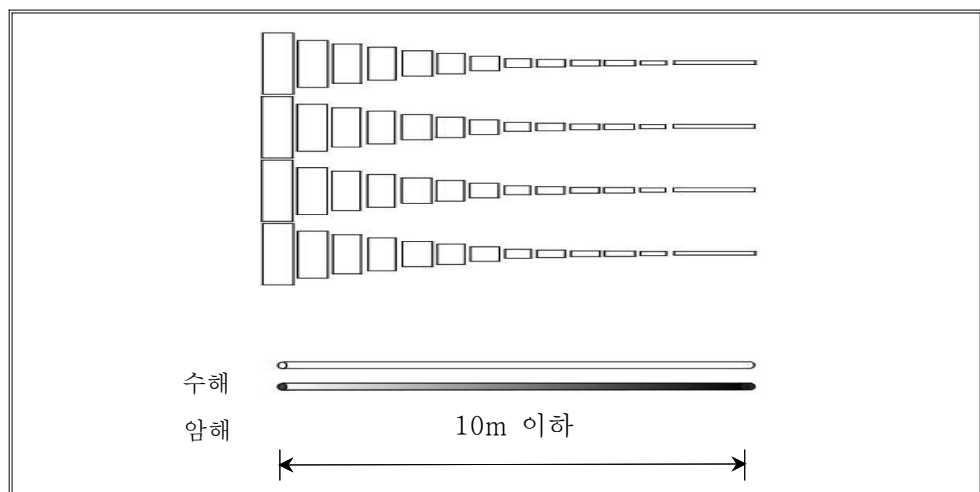
[부도 11-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11-2]

실뱀장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12. 패류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2-1 및 부도 1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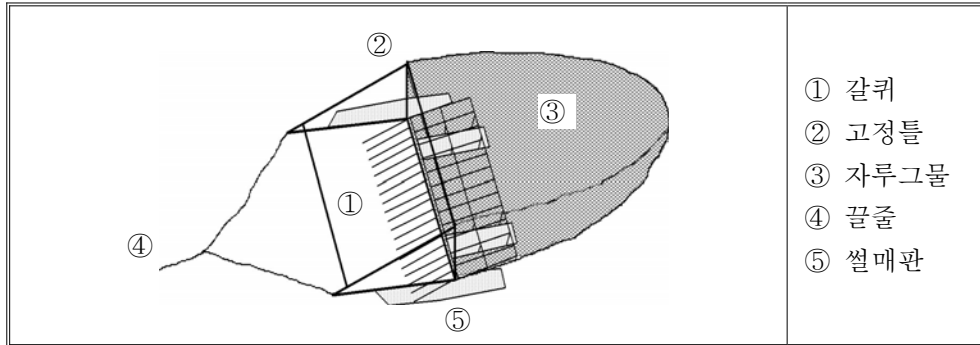
- 1) 일정한 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다만, 키조개, 고둥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갈퀴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3) 갈퀴의 간격이 3.5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어구. 다만, 시·도지사가 해역별·지역별 패류의 종류별 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4)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5)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6)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2-3과 같다.

- 1) 2통 이하의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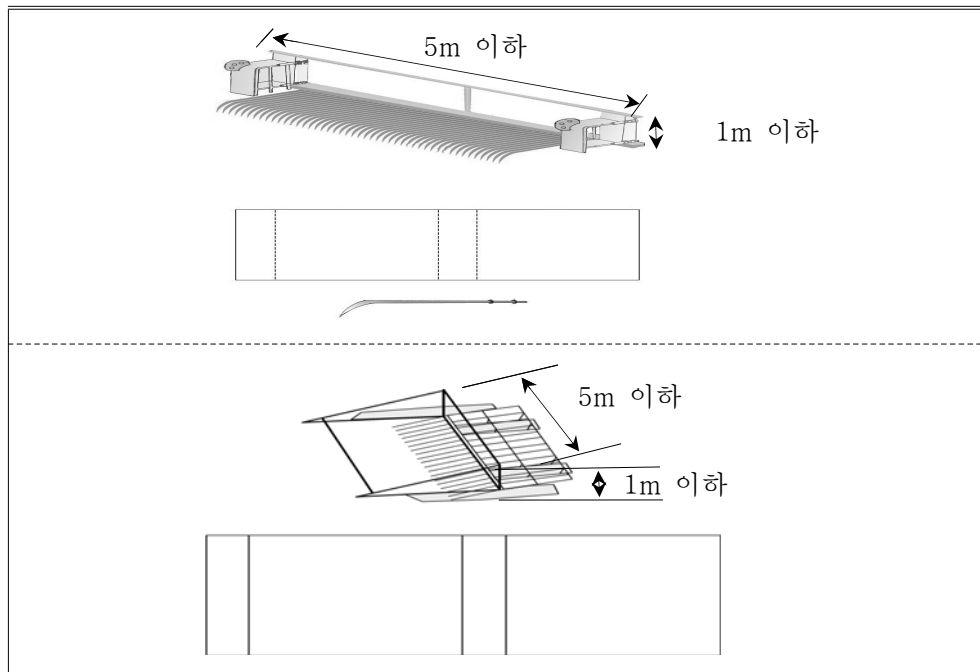
[부도 12-1]

패류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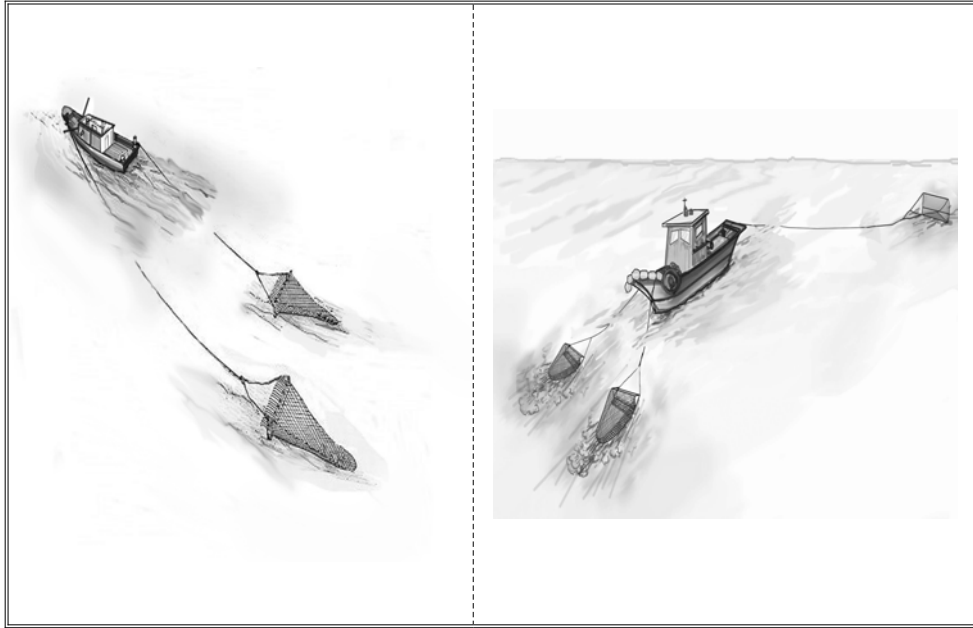
[부도 12-2]

패류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2-3]

패류형망 조업모식도



[별표 12] <개정 2010.11.10>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제10조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금지구역	
1. 근해어업	가. 동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강원도 해역	
		조업금지	주1)의 해역	
	서남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주1)의 해역
	나.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불빛 이용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4)의 해역 2. 주5)의 해역 3.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근해자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멸치 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	
라. 근해안강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		

수산관련법령집

			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멸치 포획금지	연중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1. 주7)의 해역 (허용된 해역) 2. 주9)의 해역
	바.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계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조업금지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주위 2천7백미터 이내의 해역
		대게 포획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근해문어단지어업	조업금지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주위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구역 이내의 해역
	사. 기선권현망어업	멸치 포획금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7)의 해역
	아. 근해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 모든 근해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연안선망어업	불빛 이용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삼치 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 포획금지	연중	1. 주5)의 해역 2.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다. 연안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대게 포획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라. 연안조망어업	조업금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충청남도, 전라북도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 새우망 사용금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 연안자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멸치 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
사. 연안들망어업	멸치 포획금지	연중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 주7)의 해역 (허용된 해역) 2. 주9)의 해역
아. 모든 연안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3. 구획어업	가. 장망류어업(장망을 사용하는 어업은 제외한다)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해선망어업		

수산물관련법령집

다.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으로 새우 포획을 허용한 경우의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허용된 해역)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허용된 해역) 전라남도 여수시·장흥군·강진군·고흥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연안해역
라. 패류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 모든 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주1) 동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 금지구역(별도 1 참조)

- 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정남 7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북청면 마양도등대 남동 15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영흥군 호도면 성황치단에서 동 10도 북 24해리의 수계를 거쳐 성황치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
- 나.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수계,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 정동 3해리의 수계, 고성군 거진단 정동 4해리의 수계, 속초시 대포동 웅진단 정동 3해리의 수계, 양양군 기사문단 정동 4해리 반의 수계, 강릉시 정동진단 정동 4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0해리의 수계를 거쳐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다.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에서 같은 장소 서 10도 남 13해리의 수계와 황해도 송화군 속도 서쪽 끝 서 10도 북 13해리 반의 수계를 거쳐 속도 서쪽 끝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5월로 한정한다)

주2) 북위38도00분09.86초 동경125도49분52.80초의 만나는 점, 북위34도00분11.50초 동경125도49분52.90초의 만나는 점, 북위34도00분11.54초 동경127도59분52.23초의 만나는 점, 북위34도30분

11.34초 동경127도59분52.21초의 만나는 점, 북위34도30분11.36초 동경128도59분51.90초의 만나는 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4천8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3)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쪽 끝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37도 2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암각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갈곶 서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대병대도 남쪽 끝,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쪽 끝, 통영시 산양읍 주도 남쪽 끝, 통영시 옥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최남돌단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돌산읍 소리도 최남돌각(소리도 등대)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추서도 최남단, 완도군 청산면 상도 남쪽 끝,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노화면 죽굴도 남쪽 끝,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과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라.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서 북쪽 끝과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서돌단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마.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29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등굴서 끝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가랭이 끝 8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 5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동북쪽 끝 5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향도 9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향도 매봉산 동남돌각 13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최남돌각 22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장도

수산관련법령집

서쪽 끝 30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사.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청벽각 90도 2천미터의 점, 소안면 소안도 서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남쪽 끝 돌각 125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 18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보죽각 220도 2천미터의 점, 노화면 마삭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직구도 남쪽 끝에서 추자면 흑검도 동남각, 추자면 하추자도 동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추자면 청도 동북돌각 직구도 남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 이내의 해역

주6)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 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 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건유마을 동쪽 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 선착장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7) 주6)에서 규정한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 해역

주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쪽 끝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미터의 점, 영도구 영도 등대 160도 3천미터의 점, 사하구 목도 남쪽 끝,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 암자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서량말 16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남쪽 끝, 통영시 한산면 가도 남단,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쪽 끝, 산양읍 추도 남쪽 끝, 통영시 옥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쪽 끝 90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죽암각 25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 남쪽 끝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서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안면 남열리 종지미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쌍층사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쪽 끝,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 90도 1천5백미터의 점,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마.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남쪽 끝 돌단과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끝을 연결한 선, 완도군 신지면 산동 남쪽 끝 돌각과 완도군 완도읍 대두 끝을 연결한 선 및 완도군 군외면 원동 남쪽 끝과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 남쪽 끝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해역
- 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단 290도 2천5백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등굴서 끝 22.5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등대 끝

160도 5천미터의 점, 여주시 삼산면 서도 매랭이 끝 85도 5천미터의 점, 여주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 50도 2천5백미터의 점 및 여주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1천5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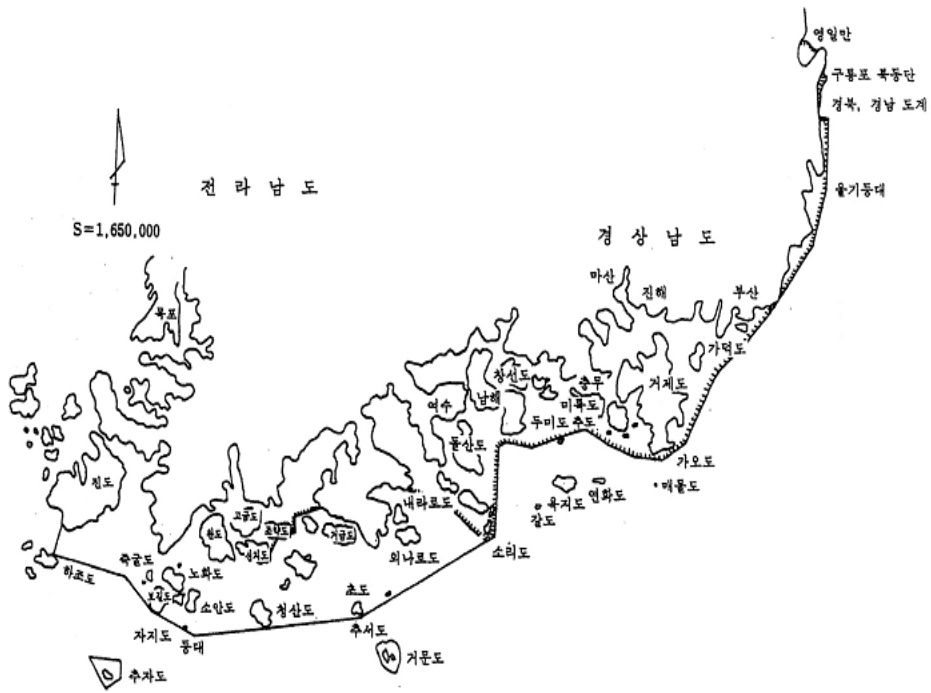
- 주9) 전라남도 여주시 웅천동 웅남 마을 서쪽 끝, 여주시 웅천동 두력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주시 경호동 소경도 북쪽 끝,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안포리 안정마을 동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전라남도 여주시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리 북쪽 끝과 서도리 북쪽 끝을 연결한 선과 서도리 남쪽 끝 동도리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주1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그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 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주11)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 가.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21분52초
 - 나.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45분12초
 - 다. 북위37도06분12초, 동경129도45분12초
 - 라. 북위36도41분27초, 동경129도51분24초
 - 마. 북위36도28분18초, 동경129도53분 08초
 - 바. 북위36도19분30초, 동경129도51분06초
 - 사. 북위36도11분13초, 동경129도48분48초
 - 아. 북위36도06분57초, 동경129도45분44초
 - 자. 북위35도58분46초, 동경129도44분 01초
 - 차. 북위35도55분37초, 동경129도43분14초
 - 카. 북위35도49분04초, 동경129도44분27초
 - 타. 북위35도46분01초, 동경129도46분21초
 - 파.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30도00분15초
 - 하.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
- 주12)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주13)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 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변경계를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 주14)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 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 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수산관련법령집

[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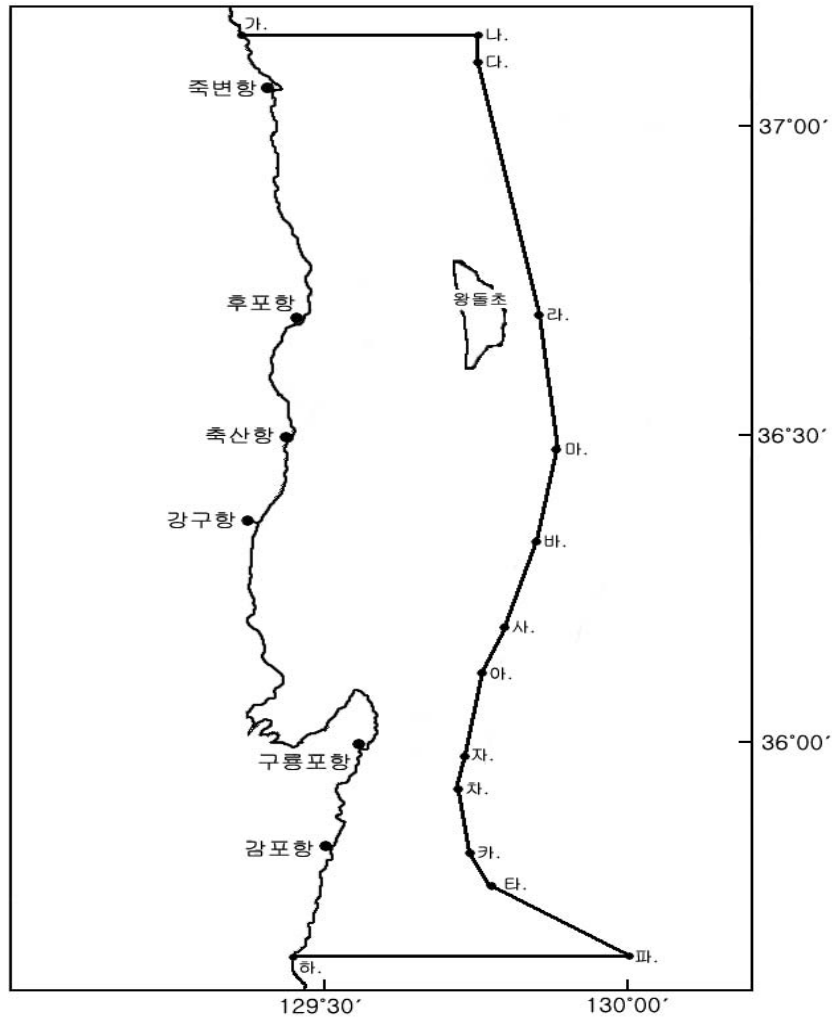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포획금지구역도

구 분	범 례	비 고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	_____	주4) 관련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		주8) 관련



[부도 2]

근해장어통발어업·근해통발어업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계 포획금지구역도



[별표 13]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제10조제3항 관련)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비고	
1. 근해어업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 금지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54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 금지	
	다. 동해구의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의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 금지	
	라. 대형트롤어업		54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 금지	
	마. 동해구중형트롤어업		4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 금지	
	바.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30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갯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사. 근해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240밀리미터 이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갯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아. 근해안강망어업			35밀리미터 이하	1.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갯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자. 근해장어통발어업			35밀리미터 이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수산물관련법령집

차. 근해통발어업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붉은 대게	120밀리미터 이하. 2012년 4월 23일부터는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꽃게	65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카. 기선권현망어업		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갯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2. 연안어업	가. 연안개량안장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1. 연안안장망 및 연안장망은 제외함 2.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연안선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갯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다.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22밀리미터 이하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붉은 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

			에 붙이는 갈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갈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라. 연안조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 금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바. 연안자망어업	삼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3. 구획어업	가.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25밀리미터 이하	
	나.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패류형망어업 외의 구획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비고

1. “그물코의 규격”이란 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썸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2. 어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파리 배출망을 부착(설치)할 필요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해파리 배출망의 그물코의 규격과 사용시기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4]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구분	부과금액	비고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헥타르당 10만원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헥타르당 3만원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부과금액×연장 받은 연수)÷10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연안어업·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근해어업: 어선 톤당 5천원 ○건간망어업·건망어업·틀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해선망어업: 헥타르당 3만원 ○뽕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땃목식종묘생산어업: 헥타르당 10만원	○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을 포함함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은 200만원)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만원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300만원 ○건당 250만원 ○건당 200만원	○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0.1톤당 50만원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건당 500만원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헥타르당 21만6천원	

비고: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중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한다.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감액대상	재해피해 정도	감경률	비고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피해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	50% 미만 (어선의 경우 반파)	30%	해당 어업에 대하여 2회 이상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0% 이상 (어선의 경우 전파)	50%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 가.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자목 중 학원
 -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관장·하치장 및 창고
 - 5) 사회복지시설
 - 6) 환경오염방지시설
 -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사.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자.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주,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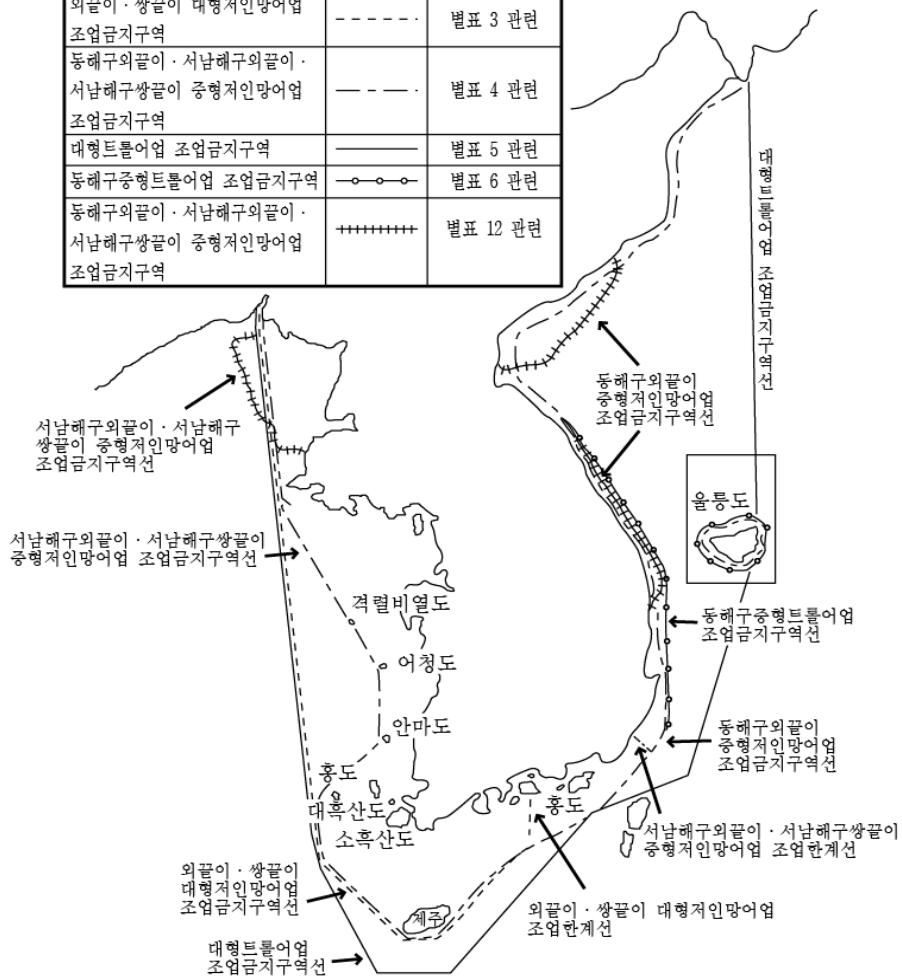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1호	100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2호	200
3.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종묘를 생산·방류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3호	100

[별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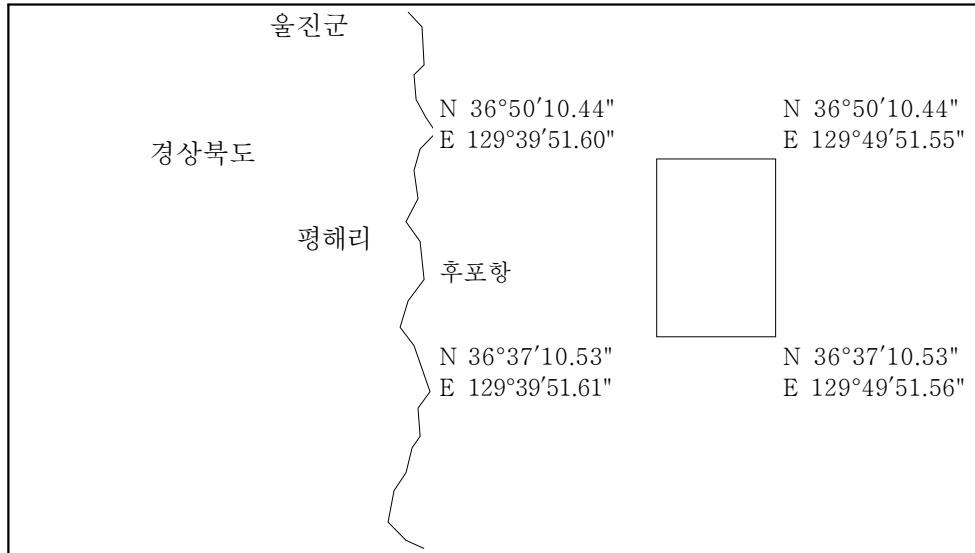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어업별	범례	비고
외끌이·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3 관련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4 관련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5 관련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6 관련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12 관련



[별도 2]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10· 5· 31 농림수산부령 제12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 수산자원의 관리·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 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관리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어업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수산자원의 어획 상황 및 변동 추이
2. 어종별 분포 및 변동 추이
3. 생물학적 적정 허용어획량의 산정
4. 포획·채취금지 대상 수산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관한 사항
5. 고래류 등의 자원 분포 및 수산자원과의 먹이연쇄 관계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정밀조사·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유통시장
2.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곳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산관련법령집

1. 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 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海況),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패자료[양륙량(揚陸量),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3. 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4. 어선·어구·어법의 실패자료
5.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패자료
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패자료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낚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

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물과학원장
2. 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
3. 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
-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 포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행정관청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자협약서 사본

2. 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3. 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단체(이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1. 어촌계원

2.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②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폐어구(廢漁具)의 수거, 해적생물(害敵生物)의 제거,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 생산·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 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어업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용·연구용·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 양식용·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3. 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용 종묘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 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3. 국가 간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 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①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어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어선의 톤수 또는 주기관의 마력이 변경된 경우
3.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무선전신의 연락방법이 변경된 경우
5.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6. 배분량할당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포획·채취 실적의 보고)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揚陸)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의 장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 실적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채취 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포획·채취의 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산종묘의 생산·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 본

문에 따라 부화·방류가 제한된 수산종묘를 생산·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묘 생산·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 생산·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생산·방류하려는 수산종묘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 생산·방류하려는 수산종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의 생산·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묘 생산·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수산자원의 점·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견 제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 지정일 또는 해제일

3.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 가. 지정번호
 -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 다. 지정일
 -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관리실태조사 보고서의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①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일 것
 - 가.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
 - 나.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
 - 다. 정착성 수산자원의 과밀서식(過密棲息)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필요가 있는 수면

2.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기관이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수면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를 말한다)를 조사한 결과 관리수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일 것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위치·구역 및 면적
2.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 관리수면의 관리자
4.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어구의 종류 및 수
5.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정

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38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해당 관리수면에서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이 잠수기어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를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대표 1명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3.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및 그 외의 연안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4.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裸潛漁業) 및 맨손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채취량 및 포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업인
3.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
4.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

른 나잠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비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조사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실태조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 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제47조(보고)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한국어촌어항협회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

수산관련법령집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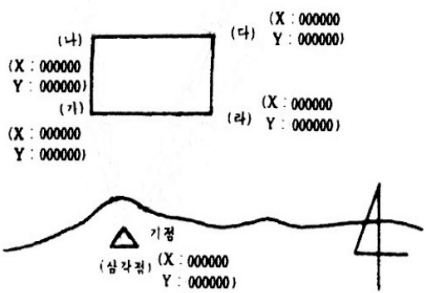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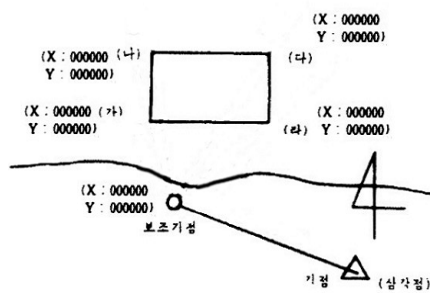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증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증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조업방법 및 어구의 명칭:		
3. 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지선		
※ 아래 (가). (나). (다). (라) 각 점의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면		
5. 면적: m ² (헥타르)		
구분	X(N)	Y(E)
(가)	000,000	000,000
(나)	000,000	000,000
(다)	000,000	000,000
(라)	000,000	0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268mm × 380mm[인쇄용지(특급) 70g/m²]

[별표 2]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의 설치장소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의 표시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 표시

관리관청은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 위치 및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역도를 안내표지판에 표시해야 한다.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등

관리관청은 수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불법행위자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형태와 규격

가. 형태



나. 규격

- 1) 강판 등 내구성(耐久性)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두께는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 2) 지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3)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 개요			
<p>「수산자원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p>※ 첨부서류</p> <p>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1부</p> <p>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1부</p> <p>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1부</p>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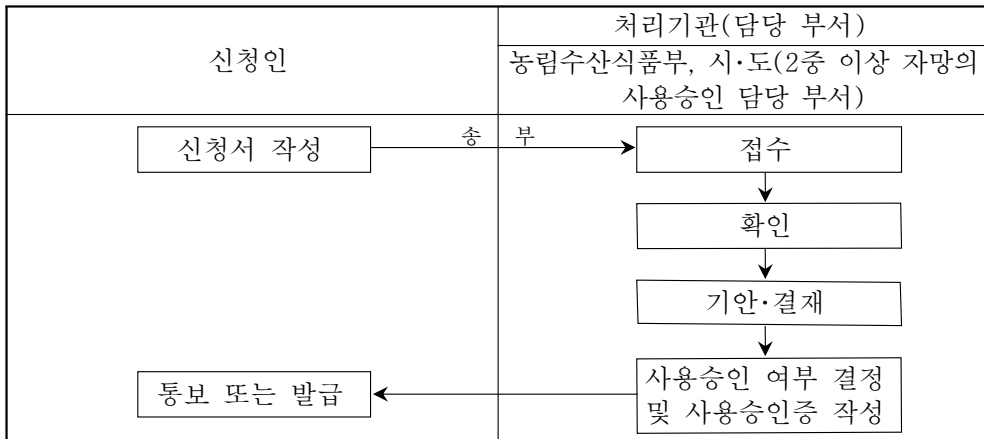
(앞쪽)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사용승인신청 사항	사용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mm 이상, 외망 mm 이상		
⑤ 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톤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p>「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p>				
<p>※ 첨부서류</p> <p>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 (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p> <p>2. 근해자망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1부</p>				<p>수수료</p> <p>조례에 따름</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호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사 용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사용승인 내용	승인번호	농림수산식품부(시·도)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사용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mm 이상, 외망 mm 이상	
⑤ 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톤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p>「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직인 </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신고사항	사용해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mm 이상, 외망 mm 이상		
⑤ 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톤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p>「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제출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p>				<p>수수료</p> <p>조례에 따름</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사용승인 내용	신고번호	경상북도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경상북도 시·군·구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사용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망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mm, 외망 mm	
⑤ 사용어선	어선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⑥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right: 5px;"></div> 직인 </div>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유해어법의 내용: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
3. 유해어법 사용시기:
4. 허가기간:
5.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船質)

6. 포획·채취물의 종류:
7. 제한 또는 조건: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면허어업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⑤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⑥ 수면의 위치와 면적							
⑦ 포획·채취의 방법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어선의 규모		척수	
	사용어구			포획·채취방법			
⑧ 포획·채취 수산 자원의 종류와 수량	수산자원의 종류				기타	계	
	마릿수						
	중량(kg)						
⑨ 포획·채취의 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자원보호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조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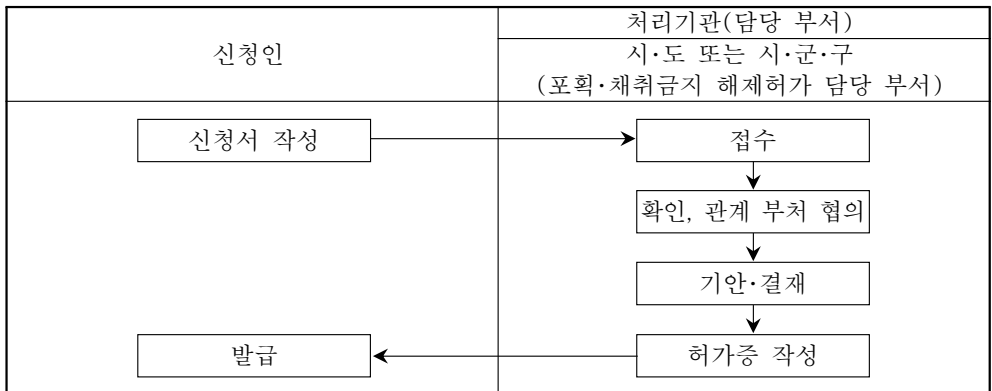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2.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채취 허가구역: 3. 포획·채취의 방법 -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 어선의 규모: - 척수: - 포획방법: - 사용어구: 4.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수산자원의 종류</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기타</td> <td style="width: 10%;">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릿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량(kg)</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수산자원의 종류					기타	계	마릿수							중량(kg)						
수산자원의 종류					기타	계															
마릿수																					
중량(kg)																					
6. 제한 또는 조건: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직인 </div>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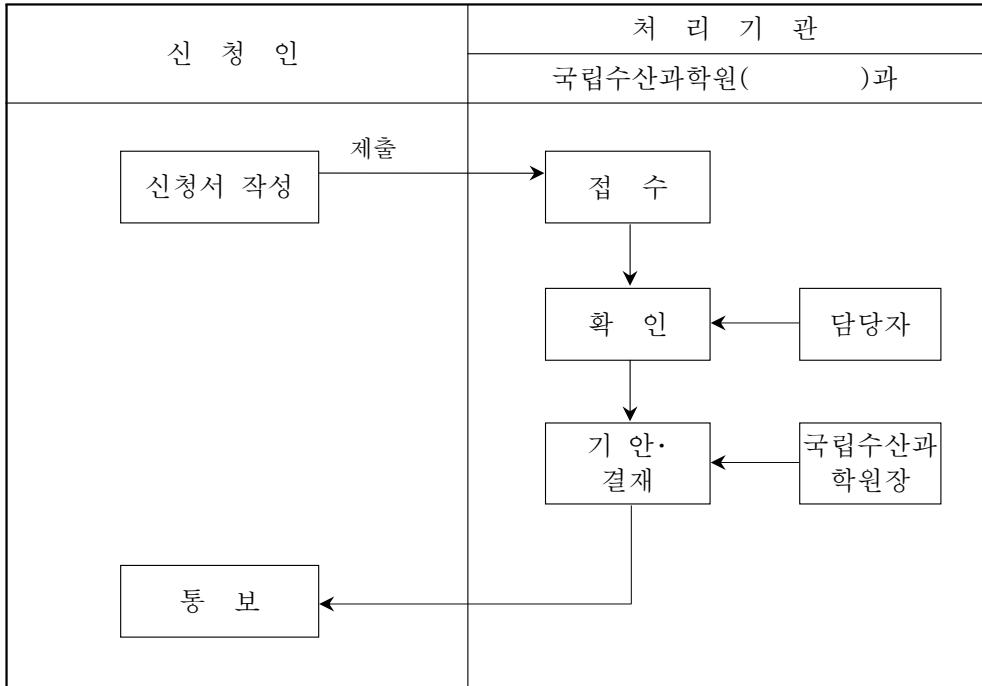
(앞쪽)

수산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내반입 <input type="checkbox"/> 국외반출) 이식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일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②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명				학명		
	규격				수량		
	금액				원산지		
③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적							
④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⑤수송수단 및 통관예정세관		
⑥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⑦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⑧면허면적 및 수면면적			
⑨양식 현황	양식방법	수면면적	현재 양식상황				
			품종	크기	사육량	사용면적	출하시기
		ha 조 m ²		cm (g)	천마리	ha 조 m ²	
⑩낙시터 현황	수면의 종류		수면면적	방류 현황			
	<input type="checkbox"/> 공공용 수면 <input type="checkbox"/> 사유수면			일시	품종별	크기	수량
			ha m ²			cm (g)	마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국내반입(국외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년 제 호

배분량 할당 증명서

- 1. 어업의 종류 및 어업허가번호 _____
- 2. 어업자의 성명 및 주소 _____
- 3. 어선의 명칭 및 등록번호 _____
- 4. 어선의 제원(諸元)
총톤수 _____톤 주기관의 출력 _____마력 최대속력 _____노트
- 5. 무선전신의 연락방법
긴급호출무선
호출부호 _____ 전신연락 주파수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 6. 화물의 적재 가능 용량
종류 _____ 수량 _____ 선창(船倉) 용량 _____
- 7. 할당내용

포획·채취되는 해당 수산자원의 이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배분량(톤)

- 8. 포획·채취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자 _____
- 9.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구 분	선 명	톤 수	마 력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분량을 할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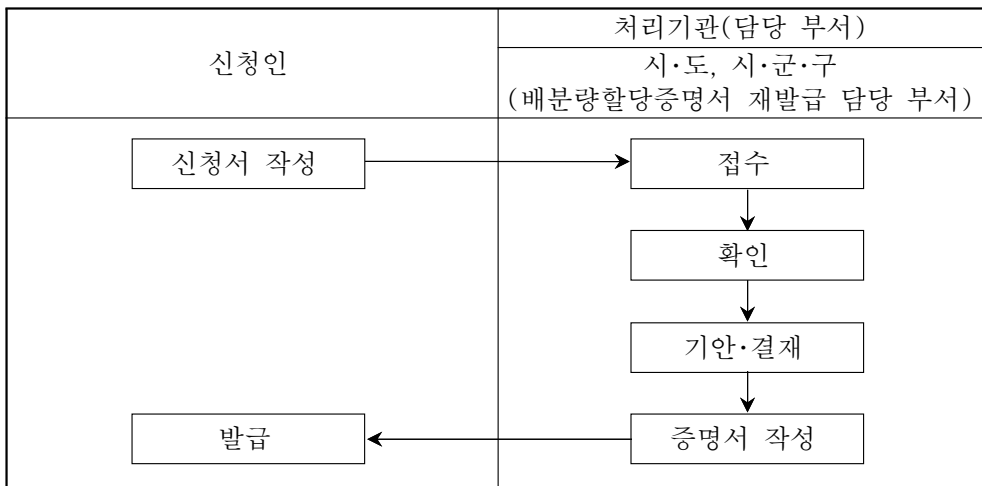
(앞쪽)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시·도: 2일 시·군·구: 2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④ 배분량할당증명서 번호		
⑤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어선 명칭 변경 <input type="checkbox"/> 어선 톤수 또는 주기관 마력 변경 <input type="checkbox"/>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input type="checkbox"/> 무선전신 연락방법 변경 <input type="checkbox"/> 배분량할당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	
⑥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분실(훼손) 사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산자원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포획·채취 실적보고서

수신:	발신:
어업자 및 어선의 명칭:	양륙 일시:
어업허가번호 및 어선등록번호:	양륙장소(농수산물공판장 등):
어업의 종류:	작성자:
소속 조합(단체)명:	확인자:

조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단위: kg)

포획·채취되는 해당 수산자원의 이름	할당받은 배분량	포획량 또는 채취량	누계	잔여량
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비고: 소속 조합(단체)명은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가 소속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업 관련 단체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어업정지명령서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	성명		
	주소		
어선의 명칭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포획·채취 정지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이름			
정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p>「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의 정지기간 동안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정지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직인</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수산물종묘 생산·방류 승인서						
신청인 (신청기관)				접수일		
검사 시료	품종			크기(cm)		
임상검사 결과						
정밀검사 결과	검사항목	합격기준	검사 결과	판정	비고	
종합 의견						
검사기간						
※ 이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수산물자원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한된 수산물종묘의 생산·방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과학원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직인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수납기관 보관용)

(시·도, 시·군·구 통보용)

(납부자 보관용)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수산자원조성금 영수증			
납부 의무자	① 면허·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납부 의무자	① 면허·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납부 의무자	① 면허·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② 시 설 물 지 소 재 지				② 시 설 물 지 소 재 지				② 시 설 물 지 소 재 지		
	③ 성 명		⑥ 제 호		③ 성 명		⑥ 제 호		③ 성 명		⑥ 제 호
	④ 주 소				④ 주 소				④ 주 소		
⑦ 부과기간	년	월	일 ~ 일	⑦ 부과기간	년	월	일 ~ 일	⑦ 부과기간	년	월	일 ~ 일
⑧ 납부기한				⑧ 납부기한				⑧ 납부기한			
조성금 명세				조성금 명세				조성금 명세			
⑨ 총 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⑨ 총 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⑨ 총 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 부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일 부인				수납일 부인			취급 자인
				취급 자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납부기한까지 수산자원조성금을 내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2. 수산자원조성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未收)로 적힌 수산자원조성금이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수된 수산자원조성금을 우선적으로 내야 합니다.
3.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장소는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대장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	
시설물	상호 및 어선명		납부 의무자	성명	
	소재지			생년월일	
	어업의 종류			주소	
	규모	(m ² , ha, 톤)			
부과연도	부과기간	납부연월일	납부금액	추징액 또는 환급액	비고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부과연도	부과기간	납부연월일	납부금액	추징액 또는 환급액	비고

[별지 제24호서식]

수산자원의 점·사용료 내역보고서		보고기간
		발생시
사용 수면의 위치와 면적	m ² (헥타르)	
점·사용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사용 금액(천원)	년 월 (누계:)	
사용의 배경 및 이유		
세부 사용 내역		
그 밖의 사항		
<p>「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년 ○○월 수산자원의 점·사용료 사용 내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년도)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							
①지정된 보호수면	지정번호	제 호	면 적	m ² (헥타르)	지정기간		
	거안거리	m	평균수심	m	위 치		
②표지시설 상황	부 표 시 설			입 간 관 시 설			
	()개, 잘됨 <input type="checkbox"/> , 파손됨 <input type="checkbox"/> 시설 안 됨 <input type="checkbox"/>			()개, 잘됨 <input type="checkbox"/> , 파손됨 <input type="checkbox"/> 시설 안 됨 <input type="checkbox"/>			
③관리내용	환경개선사업	인공어초, 그 밖의 시설		유해한 수산 자원의 제거		그 밖의 관리 사항	
	사업내용	실 적	사업내용	실 적	종 류	실 적	내 용
④환경여건							
⑤자원실태	종 류						
	단위당 서식량						
⑥그 밖의 참고사항							
⑦종합평가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30px;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직인 </div>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 1부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부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 조사서(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합니다) 1부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할 내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수면	위 치					
	면 적	m ² (헥타르)	수 심	m	거안거리	m
②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어촌계 명칭	어 촌 계 원 수				
		계	정 계 원	준 계 원		
			명	명	명	
			명	명	명	
③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품종별 자원추정량 등	품 종	자원추정량	생산계획량	생산시기(월, 일)		
			M/T	M/T	. . ~ . .	
	기타	M/T	M/T	. . ~ . .		
④ 관리수면의 이용·관리(생산)에 참여하려는 어업 등	어업의 종류	생산자 수	사용하려는 어선·어구			
		명	어선의 종류	어선 수	어구의 종류	
	명		척			
⑤ 유효기간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유						
⑦ 그 밖의 참고사항						
<p>「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 도지사 직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p>※ 첨부서류</p> <p>가.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1부</p> <p>나.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1부</p> <p>다.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p> <p>라.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1부</p>
--

[별지 제30호서식]

()년도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일지										
날 짜	생산량 및 생산고			생산자 및 사용한 어선·어구						그 밖의 특기 사항
	생산량		생산고 (원)	생산자		어선		어구		
	품종	수량 (kg)		종사 어업	인원 (명)	종류	척수	종류	수량 (개)	
계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실적표							
①지정번호	체 호	②지정기간	. . . ~ . . .				
③ 관리위원회 회구성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위원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④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상 황	표지시설		해적생물 없애기		수산자원 조성		
	부표	입간판	종류	구제량	종류	금액	
	개	개	종	kg	종	천원	
	관리수면 안의 수산자원 생산에 참여한 어업·어업자·어선 및 어구(3년간)						
	어업의 종류	생산자 수	사용한 어선 및 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 수	어구의 종류 및 수량		
		명		척	, ()개		
	연도별 품종별 생산량 및 생산고(M/T, 천원)						
	품종	년		년		년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기타							
⑤ 수익금 처리	생산고 (천원)	생산비 (천원)	위원회 경비 (천원)	판매 수수료 (천원)	그 밖의 경비 (천원)	어촌계 수익(천원)	
						자원조성	복지사업
	100%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4분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실태조사서									
① 지정된 관리수면	지정번호	제호	면적	ha, m ²	지정기간	. . . ~ . . .			
	거안거리	m		수심	m	위치	주소:		
② 관리위원 회구성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위원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경영하는 어업	성명	
③ 표지시설 상황	부표 시설				입간판 시설				
	()개, 잘됨 <input type="checkbox"/> , 파손됨 <input type="checkbox"/> , 안됨 <input type="checkbox"/>				()개, 잘됨 <input type="checkbox"/> , 파손됨 <input type="checkbox"/> , 안됨 <input type="checkbox"/>				
④ 관리수면의 이용·관리	해적생물 없애기			해안청소			수산자원 조성		
	종류	수량(kg)		종류	수량(kg)		종류	금액(천원)	
	관리수면 안의 수산자원 생산에 참여한 어업·어업자·어선 및 어구								
	어업의 종류	생산자 수		사용한 어선 및 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 수		어구의 종류 및 수량		
⑤ 관리수면의 합리 적 이용·관리 여부	불법 어선·어구 사용 여부			제3자 개입 여부			회계의 공정 관리 여부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개입함 <input type="checkbox"/> ,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공정함 <input type="checkbox"/> ,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⑥ 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량 (M/T) 및 생산고(천원)	품종	계		월		월		월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기타								
⑦ 수익금 처리내용 (천원)	생산고	생산비	위원회경비	판매 수수료	그 밖의 경비	어촌계 수익			
						자원조성		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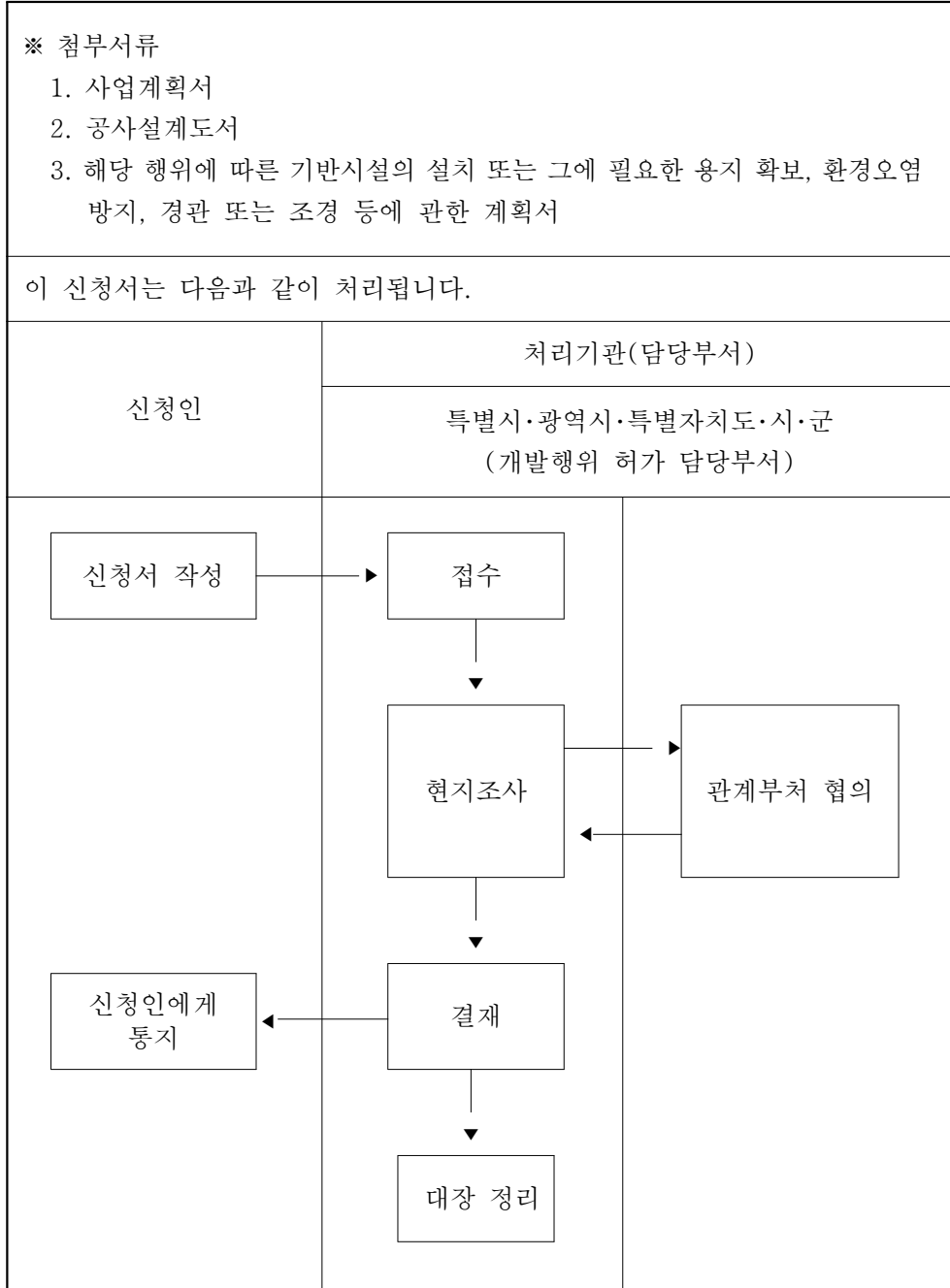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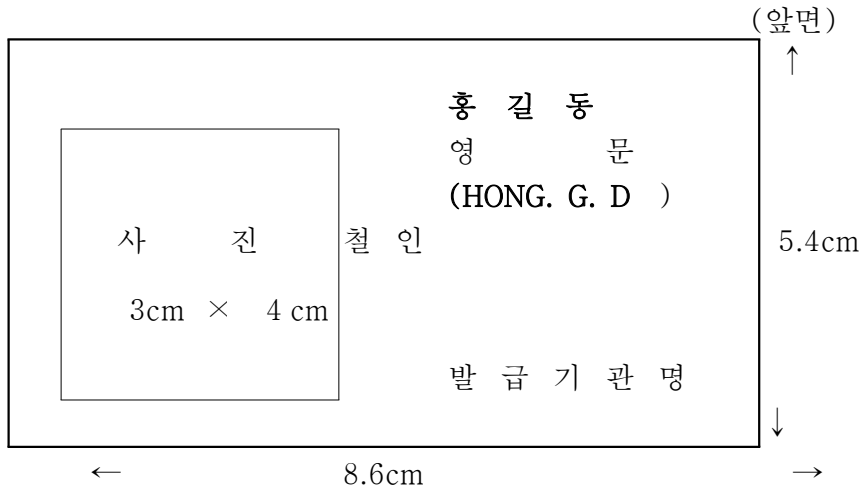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m ²				
		공작물 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 현황	기울기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 식재 현황	주요 나무 종류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m ²				
		입목별채		나무 종류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m ²		부피		
	토지합병·분할		중전면적		m ²		합병·분할 면적 m ²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간)						
기타								
개발행위의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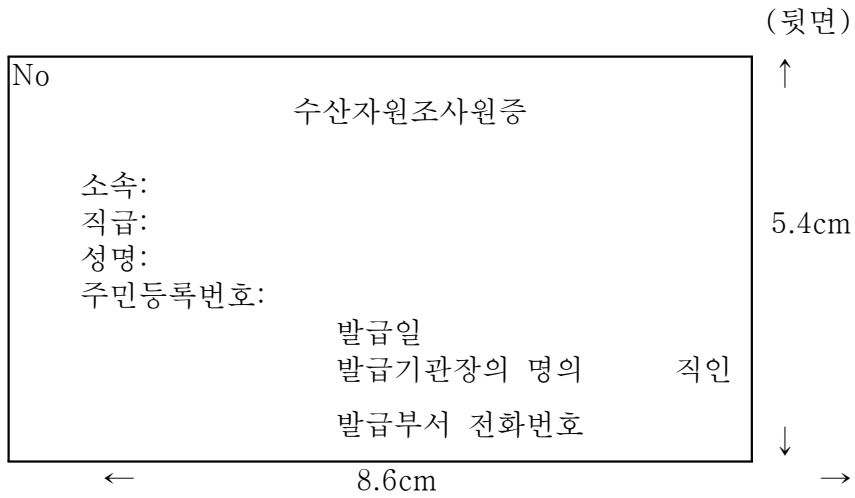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36호서식]



※ 글자의 크기 등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수산관련법령집(상)

2010년 11월 인쇄
2010년 11월 발행

발행인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편집인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88(중앙동 1번지) 2동 7층

Tel : (02)500-2359

Fax : (02)503-9127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73-1775
